연구보고서 2024-20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김은정
임성은·이지혜·하태정·안현미·김명중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임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하태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20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 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인 강 혜 규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정인애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37-3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20

발|간|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적절한 아동발달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기관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를 이용하려는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이와 함께 민간시설 위주로 서비스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누구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으며,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권(선택권)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양질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의 저출생에 따른 아동 수 감소를 고려할 때 총량적으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국공립 기관은 수요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상보육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2022년에 부모육아휴직제도, 2023년에 부모급여가 도입되었다. 2022년에 도입된 부모육아휴직제도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하나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부모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양육을 위한 시간 지원제도의 확대로 볼 수 있다. 2023년에 도입된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이 변형된 것으로 현금지원의 확대로 이해된다. 영아기에 대한 시간 지원제도, 현금지원제도의 확대는 가정양육의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관서비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주요 정책의 변화 이외에도 한국의 저출생은 서비스의 수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은 2015년에 합계출산율 1.24명을 기록한 이후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 0.72를 기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다. 아동 수의 감소는 기관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기관 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비스 접근성 악화와 돌봄 인프라 사각지대의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저출생 및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보육·유아교육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의 수급 실태와 공급 구조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의 수요 변화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에 참여해 주신 안현미 박사님, 김명중 박사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의 개별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강 혜 규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요약 ····· 1

제1장 서론 ·····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9

제2장 문헌 검토 ····· 13

제1절 양육실태 관련 조사 ····· 15

제2절 수급 분석 관련 연구 ····· 29

제3절 해외 사례: 일본 ····· 44

제4절 소결 ····· 62

제3장 관련 정책 및 활용 현황 ····· 65

제1절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 ····· 68

제2절 아이돌보미와 시간제 보육제도 ····· 77

제3절 유아 교육··보육 통합제도 ····· 92

제4절 소결 ····· 101

제4장 서비스 수급 현황 및 관리 체계 ····· 103

제1절 기관돌봄서비스의 수급 현황 ····· 105

제2절 보육 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 126

제3절 유아교육 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 152

제4절 소결 ····· 164

제5장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 167

제1절 조사 개요 ····· 169

제2절 돌봄 형태 및 서비스 이용 ····· 172

제3절 서비스 충분성과 수요 ····· 207

제4절 서비스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 ····· 232

제5절 소결 ····· 24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55

제1절 결론 ····· 257

제2절 수요자 욕구 기반 서비스 공급정책 제언 ····· 259

참고문헌 ····· 271

부 록 ····· 285

Abstract ····· 317

표 목차

〈표 1-1〉 어린이집 시설 수의 변화(2019년~2023년) ····· 8
〈표 2-1〉 검토 대상 주요 조사의 개요 ····· 16
〈표 2-2〉 보육실태조사: 보육·교육 서비스 및 개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2018년 vs. 2021년) ····· 17
〈표 2-3〉 가족과 출산 조사: 희망 및 실제 돌봄 서비스 이용 유형(2018년 vs. 2021년) · 19
〈표 2-4〉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평균 대기 기간 (2018년 vs. 2021년) ····· 20
〈표 2-5〉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2018년 vs. 2021년) ····· 21
〈표 2-6〉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 내 기관 공급의 충분성 (2018년 vs. 2021년) ····· 22
〈표 2-7〉 보육실태조사: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경험(2018년 vs. 2021년) ····· 24
〈표 2-8〉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 ····· 25
〈표 2-9〉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이용 이유 (2018년 vs. 2021년) ····· 26
〈표 2-10〉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2018년 vs. 2021년) ····· 28
〈표 2-11〉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 ····· 30
〈표 2-12〉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공급과잉 우려 및 공급과잉 지역 ····· 31
〈표 2-13〉 육아 인프라 공급 대응 전략 ····· 32
〈표 2-14〉 시도별 보육 수요 대비 공급 현황 ····· 33
〈표 2-15〉 보육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과제 ····· 34
〈표 2-16〉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 개선 방안: 공급 방향 ····· 36
〈표 2-17〉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 개선 방안: 공급 구조 개선 ····· 37
〈표 2-18〉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제도 이용 수요 변화 예상 ····· 38
〈표 2-19〉 영아 양육지원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 39
〈표 2-20〉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 40
〈표 2-21〉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개선 요구 ····· 43

〈표 2-22〉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자 및 대상 범위: 유치원, 보육, 인정 어린이집 등 ····· 45
〈표 2-23〉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자 및 대상 범위: 인가 외 보육시설 ····· 47
〈표 2-24〉 보육원 등의 정원 충족률 ····· 55
〈표 3-1〉 부모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식(2024년) ····· 70
〈표 3-2〉 연도별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수(추정) ····· 71
〈표 3-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수준: 월 상한액(2024년) ····· 73
〈표 3-4〉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 74
〈표 3-5〉 2022년 출생아의 부모 특성별 육아휴직자 비중(시작일 기준) ····· 75
〈표 3-6〉 1세 미만 육아휴직 사용률,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 ····· 76
〈표 3-7〉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2024년) ····· 79
〈표 3-8〉 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본인부담금(2024년) ····· 80
〈표 3-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9~2023년) ····· 83
〈표 3-10〉 소득 유형별·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21~2023년) ····· 84
〈표 3-11〉 가구 유형별·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21~2023년) ····· 86
〈표 3-12〉 시간제 보육 변화: 통합반 본사업 실시(2023~2024년) ····· 88
〈표 3-13〉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2015~2023년) ····· 90
〈표 3-14〉 연령대 및 시간대별 시간제 보육 이용 현황(2022년) ····· 90
〈표 3-15〉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2022년) ····· 91
〈표 3-16〉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과제 ····· 93
〈표 3-17〉 어린이집 유형별·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2023년) ····· 98
〈표 3-18〉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2019~2023년) ····· 99
〈표 3-19〉 0~5세 아동 인구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2023) ····· 100
〈표 4-1〉 어린이집 지역별 &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111
〈표 4-2〉 유치원 설립 유형별 시설 수와 이용 유아 수(2024년 4월 기준) ····· 121
〈표 4-3〉 유치원 설립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122

〈표 4-4〉 중앙정부의 보육 수요(산출 근거) vs 공급 방식 ····· 128
〈표 4-5〉 중앙정부 보육 수요와 공급의 산출 근거 및 현황 ····· 133
〈표 4-6〉 연령별 향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수요 ····· 137
〈표 4-7〉 중장기 보육 계획에 따른 보육 공급 전략 ····· 141
〈표 4-8〉 기초지방자치단체 수급계획: 인가/ 인가 제한 ····· 145
〈표 4-9〉 폐원 시 규모별 지원금 ····· 152
〈표 4-10〉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유치원 공급 전략 ····· 158
〈표 4-11〉 서울시 교육청 공립 유치원 확대 기준 ····· 159
〈표 4-12〉 지자체 교육청 유아배치 계획 수립 ····· 162
〈표 5-1〉 조사 개요 ····· 169
〈표 5-2〉 응답자 특성 ····· 170
〈표 5-3〉 변수의 정의 ····· 171
〈표 5-4〉 낮 시간 주요 돌봄 유형: 대분류 ····· 172
〈표 5-5〉 응답자 특성에 따른 낮 시간 주요 돌봄 유형: 세부 분류 ····· 174
〈표 5-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요 돌봄 만족도 ····· 177
〈표 5-7〉 응답자 특성에 따른 낮 시간 보조 돌봄 유형: 세부 분류 ····· 179
〈표 5-8〉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막내 자녀 돌봄을 위해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 182
〈표 5-9〉 응답자 특성에 따른 보조 돌봄 만족도 ····· 184
〈표 5-10〉 현재 돌봄과 희망 돌봄 유형의 일치 여부에 대한 응답 ····· 185
〈표 5-11〉 연령별 향후 희망하는 주요 돌봄 ····· 187
〈표 5-12〉 연령별 향후 희망하는 보조 돌봄 ····· 189
〈표 5-13〉 긴급돌봄 필요 정도 ····· 190
〈표 5-14〉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 ····· 191
〈표 5-15〉 긴급돌봄 대처의 어려움 정도 ····· 192
〈표 5-16〉 기관서비스 처음 이용 시기와 희망 시기 ····· 194
〈표 5-17〉 희망 시기보다 기관에 일찍 보낸 이유 ····· 195
〈표 5-18〉 희망 시기보다 기관에 늦게 보낸 이유 ····· 196

〈표 5-19〉 현재 다니는 기관의 만족도 ····· 197
〈표 5-20〉 현재 다니는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만족도 ····· 197
〈표 5-21〉 현재 다니는 기관의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 ····· 198
〈표 5-22〉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한 만족도 ····· 199
〈표 5-23〉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 200
〈표 5-24〉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 ····· 201
〈표 5-25〉 현재 다니는 기관 유형에 대한 만족도 ····· 203
〈표 5-26〉 0~36개월 미만 시기 기관 서비스 대기 경험 유무 ····· 204
〈표 5-27〉 0~36개월 미만 시기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관 유형 ····· 204
〈표 5-28〉 0~36개월 미만 시기에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간 ····· 205
〈표 5-29〉 36개월 이상 시기 기관 서비스 대기 경험 유무 ····· 206
〈표 5-30〉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전체 ····· 208
〈표 5-31〉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1) 국공립 어린이집 ····· 208
〈표 5-32〉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2) 민간 어린이집 ····· 209
〈표 5-33〉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3) 사립 유치원 ····· 210
〈표 5-34〉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4) 국공립 유치원 ····· 210
〈표 5-35〉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5) 시간제 보육기관 ····· 211
〈표 5-36〉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전체 ····· 212
〈표 5-37〉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1) 국공립 어린이집 ··· 213
〈표 5-38〉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2) 민간 어린이집 ····· 213
〈표 5-39〉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3) 사립 유치원 ····· 214
〈표 5-40〉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4) 국공립 유치원 ····· 214
〈표 5-41〉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의 충분성: 5) 시간제 보육기관 ····· 215
〈표 5-42〉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 여부 ····· 216
〈표 5-43〉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패턴 ····· 217
〈표 5-44〉 시간제 보육 이용 주기: 주기적 이용자 vs. 간헐적 이용자 ····· 217
〈표 5-45〉 시간제 보육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 ····· 218

〈표 5-46〉 시간제 보육 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 219
〈표 5-47〉 시간제 보육 서비스 만족도: 제공기관과의 거리, 서비스 내용 및 질 ····· 220
〈표 5-48〉 시간제 보육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22
〈표 5-49〉 향후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패턴 ····· 223
〈표 5-50〉 가정양육 중인 응답자가 향후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관 서비스 이용 시기 늦출 의향 ····· 223
〈표 5-5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경험 ····· 224
〈표 5-5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패턴 ····· 226
〈표 5-53〉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주기: 주기적 이용자 vs. 간헐적 이용자 ····· 226
〈표 5-54〉 아이돌봄 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 ····· 227
〈표 5-55〉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 228
〈표 5-5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 228
〈표 5-57〉 아이돌봄 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 229
〈표 5-58〉 향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패턴 ····· 230
〈표 5-59〉 가정양육 중인 응답자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을 경우 기관 서비스 이용 시기 늦출 의향 ····· 231
〈표 5-60〉 제도별 인지 정도: 전체 ····· 232
〈표 5-61〉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부모급여 ····· 233
〈표 5-62〉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가정양육수당 ····· 234
〈표 5-63〉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시간제 보육 ····· 235
〈표 5-64〉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236
〈표 5-65〉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237
〈표 5-66〉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부모육아휴직제도 ····· 239
〈표 5-67〉 부모급여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 (2023년 이후 출생자) ····· 240
〈표 5-68〉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막내 자녀 2023년~2024년생) ····· 241
〈표 5-69〉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미칠 영향(막내 자녀 2018년~2022년생) ····· 242

〈표 5-70〉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 (막내 자녀 2022년~2024년생) ····· 243
〈표 5-71〉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2022년 이후 출생자): 전체 ····· 244
〈표 5-72〉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미칠 영향(막내 자녀 2018년~2021년생 및 2022년 이후 출생자 중 부모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 245
〈표 5-73〉 유보통합 인지도 ····· 245
〈표 5-74〉 유보통합이 될 경우, 영아기(만 0~2세) 자녀의 예상 이용 기관 ····· 246
〈표 5-75〉 유보통합이 될 경우, 유아기(만 3세 이상) 자녀의 예상 이용 기관 ····· 247
〈표 5-76〉 자녀 월령별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 24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구성도 및 추진체계 ····· 12
[그림 2-1] 일본의 보육원 등의 추이 ····· 48
[그림 2-2] 일본의 보육원 등 대기 아동 추이 ····· 49
[그림 2-3] 일본의 지역별 대기 아동 현황 ····· 52
[그림 3-1]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4년) ····· 69
[그림 3-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 ····· 78
[그림 3-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024~2025년) ····· 81
[그림 4-1]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추이 vs 출생아 수 ····· 107
[그림 4-2]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및 국공립 비율 추이 ····· 108
[그림 4-3]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및 국공립 이용 비율 추이 ····· 108
[그림 4-4]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추이 ····· 110
[그림 4-5] 설립 주체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추이(2001년~2023년) ····· 117
[그림 4-6] 설립별 유치원 수(1965년~2024년) ····· 120
[그림 4-7] 국공립 유치원 학급 연평균 증가율(2013~2017년) ····· 125
[그림 4-8]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결정 매메커니즘 ····· 127
[그림 4-9]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현황 추이 ····· 135
[그림 4-10] 영유아 인구 및 시설 공급 추이와 규모별 어린이집 비중 ····· 139
[그림 4-11]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절차 ····· 144
[그림 4-12] 국공립 유치원 학급 연평균 증가율(2013년~2017년) ····· 157
[그림 4-13]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유치원 원아 수 및 유치원 수 전망 ····· 161

부표 목차

〈부표 1〉 기초 지자체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285
〈부표 2〉 기초 지자체별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 294
〈부표 3〉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 수요과와 공급의 근거 및 변화 ····· 302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3년에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이 한동안 급증하였다. 최근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아동 수 감소로 관련 서비스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관련 시설은 빠르게 폐원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 사각지대를 확대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에 부모육아휴직제도(시간 지원제도), 2023년 부모급여(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는 등 양육지원을 둘러싼 큰 정책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아동 수의 급격한 감소와 관련 정책의 변화는 돌봄서비스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와 공급 구조를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수급을 분석한 결과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이 다수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보다는 공급과잉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공립 기관의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 완화나 지역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이용 대상 아동이 동일함에도 수요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체계가 상이한 방법으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통합적 관점의 수급관리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0세아의 경우 저소득,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정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급여를 서비스 이용 바우처 방식보다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밖에 주요 돌봄서비스 이외에 보조 돌봄을 추가로 이용하는 가구는 약 47%로, 이들은 대부분 조부모 돌봄을 활용하고 있었다. 아이돌보미나 시간제 보육을 보조 돌봄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각각 3.5%, 2.2%로 매우 낮았으나, 영아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보조 돌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나 영아기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근로시간이 길어 주요 돌봄서비스 이용만으로는 부족해서(27.4%)'로 장시간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현재 돌봄 형태와 희망 돌봄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로 조사되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일치 비율이 높았다. 반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희망 돌봄과의 일치 비율이 높아 육아휴직 활성화가 양육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대해서 5개 항목(접근성, 비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시간,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리적 접근성(거리 및 등하원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를 살펴보면,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 모두 가정돌봄은 늘리고 기관돌봄은 줄이는 쪽으로 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필요한 정책으로 영아기에는 시간 지원 정책, 그다음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아이가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 시설 확대와 함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서비스 공급은 총량적으로 공급 부족보다는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정원충족률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됨과 동시에 신도시 및 재개발단지 등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공립 기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다수이나, 민간 기관은 폐원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응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 기관서비스 이용 보장을 위한 비용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규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당 서비스가 대중적인 보조 돌봄서비스로 기능할 경우 영유아기의 돌봄공백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저출생과 제도 변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단위의 수요 파악과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형평적 서비스 공급과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 질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돌봄서비스 수급,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부모급여·부모육아휴직제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UN(2015)에서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을 고려한 양질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였다(김교령 외, 2023).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보육서비스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아동기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생애 기회(life chance)이자 기혼여성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김병인, 2020). 국내의 경우 2013년 이후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선택권)에 대한 보장 요구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무상보육과의 형평성 제고와 기관돌봄서비스 수요를 분산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기존의 영아 대상의 가정양육수당을 무상보육 대상인 5세까지 확대하였다. 2013년 무상보육을 계기로 기관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관돌봄서비스 공급은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 이른다. 이러한 공급 과정에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공립 서비스 기관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국내의 기관돌봄서비스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후 저출생에 따른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 돌봄 기관과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전국 기준 37,371개소의 어린이집이 2023년 기준으로 28,954개소로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유형 중 가정 어린이집의 감소 현상이 가장 뚜렷하며, 이는 가정 어린이집의 특성상

0~2세 대상의 보육시설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가정 어린이집의 감소에는 국공립 전환 등에 따른 감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감소와는 달리 정부의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노력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는 증가하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표 1-1〉 어린이집 시설 수의 변화(2019~2023년)

(단위: 개소, %)

구분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률	2021	전년 대비 증감률	2022	전년 대비 증감률	2023	전년 대비 증감률
계	37,371	35,352	-5.4	33,246	-6.0	30,923	-7.0	28,954	-6.4
국공립	4,324	4,598	6.3	5,437	18.2	5,801	6.7	6,187	6.7
사회복지 법인	1,343	1,316	-2.0	1,285	-2.4	1,254	-2.4	1,206	-3.8
법인 단체 등	707	671	-5.1	640	-4.6	610	-4.7	551	-9.7
민간	12,568	11,510	-8.4	10,603	-7.9	9,726	-8.3	8,886	-8.6
가정	17,117	15,529	-9.3	13,891	-10.5	12,109	-12.8	10,692	-11.7
협동	159	152	-4.4	142	-6.6	132	-7.0	124	-6.1
직장	1,153	1,216	5.5	1,248	2.6	1,291	3.4	1,308	1.3

주: 전년 대비 증감률은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직접 산출한 값임.
출처: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 e-나라지표 홈페이지, 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에서 2024.7.16. 인출.

아동 수 감소는 기관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시설 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에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돌봄에 대한 선택권(가정양육 vs. 시설 돌봄)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유형(어린이집 유형, 유치원 유형)의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곳(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돌봄 인프라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서비스 이용 감소와 더불어 그간의 현금급여의 확대(첫 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등)와 시간 지원 확대(부모육아휴직 확대 등)가 서비스 이용 및 수요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및 아이돌보미 이용과 연계되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정책 변화는 관련 서비스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육아휴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 변화가 예측되며, 이러한 변화 또한 관련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양육 지원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저출생과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수급 불균형 실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서비스 수급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 및 선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및 방법

저출생과 영유아 양육을 둘러싼 관련 정책의 변화는 서비스 수요 변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수요 변화는 서비스 공급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비스 수급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돌봄서비스는 기관서비스와 가정양육지원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기관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관서비스 수요는 가정양육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관련 서비스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은 문헌 검토로, 기존 조사와 수급 분석 연구, 해외 사례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보육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돌봄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제2절에서는 기존 수급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분석된 수급 실태와 그에 따른 정책 제언과 대응 전략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무상보육과 그에 따른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해외 사례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돌봄 기관서비스 이용 대상 및 조건이 국내와 상이하고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용 자격이 있는 수요에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측면과 저출생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관련 정책 및 이용 현황으로,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관서비스 공급 환경에 영향을 초래할 유보통합 관련 정책 현황을 검토한다.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되어 2024년에 금액이 확대되는 변화가 있었으며, 부모육아휴직제도는 2022년에 도입되어 2024년에 기간 및 급여가 확대되는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관련 제도의 변화와 유보통합의 추진은 영아기 양육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기관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는 가정양육의 수요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양육지원 제도로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돌봄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공급 관리체계 및 현황을 검토한다. 우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급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검토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및 관련 서비스 공급관리를 어떤 기준과 체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기관서비스 공급이 적절한 수요 파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요 변화가 공급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중앙의 경우 일반적인 체계를 검토하고,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공급자(관련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재의 공급 환경의 한계 및 쟁점을 검토하였다. 간담회를 통하여 주로 아동 수 감소 및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 환경 변화, 서비스 미스매칭 발생 원인, 향후 공급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하였다.

제5장은 전문조사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영유아 가구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양육방식(가정양육, 기관보육), 현재 양육방식과 희망 양육방식의 일치 여부, 관련 제도(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 변화가 양육방식 선택에 미친 영향, 서비스 이용 욕구 및 정책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확대가 돌봄서비스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제6장에는 연구 결과와 관련 정책 제언을 담았다.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함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본 방향과 그에 따른 정책 과제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그림 1-1〕 연구 구성도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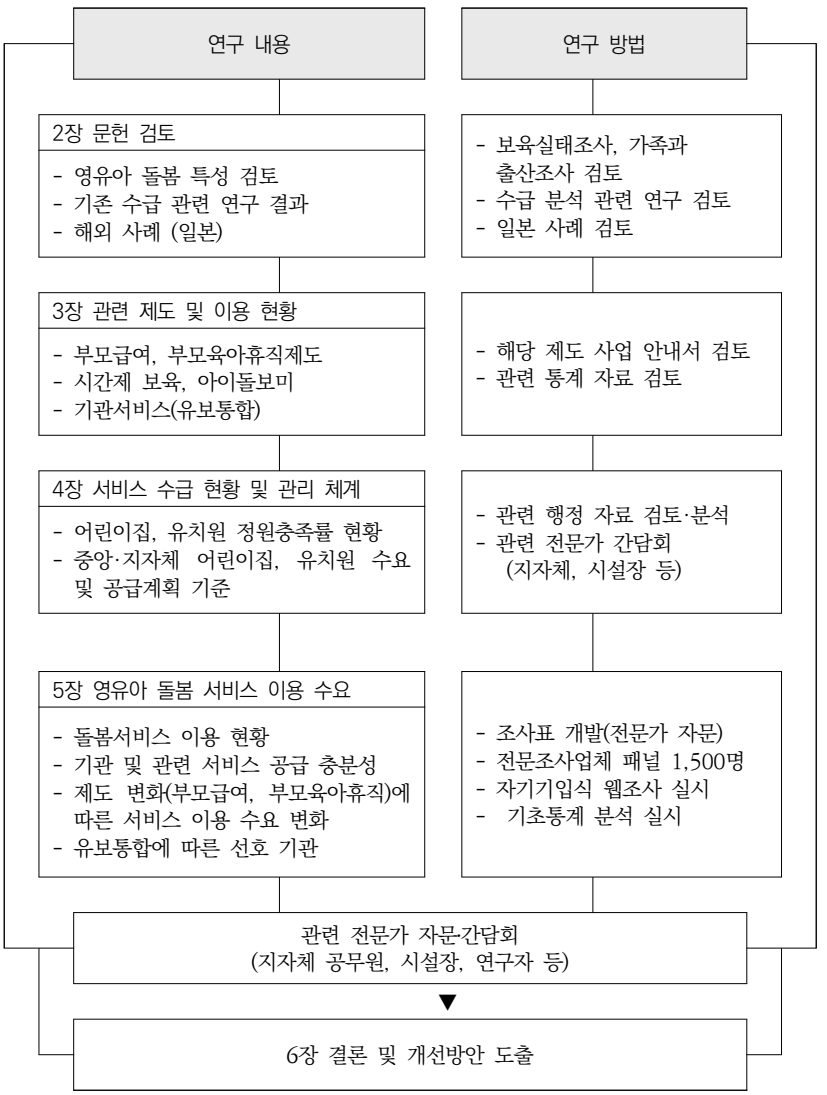

제2장

문헌 검토

제1절 양육실태 관련 조사
제2절 수급 분석 관련 연구
제3절 해외 사례: 일본
제4절 소결

제 2 장 문헌 검토

본 장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보육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의 아동 돌봄 관련 결과를 2018년도와 2021년도 비교 관점에서 검토하여 영유아의 돌봄 실태 및 관련 변화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영유아돌봄서비스 수급 분석 연구와 수요분석 연구를 검토하여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정책 제언 내용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일본 사례를 검토하여 대기 아동 관리와 저출생에 따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소결을 담았다.

제1절 양육실태 관련 조사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및 욕구 특성을 보육실태조사와 가족 및 출산 조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 시점은 최근의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과 2021년으로 제한하였다. 보육실태조사와 가족과 출산 조사는 조사 목적과 조사 대상이 다르다.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국 보육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도 미취학(만 0세~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응답한 자녀 돌봄과 관련된 문항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였다. 각 조사별로 검토 대상 가구의 기준을 정리하면, 보육실태조사에서는 가구 조사에 응답한 전체 가구, 가족과 출산 조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표 2-1〉 검토 대상 주요 조사의 개요

구분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아동조사)		가족과 출산 조사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조사 목적	영유아 아동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실태, 이용에 따른 만족도, 요구도 파악 및 보육시설 운영의 전반적 현황 파악을 통한 보육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보육실태 기초자료 생산		결혼과 출산 등 인구학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 과정과 가족 경로의 변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조사 대상	2018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있는 가구	2021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있는 가구	전국 700개 조사구 12,000가구 내 기혼여성(만 15~49세) 및 미혼남녀 (만 20세~44세)	전국 표본 조사구 내 일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만 19~49세 가구원과 그의 배우자
완료 표본 수	가구조사 2,533가구, 아동조사 3,775명	가구조사 2,500가구, 아동조사 3,471명	15~49세 기혼여성 11,207명 미혼남녀 2,464명	19~49세 남녀 14,538명
돌봄 관련 문항 아동 연령 기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 (만 6세가 넘었어도 미취학 상태이면 영유아로 분류)		초등학교 취학 전(만 0세~취학 전) 및 초등학교 재학 자녀	
검토 대상 가구 기준	가구조사에 응답한 전체 가구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출처: 1) 보육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통계별설명자료조회 -보육실태조사", 통계청 설명자료서비스 홈페이지, 2024b,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331007에서 2024.6.18. 인출.

2) 가족과 출산조사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이소영 외,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6 〈표 3-1〉, p.203, p.290 〈표 10-1〉의 내용 재구성.
-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박종서 외,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4 〈표 3-1〉, p.243의 내용 재구성
- "통계별설명자료조회 -가족과 출산조사", 통계청 설명자료서비스 홈페이지, 2024a,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331007에서 2024.6.18. 인출.

1. 영유아기 돌봄 서비스 이용 및 가정보육 현황

가.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표 2-2〉는 보육실태조사에서 자녀 연령 변화에 따라 이용한 돌봄 서비스 유형을 조사 시점별로 확인한 것이다. 조사 시점과 관계없이 1세

미만일 때에는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약 85~9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1~2세 미만부터 2~3세 미만까지는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약 70%대까지 늘어난다. 이후 3~4세 미만부터는 유치원 이용 비율이 3~4세에서 약 18%, 4세 이상부터는 약 40%대로 늘어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부모가 돌보는 비율은 3세 미만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조부모 돌봄의 경우 2018년에는 2~3세 미만까지는 약 20%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3~4세 미만을 기점으로 10%대로 줄었으나, 2021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20%대의 비율을 유지하며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보육실태조사: 보육·교육 서비스 및 개인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8년 vs. 2021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사례 수
6개월 미만	2018년	-	-	-	-	-	-	-	-	-	-	-
	2021년	2.4	-	0.1	0.8	0.2	0.2	20.2	4.4	3.5	91.9	3471
1세 미만	2018년	6.3	0.1	-	0.9	0.4	-	21.4	3.5	2.9	95.6	7368
	2021년	9.8	0.1	0.2	1.4	0.6	0.2	22.5	4.7	3.3	87.1	3362
1~2세 미만	2018년	43.9	0.5	0.3	1.8	0.5	0.1	23.6	3.2	2.7	84.9	3341
	2021년	46.2	0.4	0.5	1.6	1.0	0.3	26.1	4.1	3.6	68.0	3044
2~3세 미만	2018년	71.3	2.2	1.0	1.5	0.4	0.1	21.9	2.5	2.0	78.4	2788
	2021년	72.5	1.5	1.0	2.2	1.1	0.4	25.1	3.5	3.1	54.5	2532
3~4세 미만	2018년	67.0	17.6	2.3	2.5	0.5	0.2	18.7	2.2	1.6	73.7	2253
	2021년	66.3	17.2	2.4	3.1	0.7	0.6	24.8	3.3	2.4	50.7	2097
4~5세 미만	2018년	40.9	40.5	3.5	3.8	0.3	0.2	15.5	2.8	1.8	73.9	1639
	2021년	41.0	40.8	4.8	5.8	0.7	0.8	21.3	3.1	1.9	51.0	1655
취학 직전 (5세)	2018년	27.4	49.9	4.7	5.6	0.3	0.3	16.0	2.8	2.2	72.2	1024
	2021년	30.0	45.2	7.4	8.3	0.5	0.9	20.0	3.0	1.4	51.8	1099

주: 1)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기관, ④ 시간제 사교육 기관, ⑤ 시간제 보육, ⑥ 지역아동센터 등 기타기관, ⑦ 조부모, ⑧ 기타 친인척, ⑨ 비혈연 육아 인력, ⑩ 부모가 돌봄
2) 복수응답 결과임.
3)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1)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외, 201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92 〈표 V-2-1〉의 내용을 재구성.
2)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85 〈표 V-1-4〉의 내용을 재구성.

나.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와 희망하는 서비스

가족과 출산 조사를 통해 영유아기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과 희망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에는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부모가 돌보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37.5%로 가장 높았고, 실제로도 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7.3%). 그러나 2021년에는 국공립[1]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36.1%)가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는 2018년과 동일하게 여전히 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높았다(44.7%). 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에는 2018년과 2021년 모두 국공립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50%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나, 실제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60~70%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영아기와 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과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간의 격차를 확인하면, 모든 조사 시점에서 국공립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에 비해 실제 이용하는 비율은 낮았다. 영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국공립의 실제-희망 이용 격차는 2018년과 2021년 모두 약 -24%p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18년의 국공립 실제-희망 이용 격차가 -30.1%p로 나타나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높은 수준이었고, 2021년에는 격차가 -22.0%p로 감소하였지만, 국공립을 희망하는 것에 비해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미충족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족과 출산조사에서 국공립 돌봄서비스 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직장 어린이집이 해당됨(이소영 외, 2018: 204).

〈표 2-3〉 가족과 출산 조사: 희망 및 실제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2018년 vs. 2021년)

(단위: %, %p, 명)

구분	영아(0세~2세)						유아(3세~취학 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희망	실제	실제 −희망	희망	실제	실제 −희망	희망	실제	실제 −희망	희망	실제	실제 −희망
국공립	30.4	6.5	-23.9	36.1	11.6	-24.5	53.1	23.0	-30.1	52.8	30.8	-22.0
민간시설	21.7	40.2	18.5	25.3	38.5	13.2	32.9	72.8	39.9	32.2	64.6	32.4
부모	37.5	47.3	9.8	29.2	44.7	15.5	7.3	1.4	-5.9	6.3	2.0	-4.3
친인척	6.9	4.5	-2.4	4.3	3.5	-0.8	2.6	0.2	-2.4	1.7	0.3	-1.4
기타	3.5	1.6	-1.9	5.0	1.7	-3.3	4.1	2.6	-1.5	7.0	2.3	-4.7
계	100.0 (2199)	100.0 (2199)		100.0 (1137)	100.0 (1137)		100.0 (3201)	100.0 (3201)		100.0 (1873)	100.0 (1873)	

주: 1) 이 표에서 돌봄서비스 유형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이소영 외, 2018: 204).
- 국공립: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직장 어린이집
- 민간시설: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 친인척: 아이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사설학원, 아이돌보미(정부), 민간 돌보미(베이비시터), 방문교육교사, 아이의 형제자매, 아이 혼자 등

2) 이 표의 2021년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한 박종서 외(2021)의 〈표 7-7〉, 〈표 7-8〉에 제시된 항목별 사례 수를 비율로 산출하였음.

3) 실제-희망 격차 비율은 이 표에 작성된 자료로 산출함.

출처: 1)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이소영 외,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04. 〈표 7-10〉, p.208 〈표 7-13〉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박종서 외,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4 〈표 7-7〉, p.246 〈표 7-8〉의 내용을 재구성함.

다.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대기

영유아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 대기 신청을 했던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기 신청을 경험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육실태조사의 2018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33.5%가 대기 신청 경험이 있었고, 2021년에는 44.7%로 대기 경험 비율이 직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다.

영아기와 유아기의 입소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영유아 모두 입소 대기 경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경우에는 입소 대기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별로 확인했을 때 읍면지역의 대기 경험률은 2018년 15.4%에서 2021년 33.7%로 약 18.3%p 증가하였다. 대도시는 평균 대기 기간이 2018년 9.2개월에서 2021년 7.5개월로 감소한 반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은 각각 평균 6~7개월, 읍면지역은 평균 4~5개월 수준을 유지하며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기관 입소 전 대기 경험 및 평균 대기 기간 (2018년 vs. 2021년)

(단위: %, 개월)

구분		대기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대기 기간	
		2018년	2021년	2018년	2021년
전체		33.5	44.7	7.6	6.9
영유아 구분	영아	31.8	42.3	6.8	7.1
	유아	35.2	46.6	8.2	6.8
지역 규모	대도시	40.6	47.4	9.2	7.5
	중소도시	33.9	46.4	6.2	6.9
	읍면지역	15.4	33.7	4.3	4.7
모 취업 여부[2)]	취업	37.5	47.2	7.6	7.0
	휴직 중	38.7	52.7	8.1	9.1
	미취업	29.8	40.8	7.3	6.1
	모 부재 등	7.5	22.1	8.8	3.1

주: 1) 기관(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 전 대기 경험이 있는 경우의 비율은 보육실태조사 아동조사의 전체 사례 수 대비 비율임(2018년 n=3,775, 2023년 n=3,471).
2) 모 취업 여부의 부재 등은 모가 부재인 경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3)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1)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70 〈표 Ⅵ-9-1〉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31 〈표 Ⅵ-8-1〉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2-5〉는 보육실태조사의 응답자 특성별로 입소 대기 신청 기관을 확인한 결과이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입소 대기를 신청한 기관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2018년과 2021년 모두 40%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음으로 입소 대기 신청 비율이 높았던 기관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2018년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입소 대기 신청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5.1%를 차지했는데, 2021년에는 1.9%로 현저하고 줄었고, 오히려 가정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신청을 했던 비율이 2018년 13.2%에서 2021년 29.2%로 16%p 상승했다.

지역 규모별로는 지역 규모와 상관 없이 전체 응답 결과의 경향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신청 비율은 1%대로 줄어들고,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신청 비율이 늘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가정 어린이집 대기 신청 비율이 2018년 6.8%에서 2021년에는 30.9%로 대폭 늘어났다. 이처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경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입소 대기 신청 기관(2018년 vs. 2021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계
전체		2018년	43.9	2.1	2.4	25.1	13.2	-	1.8	4.6	6.9	-	100.0 (1131)
		2021년	43.1	2.5	-	1.9	29.2	13.6	0.8	2.7	6.0	-	100.0 (1328)
영유아 구분	영아	2018년	43.3	2.2	2.7	30.0	17.4	-	2.3	1.4	0.6	-	100.0 (533)
		2021년	50.2	2.6	-	1.3	26.6	17.1	1.3	-	0.7	0.2	100.0 (593)
	유아	2018년	44.3	2.0	2.2	20.8	9.5	-	1.4	7.4	12.3	-	100.0 (598)
		2021년	37.8	2.4	-	2.2	31.2	11.0	0.5	4.7	10.1	0.1	100.0 (735)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기타	계
지역 규모	대도시	2018년	53.1	1.0	1.6	22.4	11.7	-	1.9	2.3	5.9	-	100.0 (54)
		2021년	54.6	1.9	-	1.9	23.3	9.4	0.5	1.8	6.2	0.3	100.0 (636)
	중소 도시	2018년	34.2	3.1	2.1	28.5	16.2	-	1.3	6.8	7.7	-	100.0 (386)
		2021년	33.2	1.9	-	1.9	34.7	17.9	0.9	3.2	6.4	-	100.0 (520)
	읍면 지역	2018년	37.0	3.6	9.4	23.1	6.8	-	4.5	7.1	9.4	-	100.0 (198)
		2021년	37.6	7.0	-	1.4	30.9	13.5	1.6	3.8	4.3	-	100.0 (172)

주: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1)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72 〈표 VI-9-2〉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332 〈표 VI-8-2〉의 내용을 재구성함.

라.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의 충분성

영유아기 자녀를 둔 가구의 거주 지역 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공급이 충분한지, 아이를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해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전반적으로 2021년 어린이집·유치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그럼에도 유아기의 경우, 중소도시의 경우 어린이집이 불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거주지 내 기관 공급의 충분성(2018년 vs. 2021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불충분	충분	잘 모름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전체	2018년	44.5	45.0	10.5	55.4	27.7	16.9	100.0 (2,533)
	2021년	40.9	42.7	16.4	48.6	28.8	22.7	100.0 (2,500)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불충분	충분	잘 모름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018년	46.9	40.6	12.4	52.6	24.3	23.1	100.0 (1,633)
		2021년	38.6	44.9	16.5	47.3	22.0	30.7	100.0 (1,450)
	유아	2018년	41.3	50.8	7.9	59.1	32.3	8.6	100.0 (900)
		2021년	47.4	36.2	16.4	50.1	36.7	13.2	100.0 (1,050)
지역 규모	대도시	2018년	46.2	42.3	11.6	57.3	25.3	17.4	100.0 (946)
		2021년	44.6	40.5	14.9	53.0	25.9	21.1	100.0 (1,141)
	중소도시	2018년	38.0	50.5	11.5	53.9	25.5	20.6	100.0 (782)
		2021년	39.5	42.8	17.7	46.0	29.9	24.1	100.0 (952)
	읍면지역	2018년	49.0	43.0	8.0	54.2	33.5	12.3	100.0 (805)
		2021년	34.6	48.5	16.9	43.7	33.4	23.0	100.0 (407)
모 취업 여부[1)]	취업	2018년	45.9	46.3	7.8	58.5	26.7	14.8	100.0 (1,093)
		2021년	40.2	45.6	14.1	49.0	32.1	18.9	100.0 (997)
	휴직	2018년	52.0	29.4	18.6	48.4	20.7	30.9	100.0 (179)
		2021년	49.3	32.3	18.4	53.3	16.5	30.2	100.0 (303)
	미취업	2018년	42.2	46.2	11.7	53.6	29.4	16.9	100.0 (1,229)
		2021년	39.2	43.3	17.5	47.1	29.4	23.6	100.0 (1,174)
	부재 등	2018년	43.1	42.7	14.2	52.0	37.5	10.5	100.0 (32)
		2021년	29.7	30.2	40.1	34.8	27.1	38.1	100.0 (26)

주: 1) 모 취업 여부의 부재 등은 모가 부재인 경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2)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1)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84 〈표 XI-2-2〉, p.585 〈표 XI-2-3〉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35 〈표 XI-2-2〉, p.537 〈표 XI-2-3〉의 내용을 재구성함.

2. 관련 제도의 이용 현황 및 정책 요구도

가. 가정양육 지원 제도의 이용 현황

가정양육 지원 제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육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경험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6~36개월 미만)의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경험을 확인하면, 해당 제도를 알지만 이용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에서 가장

많았다. 질병감염아동은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재나 과거의 이용 경험을 확인했을 때,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 가장 이용 경험률이 높은 것은 시간제 돌봄(2018년 과거 이용 5.1%, 현재 이용 2.0%, 2021년 과거 이용 5.3%, 현재 이용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보육실태조사: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경험(2018년 vs. 2021년)

(단위: %)

구분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경험					
		현재 이용	과거 이용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계	
시간제 돌봄	2018년	2.0	5.1	59.9	33.0	100.0	(2533)
	2021년	2.8	5.3	52.8	39.1	100.0	(2500)
영아종일제 돌봄	2018년	3.6	2.4	58.2	35.7	100.0	(2533)
	2021년	1.9	2.8	53.9	41.4	100.0	(2500)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2018년	0.3	1.1	40.8	57.8	100.0	(2533)
	2021년	0.2	0.6	43.4	55.8	100.0	(2500)

주: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64 〈표 Ⅳ-2-16〉의 내용을 활용하여 재구성함.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또는 시간대)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2024 재인용).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과 이용 이유를 확인한 결과는 〈표 2-8〉과 〈표 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인지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2-8〉 참고), 2018년에 비해 2021년에는 시간제 보육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낮아졌고(2018년 64.1% → 2021년 53.8%), 실제 이용 경험 자체도 2018년 7.1%에서 2021년에는 3.2%로 줄어들었다. 인지율과 이용 경험은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조사 시점 간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최연소 자녀가 유아일 경우에는 이용 경험 비율이 영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2018년 7.2%, 2021년 3.5%), 지역 규모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대도시 거주자의 이용 경험 비율(2018년 7.9%, 2021년 3.5%)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다.

〈표 2-8〉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시간제 보육 인지 및 이용 경험				
			전혀 모름	알고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들어본 적 있으나 이용 경험 없음	이용 경험 있음	계
전체		2018년	35.9	35.4	21.5	7.1	100.0 (2533)
		2021년	46.2	9.4	41.2	3.2	100.0 (250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018년	39.8	32.6	20.6	7.0	100.0 (1372)
		2021년	48.9	7.7	40.5	2.8	100.0 (1231)
	유아	2018년	32.4	38.0	22.4	7.2	100.0 (1161)
		2021년	43.8	10.8	41.9	3.5	100.0 (1269)
지역 규모	대도시	2018년	31.7	35.9	24.5	7.9	100.0 (946)
		2021년	47.3	8.7	40.6	3.5	100.0 (1141)
	중소도시	2018년	39.5	28.5	24.9	7.1	100.0 (782)
		2021년	44.0	11.1	41.8	3.1	100.0 (952)
	읍면지역	2018년	38.1	42.0	13.9	6.0	100.0 (805)
		2021년	49.1	6.7	41.4	2.9	100.0 (407)
모 취업 여부[1)]	취업	2018년	33.7	35.0	23.8	7.4	100.0 (1093)
		2021년	43.1	10.7	42.9	3.3	100.0 (997)
	휴직 중	2018년	33.2	34.4	25.6	6.8	100.0 (179)
		2021년	50.7	8.4	37.7	3.2	100.0 (303)
	미취업	2018년	37.7	36.3	19.2	6.8	100.0 (1229)
		2021년	47.2	8.7	41.1	3.0	100.0 (1174)
	부재 등	2018년	57.1	25.9	9.2	7.8	100.0 (32)
		2021년	66.4	1.6	24.7	7.2	100.0 (26)

주: 1) 모 취업 여부의 부재 등은 모가 부재인 경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2)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1)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88〈표 XI-2-5〉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40 〈표 XI-2-5〉의 내용을 재구성함.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경우의 이용 이유를 확인했을 때(〈표 2-9〉 참고), 2021년 기준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이가 어려서 종일 기관 이용 부담(24.1%),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15.8%),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 시간 필요(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나 모의 취업 여부, 최연소 자녀 구분 같은 응답자의 특성별로 확인할 때에도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현재 종일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의 응답 비율이 2018년 4.5%에서 15.8%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9〉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영아 대상 시간제 보육 이용 이유(2018년 vs. 2021년)

(단위: %, 명)

			아이가 어려서 종일 기관 이용 부담	자녀 양육 이외에 개인시간 필요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해서	현재 종일제 기관 이용할 수 없어서	기타	계
전체		2018년	27.9	24.4	40.7	4.5	2.7	100.0 (185)
		2021년	24.1	14.8	42.1	15.8	3.2	100.0 (185)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018년	27.8	25.0	38.2	6.3	2.7	100.0 (103)
		2021년	29.9	14.9	27.6	22.0	5.6	100.0 (103)
	유아	2018년	27.9	23.8	42.8	2.8	2.7	100.0 (82)
		2021년	20.2	14.7	52.0	11.5	1.6	100.0 (82)
지역 규모	대도시	2018년	30.4	24.9	40.4	-	4.3	100.0 (80)
		2021년	17.4	13.9	50.4	16.6	1.7	100.0 (80)
	중소 도시	2018년	19.0	14.6	54.4	12.0	-	100.0 (58)
		2021년	17.7	15.3	41.0	20.1	5.9	100.0 (58)
	읍면 지역	2018년	34.0	35.4	24.2	3.4	2.9	100.0 (47)
		2021년	65.5	16.1	18.4	-	-	100.0 (47)
모 취업 여부[1)]	취업	2018년	32.5	21.8	37.6	5.6	2.4	100.0 (85)
		2021년	37.4	9.7	32.0	15.1	5.8	100.0 (85)
	휴직 중	2018년	31.6	27.5	23.4	5.1	12.4	100.0 (13)
		2021년	3.3	9.5	83.7	3.5	-	100.0 (13)
	미취업	2018년	23.5	25.5	46.1	3.3	1.5	100.0 (85)
		2021년	15.7	20.0	41.5	21.0	1.8	100.0 (85)
	부재 등	2018년	-	52.2	47.8	-	-	100.0 (2)
		2021년	57.2	42.8		-	-	100.0 (2)

주: 1) 모 취업 여부의 부재 등은 모가 부재인 경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2)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1)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91〈표 XI-2-7〉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42 〈표 XI-2-7〉의 내용을 재구성함.

나. 육아지원 정책 관련 욕구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가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의 1순위 응답 비율을 확인하면, 응답자 전체 기준으로 2018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9%), 기관서비스 질 향상(17.5%),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11.7%),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2018년과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2.0%)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육아지원 정책은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21.7%)이었고,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14.8%), 기관서비스 질 향상(1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경우 2018년과 2021년 모두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었으나, 유아의 경우 2018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 2021년에는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응답 비율은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8년에는 지역 규모를 막론하고 가장 높았으나, 2021년에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으로 꼽은 비율이 더 높았다.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상태일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선택한 비율이 2018년과 2021년 모두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육아지원 정책은 2018년에는 기관서비스 질 향상(17.8%), 2021년에는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20.4%)이었다. 휴직 상태일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를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2-10〉 보육실태조사: 응답자 특성별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1순위 (2018년 vs. 2021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례 수
전체		2018년	35.9	11.7	7.8	17.5	5.7	3.7	10.2	0.9	6.5	2,533
		2021년	22.0	21.7	11.3	14.4	4.8	1.8	14.8	0.9	7.9	2,500
최연소 자녀 구분	영아	2018년	36.8	10.8	9.8	16.1	4.5	4.0	11.1	0.9	6.1	1,633
		2021년	24.7	20.5	13.6	12.0	4.4	1.5	14.5	1.0	6.9	1,450
	유아	2018년	34.7	13.1	5.2	19.3	7.4	3.4	9.1	0.9	7.0	900
		2021년	18.8	23.2	8.5	17.2	5.3	2.2	14.8	0.8	9.1	1,050
지역 규모	대도시	2018년	40.1	9.8	6.1	16.5	4.0	3.8	11.6	1.0	7.2	946
		2021년	22.9	19.6	12.3	14.4	4.3	1.7	14.0	0.9	9.3	1,141
	중소 도시	2018년	33.2	12.5	9.7	16.5	5.6	3.3	11.1	0.5	7.7	782
		2021년	22.0	24.0	9.2	13.1	5.8	1.7	15.9	0.8	7.4	952
	읍면 지역	2018년	32.7	13.7	8.4	19.9	8.3	4.1	7.4	1.3	4.2	805
		2021년	19.3	21.3	14.0	18.1	3.3	2.5	13.9	1.0	5.7	407
모 취업 여부[4]	취업	2018년	34.3	11.0	4.6	17.8	7.2	4.5	11.4	0.8	8.5	1,093
		2021년	21.9	20.4	6.6	11.7	7.1	2.1	18.8	0.7	10.4	997
	휴직	2018년	33.6	7.1	8.9	8.8	5.2	2.6	22.6	2.1	9.1	179
		2021년	19.2	19.0	9.7	13.1	4.7	1.2	19.8	0.3	11.8	303
	미취업	2018년	37.9	13.1	10.7	18.1	4.3	3.1	7.6	0.8	4.4	1,229
		2021년	22.9	23.0	16.1	17.2	2.7	1.8	9.9	1.2	4.7	1,174
	부재 등	2018년	28.4	14.6	8.4	28.5	10.1	10.0	-	-	-	32
		2021년	15.9	55.5	4.9	18.0	4.1	-	1.6	-	-	26

주: 1)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②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 ③ 양육수당 인상, ④ 기관서비스 질 향상, ⑤ 보육 유형 다양화 확대, ⑥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⑦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⑧ 육아정보 상담 제공, ⑨ 유연근무제 확대

2) 연도별 비교가 가능한 항목만 제시하였음.

3) 2018년과 2021년 보육실태조사의 가구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가구 기준의 결과임(2018년 n=2,533, 2021년 n=2,500).

4) 모 취업 여부의 부재 등은 모가 부재인 경우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5) 각 연도의 응답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출처: 1)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8,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615 〈표 XI-5-1〉의 내용을 재구성함.

2)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557 〈표 XI-5-1〉의 내용을 재구성함.

제2절 수급 분석 관련 연구

1. 수급 분석 및 대응 방안

가장 최근의 수급 분석 연구로는 이재희 외(2023)의 연구로 저출생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과 인구소멸 예상 지역 육아 인프라 재구조화 등을 목적으로 육아 인프라 추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비형평성 계수를 활용하여 공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비형평성 계수는 서비스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자원이 대상자 대비 얼마나 형평하게 분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최은희, 조택희, 2020, p. 195; 이재희 외, 2023, p. 69에서 재인용). 전체 어린이집·유치원 기준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기준으로 각각의 비형평 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시설 기준의 비형평성 계수보다 국공립 시설 기준의 비형평성 계수가 높아, 국공립 시설의 공급이 형평하지 않음을 보였다(이재희 외, 2023). 시도별 분석에서는 형평성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시·군·구 단위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대도시에도 형평성 수준이 낮은 곳이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해당 연구에서는 유아 대상 기관의 경우 영아보다 접근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을 위한 평균 대기 기간은 각각 197일, 103일로 조사되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256일로 민간 시설 164일과 큰 차이를 보여 국공립 시설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보였다. 반면, 이 밖에도 거리와 수요, 취원율을 바탕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인프라 공급 수준을 4단계(공급 부족, 적정 공급, 공급과잉 우려, 공급과잉)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출하였다. 영아 보육·교육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14곳, 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18곳으로 분석되었다(이재희 외, 2023).

〈표 2-11〉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

구분	지역
영아 (14지역)	- 인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지역에 분포 - 인천(강화군, 옹진군) - 경남(산청군) - 경북(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의성군, 청도군) - 전남(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 전북(순창군, 임실군, 진안군)
유아 (18지역)	- 경기, 광주, 대구, 서울, 인천, 부산, 전남, 충남 지역에 분포 - 경기(과천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 광주(남구, 동구, 서구) - 대구(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서울(강남구, 서초구) - 인천(옹진군) - 부산(강서구) - 전남(신안군, 장성군) - 충남(서천군)

출처: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이재희 외, 2023, 육아정책연구소, p.10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공급이 적정한 지역은 영아의 경우 105곳, 유아의 경우 168곳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공급과잉 우려와 공급과잉 지역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영아의 경우 공급과잉 우려(91곳), 공급과잉(40곳), 유아의 경우 공급과잉 우려(20곳), 공급과잉(44곳)으로 조사되어 공급 부족 지역보다 공급과잉 지역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영유아 수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행정 읍면에 해당한다(이재희 외, 2023).

〈표 2-12〉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공급과잉 우려 및 공급과잉 지역

구분		지역
영아	공급과잉 우려(91곳)	- 서울(18곳), 부산(11곳), 대구(2곳), 인천(4곳), 대전(3곳), 울산(3곳), 세종시, 경기(23곳), 강원(3곳), 충북(5곳), 충남(8곳), 전북(1곳), 전남(3곳), 경북(2곳), 경남(6곳)
	공급과잉 (40곳)	- 대구(5곳), 인천(3곳), 광주(5곳), 대전(2곳), 경기(2곳), 강원(4곳), 충북(5곳), 충남(1곳), 전북(3곳), 전남(1곳)), 경북(4곳), 경남(5곳)
유아 (18지역)	공급과잉 우려(20곳)	- 인천(1곳), 경기(2곳), 강원(2곳), 충북(2곳), 충남(1곳), 전북(3곳), 전남(2곳), 경북(3곳), 경남(4곳)
	공급과잉 (44곳)	- 경기(2곳), 강원(10곳), 충북(2곳), 충남(2곳), 전북(1곳), 전남(5곳)), 경북(17곳), 경남(5곳)

출처: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II):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이재희 외, 2023, 육아정책연구소, 〈표V-4-7〉, 〈표V-4-8〉 내용 일부 재구성함.

이 밖에도 이재희 외(2023)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단기 수요 추정 및 공급을 진단하였다. 머신러닝 방법을 활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어린이집·유치원 수요를 예측한 결과 0~5세 인구수 이외에 신혼부부 수, 취업자 수, (여성)고용률 등의 요소가 기관서비스 이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요에 대한 적정한 공급을 위해서 육아 인프라 공급 대응 전략으로 3가지 방향을 제안하였다.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수급 계획 및 정책 개발, 취약지역 인프라 지원 강화, 지역별 인프라 형평성 제고. 이와 같은 3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해당 연구는 인프라 수급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급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제언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정확한 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공급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돌봄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표 2-13〉 육아 인프라 공급 대응 전략

추진내용	세부 정책 추진 방안
과학적 수급 계획 및 정책 개발	- 육아 인프라 통합 데이터 센터 설치 :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 생성 및 분석 - 법인 유치원·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폐원 관리 : 필요 유무에 따라 매입하여 국공립 전환 또는 법인 해산 독려 - 보육교사 인력 풀 활용 : 유휴 인력을 각 기관에 등록하여 필요시 긴급돌봄 연계 제공
취약지역 인프라 지원 강화	- 육아 취약지역 지원 컨설팅 사업단 마련 : 환경 및 인프라 진단, 다부처 협업체계 구축, 취약지역의 공모사업 지원 - 폐교 시설 통합돌봄 시설로 활용 : 폐교 시설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 취약지역 어린이집·유치원 거점 필수 인프라 지정 및 버스 지원 : 거점 필수 인프라로 지정하여 예산 지원 확대 : 등 하원 장시간 운행을 피하기 위한 소규모 버스 지원
인프라 지역별 형평성 제고	-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공유형 프로그램 마련 : (소규모) 어린이집 간 정보·자원 교류 확산 - 영아 인프라 취약지역 보육 교사 파견 : 영아 인프라 취약지역의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영아돌봄 가능 공간을 만들고 보육교사를 파견하여 영아 돌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의 돌봄 모델 제시 - 지역 인구 유입 정책과 육아 인프라 정책 연계 : 육아 인프라 유지 및 구축은 인구 유입과 병행되어야

출처: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이재희 외, 2023, 육아정책연구소, p.172~182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강지원 외(2021)의 연구에서는 양육수당 수급자를 제외한 영유아 인구를 기준으로 수급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도별 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수급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률은 수요 대비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과 공급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자 중 일부가 방과 후 보육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공급률은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보육서비스의 대체제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까지 고려할 경우 사실상 공급률은 100%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관서비스 공급 확대 필요성은 매우 낮으나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공급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2-14〉 시도별 보육 수요 대비 공급 현황

(단위: 명, %)

시도	영유아 인구 (전체)	가정양육수당 (전체)	어린이집 정원	유치원 학생 수	이용률(1)	이용률(2)
서울	333,049	122,860	245,863	74,657	128.9	81.3
부산	123,152	38,869	84,008	40,765	125.8	86.1
대구	94,483	27,824	66,727	35,651	127	89.6
인천	121,465	39,226	88,002	38,319	129.4	87.6
광주	62,515	16,562	55,020	23,220	130.5	95.9
대전	60,855	16,118	45,160	22,132	125.6	92.3
울산	52,891	16,028	37,491	16,882	126.7	88.3
세종	25,824	7,395	19,532	6,763	120	85.6
경기	610,341	195,136	455,556	169,686	127.3	86.6
강원	56,194	15,763	48,591	14,679	123.9	89.1
충북	66,199	18,147	58,541	16,049	124.3	90.2
충남	92,131	24,990	79,979	25,594	126.6	92.2
전북	65,755	15,668	59,314	21,188	126.1	96
전남	69,577	18,302	61,869	17,889	121	89.2
경북	101,038	25,606	81,541	35,478	124.2	92.7
경남	140,487	36,252	112,049	47,191	126.2	93.6
제주	31,525	7,349	29,017	6,395	125	95.9

주: 1) 2020년 기준 자료임.
2) 공급 및 이용률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공급은 어린이집 정원+유치원 학생으로 산정하였음.
- 이용률은 공급을 영유아 인구 중 가정양육수당 수급자를 제외한 영유아 인구(이용률1) 혹은 영유아 인구(이용률2)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함.

출처: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강지원 외, 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75의 〈표 4-1〉 재인용하였으며, 해당 표의 원 출처는 아래와 같음.
1) "2020년 시도별 영유아 인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21.
2) "2020년 영유아 인구(국기초, 한부모) 내부자료", 2020년 영유아 인구, 2021.
3)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0.
4) "학급별 학생수", 교육부, 2020.

다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영유아 인구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고, 유치원에서 만 0~2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으나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원화된 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를 중심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논의는 유효하며 향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은 유치원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대상 아동의 차이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강지원 외(2021)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인프라 부족 문제는 크지 않으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 폐원 어린이집으로 인한 인프라 공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임을 제기하였다. 해당 연구는 저출생 시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3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마을 돌봄 담임제, 폐원 어린이집 지원,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육서비스 공급 기준 마련이다. 첫째, 마을 돌봄 담임제는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및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둘째, 폐원 어린이집 지원은 영유아 인구 감소로 폐원을 결정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육서비스 공급 기준 마련은 아동 인구의 절대 수 감소 및 유소년부양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 '유아 교육·보육 시설의 병행 설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정책 과제의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5〉 보육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내용
마을 돌봄 담임제	-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담임 지정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자격기준 적용 - 주 1회 이상 정기적 방문, 부모상담 및 아동 발달 점검 -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도서 및 교구 제공 및 놀이 시연 - 맡고 있는 아동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킴
폐원 어린이집 지원	- 폐원 시설 교사를 마을 돌봄 담임제로 전환하고 지역 내 돌봄 대체 인력 풀로 활용 - 폐원 시설물을 방과후돌봄 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로 업종 전환한 경우 행정 지원 - 폐원 시설을 정부가 매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인구 감소 지역의 필수재로서 보육서비스 공급 기준 마련	- 영유아 인구수 시설 수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지역 선정하여 수급 현황 검토 - 해당 지역 내 만 5세아는 병설 유치원 우선 이용 장려 - 여전히 서비스 부족의 경우 국공립 확충 - 인구 감소 지역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

출처: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강지원 외, 202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16-220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 밖에도 해당 연구에서 전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그로 인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부처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수급 균형을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동 단위로 적절한 서비스 공급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응이 요구되며 농어촌 등과 같이 연장반 운영이 어려운 경우 종일제 보육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강지원 외, 2021).

양미선 외(2018)의 연구에서는 저출생에 따른 기관서비스의 수급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저출산에 대비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 체계의 방향성을 구조 개선 방안과 함께 제시하였다. 시군구의 보육수립계획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8년 기준으로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한 시군구는 전국 228개 중 135개 지역으로 59.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 시기는 3년 단위이며 17개 시도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보유계획 수립과 유치원 공급계획 수립 시 관련 자료 및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소관기관 간의 이해관계로 협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확충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역을 반영한 확충계획 마련이 미흡하다고 분석하였으며, 민간 장기임차 확충 방법의 경우 장기임차를 신청한 어린이집들의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영유아 모집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조사 대상 어린이집의 70% 이상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 현원이 적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어려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의 경우 70.6%가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립 유치원이 공립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원충족률은 최고 수준인 때와 비교하면 어린이집 영아반 27.1%, 유아반 27.9%, 유치원 30.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공공형 사립 유치원 사업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적정 어린이집 수는 합계출산율 중위가정 기준으로 2018년 34,902개소로 2017년 40,238개소를 기준으로 할 때 5,336개소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가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과잉 공급 규모는 더 확대된다(양미선 외, 2018).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공급과잉 상황에서 향후 서비스 공급은 국공립 중심의 확충과 합리적 수급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2-16〉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개선 방안: 공급 방향

정책 과제	세부 전략 및 내용
국공립 확충 정책	- 국공립 확충 시 민간 서비스 질 제고 함께 추진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 확충(매입, 무상임대, 장기임차 등) · 국공립 전환 시설 대상의 보육서비스 질 체계 마련 - 국공립 확충 목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
합리적 수급 정책	- 수급계획 수립과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인가 여부 관리 감독 - 보육실태 조사 시 보육수요율 산출 정례화 · 중앙정부 차원 보육수요조사 매년 정기적 실시 - 유치원 취학 수용조사의 지침 정교화 - 보육수급계획 및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시도 및 시군구와 시도교육청 정례적 논의

출처: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양미선 외, 2018, 육아정책연구소, pp.247~255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앞에서 소개된 공급 방향을 바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진입 장벽 강화,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출 구조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 공영형 유치원 등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 기준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세부 전략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7〉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개선 방안: 공급 구조 개선

정책 과제	내용
어린이집 진입 장벽 강화	-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강화 · 설치 시 자기자본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대표자가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 수 제한, 대표자 자격 강화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출 구조 마련	- 어린이집 폐쇄 기준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퇴출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폐쇄 확정 3개월 후 폐쇄 예정신고서 전달, 해당 시설 이용 영유아를 인근 기관으로 이동시키는 등 사후조치 기간을 둠
국공립 확충 방안	- 출산율 및 기관 운영 추이를 검토하여 확충 규모 조정 - 장기임차 선정 시 적용하는 사전적격심사 기준과 재위탁 기준 개정 -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 마련
공영형 유치원 등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델 기준 강화	- 서울시 공영형 유치원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 지원 수준, 운영기준, 컨설팅 및 장학, 평가 등에 대한 개선

출처: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양미선 외, 2018, 육아정책연구소, pp.247-255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2. 수요 분석 및 양육지원 개선 방안 연구

최근의 연구로 이정원 외(2023)의 연구에서는 양육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 간의 정합성 제고와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에는 대부분 기관보육을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영아기에는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이 혼재되어 있고, 유아기보다 가정보육을 위한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특히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연구에서도 영아기 부모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은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고 그에 따른 영아 양육지원 정책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영아 양육지원 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해 관련 제도 이용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 조사한 결과, 보육서비스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5.6%이며 아이돌보미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이며, 육아휴직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4%였다(이정원 외, 2023). 이는 부모급여와 같은 현금급여의 도입이 기관서비스 수요를 감소시키고, 개별 돌봄서비스 수요를 증가시키고, 영아기 소득보전 기능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2-18〉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유관 제도 이용 수요 변화 예상

구분	이용이 감소할 것	이용이 증가할 것	변화가 없을 것	잘 모르겠음	계(수)
보육서비스 이용	65.6	3.1	28.1	3.1	100.0(32)
아이돌보미 이용	31.3	34.4	25.0	9.4	100.0(32)
육아휴직 이용	3.1	34.4	56.3	6.3	100.0(32)

출처: 1)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이정원 외, 2023, 육아정책연구소, p.295 〈표 V-4-17〉 재인용.
2) 이 표의 결과는 이정원 외(2023)의 연구에서 수행한 '영아 가구 양육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영아 부모용)'의 결과임.

이정원 외(2023)의 연구에서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를 위한 추진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안하였다. 정합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로의 재구조화, 양육지원 욕구에 따른 지원의 충실성·다양성(선택권) 확보, 영아 연령별 핵심 양육지원 전략의 차별화, 수요자의 정책지원 접근성 제고이다.

〈표 2-19〉 영아 양육지원정책 체계화 추진 방향

추진 방향	내용
정합성 있는 정책 지원 체계로 재구조화	- 서비스, 현금, 시간 지원의 형태로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 지원 정책의 범주, 범주 내 지원 사업 간 중복 및 사각지대로 정책 지원의 정합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 - 현금, 서비스 지원의 경우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각지대는 주요 쟁점이 아니나 시간지원제도의 경우 부모의 근로 환경에 따라 제도 이용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쟁점이 있음 - 유사 현금(수당)지원의 통폐합 필요 - 관련 정책 및 사업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한 대응 필요
양육지원 욕구에 따른 지원의 충실성·다양성 (선택권) 확보	- 영아가구의 경우 영아 연령, 가구 특성 (맞벌이 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원하는 지원 유형이 상이하여 다양한 욕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화 필요
영아 연령별 핵심 양육지원 전략 차별화	- 0~1세는 '부모의 직접 돌봄'과 '가정 내 돌봄지원' 중점 지원 - 2세 이상은 '기관보육서비스'와 '시간 지원' 중심의 지원 등 영아 연령별 차별화 전략 필요
수요자의 정책지원 접근성 제고	-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육아정책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능 필요

출처: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이정원 외, 2023, 육아정책연구소, pp.313-31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앞에서 기술된 4가지 체계화 방안을 바탕으로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서비스 지원의 경우 적정 인프라 공급, 서비스 접근성 및 질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현금 지원의 경우 관련 수당의 통합과 가구소득 및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시간 지원의 경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의 포괄성을 강화하고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외벌이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 이용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표 2-20〉 정책 범주별 개선 방안

정책 범주	개선 방안
서비스 지원	- 영아 보육 실수요층을 위한 서비스 기관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 : 정원 1~10인의 영아보육 어린이집(가칭) 신설 제안 - 가정돌봄-기관돌봄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수요자를 위한 기관 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강화(취업 예정자, 육아휴직 후 복귀 예정자의 기관보육서비스 이용 연계 보장) : 입소 우선순위 조정 제안/ 지자체의 입소 조정 개입 제안 - 영아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영아 연장보육료 수익자 부담·차등 지원 도입 : 자부담 도입과 아이돌보미 지원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안 - 단시간 이용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오남용 방지 방안 마련 : 이용 대상 연령 하향 조정, 비용 지원 기준 조정
현금 지원	- 유사 중복성 현금 지원 통합 : 목적의 차별성이 없어 통합 제안 - 가구소득,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경제적 부담완화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 수준을 높이고 차등 지원 제안
시간 지원	- 시간 지원의 포괄성 강화 :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활용 방안 필요 - 돌봄 시간 욕구(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도입 : 출산전후휴가 다둥이, 다자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차등 제안 - 외벌이 가구(한부모 포함)를 위한 시간 지원 인센티브 제공 : 외벌이(한부모 포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제안 - 시간 지원의 성별 이용 형평성 제고 : 시간 지원 제도 남성 이용 확대 노력 지속 필요

출처: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이정원 외, 2023, 육아정책연구소, pp.321-332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김나영 외(2019)의 연구는 영아기 양육지원에 대한 수요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긴급하게 아이를 돌봐 줄 장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개선과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하였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어린이집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 가정양육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등은 기존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김나영 외(2019)의 연구에서는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을

3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영아기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영아기의 양육자 욕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김나영 외 (2019)가 제안한 부문별 정책 제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금 지원의 경우 정책을 선별하여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편적 비용 지원을 차별적 지원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지원의 경우 정책의 다양화 혹은 확대보다는 질 개선과 입소 대기 개선에 주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긴급조퇴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가정양육지원으로 가정방문 부모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령별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만 0세의 경우 '부모 직접 돌봄 강화'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하고, 만 1~2세의 경우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 포용'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양육지원 수요 포용을 위해 전일제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시간 지원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시 입소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 일시돌봄지원 서비스 제공과 장시간 근로에 따라 기관돌봄서비스 시간 이외에 돌봄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보조 양육서비스 활용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김나영 외, 2019).

이정원, 이정림, 김태우(2018)의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전반을 분석하여 수요 및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녀양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선호하는 서비스와 실제 선택 간의 간극 여부를 분석한 뒤, 이와 같은 간극의 이유, 잠재적 이용 욕구를 포함한 진정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정원 외(2018)의 연구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0~1세는 '부모 직접 돌봄'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만 2세~4세는 어린이집, 5세 이상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육아서비스 이용을 못 하는 주된 이유는 부모의 '취업'과 '비용 부담', '원하는 서비스 접근성 부족', '서비스 희망 수준과 가능 수준의 차이' 등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보다 이용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조사되었으며,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31.0%)'가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오래 이용하는 것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22.1%)' 등으로 조사되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 비율이 14.1%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추가 비용이 부담되어서(18.7%)'로 조사되었다. 정부 지원이 가장 부족하다고 여기는 육아 지원 분야는 '현금 지원,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30.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27.9%)'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26.4%)'가 가장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외벌이 가구는 '현금 지원,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35.8%)'이 가장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영유아 가구를 구분해서 보면 영아기에는 현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고, 유아기에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기관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주된 이유는 국공립 기관의 공급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추가 비용 부담, 서비스 질 수준 미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개선 요구는 기관서비스, 개별 돌봄서비스, 기타 서비스 정책 분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표 2-21〉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개선 요구

분야	내용
기관 보육·교육 서비스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 접근성 제고 - 보육료·교육비 지원 강화
개별 돌봄서비스	- 공공 개별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공공 개별 돌보미 인력 양성 확대 - 공공 개별 돌보미 비용 지원 수준 제고
시간제 및 기타 서비스	-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 서비스 다양성 확대 - 서비스 수준 제고 - 홍보 강화로 서비스 인지도 제고
부모 돌봄시간 (육아휴직제도 등)	-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제도 이용의 일부 자동화·강제화 -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 지원 강화(대체 인력 등)
현금 지원	- 현금 지원 수준 제고 - 양육비용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 많이 소요되는 핵심 범주에 대한 집중 지원
양육물품	- 지원 자격기준 확대 - 물품 지원 서비스 분야 다양화 - 물품 지원 전달체계의 접근성 확대 - 서비스 홍보

출처: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이정원, 이정림, 김태우, 2018, 육아정책연구소, pp.11-12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앞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정원 외(2018)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 방안의 기본 방향은 '육아서비스 인프라 충분성 확보', '수요자의 육아 만족도 제고', '서비스 수요 변동에 대한 대응성 강화'였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육아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양적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여 수요 예측과 필요 재정 규모, 필요 공급량에 자동 반영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과 영유아 가구 유형별 통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제3절 해외 사례: 일본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을 실시하고, 아동수당 확대 등 재정적으로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육 서비스 연계 책임을 지고 있어 서비스 이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대기 아동 문제를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생으로 인한 수요 및 공급 환경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 관련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일본 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 '호네부토 방침[2] 2018', '유아교육 무상화 제도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2020년 5월 10일 아동·육아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こども家庭庁, 2024b).

가. 대상자 및 대상 범위

1)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 등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자 및 대상 범위를 유치원,

2) '호네부토 방침'이라는 용어는 2000년 모리(森喜朗) 내각의 미야자와(宮沢喜一) 재무장관이 "예산은 재무성에 맡기고 내각은 뼈가 굵은(骨太) 논의를 해달라"는 발언에서 유래함. 정식 명칭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임.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 등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는 〈표 2-22〉와 같다.

먼저 만 3~5세가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 지역형 보육, 기업 주도형 보육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무료화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월 상한 2.57만 엔까지 무상화하고 있다. 무상화 정책의 실제 시작 연령은 원칙적으로는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을 무상화하는 것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만 3세부터 무상화를 실시한다.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통학 차량비, 식재료비 등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3~5세는 시설에서 징수하는 것이 기본인데, 저소득 가구 등의 부식비 면제는 계속해서 실시하며, 면제 대상자는 연 소득 360만 엔 미만 가구까지 확대하였다. 만 0~2세의 경우 만 3~5세에서 언급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가 무상화 대상이다.

〈표 2-22〉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자 및 대상 범위: 유치원, 보육, 인정 어린이집 등

구분	내용
만 3~5세	- 유치원, 보육원, 인정 어린이집, 지역형 보육, 기업 주도형 보육(표준이용료)의 이용료를 무료화 - 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월 상한 2.57만 엔(국립대학 부설유치원 0.87만 엔, 국립특별지원학교 유치부 0.04만 엔)까지 무상화 - 시작 연령 •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3년간을 무상화. 단,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교육법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만 3세부터 무상화 - 보호자가 직접 부담하는 통학차량비, 식재료비, 행사비 등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유지. - 3~5세는 시설에서 징수하는 것이 기본임. • 저소득층 가구 등의 부식비 면제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면제 대상자 확대(연소득 360만 엔 미만 가구)
만 0~2세	- 상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무상화

출처: 이 자료는 아래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に関する説明資料", こども家庭庁, 2024b, 2024. 10. 3. 검색, https://www.cfa.go.jp/policies/kokoseido/mushouka/gaiyou#nintei

2) 유치원 보육

유치원 보육은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유치원에 추가적으로 이용 실태에 따라 월 최대 11만 3천 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육의 필요성 인정이란, 2호 인정 또는 2호 인정에 준하는 인정을 의미하는데, 무상화 급여를 위해 새롭게 법제화하였다. 위탁 보육은 아동양육지원법상의 일시보육사업(유치원형)과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도 및 감독한다(こども家庭庁, 2022. 7.).

3) 인가 외 보육시설 등

인가 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은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인가 보육시설의 보육료를 전국 평균액인 월 37만 엔까지 이용료를 무료화할 수 있다. 인가 외 보육시설 이외에 일시보육사업과 질병이 있는 아동에 대한 보육사업, 가족지원센터 사업이 이 대상에 속한다.

또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 복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유치원이 충분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때 유치원 이용자가 인가 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되어도 무상화 대상에 해당된다. 인가 외 보육시설 등이 무상화 대상 정책에 포함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도부현 등에 신고를 하고, 국가가 정한 인가 외 보육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2-23〉 일본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의 대상자 및 대상 범위: 인가 외 보육시설

구분	내용
만 3~5세	-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인가 보육시설의 보육료 전국 평균액 (월 37만 엔)까지 이용료 무료화 - 인가 외 보육시설 외에 일시보육사업, 질병이 있는 아이 보육사업 및 가족 지원 센터 사업 대상 -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복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함. • 유치원이 충분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유치원 이용자가 인가 외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상화 대상 - 도도부현 등에 신고를 하고, 국가가 정한 인가 외 보육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단, 경과조치로 5년간의 유예기간 설정
만 0~2세	- 보육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2만 엔까지 이용료 무료화

출처: 이 자료는 아래 자료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に関する説明資料", こども家庭庁, 2024b, 2024. 10. 3. 검색, https://www.cfa.go.jp/policies/kokoseido/mushouka/gaiyou#nintei

2. 저출생과 보육서비스 수급

가. 보육서비스 수급

2023년 현재 일본의 만 0세~만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은 약 544만 명으로 2018년의 583만 명에 비해 약 39만 명 감소했다. 만 0세~만 5세 아동 중 보육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212만 명,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01만 명, 인정 어린이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8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미취원 아동은 146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こども家庭庁, 2024a).

1985년도에 15,220개에 달했던 유치원 수는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해 2024년도에는 8,531개까지 감소했다. 유치원 재원자 수도 정점에 달했던 1978년도의 2,497,895명에서 2024년도에는 757,880명으로 피크 시의 3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e-stat, 2024).

유치원 이용 아동이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보육원[3] 입소 희망자가 늘어난 반면, 전업주부(남편) 가정이 줄어들면서 유치원 입소 희망자가 감소한 점을 들 수 있다[4].

[그림 2-1] 일본의 보육원 등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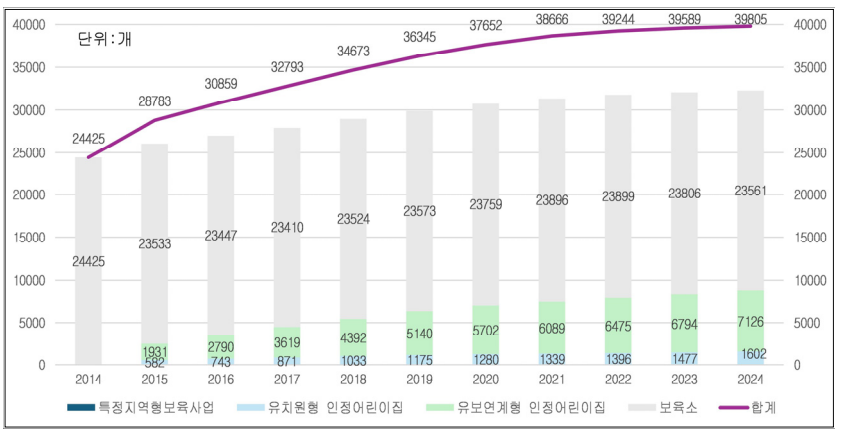

출처: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令和6年4月1日）」を公表します", こども家庭庁, 2024a, 2024. 10. 2.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4ddf7d00-3f9a-4435-93a4-8e6c204db16c/82ad22fe/20240829_policies_hoiku_torimatome_r6_02.pdf p.2의 '보육소 등의 수 추이(保育所等数の推移)' 그림 재인용.

3) 보육원은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제39조에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매일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일본의 보육원 제도의 최대 특징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보육소에서 보육을 실시하는 책임을 지는 점이다. 공립과 사립에 관계없이 보육소에 아동을 입소시키기를 희망하는 자는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4) 일본에서 유치원은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제22조에 따라 유아를 보육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당한 환경을 제공하며 심신의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치원의 입원 연령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까지지만 의무교육시설이 아니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것은 임의사항이다. 2015년도부터 시행된 아동 및 육아지원 신제도에서 유치원은 ① 종전 제도에 남아,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학 조성을 받고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취원장려비 보조의 대상이 되거나, ② 신제도의 틀 안에 들어가 유치원의 기능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인정 어린이원으로 이행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급부를 받는 선택지가 제시되었다.

1) 대기 아동

한편 일본 정부가 대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대기 아동 해소 가속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면서(厚生労働省, 2018), 보육원 등(보육원, 특정지역형 보육교사업, 유치원형 인정 어린이원 등, 유보연계형 인정 어린이원)은 2014년의 24,425개에서 2024년에는 39,805개까지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에는 인정 어린이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こども家庭庁, 2024).[5)]

[그림 2-2] 일본의 보육원 등 대기 아동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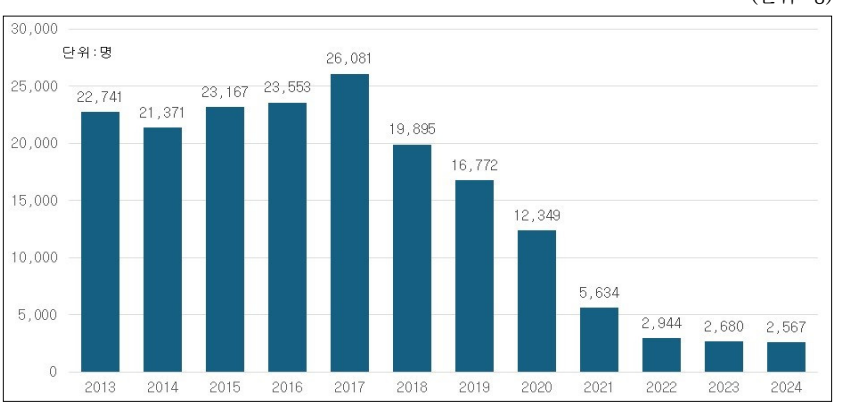

출처: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令和6年4月1日）」を公表します", こども家庭, 2024, 2024. 10. 2.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4ddf7d00-3f9a-4435-93a4-8e6c204db16c/82ad22fe/20240829_policies_hoiku_torimatome_r6_02.pdf p.3의 '보육소 등 대기 아동 수 및 보육소 등 이용률의 추이(保育所等待機児童数及び保育所等利用率の推移)' 그림 일부 재인용.

5) 문부과학성이 2023년 5월에 실시한 조사(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幼児教育課, 2024)에 의하면 2023년 현재 '유보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또는 '유치원 및 보육원'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는 78.9%, 유치원만 설치된 시정촌은1.8%, 보육원만 설치된 시정촌은 17.0%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치된 공사립 유치원, 유보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및 보육원 관련 교육 및 보육 내용의 주 담당 부서가 수장부국(지사부국과 시장부국) 또는 교육위원회 중 하나(일원화)로 되어 있는 도도부현은 34.0%에 달했다.

실제 인정 어린이원을 포함한 보육원 등이 증가하면서 대기 아동 수는 2013년의 22,741명에서 2024년에는 2,567명까지 크게 감소했다. 2024년 현재 1~2세 아동과 전체 아동 중에서 보육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각각 59.3%, 54.1%에 달하고 있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庁, 2024. 8. 30.)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대기 아동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면서 보육원 등의 이용 정원이 증가해 2023년의 이용 정원은 약 305만 명까지 증가했다(보육원 등의 이용 정원이 100명 이상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지만,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정원은 2024년에는 약 304만 명으로, 2003년에 비해 약 6천 명 감소했다). 한편 보육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2021년에 약 274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해 2024년에는 약 270만 명까지 감소했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2022년 기준으로 명목상 대기 인원수는 2,944명이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그러나 이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빈자리'를 기다리려고 공식적으로 대기자 명단에 오른 케이스만 포함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대기 인원이 수십만 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근래 일본에서 매년 약 80~90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음을 고려하면, 최대 정원 305만 명은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아동·육아지원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대기 아동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2019년 4월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결정했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첫째, 잠재적 대기 아동을 포함한 대기 아동의 조속한 해소, 보호자의 부담이 크고 대기 아동이 많은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에 대해서는 아동을 위한 교육·보육급여 및 양육을 위한 시설

등 이용급여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면서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도록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 대기 아동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육아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기 아동 상황 등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보육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도도부현과 시정촌 간 긴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시정촌에서 인가 외 보육시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2019년 내에 구축하도록 하였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보호자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전국의 인가 외 보육시설 창구 정보 일람을 게재하였다.

무상화에 따른 보육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 처우 개선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한 폭넓은 보육 인력의 육성 및 확보, 시설 정비비 등에 대한 재정적 조치, 정원 초과에 따른 감액 조치의 폐지 또는 기한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2015년도에 전면 시행된 아동 및 육아 지원 신제도에서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1조 엔 이상의 소요액 중 미조치된 3,000억 엔 이상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였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대기 아동 해소를 위해 '육아 안심플랜'을 시행하여 대기 아동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육아세대(25~44세) 여성의 취업률이 80%까지 상승해도 대응할 수 있는 32만 명 분의 보육 수용력을 2020년 말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こども家庭庁, 2024. 8. 30.).

[그림 2-3] 일본의 지역별 대기 아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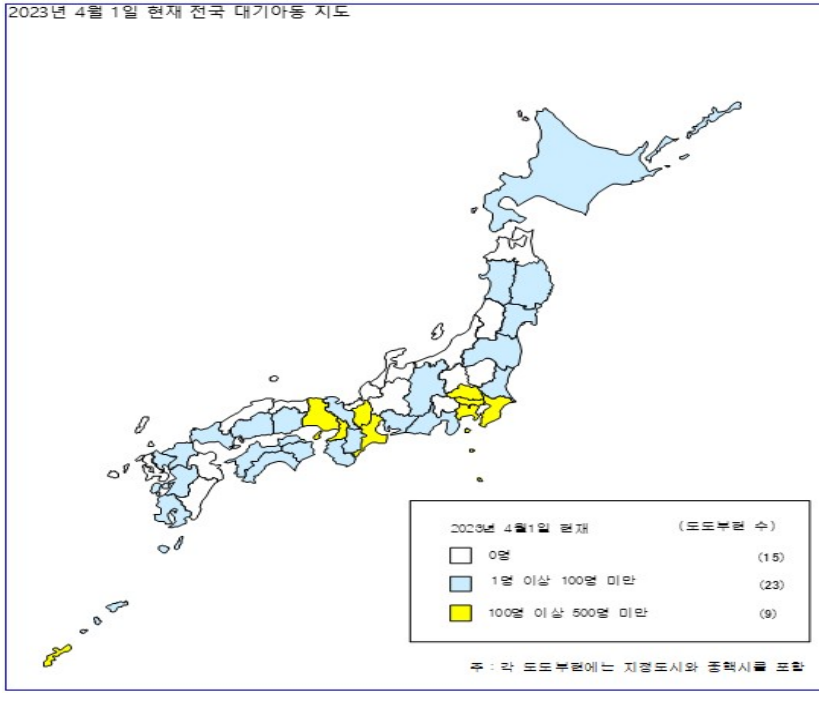

도도부현	대기아동수	대기아동율	참고	
			2022년 대기아동수	증감
	人	%	人	人
홋카이도	62	0.07	22	40
아오모리	0	0.00	0	0
이와테	27	0.10	35	▲ 8
미야기	41	0.09	75	▲ 34
아키타	3	0.01	7	▲ 4
야마가타	0	0.00	0	0
후쿠시마	13	0.04	23	▲ 10
이바라키	5	0.01	8	▲ 3
도치기	0	0.00	14	▲ 14
군마	0	0.00	1	▲ 1
사이타마	347	0.25	296	51
치바	140	0.11	250	▲ 110
도쿄	286	0.09	300	▲ 14
가나가와	222	0.12	220	2
니이가타	0	0.00	0	0
도야마	0	0.00	0	0
이시가와	0	0.00	0	0
후쿠이	0	0.00	0	0
야마나시	0	0.00	0	0
나가노	9	0.02	9	0
기후	0	0.00	0	0
시즈오카	5	0.01	23	▲ 18
아이치	52	0.03	53	▲ 1
미에	103	0.26	64	39
시가	169	0.44	118	51
교토	19	0.03	17	2
오사카	147	0.08	134	13
효고	241	0.20	311	▲ 70
나라	84	0.32	81	3
와카야마	39	0.20	30	9
돗토리	0	0.00	0	0
시마네	0	0.00	0	0
오카야마	56	0.12	79	▲ 23
히로시마	3	0.00	8	▲ 5
야마구치	10	0.04	14	▲ 4
도쿠시마	3	0.02	0	3
카가와	12	0.05	19	▲ 7
에히메	9	0.04	25	▲ 16
고치	6	0.03	4	2
후쿠오카	56	0.04	100	▲ 44
사가	24	0.10	8	16
나가사키	0	0.00	0	0
구마모토	15	0.03	9	6
오오이타	0	0.00	0	0
미야자키	0	0.00	0	0
가고시마	61	0.15	148	▲ 87
오키나와	411	0.66	439	▲ 28
합	2,680	0.10	2,944	▲ 264

출처: “令和5年4月の待機児童数調査のポイント”, こども家庭庁, 2023, 2024. 10. 2.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699fe5b-bf3d-46b1-8028-c5f450718d1a/8e86768c/20230901_policies_hoiku_torimatome_r5_01.pdf 에서 p.22의 그림 재인용.

2) 보육 컨시어지에 의한 상담사업

요코하마시가 2011년에 대기 아동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 컨시어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육 컨시어지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했다. 보육 컨시어지는 보육시설 안내, 보육시설 제안, 보육 관련 창구 안내 등 보육이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보육시설을 연결해 주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요코하마시의 보육 컨시어지가 담당하고 있는 주된 업무이다(横浜市, 2024).

(1) 보육서비스 등 이용에 관한 상담 업무

구청 창구나 전화 등을 통해 보육을 희망하는 보호자의 상담에 응해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장소 등 창구 이외의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2) 아동이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보호자들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

보육시설에 입소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하지 못한(보류된) 가정에는 보육·교육 컨시어지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전화 등으로 그 시점의 보육 상황과 의사를 확인하면서 대체 보육시설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3)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수집 업무

각 가정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적시에 안내할 수 있도록 구 내 및 인근 구의 보육서비스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등은 인정 보육원, 보육원, 가정형 보육사업, 소규모 보육사업, 인정 어린이원, 사립 유치원 위탁보육, 일시보육, 영아 일시보육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대기 아동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보육 컨시어지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여전히 대기 아동과 보육시설의 매칭을 필요로 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발표한 '신육아 안심플랜의 개요'에서는 대기 아동이 50명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도 신육아 안심플랜에 참여하면 보육 컨시어지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厚生労働省. 2020).

2024년 무사시노시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관련 정보를 보육 컨시지어 소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상담 및 예약은 인터넷과 전화로 접수하고 있다. 대면 상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에 실시하고 있고 상담시간은 약 45분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武蔵野市, 2024).

3) 정원충족률

보육원 등의 정원충족률 또한 이용 아동 수가 줄어들면서 감소하기 시작해 전국 기준 2020년 4월의 92.2%에서 2024년 4월에는 88.8%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정원충족률이 낮아진 상황이기는 하나 상당수가 9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가나가와현, 오사카부, 효고현)은 95% 이상의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표 2-24〉 보육원 등의 정원충족률

(단위: %)

구분	2020년 4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4월	2024년 4월
전국	92.2	90.9	89.7	89.1	88.8
홋카이도	93.4	92.3	90.6	89.5	89.2
아오모리현	90.5	89.3	87.9	85.9	84.7
이와테현	91.0	88.6	86.7	86.1	85.7
미야기현	95.7	94.3	93.1	92.5	92.9
아키타현	87.1	85.9	84.1	82.7	82.0
야마기타현	91.8	89.6	87.4	85.3	83.7
후쿠시마현	92.9	92.3	91.3	89.1	86.7
이바라키현	91.2	90.0	89.1	88.5	88.1
도치기현	92.8	90.4	88.6	87.1	86.8
군마현	93.5	91.3	90.5	88.9	88.2
사이타마현	95.2	93.0	92.0	92.2	92.5
지바현	91.9	90.1	89.1	89.4	90.2
도쿄도	93.3	91.8	90.5	90.2	90.4
가나가와현	97.3	96.5	96.0	96.1	96.3
니카타현	87.6	85.5	83.9	83.7	83.4
도야마현	86.0	83.9	82.6	82.5	81.9
이시카와현	87.4	85.6	84.7	83.8	82.7
후쿠이현	88.0	86.9	84.3	82.6	81.9
야마나시현	83.8	82.8	78.5	77.7	76.7
나가노현	80.6	78.8	77.7	76.5	76.3
기후현	83.7	82.5	80.6	80.4	80.3
시즈오카현	89.9	88.8	87.3	86.8	86.7
아이치현	83.9	83.1	82.0	81.7	81.3
미에현	87.1	86.9	85.3	85.9	84.8
시가현	95.7	93.3	92.1	92.1	92.1
교토부	96.0	93.4	92.2	91.3	90.1
오사카부	97.1	96.0	95.5	94.9	95.2
효고현	99.4	97.6	96.5	95.2	95.2
나라현	89.8	89.4	88.1	86.8	87.1
와카야마현	86.6	88.8	88.1	87.7	86.7
돗토리현	87.3	85.8	83.5	82.2	81.1
시마네현	95.0	92.6	91.4	89.7	89.2
오카야마현	94.0	92.8	92.4	91.1	90.7
히로시마현	88.2	87.0	85.9	84.8	84.1

구분	2020년 4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2023년 4월	2024년 4월
야마구치현	92.4	91.3	90.1	89.1	88.9
도쿠시마현	90.5	87.6	85.9	85.3	83.8
가가와현	88.6	87.4	85.8	84.2	83.3
에히메현	90.3	88.6	87.4	86.1	84.2
고치현	83.9	84.1	82.4	81.4	79.9
후쿠오카현	94.9	93.8	92.0	90.6	90.3
사가현	92.8	91.8	90.4	89.9	88.8
나가사키현	96.4	93.8	92.0	90.6	90.3
구마모토현	97.2	95.4	93.7	92.7	91.8
오오이타현	92.1	91.6	90.3	89.6	89.4
미야자키현	95.4	94.3	92.9	92.0	91.4
가고시마현	97.7	96.8	94.4	93.1	91.1
오키나와현	95.8	94.6	92.7	91.8	92.3

출처: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令和6年4月1日）」を公表します”, こども家庭, 2024a, 2024. 10. 2.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4ddf7d00-3f9a-4435-93a4-8e6c204db16c/490e7d02/20240830_policies_hoiku_torimatome_r6_06.pdf p.9의 표 재인용.

3. 지역의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가. 지역의 보육 과제와 대응

일본의 저출생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지금까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와 사회 및 경제의 존립기반을 지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이용 아동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지는 보육시설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보육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향후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보육의 장이 확보되어 필요한 사회 자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보육협의회는 향후 각 지역에서 양질의 보육을 실시하고, 모든 육아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보육원·인정 어린이원 등이 되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해 2023년 1월에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을 보육 인재에 관한 사항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社会福祉法人 全国社会福祉協議会, 全国保育協議会, 2023).

1) 보육 인재에 관한 사항

(1) 주임 보육교사, 주간 보육교사의 역할 및 지원기준 명확화

어린이집, 인가 어린이집 등이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육교사, 주임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육교사는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령상으로는 명확한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주임 보육교사와 주간 보육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전국보육교사협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역할 등에 대한 정리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2) 보육 인력 확보 및 배치기준

보육 인력 확보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노동력 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 20명 규모의 어린이집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데다, 직원 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11시간 개원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입소 아동이 감소하고 보육교사가 그대로인 경우 자연스럽게 보육교사 수는 배치기준보다 높아지지만, 공시가격의 산정은 입소 아동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확보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지역과 가정상황에 맞는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교사 대 아동 비율보다 교사를 더 많이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각 법인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아동과 보육교사 등 인원 비율에 따른 인력 배치가 아닌, 지역 육아지원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직원(아동가족지원센터 직원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보육원 및 인정 어린이원 등에 배치되면 보육원 및 인정 어린이원 등이 더 주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되어 육아하기 쉬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을 포함하여 보육교사, 특히 풀 타임으로 일하는 보육교사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향후에는 보육 보조 인력의 활용과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 내 육아 경험자의 추가 활용을 통해 지역 전체의 보육 제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자격직인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자문 등 지역 지원에 대해서는 재취업한 보육교사 등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정원에 관한 사항

(1) 정원 변경

이미 아동 수가 감소하여 보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용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시설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 안정적인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 수가 감소한 기존 어린이집, 인정

어린이원 등의 규모 축소 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각부는 지자체용 FAQ에서 정원 변경에 대해 ''검토 시기로는 매년도 초에 검토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연도 중이라도 전망에 따라 설정한 이용 정원과 실제 이용 인원의 차이가 커서 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적절하게 이용 정원의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육시설 등의 이용 정원 변경 신고를 지자체에서 접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자체에서는 올바른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가 정원의 변경 시에는 시설-설비 정비 등에 관한 보조금의 일부 반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향후 양육지원 개선 방향

가. 공정가격과 새로운 시책의 전개 등을 통한 지원의 방향성

지역 내 인구 감소가 진행되어 도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보육시설의 기능을 고려한 지원 방식에 대해 적정 가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시가격의 이용 정원 구분에 대해서는 이용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세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아동이 감소할 경우 이용 정원을 적절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자체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등 인구 감소를 고려한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이 중 적정 가격에 대한 재검토는 조기 실현을 위해 아동--육아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와 함께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나. 정원 변경에 대한 의견 등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서는 정원 감축을 허용하고 있다(旭川市, 2022. 5.). 보육원보다 유치원의 희망자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원 증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단 정원을 줄인 유치원이 이후 정원 증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정원 미달 보육시설이 위치한 다른 보육시설도 정원 감축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제도 출범 당시에는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시사점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아동 및 육아 관련 3법」에 근거하여 유아기의 교육·보육 및 지역의 아동·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이하, 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는 유아기 교육·보육 지원의 '질'과 '양'의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정 어린이원, 유치원, 보육원을 통한 공통급여(시설형 급여) 및 소규모 보육 등에 대한 급여(지역형 보육 급여)의 신설, 인정 어린이원제도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육아 지원에 충실을 기한다는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용자 중심이라는 방침을 내세워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보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시설 정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 등을

우선한다는 방침도 제시되어, 반드시 모든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기 아동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池本美香, 2023).

한편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후생노동성은 보육원의 이용 아동 수가 2025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こども家庭庁, 2023. 9. 1.). 이에 따라 2025년을 기점으로 이용 아동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보육원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것이 이른바 보육의 '2025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지역 내 보육소 및 보육교사 등의 향후 방향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였다. 이 검토회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보육 제공체제 구축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통폐합·규모 축소 등에 대한 사례 수집 등이 논의되었다(鎭目健太, 2023. 9. 2.). 또한 향후 인구가 감소하지만 양질의 보육은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일본의 보육정책이 지금까지와 같은 대기 아동 해소 및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대응에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보육환경 등의 정비와 확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보육정책은 지금까지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확충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보육시설의 확충이 진행된 데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생 추세로 인해 대기 아동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기업 주도형 보육시설도 2021년에 보육 수용 목표치(정원 11만 명분)를 달성함에 따라 2022년부터 신규 개원 및 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있다(的場康子, 2024. 8.). 기업 주도형 보육시설은 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사 직원들을 위한 보육시설로 시작되었지만 저출생과 다양한 근무형태의 확산으로 인해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근로자들을 폭넓게 수용

하는 지역 개방형 보육시설로 변화하고 있다(的場康子, 2024. 8.). 반면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이용자 확보가 어렵거나, 보육시설 운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과제인 시설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기업 주도형 보육시설은 지자체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맞춰 자사의 강점을 살린 운영을 통해 지역민에게 선택 받는 보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보다 빠르게 저출생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 본문에서 소개한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사례가 향후 보육원 등의 돌봄서비스의 정책 방향과 과소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제4절 소결

제2장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기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의 희망 돌봄과 실제 돌봄의 불일치 비율은 여전히 높으며, 국공립 기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약 50%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약 60~70%로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 자녀의 국공립 실제 이용과 희망 이용의 격차를 확인하면, 2018년에 실제 이용과 희망 이용의 격차는 -23.9%p였으며, 2021년에는 격차가 -24.5%p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실제 이용과 희망 이용의 격차가 각 연도에 따라 각각 -30.1%p, -22.0%p로 나타나 유아기는 그 격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입소 대기의 경우 2018년 전체 응답자의 33.5%가 대기 경험이 있는 반면, 2021년에는 44.7%가 대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소 대기를 경험한 비율이 더 늘었다는 특이점이 있다. 영아의 경우 입소 대기 기간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읍면지역의 입소 대기 경험률이 15.4%에서 33.7%로 크게 늘어 읍면지역에 적정 인프라가 공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공립 입소 대기를 경험한 비율은 40%로 2018년과 2021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민간 어린이집 입소 대기 경험 비율은 25.1%에서 1.9%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경험 비율은 2018년 13.2%에서 2021년 29.2%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생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읍면지역의 가정 어린이집 대기 경험 비율이 2018년 6.8%에서 2021년 30.9%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의 충분성을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2021년 40.9%로 2018년 44.5%보다 줄었으며 유치원의 경우 2018년 55.4%에서 2021년 48.6%로 줄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린이집·유치원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관련 제도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이돌봄의 경우 시간제 돌봄만 이용자 비율(현재 이용, 과거 이용)이 다소 늘고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에 대한 이용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40% 내외로 2018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시간제 보육 또한 인지 비율과 실제 이용 경험 비율이 2018년 대비 2021년에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중요한 육아지원 정책을 확인한 결과, 2018년과 2021년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1순위로 조사되었다. 다만, 해당 응답 비율은 35.9%에서 22.0%로 다소 감소하였다. 보육·교육 지원금 인상을 원하는 비율은 2018년(11.7%) 대비 2021년(21.7%)에 크게 증가하였다.

수급 분석 관련 연구에 따르면, 최근 연구의 대부분은 기관서비스 부족보다는 공급과잉 상황이라는 결과를 보였다. 그럼에도 국공립 시설에 대한 공급 부족은 여전하며 지역별로 국공립 시설 공급의 격차가 크고, 지역별 접근성에 격차가 있음을 보였다. 이는 저출생에 따라 총량적으로 기관서비스 부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지역별로 인프라 취약 지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급 계획 및 정책, 취약지역 인프라 지원 강화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인가 제한을 통한 공급 제한, 인구 감소 지역 서비스 공급 기준 마련, 폐원 시설에 대한 퇴출 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양육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연구에서는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시간, 현금 지원 간의 정합성 제고와 그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서비스 지원의 경우 적정 인프라 공급, 서비스 접근성 및 질 개선, 시간제 보육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본은 시정촌에서 수요자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수요자와 기관을 연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에 따라 대기 문제의 심각성은 많이 개선된 상황이며, 오히려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정원 조정,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지원 단가 조정 등을 통하여 아동 감소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인프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관련 정책 및 활용 현황

제1절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
제2절 아이돌보미와 시간제 보육제도
제3절 유아 교육·보육 통합제도
제4절 소결

제3장 관련 정책 및 활용 현황

본 장에서는 최근에 변화된 영유아 돌봄 관련 정책 현황을 제시한다. 제1절에서는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다. 2023년도에 도입된 부모급여는 2024년에 확대되었으며 부모육아휴직제도도 2022에 도입되어 2024년에 확대되었다. 해당 제도는 영아기에 대한 현금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 지원 확대 측면이 있어 돌봄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2절에서는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가 기관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어 관련 제도 현황을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2024년 6월 발표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로드맵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유보통합이 현재 완성 단계는 아니나, 해당 제도는 기관돌봄서비스의 공급 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4절에서는 제3장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소결을 담았다.

제1절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

1. 부모급여

가. 제도 현황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로,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이다(보건복지부, 2024, p. 3). 부모급여는 현금성 지원으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영아가구의 소득 보전,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 양육방식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2년에 도입되었던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2025년까지 보육료에 준하는 수준인 5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영아수당은 2023년에 부모급여로 전환되었으며, 당해 한시적으로 0세 아동 1인당 70만 원, 1세 아동 1인당 35만 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이후 「아동수당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24년부터는 0세 아동 1인당 100만 원, 1세 아동 1인당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4. 1. 12.).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가정양육,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이용 선택 여부에 따라 현금 지원 또는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대체되는 성격으로 설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24).

〔그림 3-1〕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2022~2024년)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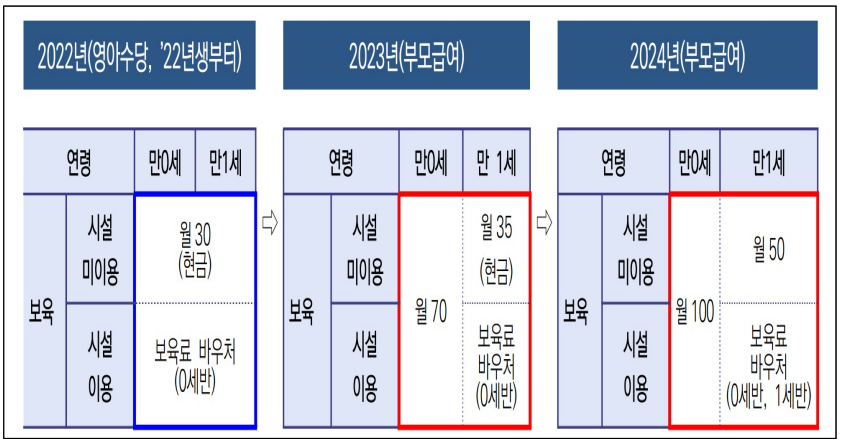

주: 0세반은 2023년 출생아동, 1세반은 2022년 출생 아동임.
출처: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 p.4.

보건복지부(2024)의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에 따르면, 부모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식은 기관보육서비스의 이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 1) 현금, 2) 보육료(바우처+현금), 3)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으로 구분된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급여[현금]은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기관보육서비스 등의 지원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둘째, 부모급여[보육료]는 가정양육을 하지 않고 기관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관보육서비스 이용)바우처+(차액)현금 형태로 지급된다.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0세 아동은 기관보육서비스 이용 시 1인당 월 보육료 54만 원을 전액 바우처로 지원하고,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보육료 54만 원을 차감한 4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세 아동의 경우, 0세반을 이용하면 보육료 54만 원이 바우처로 지원되므로 부모급여 50만

원을 초과하여 차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1세 아동이 1세반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 47만 5천 원을 바우처로 전액 지원하고, 부모급여 50만 원에서 보육료 47만 5천 원을 차감한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셋째,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만일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은 시간당 이용 요금이 정해져 있어 이용 시간에 따라 0세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1세 아동 1인당 월 50만 원 기준으로 환급 차액이 달라진다(보건복지부, 2024).

〈표 3-1〉 부모급여의 종류 및 지급방식(2024년)

구분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부모보육료	차액(현금)	종일제 아이돌봄
0세		월 100만 원	월 54만 원	월 46만 원	시간당 11,630원 (월 80시간~200시간 지원)
1세	(0세반)	월 50만 원	월 54만 원	-	
	(1세반)	월 50만 원	월 47.5만 원	월 2.5만 원	

출처: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4, p.7.

나. 수급 현황

보건복지부(2023)에 의하면, 2023년 4월 25일 기준, 약 27만 명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되었다. 한편, 통계청(2022, 2024)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사망 등 다른 조건을 포함하지 않은 연차별 부모급여 신규 대상자를 단순 추정하면, 2022년 249,186명(2022년은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 2023년 230,028명, 2024년 7월까지 137,913명이다. 0~1세(23개월 미만)를 포함하는 전체 부모급여 대상자는 2023년 479,214명, 2024년 7월까지 468,548명으로 추정된다.

〈표 3-2〉 연도별 부모급여 지급 대상자 수(추정)

(단위: 명)

구분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1~7월 (부모급여)
출생아 수(0세)	249,186	230,028	137,913
부모급여 대상자 수(0~1세)	249,186	479,214	468,548[1)]

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단순 추정함.
1) 2022년 1~7월 출생한 148,579명을 제외한 수치임.

출처: 1)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통계청, 2024, 2024. 9.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3&conn_path=I2.
2) "2022년 7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2022. 9. 28., 2024. 9. 10. 검색,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20866
3) "2024년 7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2024. 9. 25., 2024. 9. 10. 검색,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32861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 현금 100%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부모급여와의 차액 발생 시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지원금 차이는 존재하나 아동의 보육방식에 따른 지원금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부모급여가 부모의 돌봄 선택권을 높이는 기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시행 초기여서 부모급여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나, 부모급여는 높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특히 외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유해미, 2022).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 선택권 확대 기능을 고려할 때 가정양육 수요를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박은정, 2022).

이와 같은 예측과 관련하여 부모급여가 2세 미만 아동의 가정양육을 장려하면서 가정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아져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영아 대상 보육시설인 가정 어린이집 폐원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으로 인해 가정양육 선택이 불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보호자 입장에서 영아 보육서비스의 공급 및 질 확보에 대한 차질

발생이 우려되었다(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영아기 특성상, 특히 0세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김은정, 2022),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21) 결과에서도 어린이집 이용은 0세 25.2%, 1세 80.6%로 0세의 기관보육 서비스 이용률이 1세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모육아휴직제도

가. 제도 현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직하며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현재 급여 수준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한다. 다만, 월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부모가 각각 1년씩 2년간 사용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 2024a).

이와 같은 통상적인 육아휴직제 이외에 특례제도로 '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하고 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2022년에 도입하였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로 확대·개편하여 시행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b).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매월 상한액을 두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b). 여기서 6+6은 육아휴직 후 첫 6개월간 적용되는 지원 내용이 부모 각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6(부)+6(모)를 의미한다. 이때 부모 1인당 지급 상한액은 월 200만 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매월 차등 적용되며 매월 50만 원씩 상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a).

〈표 3-3〉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수준: 월 상한액(2024년)

(단위: 만 원)

구분	부	모	부+모
1개월	200	200	400
2개월	250	250	500
3개월	300	300	600
4개월	350	350	700
5개월	400	400	800
6개월	450	450	900
합계	1,950	1,950	3,900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고용노동부, 2024a, 2024. 9. 10. 검색,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301479. p.2의 내용을 재구성.

만일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하한 70만 원, 상한 1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4a). 부부가 순차적으로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할 경우, 처음 휴직자는 두 번째 휴직자의 휴직이 확인된 이후에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부모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a).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하다. 부모 모두 2024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경우, 2024년 이후 사용기간이 제도 변경 후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또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에는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되었던 사후지급금[6]을 적용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는다(고용노동부, 2024b).

〈표 3-4〉 3+3 부모육아휴직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 비교

구분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
부모 육아휴직 사용 순서	동시 혹은 순차적	동시 혹은 순차적
지급 기간	각각 첫 3개월간	각각 첫 6개월간
지급 수준 (월 상한액)	각각 통상임금의 100% (200~300만 원)	각각 통상임금의 100% (200~450만 원)

출처: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따라잡기", 고용노동부, 2024b, 2024. 9. 10. 검색, https://www.moel.go.kr/local/uijengbu/info/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2052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제도 설계상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기를 확대하였으며,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용노동부, 2024b).

6)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2024 제95조).

나. 이용 현황

가장 최근 자료인 통계청(2023)의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2022년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7,092명이었다. 20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부(父) 12,407명(14.2%), 모(母) 74,685명(85.8%)으로 전년 대비 부(父)는 4,474명(56.4%), 모(母)는 5,227명(7.5%) 증가하였다(통계청, 2023, p. 8). 2022년 출생아의 부모 중 육아휴직을 한 부(父)의 64.7%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50~299명(15.0%), 5~49명(14.1%), 4명 이하(5.2%)인 기업체 순이었다. 육아휴직을 한 모(母)의 58.9%는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5~49명(19.5%), 50~299명(15.9%), 4명 이하(5.1%)인 기업체 순이었다.

〈표 3-5〉 2022년 출생아의 부모 특성별 육아휴직자 비중(시작일 기준)

(단위: %)

구분		부	모
전체 100.0(87,092명)		14.2(12,407명)	85.8(74,685명)
연령대	30세 미만	8.3	15.0
	30~34세	38.5	**54.4**
	35~39세	**39.8**	26.4
	40세 이상	13.4	4.1
기업체 규모	**300명 이상**	**64.7**	**58.9**
	50~299명	15.0	15.9
	5~49명	14.1	19.5
	5인 미만	5.2	5.1
계		100.0	100.0

출처: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보도자료]", 통계청, 2023.12.19., 2024. 9. 10. 검색.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100&bid=11814&act=view&list_no=428557&tag=&nPage=1&ref_bid=210,211,11109,11113,11814, pp.9-10. 재구성.

고용노동부(2024)의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돌봄이 가장 필요한 영아기(1세 미만) 부모의 육아휴직은 출생아 수 감소에도 전년 대비 231명(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세 미만인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67.0%(84,488명)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2.7%p 증가하였다. 여성은 2023년 77.9%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한 반면, 남성은 39.0%로 전년 대비 6.4%p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영아기 부모의 맞돌봄 부담이 감소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파악하였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이용자 수는 2022년 14,831명에서 2023년 23,910명으로 61.2%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4).

〈표 3-6〉 1세 미만 육아휴직 사용률,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

(단위: %, 명)

구분		2022년	2023년
육아휴직 사용률(%) (1세 미만 자녀)	전체	64.3	67.0
	남성	32.6	39.0
	여성	77.2	77.9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자 수(명)		14,831	23,910

자료: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4. 2. 26., 2024, 9. 10. 검색,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32, p.2의 내용 재구성.

2024년 1월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수는 5,428명으로 2023년 1월의 3,915명에서 38.6%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매년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2024년부터 확대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을 위해 육아휴직 시기를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지연한 부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용노동부, 2024).

이정원 외(2023)의 연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한 부모의 직접 돌봄이

활성화되어 영아의 보육기관 이용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보육 수요 감소를 고려한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0~1세 영아 양육기에는 가정 내, 부모의 직접 돌봄이 집중되는 시기이며, 2세부터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기관보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영유아 돌봄서비스 수급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2절 아이돌보미와 시간제 보육제도

1.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제도 현황

아이돌봄서비스는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 보육 및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07년 시작되었으며 2009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돌봄 지원법, 2023, 제1조)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림 3-2〕 참조).

〔그림 3-2〕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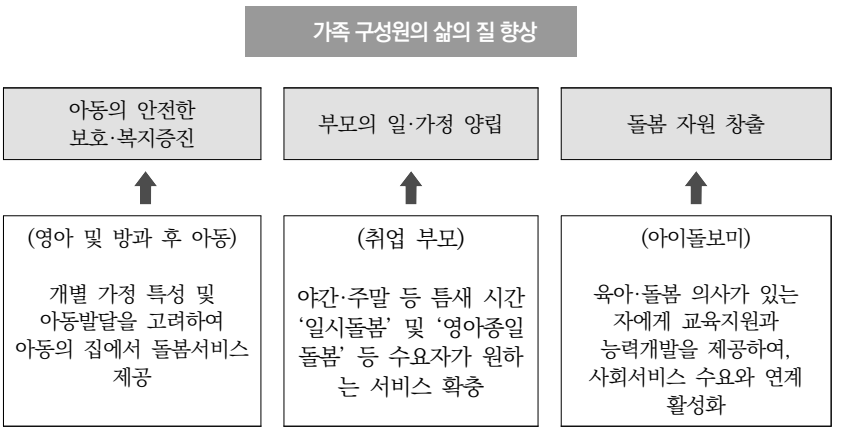

출처: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24, p.13.

기관돌봄서비스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일시보육 수요, 틈새돌봄, 개별 돌봄서비스 선호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 1) 영아종일제 서비스, 2) 시간제 서비스(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4) 기관연계서비스, 5) 긴급단시간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 아이돌봄서비스, 2024; 이정원, 2022).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나 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우선 이용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서비스인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기준,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1,630원이다. 월 80시간~200시간 사용이 가능하며, 가사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전반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연 96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으로,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한다.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으로, 아이돌봄 및 아동 관련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여성가족부, 2024).

〈표 3-7〉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2024년)

구분	돌봄 대상	시간당 이용요금	기본 이용 시간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1,630원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월 80~200시간 사용 가능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11,630원 (종합형) 15,110원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연 960시간 사용 가능

출처: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1)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24, pp.15-16.
2) "아이돌봄사업- 서비스 유형소개", 아이돌봄서비스, 2024a, 2024. 6. 20. 검색, 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cGuide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서비스 지원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그리고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서비스 제공 시간)에는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 서비스 정부 지원이 불가하다(아이돌봄서비스, 2024a).

이용 자격은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모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를 우선순위로 하며, 취약계층 가족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정부 지원은 소득에 따라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되며,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은 정부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2024). '가~다'형은 정부 지원 결정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라'형은 정부 지원 결정 절차 없이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4).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시간당 이용 요금이 증가하였으며 시간당 기본 이용요금과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은 매년 변경된다. 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8〉 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본인부담금(2024년)

구분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630원)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630원)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85%)	1,744원 (15%)	9,886원 (85%)	1,744원 (15%)	8,723원 (75%)	2,907원 (25%)
나형	120% 이하	6,978원 (60%)	4,652원 (40%)	6,978원 (60%)	4,654원 (40%)	3,489원 (30%)	8,141원 (70%)
다형	150% 이하	2,326원 (20%)	9,304원 (80%)	2,326원 (20%)	9,304원 (80%)	1,745원 (15%)	9,885원 (85%)
라형	150% 초과	-	11,630원 (100%)	-	11,630원 (100%)	-	11,630원 (100%)

주: 1) (A형) 2017.1.1 이후 출생 아동, (B형) 2016.12.31 이전 출생 아동
2) 시간제 종합형의 경우, '가~다'형의 정부 지원 금액은 동일하며 본인부담금은 15,110원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출처: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24, p.64, p.67의 일반가정 표 일부 재인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가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는 돌봄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 지원 소득 기준 완화(중위소득 150%→200%) 및 정부 지원 비율(5~10%p) 상향, 아이돌보미 공급 대폭 확대(30만 가구 목표) 등을 제시하였다.

동 대책에 따라 관계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부터는 '다'형

가구의 정부 지원 비율이 상향되고,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어 정부가 10~15%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여성가족부, 2024). 신설되는 ‘마’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로 현행 ‘라’형과 같이 전액 자기부담금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서비스 이용 부담이 완화되면 양육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증가가 기대된다. 이용요금은 2024년 11,630원에서 2025년 12,180원으로 4.7% 인상된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돌봄(0~2세)은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수당(시간당 1,500원)을 지원하여 영아 가정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여성가족부, 2024).

[그림 3-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2024~2025년)

기존(2024년)

요금 11,630원/시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정부 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120% 이하	60%	30%	
다	150% 이하	20%	15%	
라	150% 초과	-	-	

⇨

변경(2025년)

요금 12,180원/시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정부 지원 비율		
		1자녀		다자녀
		0~5세	6~12세	
가	75% 이하	85%	75%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지원
나	120% 이하	60%	40%	
다	150% 이하	30%	20%	
라	150% 초과~ 200% 이하	15%	10%	
마	200% 초과	-	-	

출처: 1)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 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보도자료],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 [별첨 1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6. 19., 2024. 9. 20. 검색,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 p.31.

2)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4. 9. 6., 2024. 9. 20. 검색,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144, p.1.

나. 이용 현황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제시된 아이돌봄 사업현황 자료에 의하면(〈표 3-9〉 참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는 2019년 70,485가구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 가구 수가 59,663가구까지 감소하였다. 2021년 71,789가구로 다시 이용률이 회복되면서 2022년 78,212가구, 2023년 86,100가구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아이돌봄서비스, 2024b). 이용 가구는 대부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이용 가구 수와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2019년 3,702가구에서 매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23년에는 1,890가구로 대폭 감소하였다(아이돌봄서비스, 2024b). 이러한 감소는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급감이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급여 등 현금성 양육지원 정책이 신규로 도입되고, 아이돌보미 기본 이용요금도 매년 인상되면서 '가~나'형 이용자 대비 '다~라'형 이용자의 자기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이용률 감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아이돌보미의 영아 학대 논란과 아이돌보미의 영아 전담 근무 기피의 문제도 감소를 야기한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3-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19~2023년)

(단위: 가구, 시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이용가구 계	70,485	59,663	71,789	78,212	86,100
영아종일제 서비스	3,702	3,138	2,617	2,760	1,890
시간제 서비스	**66,783**	**56,525**	**57,454**	**61,138**	**66,515**
기타	-	-	11,718	14,314	17,695
가구별 월 평균 이용 시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71.8	87.4	87.9	83.1	85.6

주: 기타는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 인력이 포함됨.
출처: "아이돌봄사업-아이돌봄 사업현황, " 아이돌봄서비스, 2024b, 2024. 6. 20. 검색, https://idolbom.go.kr/front/biz/stts.

여성가족부의 2021~2023년 최근 3년간의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자료[7]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라'형에 이르는 가구의 소득 유형별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영아종일제는 '가'형의 이용률이 6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형(23.3%), '라'형(9.7%), '다'형(1.9%)의 순이었다. 이러한 이용률 순위는 2021년과 2022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21~2023년 모두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라'형의 이용률이 오히려 '다'형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2023년 기준 '가'형이 5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형(25.8%), '라'형(14.8%), '다'형(5.2%)의 순이었다. 2021~2023년에 걸쳐 '라'형은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이용률이 매년 감소한 반면, '가'형과 '나'형은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다'형은 연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2023년 기준, '가'형이 49.0%로

7) 여성가족부 내부자료로, 연구진이 실적 자료를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획득함.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형(23.1%), '라'형(22.3%), '다'형(5.5%)의 순이었다. 2021~2023년간 '나'형의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이용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형과 '라'형의 이용률은 소폭 감소하였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라'형에서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이용률은 매년 감소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3-10〉 소득 유형별·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21~2023년)

(단위: 가구, %)

구분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영아 종일제	2023	1,890	1,231	440	36	183
		100.0	65.1	23.3	1.9	9.7
	2022	2,760	1,779	708	56	217
		100.0	64.5	25.7	2.0	7.9
	2021	2,617	1,630	666	50	271
		100.0	62.3	25.4	1.9	10.4
시간제 기본형	2023	58,908	31,915	15,181	3,077	8,735
		100.0	54.2	25.8	5.2	14.8
	2022	55,543	29,605	13,776	2,929	9,233
		100.0	53.3	24.8	5.3	16.6
	2021	52,989	27,461	12,382	2,834	10,312
		100.0	51.8	23.4	5.3	19.5
시간제 종합형	2023	1,616	792	374	89	361
		100.0	49.0	23.1	5.5	22.3
	2022	1,425	716	290	85	334
		100.0	50.2	20.4	6.0	23.4
	2021	2,181	1,102	435	102	542
		100.0	50.5	19.9	4.7	24.9

주: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상의 이용자 수 통계는 일부 불일치함.
출처: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21, 2022, 2023.

가구 유형별로 이용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살펴보면,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가구는 2023년 기준 맞벌이 가구로 전체 이용 가구의 52.0%였다. 다음으로 다자녀가구(32.3%), 일반가구(5.7%), 한부모가구(5.1%), 기타 가구(4.8%)의 순이었다. 기타 가구에는 조손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구가 포함된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2021년 대비 2023년의 맞벌이 가구 이용률이 8.0%p 감소한 반면, 다자녀가구의 이용률은 8.1%p 증가하였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을 가장 많이 이용한 가구 역시 맞벌이 가구로 2023년 기준, 전체 이용 가구의 47.9%였다. 다음으로 다자녀가구(21.7%), 한부모가구(16.3%), 일반가구(9.1%), 기타 가구(5.0%)의 순이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이용률은 2021~2023년간 다자녀가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맞벌이 가구와 일반가구는 소폭 감소하였다.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이용률은 2023년 기준 맞벌이 가구가 4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부모가구(23.9%), 다자녀가구(16.0%), 일반가구(12.9%), 기타 가구(5.3%)의 순이었다. 가구 유형별 이용률은 한부모가구가 2021년 대비 2022년에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 소폭 증가하였다.

〈표 3-11〉 가구 유형별·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2021~2023년)

(단위: 가구, %)

구분		계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일반	기타
영아 종일제	2023	1,890	97	983	611	108	91
		100.0	5.1	52.0	32.3	5.7	4.8
	2022	2,760	131	1,451	936	115	127
		100.0	4.7	52.6	33.9	4.2	4.6
	2021	2,617	128	1,570	634	145	140
		100.0	4.9	60.0	24.2	5.5	5.3
시간제 기본형	2023	58,908	9,605	28,201	12,790	5,341	2,971
		100.0	16.3	47.9	21.7	9.1	5.0
	2022	55,543	9,011	27,392	11,272	5,439	2,429
		100.0	16.2	49.3	20.3	9.8	4.4
	2021	52,989	8,677	27,542	8,464	5,944	2,362
		100.0	16.4	52.0	16.0	11.2	4.5
시간제 종합형	2023	1,616	386	679	258	208	85
		100.0	23.9	42.0	16.0	12.9	5.3
	2022	1,425	367	588	215	178	77
		100.0	25.8	41.3	15.1	12.5	5.4
	2021	2,181	461	975	347	312	86
		100.0	21.1	44.7	15.9	14.3	3.9

주: 기타 가구에는 조손부모,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구가 포함됨.
출처: "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21, 2022, 2023.

2. 시간제 보육

가. 제도 현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24) 제28조의 2[8]에 근거하여 시간제 보육

8) 제28조의 2(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 및 이용 시간이 별표 8 제2호 다목 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

서비스는 만 6~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 단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구 중 부모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거나 긴급한 병원 이용 등으로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인 경우, 지정된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원받는 서비스이다(보건복지부 외, 2024).[9] 시간제 보육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하여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급이 어려워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최근 저출생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반별 충족률이 급감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 중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 시범사업(2022~2023)을 실시한 후, 2024년 3월부터 통합반 본 사업을 시작하였다(보건복지부 외, 2024). 통합반은 0세반(정원 3명) 1명, 1세반(정원 5명) 2명, 2세반(정원 7명) 2명(탄력정원 불인정)에 대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가정에서는 집 근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어 시간제 보육 접근성·이용 편의성 제고와 가정양육 질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어린이집은 기존 정규 보육반 인프라를

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②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

③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의 3을 준용한다.

⑥ 법 제26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9) 보육료 지원 단가는 시간당 3천 원이고, 본인부담은 시간당 2천 원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2024년 통합반 이용 대상은 6개월~2세 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아동이며,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독립반은 6개월~36개월 미만 내·외국인 아동이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정부지원금이 3,000원, 부모 부담금은 2,000원이다. 월 60시간까지 지원되며, 지원 시간 초과 시 부모가 보육료 전액을 부담하면 이용 가능하다. 급·간식은 독립반에서는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나 통합반에서는 부모가 희망할 경우, 사전에 어린이집에 신청하고 2,2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약은 없다(보건복지부 외, 2024).

〈표 3-12〉 시간제 보육 변화: 통합반 본사업 실시(2023~2024년)

구분		2023년	2024년
이용 대상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내/외국인)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내/외국인) -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아 (2021년생) (내/외국인) ※ 2세반 출생일 기준 :'21.1.1~'21.12.31까지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아동은 전액 본인부담
지원 시간		월 80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 단가	시간당 4천 원	시간당 5천 원
	정부 지원	시간당 3천 원	시간당 3천 원
	부모 부담	시간당 1천 원	시간당 2천 원

구분	2023년	2024년
운영 시간	월~금(09:00~18:00)	- 독립반: 월~금요일(09:00~18:00) ※ 12:00~13:00 단독 예약은 불가 - 통합반: 월~금(09:00~16:00), ① (오전) 9:00~12:00 ② (오후) 13:00~16:00 ③ (종일) 9:00~16:00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정원 기준) - 1개 반 기준 영아(6~36개월 미만) 3명 ※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보육 정원 안에 시간제 보육을 위한 3명 이상의 정원 확보 (교사 대 영아 비율) - 1:3	(정원 기준) - 독립반: 1개 반 기준 영아(6~36개월 미만) 3명 - 통합반: 0세반 1명, 1세반 2명, 2세반 2명 ※ 해당 정규 보육 연령반 정원의 40% 이내 (교사 대 영아 비율) - 독립반: 1:3 - 통합반: 0세 1:3, 1세 1:5, 2세 1:7
	시간제 보육반은 탄력 편성 불인정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군·구로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리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 - 독립반: 시·군·구로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통합반: 시·군·구로부터 시간제 보육 통합반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관리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출처: “2024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나. 공급 및 이용 현황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과 시간제 보육반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먼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2015년 216개소에서 2019년 402개소로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2023년 827개소까지 확대되었다. 시간제 보육 반 수는 2015년 237개 반에서 시작하여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20년 681개 반, 2023년 1,000개 반으로 증가하였다(한국보육진흥원, 2024). 시간제 보육 이용 아동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7,297명, 2019년 20,388명, 2021년 10,434명이었다. 2021년 이용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2).

〈표 3-13〉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2015~2023년)

(단위: 개소, 반 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관 수	216	347	382	373	402	578	740	796	827
반 수	237	382	437	443	490	681	857	946	1,000

출처: "시간제보육 현황", 한국보육진흥원, 2024, 2024. 6. 20. 검색,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3)에 의하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시간제 보육 이용 건수는 350,370건으로 2021년 198,374건보다 77%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2~24개월 미만 아동이 26,891건(58.1%)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이용 시간대별로는 11시~13시가 419,502건(31.1%)으로 가장 많았다.

〈표 3-14〉 연령대 및 시간대별 시간제 보육 이용 현황(2022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중
연령대	6~12개월 미만	12,533	27.1
	12~24개월 미만	**26,891**	**58.1**
	24~36개월 미만	6,867	14.8
	소계	46,291	100.0
시간대	9~11시	315,238	23.4
	11~13시	**419,502**	**31.1**
	13~15시	347,748	25.8
	15~17시	224,232	16.7
	17~18시	39,999	3.0
	소계	1,346,719	100.0

출처: "필요한 시간에 아이 맡기는 시간제보육반 89개 확대 운영 [보도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5. 30., 2024. 6. 30. 검색, https://www.ssis.or.kr/lay1/bbs/S1T67C101/B/101/view.do?article_seq=125130, 연령대별 이용현황, 시간대별 이용현황 그림 재구성.

2022년 말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은 민간 어린이집이 283개소(29.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 어린이집 245개소(25.9%), 국공립 어린이집 183개소(19.3%), 육아종합지원센터 159개소(16.8%),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50개소(5.3%), 법인·단체 어린이집 21개소(2.2%), 협동 어린이집 3개소(0.3%), 직장 어린이집 2개소(0.2%)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표 3-15〉 어린이집 유형별 시간제 보육 운영 현황(2022년)

(단위: 개소, %)

구분		기관 수	비중
어린이집 유형	민간 어린이집	283	29.9
	가정 어린이집	245	25.9
	국공립 어린이집	183	19.3
	육아종합지원센터	159	16.8
	사회복지 법인어린이집	50	5.3
	법인·단체 어린이집	21	2.2
	협동 어린이집	3	0.3
	직장 어린이집	2	0.2
	소계	946	100.0

출처: “필요한 시간에 아이 맡기는 시간제보육반 89개 확대 운영 [보도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5. 30., 2024. 6. 30. 검색, https://www.ssis.or.kr/lay1/bbs/S1T67C101/B/101/view.do?article_seq=125130 시간제보육 운영 어린이집 유형 비율 내용 재구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4)가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 2027년까지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대비 3배 이상인 3,6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4년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하여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교육부, 2024. 9. 3.). 2024년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24. 9. 3.).

제3절 유아 교육·보육 통합제도[10)]

1. 추진 현황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은 초등학교 취학 전 3~5세 아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서로 다른 기관에서 누리과정 교육을 동일하게 받고 있으나, 근거 법령, 주무부처, 교사 지위, 자격, 교육 연한 등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공병호, 2022). 즉,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주무부처로서 교육에 중점을 둔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돌봄에 중점을 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지난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은 2023년 12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어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육을 교육부가 통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교육부, 2023).

2024년 6월 27일, 교육부는 제4차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발표하였다(교육부, 2024. 6. 27.). 올해 6월 27일부터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가 되어 유보통합의 향후 추진 과제 및 일정을 제시하기 위한 유보통합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비전은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

10) 교육부. (2024. 6. 27.).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보도자료],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별첨]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이를 위해 동 계획은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16〉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과제

(단위: 명, %)

구분	내용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통합연수체계 마련 -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통합교원 자격·양성체계 개편 - 교사 처우 개선 등 -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 - 설립·운영 기준 마련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출처: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보도자료],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별첨]", 교육부, 2024. 6. 27., 2024. 7. 3. 검색,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923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p.4의 내용 재구성.

2. 세부 과제

가. 5대 상향 평준화 과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로 ①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②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③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④ 통합연수체계 마련, ⑤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돌봄 시간을 기존 기본 운영 시간(8시간)에 수요에 기반한 아침·저녁 돌봄(4시간)을 더해 1일 12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연장 과정 및 아침·저녁 돌봄의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서 0세반은 현행 1:3에서 1:2를 목표로, 3~5세반은 현행 평균 1:12에서 1: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0~2세반 보조교사를 기존 3학급당 1명에서 2학급당 1명으로 배치한다는 계획도 제시하였다.

셋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서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통합연수체계 마련은 전체 교원이 교육·보육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 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 지원의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를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

다섯째,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세와 5세를 이음 연령으로 지정한다. 2세는 놀이 중심 교육·체험에 집중하고,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한다. 5세는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초기 문해력과 기초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며, 특수교육기관 기반(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로 ①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 방식 마련, ② 통합교원 자격·양성체계 개편, ③ 교사 처우 개선 등, ④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 적용, ⑤ 설립·운영 기준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을 위해서 현재 유치원(처음학교로 연 2회, 우선모집 이후 추첨)과 어린이집(입소대기관리시스템으로 상시 대기, 모집점수제 적용) 이원화된 입학 방식을 (가칭)유보통합 신청 사이트로 일원화하고 상시 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을 위해서 일반교사의 경우, 통합교원 자격은 '영유아 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 정교사(0~2세),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신규 양성은 대면교육 중심의 학사학위를 검토 중이며, 현직교사의 경우 통합자격 취득과정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셋째,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는 보육교사-사립 유치원 교사 간 처우 개선비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향후 동일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휴가·질병 등에 따른 보육·교육 공백 방지를 위해 2027년까지 현행 1인 7일에서 10일로 대체교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를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넷째, 영유아 교육과정 개발·적용을 위해서 현재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되어 있으나, 영유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은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상향 평준화와 통합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다.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로 ①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②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③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2023년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으므로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영유아보육 업무와 재정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방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둘째,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가칭)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산정을 계획하고,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이원화된 구조의 중앙정부 재원을 통합하고자 한다.

셋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통합 모델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기능개선 수요 등을 반영하여 현행 시스템을 각각 개선·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법 제정·시행 지원을 위한 (가칭)유보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3. 시범사업

5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2024년 9월~25년 2월까지 전국 152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 기관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교육부, 2024. 6. 27.). 시범학교들은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유보통합 '상향 평준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별 공모와 심사를 통해 유치원 68개소와 어린이집 84개소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였다. 특히, 장애 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특수학급이 포함된 유치원 4개소, 장애 통합 어린이집

13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3개소도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은 2025년 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총 262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후 2025~2027년까지 매년 1,000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범학교의 기본 운영시간은 8시간이며, 학부모 수요가 있을 시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보장하여 교육·돌봄 공백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교사 1명당 영유아 수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초과할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행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보다 개선되었으나 교육부가 2024년 6월 27일 발표한 3~5세 평균 1:8 목표치에는 미달한다.

또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통합 기준을 보완하여 2024년 말에 확정하고, 2025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관리체계 개선 과제 실천을 위해 2024년 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여 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4. 기관서비스 이용 현황

가. 어린이집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의 수는 1,011,813명이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수나 비중이 지속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아동이 민간 어린이집(41.5%)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용 아동의 연령별로는 1세 아동 237,848명, 2세 아동 263,162명으로 1~2세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3~5세의 경우 유치원 이용으로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가장 어린 12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 어린이집(39.3%)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1~2세 아동은 가정 어린이집보다 민간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가 더 많았다. 3~5세는 민간 어린이집 이용률이 50%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7〉 어린이집 유형별·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2023년)

(단위: 명, %)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전체	1,011,813	286,487	56,812	24,010	420,219	159,864	2,851	61,570
	100.0	28.3	5.6	2.4	41.5	15.8	0.3	6.1
0세	123,453	26,470	3,534	1,419	39,801	48,521	88	3620
	100.0	21.4	2.9	1.1	32.2	39.3	0.1	2.9
1세	237,848	63,716	8,965	3,778	85,931	61,884	337	13,237
	100.0	26.8	3.8	1.6	36.1	26.0	0.1	5.6
2세	263,162	75,582	12,521	5,154	106,566	48,555	593	14,191
	100.0	28.7	4.8	2.0	40.5	18.5	0.2	5.4
3세	147,933	47,289	11,104	4,788	71,285	509	652	12,306
	100.0	32.0	7.5	3.2	48.2	0.3	0.4	8.3
4세	118,192	37,064	9,392	4,109	57,228	196	578	9,625
	100.0	31.4	7.9	3.5	48.4	0.2	0.5	8.1
5세	116,687	35,373	9,449	4,172	58,405	187	602	8,499
	100.0	30.3	8.1	3.6	50.1	0.2	0.5	7.3
6세 이상	4,538	993	1,847	590	1,003	12	1	92
	100.0	21.9	40.7	13.0	22.1	0.3	0.0	2.0

출처: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 p.105의 표 중 전국 현황 내용 재인용.

나. 유치원

유치원 이용 아동 역시 특정 연령대에 상관없이 매년 감소하여 2019년

633,913명에서 2023년 521,794명으로 최근 5년간 112,119명이 감소하였다. 아동의 연령대별로는 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4세 아동, 3세 이하 아동의 순이었다.

〈표 3-18〉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2019~2023년)

(단위: 명, %)

구분	계	3세 이하	4세	5세	6세	7세 이상
2023	521,794	131,691	180,701	209,202	198	2
	100.0	25.2	34.6	40.1	0.0	0.0
2022	552,812	132,496	189,748	230,375	193	0
	100.0	24.0	34.3	41.7	0.0	0.0
2021	582,572	133,257	207,528	241,489	297	1
	100.0	22.9	35.6	41.5	0.1	0.0
2020	612,538	150,199	220,658	241,396	282	3
	100.0	24.5	36.0	39.4	0.0	0.0
2019	633,913	159,232	224,750	249,538	388	5
	100.0	25.1	35.5	39.4	0.1	0.0

출처: "교육통계연보-연도별 연령별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각 연도. 2024. 6. 27. 검색,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56&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다.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2024)의 '2023 영유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연령대별 이용 비율은 0세 25.7%, 1세 89.2%, 2세 94.3%, 3세 47.8%, 4세 35.4%, 5세 32.0%였다. 0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에 비해 1~2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치원의 연령대별 이용 비율은 3세 42.6%, 4세 54.1%, 5세 57.4%로, 4~5세의 유치원 이용률이 어린이집 이용률보다 높았다. 3~5세 누리과정은, 3세는 유치원

보다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약간 더 높았고, 4~5세는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의 이용률이 더 높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포함한 연령대별 이용 비율은 0세 25.7%, 1세 89.2%, 2세 94.3%, 3세 90.4%, 4세 89.6%, 5세 89.3%였다. 0~2세는 60.9%, 3~5세는 89.7%, 0~5세 전체는 75.2%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24).

〈표 3-19〉 0~5세 아동 인구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2023)

(단위: 명, %)

구분	인구수(A)	어린이집(B)	유치원(C)	어린이집 이용률(B/A)	유치원 이용률(C/A)	전체 이용률 (B+C/A)
0세	479,553	123,453	-	25.7	-	25.7
1세	266,619	237,848	-	89.2	-	89.2
2세	279,134	263,162	-	94.3	-	94.3
소계 (0~2세)	**1,025,306**	**624,463**	**-**	**60.9**	**-**	**60.9**
3세	309,282	147,933	131,691	47.8	42.6	90.4
4세	333,705	118,192	180,701	35.4	54.1	89.6
5세	364,740	116,687	209,202	32.0	57.4	89.3
소계 (3~5세)	**1,007,727**	**382,812**	**521,594**	**38.0**	**51.8**	**89.7**
전체 (0~5세)	**2,033,033**	**1,007,275**	**521,594**	**49.5**	**25.7**	**75.2**

주: 1) 인구수는 2023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0~6세(생활연령 기준)
2) 0세는 생활연령이 아닌 보육연령(반)의 개념으로, 2023년 12월 기준 2022년, 2023년 출생아가 모두 해당
3) 어린이집 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유치원 자료 2023년 4월 1일 기준이며, 보육연령 기준 6세 이상 제외
4) 유치원 이용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모로 사용하여 '유치원 취원율'과 산출방식이 다름.

출처: 본 자료는 "2023 영유아 주요 통계", 2024, 육아정책연구소, p.27의 〈표 2-5〉를 재인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원 출처는 아래와 같음.
1)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 6. 4. 검색, https://kess.kedi.re.kr
2)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 6. 4. 검색, https://www.mohw.go.kr
3) "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 2023,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 6. 4. 검색, https://jumin.mois.go.kr

제4절 소결

제3장에서는 기관돌봄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정책 변화 내용과 그에 따른 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1절의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는 각각 현금급여와 시간지원제도의 확대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기관돌봄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도는 시행역사가 길지 않아 뚜렷한 변화를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2024년에 부모급여액이 크게 확대되고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기간도 3+3에서 6+6으로 늘어남에 따라 영아기 가정보육에 대한 선호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2023년 1세 미만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2년 64.3%에서 67%로 증가했으며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도 전년 대비 38.6%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이처럼 영아기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동시에 가정양육에 대한 부모급여 제도 시행됨에 따라서 가정양육을 유인할 효과가 매우 커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 확대에 따른 기관돌봄서비스의 수요 변화는 개별 돌봄과 시간제 돌봄에 대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돌보미와 시간제 돌봄 제도 및 각 제도의 활용 현황도 함께 검토하였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영아종일제보다는 시간제 돌봄이 월등하게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시간제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에 훨씬 많은 수요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돌보미 이용 가구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도에는 86,100가구가 이용하여 2019년 70,485가구 수 대비 약 22%나 증가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다형의 이용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형의 경우 소득 수준도 높지 않으며 지원 수준도 높지 않아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된다. 다만, 2025년부터 다형에 대한 지원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향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기준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 개선에 따라 향후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 정부는 '시간제 보육 통합반' 시범사업에 이어 2024년 3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서비스 유형의 다변화는 가정양육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제3절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기관서비스 공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로드맵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수준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착이 될지 정확이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매년 대상 기관을 1,000개소씩 확대해 나갈 계획하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유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에 따른 수급 불균형 환경에서 유보통합 같은 정책은 기관 서비스 수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제4장

서비스 수급 현황 및 관리 체계

제1절 기관돌봄서비스 수급 현황
제2절 보육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제3절 유아교육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제4절 소결

제 4 장 서비스 수급 현황 및 관리 체계

본 장에서는 국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기관서비스 지역별 수급 현황과 수급 관리체계를 검토한다. 제1절에서는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기관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의 수급 현황을 지역별로 검토한다. 제2절에서는 어린이집 수급 결정 구조를 중앙과 지자체 기준으로 검토한다. 중앙의 서비스 수요 추계체계와 공급체계, 지자체의 수급 관리체계를 검토하였다. 제4절에서는 제4장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소결을 담았다.

제1절 기관돌봄서비스 수급 현황

돌봄서비스 공급은 시설 확충 전략, 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돌봄비용 지원 전략, 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한 전략 등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 확충 및 서비스(이용) 공급 전략에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서비스(어린이집)와 유아교육서비스(유치원),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만을 대상으로 수급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수급을 위한 효율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어린이집 이용 및 공급 현황

가. 어린이집 이용 및 시설 확충 추이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현황을 보면, 1991년에 3,690개소였던 어린이집이 1995년 9,085개소, 1996년 12,098개소로 약 3.3배 급증하였다. 이후 2002~2004년, 2007~2010년까지 매년 평균 2천 곳 이상 시설이 확충되었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 2013년 전 연령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2년 동안 약 4천 곳의 어린이집이 추가로 확충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확충 이후 2014년부터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 전년 대비 약 2,000개소 이상이 감소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995~1997년에 1만 명 이상 증가 추세이다가 1998~2009년까지 적게는 4만 명에서 많게는 8만 4천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저출생으로 지속적으로 출산율 감소 추세가 이어졌음에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2013년 무상보육 도입 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이후 이용 아동 수는 서서히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이용 아동 수는 더욱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추이 vs 출생아 수

(단위: 개소,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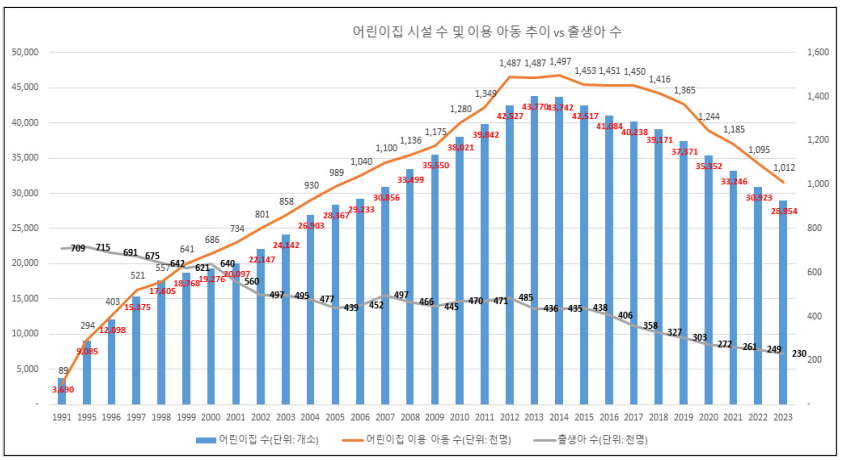

출처: 아래 자료에서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1)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 e-나라지표, 2024, 2024. 8.16.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

2)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24, 2024. 8.16.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추이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1995년에 전체 시설의 11.3%였으나, 민간시설이 증가하자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5%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시기,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수는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감소에 따라 국공립 비율은 2023년 현재 21.4%에 다다랐다. 이용 아동 수도 시설의 확충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육서비스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에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확충은 상호 역진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어린이집 유형별 시설 수 및 국공립 비율 추이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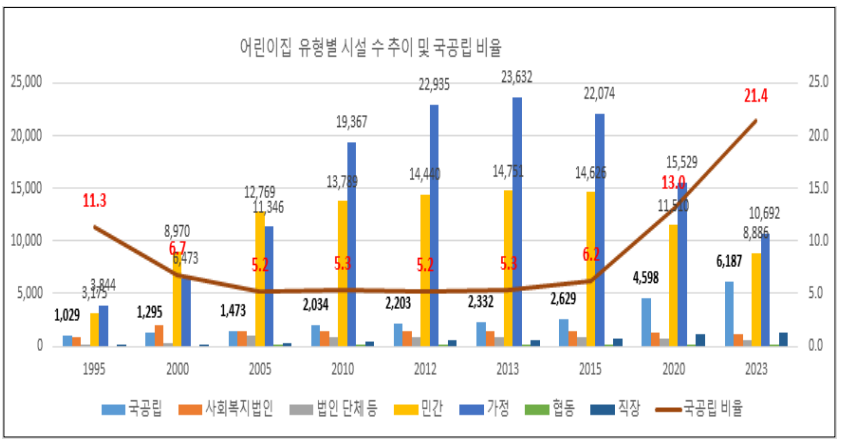

자료: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 e-나라지표, 2024, 2024. 8.16.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그림 4-3]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및 국공립 이용 비율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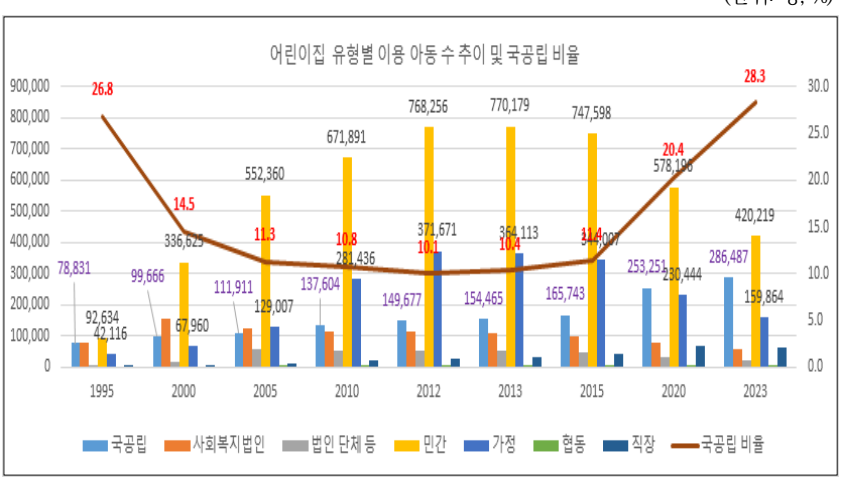

자료: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 e-나라지표, 2024, 2024. 8.16.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나.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보육 수요와 공급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이다.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정원충족률은 80%대를 유지하다가 시설 확충이 급증했던 2008~2009년은 80% 이하로 떨어졌고, 2012년 영아 무상보육, 2013년 전 연령 무상보육(보육료 전액 지원)제도 도입으로 충족률은 정점에 다다랐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 모두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특히 2012년 영아 무상보육 도입으로 가정 어린이집은 90.9%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수요에 따른 공급의 결과라기보다는 보육비용 지원(공적 공급)에 의한 역진적 수요 창출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011년, 2012년 반별 아동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아동 수 및 정원충족률은 증가하였지만 교사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반별 아동 수가 과밀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서비스의 질 담보 없이 충족률만을 높이는 결과를 의미하므로, 질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양민석 외, 2012, pp. 105-106)

〔그림 4-4〕 전국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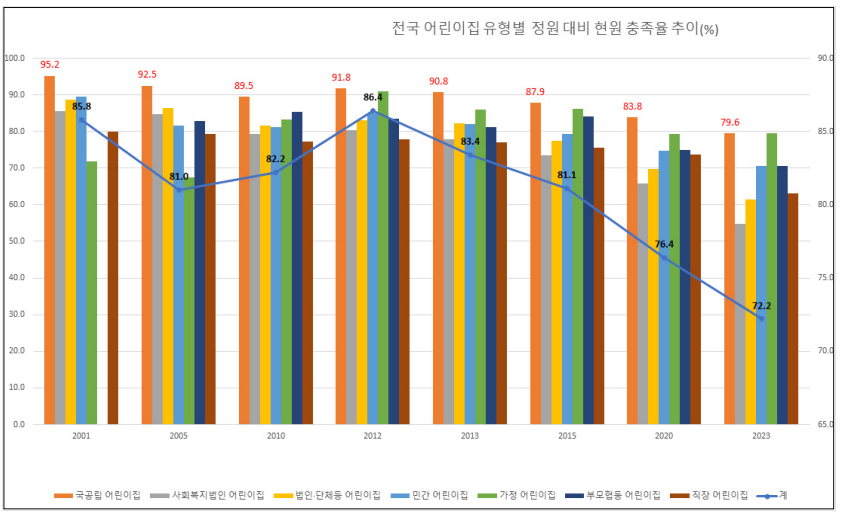

출처: 1) 2001년 수치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 "[2001년 4/4분기]보육통계 전체", 한국보육진흥원, 2024. 2024. 8. 8. 검색,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etail.do?colContentsSeq=455#none,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보육아동현원현황, 보육아동정원현황 재구성.

2)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치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보건복지부, 각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조회, 2024. 8. 9. 검색.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CA0410N&conn_path=I3

3)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 p.20의 표 재구성

이러한 양상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표 4-1〉 참고). 전체적으로 보면 2001년 90% 이상의 충족률을 보였던 전남과 제주의 경우 2023년 각각 67.2%(2001년 대비 23.7%p 감소), 75.7%(2001년 대비 22.2%p 감소)로 급감했다. 반면, 대전 3.6%p, 인천과 울산 광역시가 각각 7.4%p만이 감소했다. 이는 대도시, 중소도시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가 집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은 2001년 대비 2023년 평균 15.6%p 감소하였는

데 그중 부산이 20.5%p, 강원도가 19.5%p 감소하여 가장 높은 급감률을 보이고, 경북, 경남, 서울, 전남이 18%p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어린이집은 2001년 대비 2023년 평균 19.0%p로 감소폭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고, 그중 지역별로 보면 경북 23.3%p, 경남 22.4%p, 충남 21.8%p, 경기도 21.3%p, 전남 20.8%p 순으로 감소폭이 큼을 알 수 있다. 가정 어린이집은 2001년 대비 2023년 평균 7.6%p 증가하였지만 가장 최고점에 달한 2012년(영아 무상보육 도입 시기) 기준으로 보면 11.4%p 감소하였다. 가정 어린이집은 규모가 20인 이하이기 때문에 낮은 충족률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보다 체감도가 더 크다.

〈표 4-1〉 어린이집 지역별 &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단위: %)

구분		2001	2005	2010	2012	2013	2015	2020	2023
전국	계	85.8	81.0	82.2	86.4	83.4	81.1	76.4	72.2
	국공립	95.2	92.5	89.5	91.8	90.8	87.9	83.8	79.6
	사회복지법인	85.5	84.8	79.3	80.3	77.9	73.5	65.7	54.7
	법인, 단체 등	88.7	86.3	81.5	83.0	82.3	77.4	69.8	61.5
	민간	89.5	81.5	81.1	84.9	82.1	79.4	74.8	70.5
	가정	71.9	67.4	83.3	90.9	86.0	86.1	79.4	79.5
	부모협동	0.0	82.9	85.3	83.5	81.2	84.0	74.9	70.5
	직장	80.0	79.3	77.3	77.8	77.0	75.6	73.7	63.1
서울특별시	계	86.4	85.3	87.4	91.4	89.7	86.9	79.8	73.5
	국공립	96.6	96.1	91.7	94.0	92.9	88.7	85.0	77.9
	사회복지법인	82.9	87.7	90.4	94.0	90.6	88.2	74.9	62.8
	법인, 단체 등	83.6	85.0	85.0	86.2	86.9	84.6	78.2	67.0
	민간	88.5	86.2	87.1	91.0	89.5	85.9	76.2	69.9
	가정	76.0	67.0	84.9	93.0	90.0	89.5	79.8	80.2
	부모협동	0.0	81.1	86.8	85.2	85.6	88.3	78.1	71.1
	직장	83.1	80.8	78.2	78.2	77.4	76.7	69.4	56.7

구분		2001	2005	2010	2012	2013	2015	2020	2023
부산광역시	계	86.1	78.1	82.8	87.2	85.2	82.2	77.7	71.1
	국공립	98.3	87.4	87.6	90.5	90.9	88.4	83.2	77.8
	사회복지법인	83.8	76.6	80.6	83.4	80.7	80.0	74.7	58.5
	법인, 단체 등	89.6	87.5	84.4	83.8	85.0	84.5	78.0	64.5
	민간	89.0	78.9	80.9	85.9	83.5	79.3	75.3	69.5
	가정	76.3	61.9	87.7	92.4	89.7	88.3	80.3	76.0
	부모협동	0.0	90.0	80.0	79.2	79.3	82.2	78.7	61.5
	직장	71.6	68.8	75.7	80.6	75.2	74.6	75.0	63.8
대구광역시	계	81.2	81.0	81.0	83.7	79.7	76.7	73.5	69.4
	국공립	86.7	92.2	79.6	85.6	87.1	85.8	85.3	83.9
	사회복지법인	79.4	89.5	81.7	79.9	78.2	72.9	68.2	56.9
	법인, 단체 등	0.0	88.4	74.1	81.2	79.9	78.8	74.3	64.7
	민간	87.7	79.4	80.7	83.6	79.7	76.4	72.1	68.5
	가정	63.2	65.7	84.0	90.1	81.4	80.7	72.8	67.5
	부모협동	0.0	67.9	94.6	81.6	87.2	86.5	67.8	68.4
	직장	77.1	63.4	69.7	73.1	69.1	70.7	73.5	57.5
인천광역시	계	83.5	82.2	86.2	90.6	88.6	85.9	77.4	76.1
	국공립	84.1	93.2	88.4	91.4	89.9	89.7	84.0	80.9
	사회복지법인	87.4	81.2	90.1	87.0	84.8	80.5	71.3	64.9
	법인, 단체 등	82.7	87.2	88.6	89.8	88.9	84.2	79.0	72.5
	민간	79.0	82.2	84.6	89.7	88.1	84.7	75.3	73.0
	가정	70.4	76.5	89.5	93.6	91.0	87.9	79.5	84.5
	부모협동	0.0	84.0	86.6	70.3	70.6	78.7	55.0	66.7
	직장	84.2	83.8	83.2	82.7	77.5	84.0	74.8	66.0
광주광역시	계	81.6	72.8	80.3	86.1	81.9	76.5	66.8	66.3
	국공립	92.0	81.0	78.1	85.5	84.1	81.0	73.0	80.3
	사회복지법인	82.8	82.5	76.1	79.6	75.0	68.7	56.6	52.2
	법인, 단체 등	146.2	83.1	84.4	80.1	81.5	76.6	71.2	53.5
	민간	85.9	72.7	79.2	86.4	82.5	77.0	67.0	67.5

구분		2001	2005	2010	2012	2013	2015	2020	2023
	가정	60.3	54.7	88.6	93.2	87.4	83.4	73.5	66.7
	부모협동	0.0	20.0	61.0	98.4	82.0	89.3	55.0	73.2
	직장	95.8	82.7	82.3	85.6	80.3	64.7	72.3	61.8
대전광역시	계	75.1	75.3	83.0	89.1	85.6	80.3	75.4	71.5
	국공립	89.0	91.3	90.9	94.6	93.7	88.1	81.5	81.7
	사회복지법인	81.8	80.4	87.5	89.2	87.6	78.5	66.5	56.3
	법인, 단체 등	92.9	81.0	85.5	88.1	89.9	81.5	72.2	71.1
	민간	76.5	74.5	82.8	87.8	85.0	78.9	72.3	66.1
	가정	61.9	68.0	80.9	90.4	85.6	81.9	79.2	77.8
	부모협동	0.0	0.0	93.9	82.9	68.9	68.5	54.6	67.2
	직장	89.6	90.5	88.1	88.5	82.9	80.4	79.1	69.7
울산광역시	계	83.2	76.6	82.7	88.5	86.5	84.8	79.5	75.8
	국공립	93.7	89.5	96.5	96.6	96.3	92.4	88.2	86.0
	사회복지법인	83.7	82.6	92.1	95.8	95.2	88.8	79.2	38.6
	법인, 단체 등	97.0	88.8	89.7	87.7	89.3	86.0	81.5	55.8
	민간	83.6	77.6	81.1	86.3	85.1	83.4	79.4	70.6
	가정	64.4	57.2	82.0	94.1	89.0	89.2	76.1	79.0
	부모협동	0.0	0.0	0.0	0.0	32.4	78.3	73.7	0.0
	직장	74.9	74.2	83.2	80.0	77.6	76.3	71.8	73.7
세종특별자치시	계	-	-	-	81.8	81.6	79.9	78.6	75.8
	국공립	-	-	-	96.7	99.2	89.1	86.1	86.0
	사회복지법인	-	-	-	80.6	79.6	72.3	55.0	38.6
	법인, 단체 등	-	-	-	93.5	94.2	88.2	66.2	55.8
	민간	-	-	-	84.8	83.1	75.8	74.6	70.6
	가정	-	-	-	89.7	86.5	88.9	81.7	79.0
	부모협동	-	-	-	0.0	0.0	-	0.0	0.0
	직장	-	-	-	33.2	58.0	76.7	83.0	73.7
경기도	계	87.8	80.8	82.6	87.7	84.2	82.0	78.8	75.8
	국공립	96.2	92.6	92.8	94.5	93.1	91.1	86.9	82.7
	사회복지법인	89.9	89.0	86.5	87.5	84.4	79.8	68.5	59.4

구분		2001	2005	2010	2012	2013	2015	2020	2023
	법인, 단체 등	95.0	88.0	83.0	84.1	83.2	76.0	69.3	64.0
	민간	93.0	83.9	80.9	85.1	82.0	78.8	75.9	71.7
	가정	73.4	66.7	82.9	91.4	85.8	86.2	81.6	83.5
	부모협동	0.0	88.2	85.7	85.7	85.7	87.0	79.1	74.2
	직장	84.5	83.3	78.2	78.0	80.6	78.7	75.0	63.6
강원특별자치도	계	87.3	82.6	79.5	81.8	79.4	75.8	72.9	70.5
	국공립	98.4	92.6	86.4	86.0	86.2	81.2	76.9	78.9
	사회복지법인	87.8	89.8	79.1	78.8	77.3	69.5	63.6	50.7
	법인, 단체 등	0.0	83.8	72.4	75.7	74.3	70.7	64.0	52.8
	민간	86.8	77.5	79.6	80.7	78.0	74.8	73.9	72.6
	가정	78.7	74.3	78.3	87.3	82.1	82.9	77.8	79.6
	부모협동	0.0	87.5	78.2	76.5	78.6	69.8	66.0	64.0
	직장	48.2	62.2	66.2	75.7	78.5	72.8	76.4	75.9
충청북도	계	78.4	79.2	78.9	83.6	82.0	78.3	74.6	69.9
	국공립	89.6	82.4	87.5	88.6	86.2	82.7	80.1	77.4
	사회복지법인	71.3	85.4	77.9	78.4	75.6	69.9	65.5	53.8
	법인, 단체 등	100.0	83.7	75.7	80.4	81.8	76.9	67.2	66.1
	민간	88.6	79.0	77.4	82.6	81.8	78.5	75.5	69.1
	가정	68.0	61.2	84.1	92.8	89.4	86.5	80.5	77.9
	부모협동	0.0	92.3	71.8	69.1	62.7	76.7	72.3	79.4
	직장	70.2	75.3	64.1	78.1	80.2	74.3	73.6	67.7
충청남도	계	88.8	84.1	81.1	83.3	78.7	78.5	74.2	69.9
	국공립	92.5	88.4	85.2	90.9	84.8	84.4	81.1	77.4
	사회복지법인	89.0	82.5	76.3	78.0	74.0	70.5	61.9	53.8
	법인, 단체 등		84.5	81.3	83.3	79.3	70.4	72.4	66.1
	민간	90.9	85.7	81.7	81.3	76.2	77.7	73.6	69.1
	가정	78.0	80.5	83.8	90.2	86.9	87.2	80.2	77.9
	부모협동	0.0	0.0	90.0	82.8	74.2	82.4	94.3	79.4
	직장	76.6	70.4	70.9	73.8	71.2	69.6	75.1	67.7

구분		2001	2005	2010	2012	2013	2015	2020	2023
전북특별자치도	계	82.9	80.6	77.7	81.4	78.5	74.9	70.7	66.0
	국공립	92.1	87.3	83.1	87.9	86.0	82.0	76.0	77.3
	사회복지법인	81.3	85.0	77.9	79.8	77.8	72.9	63.4	53.4
	법인, 단체 등		86.5	79.0	79.5	77.4	73.5	59.2	51.9
	민간	90.3	79.7	75.0	78.4	76.2	72.5	73.9	69.8
	가정	60.4	69.4	83.7	90.0	84.3	82.6	75.9	72.3
	부모협동	0.0	0.0	0.0	0.0	0.0	-	60.0	0.0
	직장	82.0	78.5	51.5	68.9	61.5	61.1	66.4	60.7
전라남도	계	90.9	85.0	80.1	82.3	80.7	77.2	71.4	67.2
	국공립	93.8	89.7	79.1	82.8	82.7	81.9	75.3	75.5
	사회복지법인	89.8	85.2	76.8	77.9	76.5	71.2	60.9	50.6
	법인, 단체 등	96.3	89.1	77.0	80.6	83.7	76.9	66.8	55.1
	민간	93.3	86.3	80.2	82.0	80.7	77.0	74.0	72.5
	가정	76.2	73.9	89.7	94.0	88.8	88.3	80.3	77.8
	부모협동	0.0	0.0	95.9	83.6	91.8	92.5	74.3	59.4
	직장	79.9	82.1	75.8	71.5	62.2	71.0	74.0	69.9
경상북도	계	87.5	75.8	78.0	79.9	75.4	75.4	71.4	66.3
	국공립	93.5	89.1	82.9	82.7	80.8	79.8	78.7	74.6
	사회복지법인	87.3	78.5	74.5	71.7	69.1	69.1	64.5	51.9
	법인, 단체 등	91.2	89.0	83.4	82.9	79.0	70.8	56.8	55.0
	민간	89.4	74.8	76.8	78.4	73.8	73.7	70.8	66.1
	가정	75.0	63.2	81.8	87.7	81.2	84.2	74.5	74.3
	부모협동	0.0	0.0	0.0	0.0	0.0	-	92.0	87.2
	직장	77.8	69.3	73.0	72.4	71.8	69.6	72.9	61.0
경상남도	계	86.9	80.6	78.7	84.2	80.3	80.6	75.3	67.3
	국공립	92.3	92.0	87.9	91.2	91.2	86.3	81.4	73.5
	사회복지법인	87.7	82.2	79.9	84.5	83.3	78.4	66.5	47.7
	법인, 단체 등	91.8	83.3	81.7	83.8	80.5	77.8	71.8	60.7

구분		2001	2005	2010	2012	2013	2015	2020	2023
	민간	89.5	81.0	78.0	82.4	79.1	78.7	74.4	67.1
	가정	77.6	71.8	77.1	86.2	79.0	83.9	76.3	72.7
	부모협동	0.0	0.0	0.0	87.5	95.0	81.4	80.3	37.7
	직장	66.7	73.8	71.7	74.0	78.9	76.5	75.5	59.5
제주특별자치도	계	97.9	88.6	84.9	83.2	82.1	82.6	82.1	75.7
	국공립	101.3	79.9	93.8	90.2	93.7	87.8	84.3	85.5
	사회복지법인	100.6	92.3	81.6	80.7	79.3	81.0	81.1	71.3
	법인, 단체 등		92.7	85.9	85.0	84.4	81.9	79.1	72.3
	민간	97.2	86.4	86.1	83.3	82.4	83.4	84.4	78.1
	가정	81.3	77.8	85.6	84.1	82.1	86.7	83.8	79.2
	부모협동	0.0	0.0	0.0	0.0	0.0	-	0.0	0.0
	직장	96.8	81.2	67.3	84.9	72.4	61.0	68.3	65.9

주: 법인, 단체 등은 2013년 이후 법인 외 보육시설에서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됨.
출처: 1) 2001년 수치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 "[2001년 4/4분기]보육통계 전체", 한국보육진흥원, 2024, 2024. 8. 8. 검색,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etail.do?colContentsSeq=455#none,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보육아동현원현황, 보육아동정원현황 재구성.

2)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치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보건복지부, 각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조회, 2024. 8. 9. 검색.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CA0410N&conn_path=I3

3)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 p.20의 표 재구성

〔그림 4-5〕 설립 주체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추이(2001~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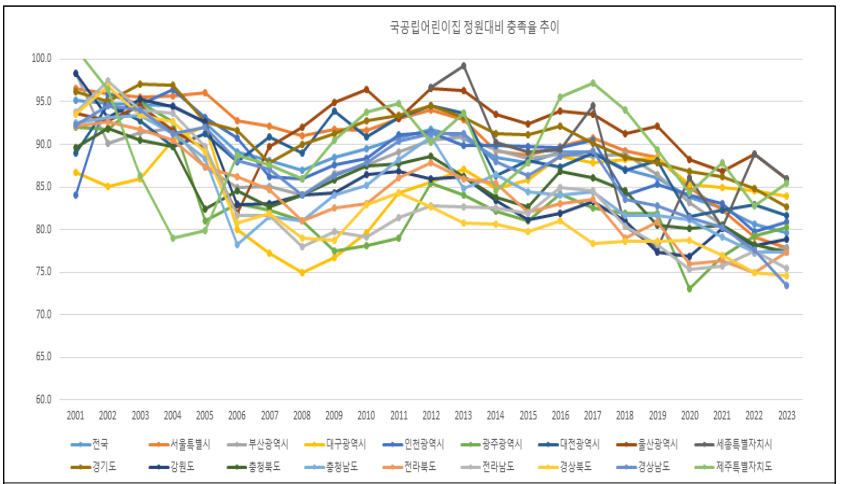

국공립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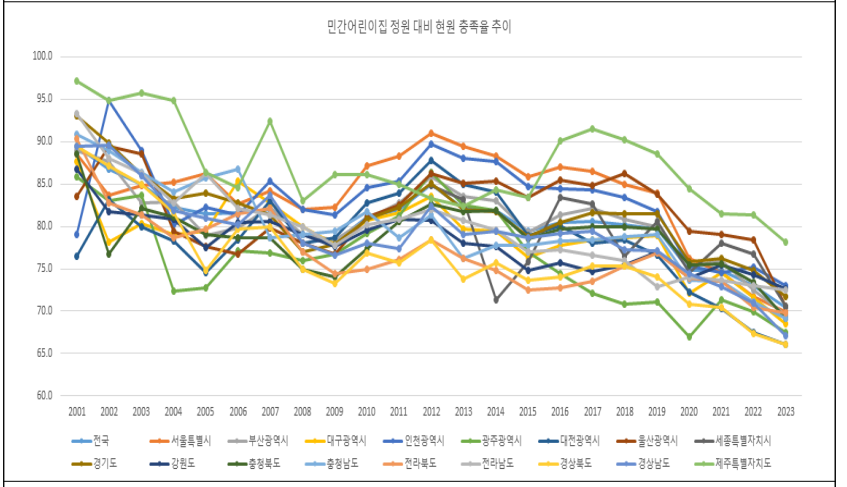

민간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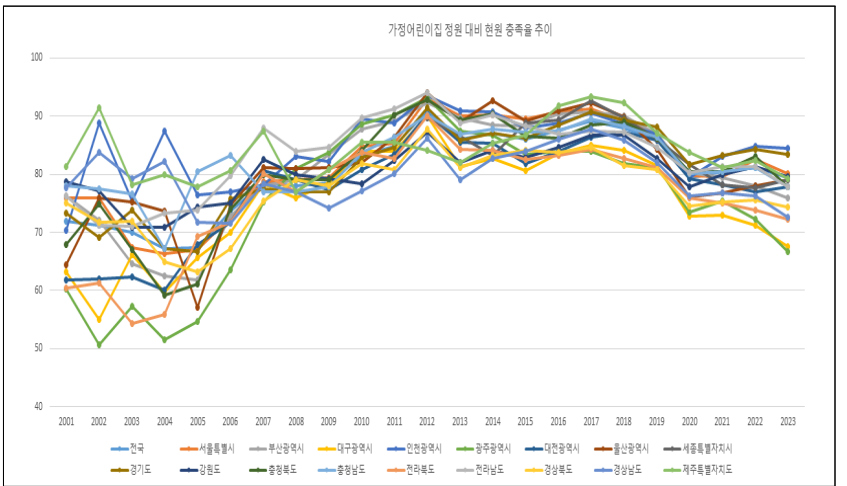

가정 어린이집

출처: 1) 2001년 수치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 "[2001년 4/4분기]보육통계 전체", 한국보육진흥원, 2024, 2024. 8. 8. 검색,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etail.do?colContentsSeq=455#none,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보육아동현원현황, 보육아동정원현황 재구성.

2)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치는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보건복지부, 각연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조회, 2024. 8. 9. 검색.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CA0410N&conn_path=I3

3) "2023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 p.20의 표 재구성

기초지방자치단체별*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자료를 부록 〈부표 1〉에 수록하였다.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①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 최소 0.0%(전북 임실군)에서 최대 94.8%(대구 남구)까지 충족률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최소 0.0%(서울시 13개 지역, 울산 동구, 경기도 7개 지역, 강원도 고성군, 전북 3개 지역, 전남 1개 지역, 경북 5개 지역, 경남 5개 지역)에서 최대 96.7%(대구광역시 중구)까지 나타나 폐원 위기를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법인·단체 어린이집 또한 최소 0.0%인 곳이 48개 지자체이고, 최대 100.0%(서울 영등포구)인 곳까지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④ 민간

어린이집은 최소 0.0%인 곳이 20개 지역이고, 최대 90.8%(경북 문경시)로 타 유형과 같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⑤ 가정 어린이집도 최소 0.0%인 지역이 30개 지역이고, 최대 100.0% 충족률을 보이는 지역도 8개 지역으로 이 또한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⑥ 협동 어린이집은 최소 0.0%인 지역이 대다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대 100.0% 충족률을 보이는 곳도 3곳(대구 수성구, 경기도 군포시, 경남 거제시)이 있어 폐원 및 이로 인한 돌봄공백 문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11]

2. 유치원 공급 및 이용 현황

유아교육서비스(3~5세)는 〔그림 4-6〕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 423개소에서 1997년 9,005개소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조금씩 감소하다가 2008년 다시 반등하여 증가하다가 2017년 9,027개소로 최고점을 도달한 후 2023년 8,441개소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던 어린이집의 급감 추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유치원은 3~5세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주민등록 유아의 98.6%)하기 때문이고, 취학 전 준비를 위해 어린이집보다 선호도가 높기

11) 정원 대비 현원이 0.0%인 경우는 실제 정원 대비 현원이 0명이어서 0.0%인 경우와 기존에는 운영하였지만 아동 수 감소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보육통계상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서울시 열린데이터(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457/S/1/datasetView.do)의 시설 현황과 이용 현황(2024년 4월 기준 업로드된 자료)을 확인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이 0명인 경우가 있는데, 위의 자료에는 기초지자체 평균값으로 0.0%가 없지만 개별 어린이집의 경우는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존재하는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인가를 받은 경우 폐원 후 용도변경 등의 어려움이 있어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관계자 확인함).
(부모) 협동 어린이집의 경우 0.0%인 것은 협동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즉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는 협동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33개소에서 2024년 기준 25개소로 축소됨).
그 외 국공립, 가정, 민간 등은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하였다.

때문이다.

특징적인 점은, 저출생으로 인하여 사립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같이 감소 추세이지만, 국공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보통합 논의로 인하여 국공립 유치원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림 4-6] 설립별 유치원 수(1965~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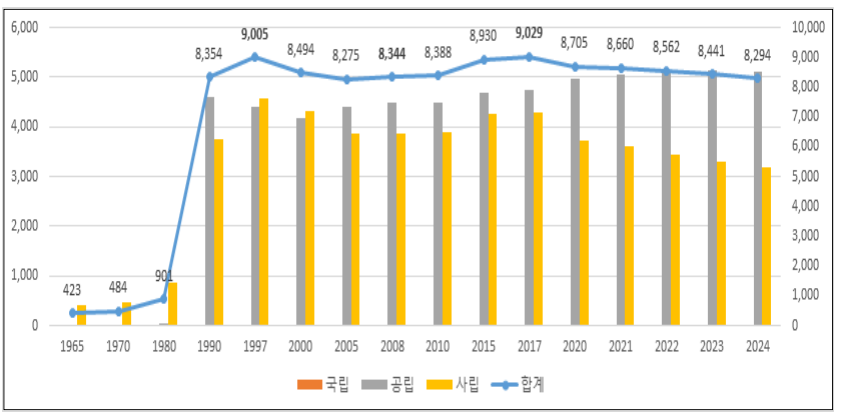

출처: "교육통계연보-유치원 설립별 학교수(1965-2024)",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b, 2024. 9. 2. 검색, https://kess.kedi.re.kr/kessTheme/timeStats?survSeq=0000&survCd=550&uppCd1=03040101&menuId=m_02_03_02&itemCode=03

2024년 기준 유치원은 8,294개소이고, 약 499천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시설 수는 61.6%, 이용 아동 수로는 29.3%를 포괄하고 있다(〈표 4-2〉 참조).

지방자치단체별 & 설립 유형별로 이용 현황을 보면, 경기도 29.3%, 서울시 9.5%, 경남 6.9% 순으로 국공립 이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세종시가 99.3%로 압도적으로 매우 높고(사립 0.71%), 제주 59.8%, 전남 51.2%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유치원 설립 유형별 시설 수와 이용 유아 수(2024년 4월 기준)

(단위: 명, 개소, %)

	유치원 이용 유아 수					유치원 수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비율	국립	공립	사립	소계	비율
전국	241	145,402	352,961	498,604	100.0	3	5,105	3,186	8,294	100.0
(비율)	0.05	29.2	70.8	100.00		0.04	61.6	38.4	100.00	
서울		13,827	47,301	61,128	12.3		298	456	754	9.1
부산		6,474	26,340	32,814	6.6		136	239	375	4.5
대구		4,991	24,263	29,254	5.9		120	200	320	3.9
인천		7,924	26,533	34,457	6.9		198	195	393	4.7
광주		3,566	15,358	18,924	3.8		132	141	273	3.3
대전		2,645	15,210	17,855	3.6		105	143	248	3.0
울산		3,502	9,327	12,829	2.6		92	94	186	2.2
세종		5,860	42	5,902	1.2		64	2	66	0.8
경기도		42,691	95,671	138,362	27.7		1,293	826	2,119	25.5
강원	47	5,312	7,081	12,440	2.5	1	275	77	353	4.3
충북	104	7,438	6,281	13,823	2.8	1	247	68	316	3.8
충남	90	7,210	13,326	20,626	4.1	1	380	113	494	6.0
전북		5,626	10,388	16,014	3.2		356	118	474	5.7
전남		7,511	7,165	14,676	2.9		415	85	500	6.0
경북		7,601	19,563	27,164	5.4		451	194	645	7.8
경남		9,994	26,937	36,931	7.4		440	218	658	7.9
제주		3,230	2,175	5,405	1.1		103	17	120	1.4

출처: "교육통계연보-설립별 연령별 학생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a, 2024. 9. 2. 검색,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25&survSeq=2024&itemCode=01&menuId=m_010106&uppCd1=010106&uppCd2=010106&flag=B

유치원 정원 대비 충족률을 기초지자체별로 살펴보면, 〈표 4-3〉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과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시(市) 단위는 평균 이상의 충족률을 보인 반면, 도(道) 단위는 평균 이하의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립(단설) 시설 수는 많지 않지만 높은 정원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사립 은 2024년 기준 39.0%를 차지하며 정원충족률이 79.7%로 나타났다. 반면,

공립(병설)은 2024년 기준 전체 유치원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원충족률은 평균 44.1%에 불과하나 이는 2020년 37.3%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정원충족률의 증가에도 어린이집과 같이 현원이 0명인 곳이 3개소(공립병설 1개소), 1명인 곳이 82개소(공립병설 81개소), 2명인 곳이 197개소(모두 공립병설)나 되었다. 2024년 4월 기준, 현원이 0명인 곳을 제외하고, 국공립의 경우 최소 5.0%에서 최대 103.8%, 사립의 경우 0.8%에서 116.7%까지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부표 2〉 참조).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일정 유아 수 이하의 유치원 운영 유지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다.

〈표 4-3〉 유치원 설립 유형별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단위: %, 개소)

구분		2015년(10월 기준)		2020년(10월 기준)		2024년(4월 기준)	
		평균	N	평균	N	평균	N
전국	계(평균)	52.7	7,645	53.6	8,441	60.8	7,706
	병설(국립 포함)	37.8	4,192	37.3	4,397	44.1	4,116
	단설	72.0	274	72.6	466	80.9	581
	사립(법인, 사인)	70.7	3,179	71.1	3,578	79.7	3,009
서울특별시	계(평균)	65.3	682	66.4	779	58.5	734
	병설	54.6	173	52.5	212	25.2	244
	단설	64.6	20	60.2	42	28.6	48
	사립(법인, 사인)	69.1	489	72.5	525	80.1	442
부산광역시	계(평균)	61.0	300	63.1	385	74.3	352
	병설	44.9	68	40.0	89	54.9	98
	단설	74.0	11	66.0	26	84.8	33
	사립(법인, 사인)	65.3	221	70.5	270	81.4	221
대구광역시	계(평균)	55.5	288	58.9	344	68.7	297
	병설	34.6	94	31.0	100	43.6	86
	단설	56.4	4	66.2	19	78.3	22
	사립(법인, 사인)	65.8	190	70.6	225	79.0	189

구분		2015년(10월 기준)		2020년(10월 기준)		2024년(4월 기준)	
		평균	N	평균	N	평균	N
인천광역시	계(평균)	60.0	363	61.5	396	71.0	378
	병설	34.5	147	38.5	166	57.1	168
	단설	55.4	11	64.2	13	86.7	19
	사립(법인, 사인)	78.6	205	78.9	217	81.7	191
광주광역시	계(평균)	59.7	287	59.8	285	65.4	254
	병설	51.6	116	44.0	121	46.9	111
	단설	75.2	10	74.7	12	89.5	13
	사립(법인, 사인)	64.6	161	71.2	152	78.7	130
대전광역시	계(평균)	53.2	218	54.7	250	62.5	236
	병설	32.1	85	32.3	91	40.4	89
	단설	67.5	8	66.0	10	77.6	12
	사립(법인, 사인)	66.7	125	67.7	149	75.8	135
울산광역시	계(평균)	64.4	175	55.6	192	70.6	166
	병설	40.7	66	38.1	83	54.3	76
	단설	92.5	5	79.3	9	96.3	12
	사립(법인, 사인)	78.0	104	67.9	100	82.6	78
세종특별자치시	계(평균)	46.8	42	59.7	61	73.9	65
	병설	32.7	18	38.0	18	46.5	20
	단설	61.3	22	71.0	40	87.8	43
	사립(법인, 사인)	15.4	2	39.7	3	49.6	2
경기도	계(평균)	51.9	1,829	54.3	2145	63.4	1952
	병설	42.0	1,028	38.4	1095	46.8	1011
	단설	70.5	58	67.7	117	80.2	165
	사립	64.2	743	71.4	933	81.3	776
강원특별자치도	계(평균)	47.0	346	48.2	360	54.6	339
	병설(국립 포함)	39.2	237	36.8	247	44.0	238
	단설	79.4	15	83.5	24	87.6	27
	사립(법인, 사인)	61.6	94	70.0	89	76.6	74
충청북도	계(평균)	78.1	307	50.3	318	56.8	297
	병설(국립 포함)	36.9	214	38.2	216	44.9	205
	단설	87.9	21	88.4	25	89.8	27
	사립(법인, 사인)	197.8	72	71.9	77	80.7	65

구분		2015년(10월 기준)		2020년(10월 기준)		2024년(4월 기준)	
		평균	N	평균	N	평균	N
충청남도	계(평균)	39.3	473	47.0	494	58.3	449
	병설(국립 포함)	29.3	339	36.8	348	46.9	310
	단설	66.4	18	73.4	24	90.2	30
	사립(법인, 사인)	64.1	116	70.8	122	82.0	109
전북특별자치도	계(평균)	37.7	479	44.5	489	52.0	429
	병설	27.2	330	29.2	327	38.9	285
	단설	63.3	18	72.9	25	82.5	33
	사립(법인, 사인)	60.7	131	75.7	137	76.5	111
전라남도	계(평균)	42.6	493	44.3	496	48.5	463
	병설	34.0	380	35.5	375	38.7	356
	단설	84.2	17	82.1	27	92.7	28
	사립(법인, 사인)	69.6	96	68.6	94	77.0	79
경상북도	계(평균)	52.0	635	46.2	657	53.5	574
	병설	35.8	427	33.8	421	38.9	370
	단설	79.8	12	84.4	19	91.0	22
	사립(법인, 사인)	85.6	196	66.8	217	78.5	182
경상남도	계(평균)	39.5	614	46.3	668	57.7	603
	병설	24.6	375	29.6	387	41.9	348
	단설	76.0	24	83.4	34	93.5	47
	사립(법인, 사인)	61.3	215	67.3	247	76.0	208
제주특별자치도	계(평균)	88.3	114	68.5	122	72.4	118
	병설	92.6	95	68.2	101	71.2	101
	사립(법인, 사인)	66.9	19	70.0	21	79.4	17

주: 1) 유치원 알리미 오픈API 데이터 중 결측값을 제외한 자료로 분석함.
2) 유치원, 인가 수, 정원 수, 현원 수는 2015년 10월(2차)부터 공개하고 있음.
출처: "공시자료다운로드-일반현황", 유치원 알리미, 2024, 9. 13.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물론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의 지속적인 증가는, 2017년 기준, 최대 100%에서 최소 8.7%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교육부 내에서도 지역별 고른 국공립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국공립 유치원의 낮은 정원충족률은 인구 위기로 인한 문제인지 등의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4-7] 국공립 유치원 학급 연평균 증가율(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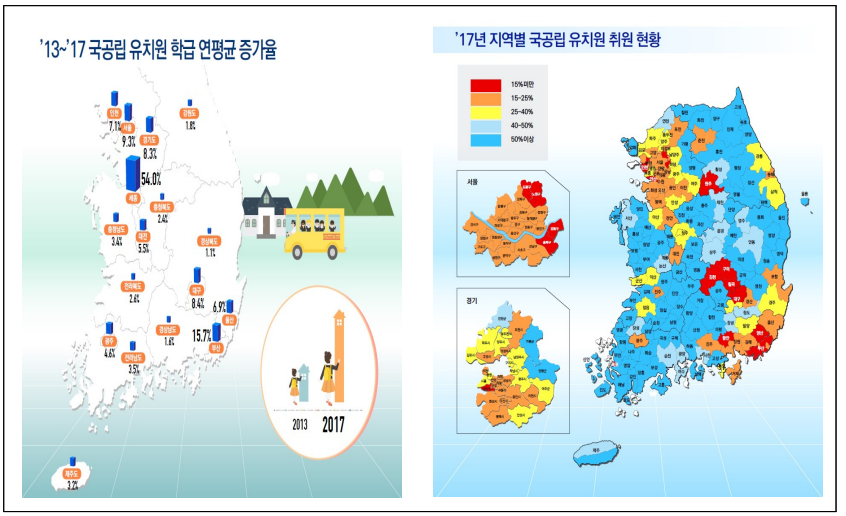

출처: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2018. 3., p.9.

제2절 보육 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1. 보육 서비스 수요 파악 근거와 기준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은 보건복지부 지침(1991~2021년 보육사업 안내), 전국 보육실태조사(각 연도), 중장기보육계획(1~4차), 지방자치단체 수급계획 고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그림 4-8〕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보육 수요 파악은 ①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일하는 한부모 등 0~5세 자녀와 거주하는 취업모의 일정 비율, ②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추계, ③ 시민 의견 수렴 또는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토대로 한 (선거) 공약, ④ 지구단위 계획 및 택지개발(신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 등)에 따른 보육 수요, ⑤ 코로나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 수요 등이다.

돌봄 수요에 따른 보육서비스 공급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0~5세 주민등록 아동의 60.6%를 포괄하고 있다. 대표적인 어린이집 공급은 법적, 제도적 기반에 따르는데, 다음과 같이 수요에 따라 확충 또는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린이집 확충 전략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축의 경우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확충하고, ② 개인 소유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신고제, 인가제 또는 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으로 공급량을 늘리거나, ③ 영유아 수가 많은 공동주택단지 설치 강화, ④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의 방안으로 확충되었다. 그런데 최근 저출생으로 인하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기존 과잉 공급되었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인가 제한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폐원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와 달리, 신도시 및 재개발단지 등은 여전히 공급의 부족으로 보육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 어린이집의 제한적 인가(해당 동만을 인가 가능하게 함) 등을 토대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보육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이 읍면동 단위로 매우 촘촘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저출생, 코로나 같은 재난, 제도적 변화(부모급여 확대,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8]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결정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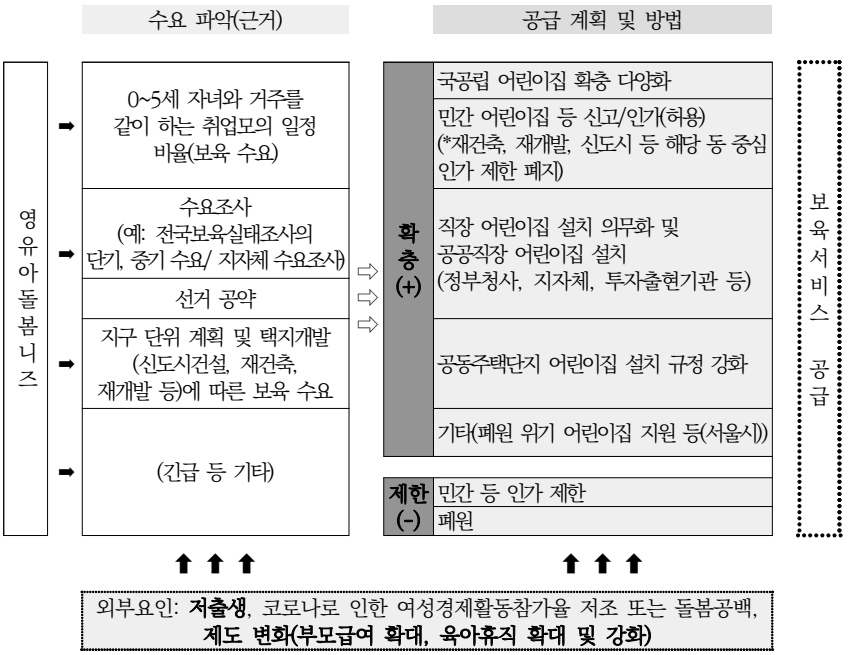

출처: 이 그림은 저자가 다음의 자료들을 검토하여 도출한 것임.

1)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991-2021.
   - 이 그림은 각 연도별로 중앙부처(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지침(또는 보육사업안내)"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도출하였음. 199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부처명 및 각 사업안내자료의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출처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위와 같이 통일하여 기재함.
2) 저자가 검토한 중장기 보육계획은 아래와 같음.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2006.
   -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3b.
   -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7.

-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22.

3) 저자가 검토한 보육실태조사 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I -보육·교육이용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문희 외, 2005,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서문희 외, 2009,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서문희 외, 201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외, 2019,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4) 저자가 검토한 지방자치단체 보육수급계획은 아래와 같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24-216호, "2024년 분당구 어린이집 보육수급계획 공고", 가정복지과.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83호,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고시", 아동보육과.
-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2021-319호, "2021년도 하남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보육료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결과", 여성보육과.
- 경기도 화성시 공고 제2021-821호, "2021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영유아보육과.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568호, "2024년 관악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사항 공고", 여성가족과.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39호,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가정보육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34호, "2024년 연수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출산보육과.

실제로 정부의 보육 수요 산출 방식과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육 공급 방식은 연도별로 발전해 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4-4〉 중앙정부의 보육 수요(산출 근거) vs 공급 방식

구분	보육 수요 산출 근거	보육(시설) 공급 방식
1991~1996년	• 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1) • ②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모의 적생아 수(한국통계연감, 1991 : 경제활동 인구연보, 1990) • ③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탁아(보육) 요구 비율 56.4% 적용 • ④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미만(70만 원 미만(1993년도), 80만 원 미만(1994년도) 계층의 보육 대상 아동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립, 운영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시설 설치 확대 • 새마을 유아원 등 기존 시설 전환 유도 등 • 민간, 직장 보육시설(인가), 가정보육시설(놀이방)(신고) 육성(시설확충) ☞ 인가 시 고려사항: 지역적 타당성(보육시설 설치가 적합한 지역 등), 시설의 적합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2), 종사자 확보 여부 • 500세대 이상 집단 주택 건설 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1994년 100세대 이상 영

<table>
<tr><th>구분</th><th>보육 수요 산출 근거</th><th>보육(시설) 공급 방식</th></tr>
<tr><td></td><td></td><td>구임대 및 근로자 주택단지 포함)
• 직장보육시설(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의무화 및 세제지원 등</td></tr>
<tr><td>1997~
2002년</td><td>• ①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6.12)
• ② 25~3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998년 52.4%, ’1999년 52.8%, 2000년 53.4%, 2001년 53.9%, 2002년 56.1%)
• ③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보육요구 비율 56.4% 적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보육 수요와 정책방안 연구(정경희, 김유경, 1997): 보육시설 이용 희망률을 반영하여 보육 수요 파악</td><td><table><tr><th>유형</th><th>확충(공급) 전략</th></tr><tr><td>공공보육시설</td><td>신증축
사회복지시설 부설 설치
종교학교시설 부설 설치(종교학교법인,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학술자선 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및 시설 명의로 등기된 종교시설 포함)</td></tr><tr><td>직장 및 민간 어린이집</td><td>민간 보육시설: 국민연금기금 융자(1994~1997년) 및 기간연장 등
국가기관 등에 공공직장보육시설 설치(정부청사,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등)</td></tr></table></td></tr>
<tr><td rowspan="2">2002~
2021년</td><td rowspan="2">• 2000년 초반부터 <u>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육 수요 파악</u>
• 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을 계속 또는 새로 이용하겠냐는 질문+이용하겠다면 언제 이용하겠는지에 대한 조사를 중기(1년 이내 이용희망), 단기(동일 연령 이용 희망) 등의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육 수요 추정(서문희 외 2005; 2009; 2012)
• 2021년 연령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수요)를 조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을 구분, 분석함(출생연도별 기관 이용 의향 조사. 단, 이용하고자 할 때 모든 기관이 언제든 이용 가능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응답하도록 함).</td><td>•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SOC 활용, 기부채납, 무상임대 등)
•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 및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 민간, 가정 어린이집 인가 제한
• 정원공급률에 따른 인가 가능(허용)</td></tr>
<tr><td>• 폐원 연장 vs 폐원 지원
• 시간제 보육 활성화 등</td></tr>
</table>

출처: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각 연도).

- 본 자료는 각 연도의 중앙부처(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여성부/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보육사업지침(또는 보육사업안내)”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하였음. 1991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 부처명 및 각 사업안내자료의 명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표의 출처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위와 같이 통일하여 기재함.

가. 중앙정부의 보육 대상 아동 추계 기준(수요) 및 공급 : 저소득층 및 취업모 자녀 기준(~1997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시설 공급을 위해 보육 대상 아동 중 보육 요구 비율(추계)을 기반으로 시설 수요 및 확충을 계획하였다. 보육 수요는 〈표 4-4〉에서 볼 수 있듯이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아동으로 취업모 가구의 56.4%를 적용, 산출하였다. 이러한 산출 기준은 2002년까지 활용되었다(1998년 제외).

이 수요를 토대로 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표 4-5〉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제시한 지침 기준인 각 보육시설 유형별 개소당 정원 기준을 토대로 수립되었다. 즉, 국공립·민간 보육시설(⑤)의 경우, 개소당 보육정원은 1993년 57명(저소득층 아동 평균 45명, 일반아동 12명), 1994년 68명(저소득층 45명, 일반 23명) 보육을 기준으로, 가정보육시설(⑥)의 경우, 1993년 10명, 1994년 15명을 기준으로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 보육시설로, 일반지역은 기타 민간 보육시설 80%, 가정 보육시설 20% 기준 등의 세부 기준도 수립, 반영하였다(보건사회부, 1993, p. 9).

1993년도 정부의 시설 확충(공급)의 기본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기간(1992~1996) 중 저소득층 자녀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토대로 일반 보육 대상 아동 또한 전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만 원 미만 계층의 보육 대상 아동에게까지 정부 지원을 하고 정부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지원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장 근로 여성의 자녀 보육 및 기혼 유휴 여성인력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보건사회부, 1993, p. 10).

이러한 기조에 따라 1994년에는 전국, 지역별 보육 수요 및 시설 소요량에 대한 재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전문연구기관에서의 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중·장기 확충 계획 수립이 요구되었다(보건복지부, 1994, p. 12).

그래서 1995년의 세부 공급계획을 보면 첫째,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읍·면·동별) 배치 유도 및 재정의 효율적 투자를 도모하고, 농어촌 등 보육 대상 아동 희소 지역은 가급적 사회복지시설, 종교·학교시설의 부설 설치를 유도하고, 공단지역 등 중소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에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는 국고지원을 추진한다는 것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확충 유도 전략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시설비를 최우선 융자 지원하고 운영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 보육시설 확충 유도 전략이다. 보육료를 현실화(장기적으로 자율화)하여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민간 보육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에 자유로운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1995, pp. 10-11).

이러한 기본 방침의 변화와 함께 1996년까지 1,867개소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다가, 1995년에는 향후 3개년(1995~1997) 동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융자하여 보육시설 7,590개소 확충하여 아동 427천 명을 추가 보육 하겠다는 확충 목표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1995, p. 10).

나. 지역별 보육 수요조사(전국, 지역별) 기준: 1997~2003년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보육 수요 추계를 위한 취업모의 0~5세 아동 수는 5년 단위 조사(1990년에 조사, 1991년에 발표, 그리고 1995년 발표)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의 지역별 균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1995년 인구 및 주택조사(통계청) 시 보육 수요를 조사하였고, 1996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냈고, 이를 보건복지부에서 수요 산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또한 시·군·구 및 읍·면·동별 보육 수요 조사는 행정 전산자료에 의거, 추정하였다(보건복지부, 1996, p. 13).

❖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읍·면·동별 보육 수요를 1996년도 1/4분기 중 전산조사하여 공공보육시설 설치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인가(신고) 수리업무에 참고

- 미취학아동 보육 수요는 아동 수의 25% 적용(0~1세, 2세, 3~5세 구분 작성)
- 취학아동 보육 수요는 아동 수의 10% 적용(6세, 7세, 8세, 9세 이상으로 구분 작성)

출처: "1996년도 보육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1996, p.13의 내용 재인용.

1998~2002년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각종 통계자료와 1997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별 보육 수요와 정책방안」 보고서 및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보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보육 대상 아동을 추계하였다(〈표 4-4〉 참조). 하지만 여전히 보육 수요는 취업모 0~5세 아동의 56.4%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표 4-5〉 중앙정부 보육 수요와 공급의 산출 근거 및 현황

(단위: %, 천 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0~5세 아동①		3,949			3,996			3,977			3,987			4,002			4,303			4,293			4,274			4,250			4,217		
취업 모의 0~5세 아동②		1,774			1,792			1,810			1,828			1,846			1,910			1,920			1,933			1,940			2,366		
보육 대상 아동③		1,000			1,011			1,021			1,031			1,041			1,177			1,083			1,090			1,094			1,334		
저소득층 아동④		81			82			83			84			91																	
일반아동		919			929			938			947			950																	
보육수요율 =③/②		56.4%			56.4%			56.4%			56.4%			56.4%			61.6%			56.4%			56.4%			56.4%			56.4%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계	저소득층 지역	일반 지역
대상 인원		1,000	81	919	1,011	82	929	1,021	83	938	1,031	84	947	1,041	91	950															
대상 인원	계	32,343	1,800	30,543	32,697	1,822	30,875	33,015	1,844	31,171	33,336	1,867	31,469	24,703	2,036	22,667															
대상 인원	⑤ 국공립·민간 보육시설	14,395	1,800	12,595	14,554	1,822	12,732	14,698	1,844	12,854	14,844	1,867	12,977	12,661	2,036	10,625															
대상 인원	⑥ 가정보육시설	17,948		17,948	18,143		18,143	18,317		18,317	18,492		18,492	12,042		12,042															

주: 1) 1993~1997년 데이터는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추계함.
①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1a)
②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모의 적생아 수*는 한국통계연감(통계청, 1991b), 경제활동 인구연보(통계청, 1990)
*0~5세 아동 중 취업모 아동 비율은 전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모의 적생아 수(0~14세에 해당하는 아이들 가운데 같은 가구 내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를 곱하여 산출함.
③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탁아(보육) 요구 비율 56.4% 적용
④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미만(70만 원 미만(1993년도), 80만 원 미만(1994년도) 계층의 보육 대상 아동 보육기준 인원은, ⑤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 57명(개소당). 다만, 저소득층 지역의 시설당 저소득층 아동 보육 인원은 평균 45명 기준이며, 나머지 12명은 일반아동 보육. ⑥ 가정보육시설: 10명(개소당)
저소득층 지역은 국공립 보육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민간 보육시설로 일반지역은 기타 민간 보육시설 80% 가정 보육시설 20% 기준
2) 1998~2002년은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추계함.
①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1996.12)
② 25~3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1998년 52.4%, 1999년 52.8%, 2000년 53.4%, 2001년 53.9%, 2002년 56.1%)
③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보육 요구 비율 56.4% 적용
출처: “보육사업안내(보육사업지침)”, 보건사회부 또는 보건복지부, 해당 연도.

이러한 보육 수요 대비 공급계획을 토대로 추진한 결과, 앞의 〔그림 4-3〕, 〔그림 4-4〕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보육 수요(추계) 대비 실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비교해보면 〔그림 4-9〕에서 볼 수 있듯이,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속적으로 그 격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보육 수요가 과잉 추계되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낮은 신뢰, 혈연 중심의 돌봄 선호, 낮은 영아 보육 공급 구조(어린이집 기피) 등의 이유 또한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의 격차 완화는 보육정책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9〕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이용 아동 현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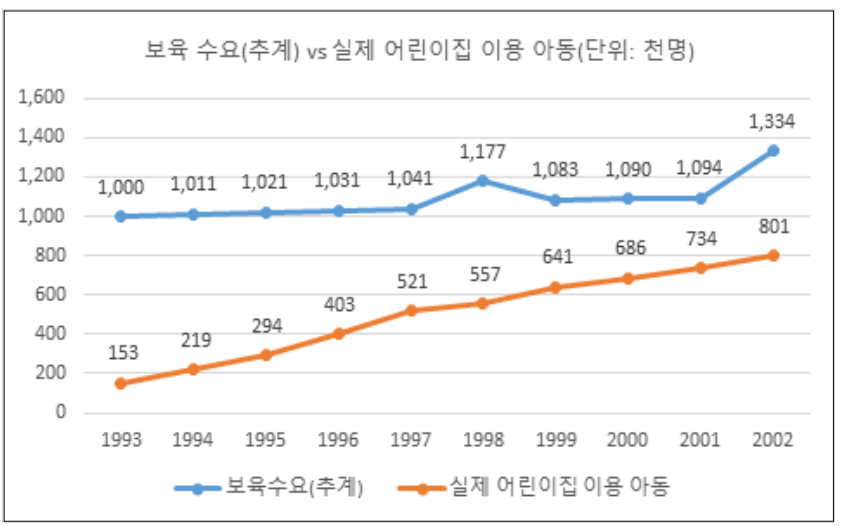

출처: 1)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교육부, 국가통계포털, 2024, 2024. 8.16.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2&conn_path=I2 각 연도별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2) “보육사업안내(보육사업 지침)”,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 각 연도.

다. 전국보육실태조사 단기, 중기 수요 기준

정부는 2000년대부터 “전국 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육 수요를 추계하기 시작하였고, 보건복지부의 보육 수요는 “중기추계”를 토대로 추계하였다.[12] 2004년,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보육 이용 희망률에 기초하여 보육 수요 규모를 추계하는데 “보육시설을 계속 또는 새로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과 “이용한다면 언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단기(현재 연령과 동일 연령 이용률), 중기(1년 이내 추가 이용 비율) 등의 시기별로 구분, 추정하였다. 2004년 대비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첫째, 취업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수요에 근거하였고, 둘째, 보호자의 다양한 수준의 이용 희망률(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을 이용하여 단기와 중기 추계를 실시하였다(서문희 외, 2011, p. 12) 이는 조사 당시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수요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육 수요는 각 세별로 1월 1일 기준 월령을 기준으로 추계하는데 전년도 통계청 중위인구추계 인구수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지역 규모별로 산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규모별 추가 수요를 추정할 수 없다(서문희 외, 2012, p. 507).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연령별 &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의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0세를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29.2%가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세(2025년)가 되기까지 높아지지만 5세, 6세가 되면 각각 45.1%, 25.6%로 감소하였다. 현재의 이용 양상과도

12) 전국보육실태조사는 2002년에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으로 2004년부터 발표가 이루어졌다. 2002년 보육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2003년, 2004년 보육 수요 추계는 추가 희망 이용률이 영아 15.0%, 유아 14.4%(전 연령 평균 14.6%), 이를 적용한 보육수요율은 영아 25.0%, 유아 42.7%로, 이를 반영하여 수요 아동 수를 추계하였다(보건복지부, 2003, p. 13; 2004, p. 15).

유사하지만 5세 이후에는 취학 전 교육 준비를 위해 유치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동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치원 이용 희망은 0세아의 경우 6세(2027년)가 되는 해에 68.8%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세아인 경우도 59.9%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비교하면 향후 유치원 이용 의사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년 기준 0세아 22만 6천 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2만 3천 명(교육부, 2023)으로 25.7%[13]가 이용하고 있는데 〈표 4-6〉에서 2022년 0세아의 어린이집 이용 의사는 29.2%로 격차가 다소 있다.

〈표 4-6〉 연령별 향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수요

(단위: %, 명)

현재 연령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0세아 (N=224)	어린이집	29.2	52.7	75.7	75.8	45.1	25.6
	유치원	1.2	1.2	1.5	19.9	51.2	68.8
	반일제학원	-	-	-	-	1.4	4.3
	가정양육	69.6	46.1	22.8	4.3	2.4	1.3
1세아 (N=556)	어린이집	53.8	72.5	78.2	50.3	21.1	
	유치원	0.3	0.9	15.1	47.5	76.8	
	반일제학원	0.1	0.4	0.7	1.2	1.7	
	가정양육	45.8	26.2	6.0	1.0	0.4	
2세아 (N=472)	어린이집	84.2	77.3	46.8	24.4		
	유치원	2.2	18.0	48.2	69.6		
	반일제학원	0.6	0.9	4.1	5.4		
	가정양육	13.1	3.9	0.9	0.6		

13) 어린이집 이용 아동 12만 3천 명은 보육연령(반)의 개념으로 해당 아동에 대한 이용 비율을 계산할 때 인구수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2022년, 2023년 출생아가 모두 해당함(2023 영유아 주요통계, p.27).

현재 연령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3세아 (N=427)	어린이집	73.2	51.3	27.8			
	유치원	22.8	44.6	68.2			
	반일제학원	1.5	2.8	3.8			
	가정양육	2.5	1.3	0.3			
4세아 (N=486)	어린이집	46.5	29.6				
	유치원	48.8	63.6				
	반일제학원	3.0	5.5				
	가정양육	1.6	1.3				
5세아 (N=1,306)	어린이집	31.8					
	유치원	59.9					
	반일제학원	7.2					
	가정양육	1.0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 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2) 전체 응답 대상 기준으로 질문한 결과임.
출처: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김은설 외, 2021, 육아정책연구소, pp.238-239 〈표 V-8-8〉부터 〈표 V-8-11〉까지의 내용 재인용.

2. 보육서비스 공급의 기준

가.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최근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괄목할 만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중장기 보육 계획 수립」을 토대로 확충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표 4-7〉). 특히, "보육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매우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였다. 다만,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배경을 보면, 인구 구조 및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여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저출생 상황에서도 시설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향후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민간시설의 진입 문턱이 낮아 소규모 영세시설이 다수 진입(2013년 6월 현재 정원충족률: 79.8%)하는 것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아래 그림 참조). 즉 현재의 과잉 공급 및 낮은 정원충족률에도 유지하는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는 이때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0] 영유아 인구 및 시설 공급 추이와 규모별 어린이집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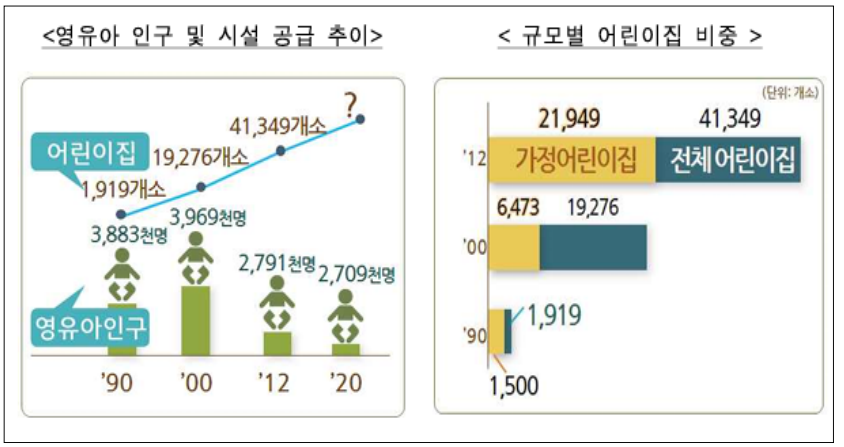

출처: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3, p.7의 그림 재인용.

정부는 보육 인프라의 공공성 제고와 취약지역의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추경예산을 통해 당해 연도 목표를 360개소로 확대 편성한 이래 2018년 450개소, 2019년부터 목표치를 550개소로 확대하여 유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누적 3,604개소를 선정·지원하였다. 이처럼 양질의 공공보육 인프라 조성을 확대한 결과 2017년 3월 24.8%였던 공공보육 이용률은 2023년 12월 기준 40.0%에 이르렀다.

또한, 2020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다른

돌봄시설의 복합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여, 기설치 어린이집의 유휴공간 활용도 제고 및 생활 SOC 간의 복합화를 통한 적극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작한 민관협력(하나금융 MOU)에 의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누적 90개소를 지원하였다. 더불어 2021년 신축·매입 사업의 국비 지원 한도 인상(4.61억 원→8.99억 원), 그린뉴딜 예산 반영을 통한 신축 면적당 지원 단가를 증액(1,397천 원/㎡→1,676천 원/㎡)하여 지자체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을 고시, 개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있어 사회서비스원,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 높은 비영리 법인 등의 위탁 참여를 적극 촉진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보육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23, p. 347).

가장 최근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계획(2023~2027)은 보육의 국가책임 실현을 비전으로 공급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매년 500개소씩 2,5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공공보육 이용률 36.8%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보육계획에 보육서비스 공급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통합반(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 이용)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4-7〉 중장기 보육 계획에 따른 보육 공급 전략

구분	중장기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보육 공급 전략
제1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2006~2010)[1]	• 비전: "함께 키우는 건강한 아동" • 전략목표: **① 공보육 기반 조성** ② 부모 육아 부담 경감 ③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④ 아동 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⑤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의 5개 분야 21개 추진과제 설정·추진	• 지역별 수급 현황에 따른 시설확충계획 수립 및 육아지원 시설 이용률 제고 ✓ **국공립보육시설 두 배 확충: 2005년 1,352개소 ⇒ 2010년 2,700개소**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수: 92만 명(2005년) ⇒ 114만 명(2010년) ✓ 영유아 육아지원 시설 이용률 제고: 2005년 46.0% ⇒ 2010년 60.0%(유아 68.6%⇒88.4%, 영아 19.5% ⇒ 33.4%)
		• 다양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 ✓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보육시설 중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 ✓ 대한주택공사와 보육시설 무상 제공 협약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 국공립화(2010년까지 598개소 무상 제공) ✓ 도시공원 내 신축, 민간 보육시설 매입, 대학부지 및 공공건물 활용 등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 비전: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 전략목표: ①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 **② 국가책임 실현** ③ 참여와 신뢰 증진 등의 3대 전략, 6대 추진과제 설정·추진	• 민간시설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을 확충하고, 농어촌에 소규모 어린이집(이동식 버스, 부모협동놀이방 포함) 설치 ✓ 국공립(2008) 1,826개소/ 12만 명 이용→(2012) 2,203개소/ 15만 명 이용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2009) 11개소→(2010) 21개소→(2012) 41개
		• **국공립(사회복지법인 포함)·직장·공공형 이용 아동 비율(개소수): 26%(2012년)(5,791개소, 370천 명(2013년 6월 기준) → 33%(2017년)(7,383개소, 462천 명)**
		• 직장 어린이집 설치 時 세제 감면 등 지원 및 미설치 기업 명단 공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기업의 설치 활성화 유도 ✓ 세제감면 기간 연장(2009.12월→2015.12월), 감면세율 확대(7%→10%), 설치비 융자 규모 확대(5억→7억 원, 2010), 시설 전환비 지원(1억→2억, 2010) ✓ 산업단지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근거 마련(2011.12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 시행(2012.7월~)
		• 일시보육(시간제) 서비스 확산: 시범사업(2013년)→2017년 전국 시행

구분	중장기 보육정책의 비전과 전략	보육 공급 전략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 비전: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전략목표: **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 보육 체계 개편 ③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④ 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 설정·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5년간(2018~2022년) 총 2,697개소 설치 지원(연간 539개)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5.2%로 12.3%p 증가** ✓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 2017년 3,157개소 (이용률 12.9%) → 2022.10월 5,717개소(이용률 25.2%)** •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2019.6월), 기존 시설 매입, 장기임차(2018~) 등 확충방식 다양화로 비용 효과성 제고 •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우선 확충(468개소)으로 보육 공백 완화
		• (직장 어린이집) 실태조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사업장의 직장 어린이집 직접 설치 독려로 2017년 1,053개소에서 2022.10월 1,290개소로 확대/설치의무 이행률은 86.7%(2017) → 90.9%(2021)
		• (시간제 보육 확대) 시간제 보육 교사당 아동 비율 개선(2019~), 제공기관 지속 확대로 가정양육 중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원 * (2017년) 382개소, 437개 반 → (2021년) 740개소, 857개 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 (2023~2027)	• 비전: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 ①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②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③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④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등의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 설정·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2,500개소(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제고(~2027, ’22년 10월 36.8%), 지역별 편차 완화 •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내 통합반(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이용) 확대 등 2022년 5%→2027년 10%

주: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자료에서 발췌하여 작성함.
1) 제1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은 새정부 국정 철학과 보육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한 아이사랑 플랜(2009~2012년)으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수정, 보완됨

출처: 1)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2006,
2)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3b.
3)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7.
4)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22.

나.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민간(민간·법인 외·단체, 가정 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어린이집 설치 시 인가제(사회복지법인, 법인 외 단체,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은 신고제)로 규정하였으나,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로 기준을 완화하여 대대적인 확충이 이루어졌다. 또다시 민간 중심의 확충에 따른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가제"로 다시 개정하였다. 이러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인가제→신고제→인가제 등의 전환은 앞에서 제시한 공급 현황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지배적 경로 의존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과잉 공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보건복지부, 2013b).

아래 박스의 기사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폐원이 줄줄이 이루어지지만 신도시의 경우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일하는 부모들의 돌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20KM 이상 어린이집 원정 통학? '신도시맘'은 웁니다
>
> 달성군 구지면은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기업 입주와 대규모 택지 개발로 지난 2018년 1만 명에서 최근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 영유아 수도 2년 만에 7백여 명에서 천7백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구지면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9곳(정원 421명)에서 15곳(정원 742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구지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90%를 넘는 상황. 특히 만 4살 아이들이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 한 곳밖에 없어 아이들이 만 4살이 되면 대부분 구지면 외부기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구지면 어린이집에 남은 빈 자리도 대부분 만 0~3살에 해당합니다. 유치원 역시 2곳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맞벌이 부모들은 방학이 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더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출처: "20km 이상 어린이집 원정 통학? '신도시맘'은 웁니다", 신주현, 2022. 12. 23.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981529 내용 일부 재인용.

이에 대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인가 제한을 조정하는 전략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수급계획하의 인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1〕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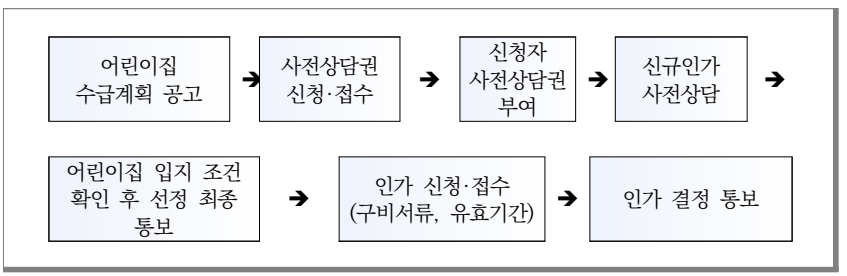

출처: "2024년 연수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34호, 출산보육과. p.2의 그림 재인용.

수급계획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 공고하고 있는데, 인가 제한의 적용 제외 사항(아래 용인시, 아산시 공고 참조) 이외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2024년 현재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동(洞) 단위 인가만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인가 제한과 가능 여부는 보육 대상(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그에 따른 정원 공급률(=정원/보육 대상 영유아 수)을 토대로 전국, 해당 기초 지자체가 평균 충족률의 일정 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인가를 제한 또는 허용하는 수급계획을 토대로 공급량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성시의 공동주택단지 외의 경우, 정원충족률 78.8%를 초과하고, 정원 공급률(=보육 대상(0~만 5세아 수)/정원 수×100) 50% 미만인 행정 읍·면·동(새솔동, 동탄 4동, 5동, 7동, 8동)은 '동'지역 인가 정원 기준인 보육 수요(=보육 대상×35.6%)보다 부족한 양만큼 연차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기초 지자체별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서로 상이하고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닌 매우 정교한 읍면동 단위의 데이터를 토대로 인가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단지별 300세대당 1개소 인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 ○○구의 경우, 별도의 수요조사의 필요성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14]

인천 서구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원충족률이 높거나 영유아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정 수준의 정원충족률(76.7%)을 유지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영유아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이외에 어린이집 과잉 공급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의 경우 영유아 인구수 대비 보육 수요 43.2%와 정원충족률을 고려하여 신규인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표 4-8〉 기초지방자치단체 수급계획: 인가/인가 제한

지자체		출처	수급 계획 및 인가 산정 방법
서울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568호	• 인가방향: 신규인가 제한 • 제한범위: **전체 동** • 제한기간: 2024.3.1. ~ 2025.2.28.(1년간)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 공고 제2024-139호	• 적용 기간: 2024. 3. 1. ~ 2025. 2. 28. • 적용 범위: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증원) • 기본 방향: 서구 전 지역 어린이집 인가 제한 - 서구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81.2%)이나, 영유아 인구 밀집 지역(검암경서동, 청라1, 2, 3동, 가정1동, 아라동)을 제외한 **정원충족률(76.7%) 인천시 평균(76.1%) 유지** - 운영상 어려움으로 어린이집 폐지 증가[2020년 37개소 → 2021년 29개소 → 2022년 39개소 → 2023년 36개소]

14)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저자가 서울시 자치구 중 한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담당 공무원을 인터뷰하였음.

<table>
<tr><th colspan="2">지자체</th><th>출처</th><th>수급 계획 및 인가 산정 방법</th></tr>
<tr><td></td><td></td><td></td><td>-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2020년 29개소→2021년 36개소→2022년 52개소→2023년 68개소]
* 누적 ⇒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영유아 인구 지속적인 감소 및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 확대로 어린이집의 과잉 공급 방지 필요</td></tr>
<tr><td></td><td>연수구</td><td>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34호</td><td>• 적용기간 : 2024.03.04. ~ 2025.02.28.
• 동별 수급 현황과 인가 가능 현황: 송도2동, 3동, 4동, 5동만 인가 가능(옥련1동, 송도1동, 동춘1동 외 8동 인가 제한)
* 아래 표는 송도1동(제한)과 송도2동(가능)만 예시로 제시함
• 동일단지 내의 각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의 73.0%(인천시 연평균 정원충족률) 충족한 경우 추가 인가 가능[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계산 (예 : 정원 20명의 73.0%는 14명)]
<table>
<tr><th>동명</th><th>영유아 아동수 (A)</th><th>어린이집 개소수 (B)</th><th>어린이집 정원 (C)</th><th>어린이집 현원 (D)</th><th>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D/C)×100</th><th>보육수요 (F)=A×43.2%</th><th>신규 인가 가능 인원 (F-C)</th><th>인가 가능 여부</th></tr>
<tr><td>계</td><td>20,303</td><td>253</td><td>10,618</td><td>8,504</td><td>80.09</td><td>8,771</td><td>-1,847</td><td></td></tr>
<tr><td>송도1동</td><td>1,442</td><td>35</td><td>1,322</td><td>1,010</td><td>76.39</td><td>623</td><td>-699</td><td>제한</td></tr>
<tr><td>송도2동</td><td>2,056</td><td>19</td><td>757</td><td>715</td><td>94.45</td><td>888</td><td>131</td><td>가능</td></tr>
</table></td></tr>
<tr><td>경기도</td><td>화성시</td><td>화성시 공고 제2021-821호</td><td>• 인가 제한 기준(신규 변경 포함):
✓ 읍·면·동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경기도 평균 정원충족률인 78.8%(2020년 12월 기준) 미만 시 인가 제한
✓ 정원충족률이 78.8% 이상이더라도 어린이집 정원 공급률이 50% 초과 시 인가 제한
• 시행기간: 공고 시행일부터 다음 수급계획 변경 시까지
• 신규인가:
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 신규입주 공동주택단지의 설치인가 허용
✓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신규인가는 인가 가능 지역만 허용
✓ 입주 시기 전 권역별(본청, 출장소)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인가 정원 산정방법
· 읍·면 지역 어린이집 인가 정원 산출 방법: 세대수×세대당 인구 수(2.1명)×영유아 비율(5.7%)×보육 수요(51.1%)
· 동지역 어린이집 인가정원 산출방법: 세대수×세대당 인구수(2.6명)×영유아 비율(9.2%)×보육수요(35.6%)
① 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수로 아파트 1호당 1세대
② 세대당 인구수: 인구수÷세대수
③ 화성시 영유아 비율: 보육 대상 수÷인구수×100
④ 보육 수요: 어린이집 이용률로 산정
⑤ 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현원 ÷ 보육 대상 수×100</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지자체</th><th>출처</th><th>수급 계획 및 인가 산정 방법</th></tr>
<tr><td></td><td></td><td></td><td>✓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위 산식에 의해 산출된 정원으로 하며, 설치 시 1개 동에 1개소 이해 설치, 인가를 원칙으로 함. 단,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1층 세대 충합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동당 2개소까지 인가 허용
② 공동주택단지 외 어린이집:
✓ <u>인가기준: 정원충족률 78.8% 초과 및 정원공급률 50% 미만 행정 읍면동(새솔동, 동탄 4동, 5동, 7동, 8동)</u>
<table>
<tr><th>구분</th><th>보육대상(A)</th><th>개소수</th><th>정원(B)</th><th>현원(C)</th><th>정원충족률(C/B)</th><th>정원공급률(B/A)</th><th>최종보육수요</th><th>인가계획</th></tr>
<tr><td>동탄7동</td><td>1,014</td><td>8</td><td>6</td><td>3,246</td><td>2,931</td><td>90.3%</td><td>320%</td><td>364</td><td>145</td></tr>
<tr><td>동탄8동</td><td>3,829</td><td>25</td><td>1,004</td><td>934</td><td>93.0%</td><td>26.2%</td><td>359</td><td>143</td></tr>
</table>
* 최종 보육 수요(Q)는 동지역=(A*35.6%)-B
* 당해연도 인가계획=최종 보육 수요의 40%</td></tr>
<tr><td></td><td>용인시</td><td>용인시 고시 제2024-83호</td><td>•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 및 변경인가(소재지, 정원)
• 처인구(남사읍, 중앙동), 기흥구(신갈동), 수지구(성복동)만 인가 가능, 그 외 지역은 인가 제한

• 보육 수요 인원: 이용권역 내 미취학 아동 수 × 보육시설(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 인가 가능 지역 정원 산출방법: 정원보다 보육 수요 인원이 더 많은 경우⟹ 보육 수요 인원 – 정원
• 지역별 인가정원 관리: 인가 가능 지역이라도 이용권역 내 인가 가능 정원 도달 시 수시 인가 제한 가능</td></tr>
<tr><td></td><td>하남시</td><td>하남시 공고 제2021 - 319호</td><td>• 적용 기간 : 2021. 3. 1. ~ 별도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 적용 대상 : 어린이집 신규(변경)인가
• 인가 제한 및 인가권역 설정 기준: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 동별 정원충족률, 어린이집 이용률 등에 의한 인가 제한 및 보육수요 증가 예상 지역 인가 가능 지역 설정(전국 평균 인가 정원충족률 : 76.1%, 하남시 인가정원 충족률 88.2%)
<table>
<tr><th>인가 제한
(2개동)</th><th>인가 가능
(7개동)</th><th>부분 인가 가능(5개동)</th></tr>
<tr><td>천현동, 춘궁동
(보육정원이 보육 아동 수 초과 100% 및 3기 신도시 편입지역)</td><td>풍산동, 위례동, 미사1동, 미사2동, 감북동, 초이동, 감일동</td><td>신장1동, 신장2동(138명) 덕풍1동(60명), 덕풍2동(48명), 덕풍3동(87명)</td></tr>
</table></td></tr>
</table>

지자체		출처	수급 계획 및 인가 산정 방법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 2024-216호	• 적용 기간: 2024. 4. 1.(월) ~ 2025년 보육 수급 계획 수립 시까지 • 신규인가 제한 행정동: 정자동, 야탑3동, 삼평동 • 보육수급계획 주요 결정 사항 •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72.2%)에 미달 시 인가 제한(동별 적용) • 어린이집 이용률 100% 초과 동은 인가 제한 • 동별 정원공급률 50% 초과 시 인가 제한 • 직장 어린이집은 정원충족률 산출 시 미포함 •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신규인가 가능 • 공동주택 신규인가 정원 산출 방법
충남	아산시	아산시 공고 제2024-627호	• 신규인가 가능 지역 및 제한지역: 가능 지역(1((선장면_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제한지역(16)(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인주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6동) • 신규인가 제한과 별도로 설치 가능한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정), 지구 단위계획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토지 등, 배방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1,000세대 이상 단지, 탕정면 3공구(한들물빛도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00세대당 1개소 인가 가능 • 제한지역 내 신규 공동주택 단지 가정 어린이집 수급계획: ✓ 인가기준 : 단지별 300세대당 1개소 인가 ✓ 인가 시기 및 방법 :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후 모집공고 및 접수 후 공개 추첨으로 인가 우선순위 결정 (단, 인가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 승인 후 가능)

주: 모두 2024년 수급계획 관련 공고이고 하남시의 경우 2021년 공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적용됨.
출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별 “고시/공고”문서(공고문서 번호 위 참조)를 참고하여 작성함.

4. 인가 제한의 적용 예외 사항(용인시 고시 제2024-83호)[15]

1) 법령에 따른 의무 어린이집의 설치 및 변경
❍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가정 어린이집의 신규 설치[16]
❍ 신규 공동주택 : 300세대당 1개소 인가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준용
❍ 어린이집(관리동 포함)이 미설치된 기존 공동주택 : 300세대당 1개소
❍ 「공공주택특별법」및「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사업자와 협의 후 설치 : 300세대당 1개소

3)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 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까지(단, 기존 조건 준용)
   *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는 대표자가 향후 재설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고 폐지 시 문서로 명시
4) 인가 제한 결정 고시일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 3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실시하고, 사전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인가 신청 접수 완료한 경우

6.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제 운영

❍ 대 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신규로 설치하고 하는 자
❍ 적용방법
· 공동주택 어린이집 신규인가 : 추첨을 통해 사전상담 우선순위 부여
· 공동주택 외 신규인가 : 수급계획 고시 후 인가 가능지역 내 1회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부여

---

15) 아산시 공고(제2024-627호)의 신규인가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② 신규인가 제한과 별도로 설치 가능한 경우
❍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지구 단위 계획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토지
❍ 기존 인가 어린이집의 연면적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은 불가하며, 연면적 감소 등에 따른 정원 감원 및 동일 읍·면·동 내 소재지 변경은 가능
※ 단, 신규인가 제한과 별도로 설치 가능 어린이집은 제외이며, 동 지역은 동일 권역으로 간주
❍ 배방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1,000세대 이상 단지
❍ 탕정면 3공구(한들물빛도시)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00세대당 1개소 인가 가능
③ 제한지역 내 신규 공동주택 단지 가정 어린이집 수급계획
❍ 인가기준: 단지별 300세대당 1개소 인가
❍ 인가시기 및 방법: 주택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후 모집공고 및 접수 후 공개 추첨으로 인가 우선순위 결정(단, 인가는 주택법에 의한 사용 승인 후 가능)
❍ 어린이집 인가 신청 시 대표자와 원장 동일
다만, 임대 및 사원 공동주택인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대표자의 가족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확인된 경우 동일인이 아니어도 인정
※ 투기 목적 예방을 위하여 1년간 대표자와 원장 변경 금지. 단, 사망·해외이민·신병치료(6월 이상)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16) 하남시(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2021-319호)의 경우 인가 가능 지역의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 인가 조건
- 별도의 수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개 추첨에 의한 신규인가
- 250세대당 1개소 인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잔여 세대가 101세대 이상일 때 1개소 추가 인가 가능(예시 참조)하며, 아파트 1개 동에 1개소만 인가 가능함.
· 예시) 250세대 1개소, 360세대 2개소, 560세대 2개소 설치 가능
· 250세대 미만의 경우 인근 어린이집 및 아동 보육 수요 등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 가능

다.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응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르고, 그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안 및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0.7명(2023년 2분기)으로 급감하면서 어린이집은 동마다 14개씩이었던 것이 현재 10.5개로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폐원 어린이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말부터 "동행어린이집"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23).

동행어린이집은 폐원 위기(운영 어려움), 즉 정원충족률 60% 미만 어린이집(시설 간 거리 200m 이상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충족률 70% 미만 적용)[17]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 폐원 위기를 벗어나게 하거나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①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통한 지원 ②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컨설팅 지원) ③ 환경개선비 자부담(30%) 면제로 안전, 위생 환경 개선 ④ 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해 업무경감으로 장기근무 유도 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에서 위탁보육 추진 시 우선 연계해 재원 아동 증가 유도 등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서울특별시, 2023).

물론 기존에 추진되었던 사업(위의 ①, ② 등의 사업)의 경우, 선정 조건 중 하나인 정원충족률이 낮아 대상이 되지 못했거나,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환경 개선 등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률이 낮았던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시적으로 정원충족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방안인지는 이후 성과 분석을 토대로 판단해야

17) 2020년 이후 행정처분(개선명령 이상) 또는 연내 폐원 예정 어린이집 제외

한다. 물론 컨설팅을 토대로 폐원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며,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 이외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투명한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정원충족률과 지리적 위치만을 기준에 두고 선정,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이 많아지면서 앞에서 제시한 매우 낮은 정원충족률을 토대로 폐원 기준 마련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서울시와 반대로 화성시의 경우는 2024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경기도 화성시 공고 제2024-544호). 그 배경으로는 어린이집 현원의 감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폐원지원금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정원공급률 50% 이상인 23개 지역[18] 소재 어린이집(2023년 12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정원충족률이 50% 미만인 어린이집 중 폐지 신고 수리가 완료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별 폐원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전략이다.[19]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18)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송산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등임

19) - 제외 대상: 행정처분 및 민원, 언론보도, 경찰 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폐원하는 시설
- 유의사항: 폐원지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3년 이내 동일 지역(읍·면·동) 또는 인가 제한 구역 내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재운영(대표자 또는 원장 직위)하는 경우 즉시 폐원지원금 환수 조치

〈표 4-9〉 폐원 시 규모별 지원금

(단위: 명)

어린이집 정원	20인 이하	21인~49인	50인 이상
지원금액	2,000천 원	3,000천 원	4,000천 원

출처: "2024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공고", 경기도 화성시 공고 제2024-544호, 영유아보육과. p.1의 표 재인용.

이러한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에서 제시한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 충족률의 격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면밀하게 분석하여 폐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돌봄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제하는 것이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직장 어린이집 등 영유아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총체적,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제3절 유아교육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1. 유아교육서비스 수요 파악 근거와 기준

유아교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대표적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20]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20) 유아교육법 시행령(2024) 제17조의 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유치원 취학 희망 여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학 희망 유치원의 유형
가. 공립 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나. 사립 유치원(다목에 해당하는 유치원은 제외한다)
다. 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 중 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되는 유치원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유치원은 유아 취학 수요조사에 따라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통폐합, 사립 유치원 인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급계획이 이루어진다.

유아교육의 필요성은 취학 전 준비단계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은 초등학교에 병설(유아교육법, 2023, 제9조)할 수 있고, 별도로 설립(유아교육법, 2023, 제9조의 2)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1] 유아교육법(2023) 제9조 2를 보면,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그리고 공공주택지구(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일정 비율을 포함하는 주택단지 포함) 등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면 초등학교 의무 설치뿐 아니라 유치원도 병설 또는 별도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지역별 · 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등)[22]를 토대로 「유아교육발전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의 세부 절차 ·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8. 31.]

21) 유아교육법(2023)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 3. 24.〉
제9조의 2(유치원의 설립의무)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의 경우에는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4.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5. 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
② 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학급 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22) 유아교육법 시행령(2024) 제1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기본계획」[23]을 수립하고, 유치원 공급계획을 마련한다.

제1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유아교육법 개정(2012.1.26. 공표, 2012.4.27. 시행)에 따라 시행하게 된 첫 기본계획이다.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유아 교육 기회 확대 전략”을

---

1.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투자의 확대 및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조의 2 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6. 21.〉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략-

[본조신설 2012. 4. 20.]

23) 유아교육법(2023) 제3조의 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⑦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의 지난해 추진 실적을 매년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본조신설 2012. 1. 26.]

토대로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2년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아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나, 약 4만 6천여 명(9.8%)은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예체능학원(27.0%), 영어학원(19.0%), 보습학원(18.7%) 등에 다니고 있거나, 전혀 다니지 않는 경우(4.6%)도 있다는 것이다. 5세 누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내기 위해(1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어느 기관에도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지원비 외 추가비용 부담(19.5%)'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4월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하동균 외, 2012. 4.), 학부모는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나, 시설이 부족하여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하동균 외, 2012. 4.;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3. 12. 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배치계획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 공립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유아교육법, 2015)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공립 유아교육기관 취학률이 2013년 19%에서 2015년 23.6%, 2017년 25.0%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교육복지정책국 유아정책과, 2018. 3, p. 3).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보면 지속적인 유치원 증설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취학아동 중 75%가 사립 유치원에 취학하여 국공-사립 간 학부모 부담 격차가 상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 선호도 및 지역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소극적인 국공립 유치원 확충으로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교육복지정책국 유아정책과, 2018. 3., p. 5).

이와 함께, 건전한 사립 유치원 육성·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기존 병, 단설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이외에 "매입형(공공위탁)",

“공영형 (사립)유치원”, “법인 전환(부모협동 등)” 등의 다양한 운영체계도 추진하였다. 매입형은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고 민간 경영자가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공영형 사립 유치원은 개인(사인) 유치원을 법인 유치원으로 전환할 경우(개방 이상 확보 등),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교육청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을 확보하여 국·공립에 준하여 운영한다는 전략이었다.[24] 2018년 시범운영(15개 내외)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교육복지정책국 유아정책과, 2018. 3., p. 15).

이러한 노력의 결과, 5년간(2018~2022년) 국·공립 유치원 총 4,028학급을 확충하였고 취원율은 30.9%로 2018년도 대비 6.1%p 상승하였다. 2022년 기준, 매입형 52개 원, 공영형 7개 원, 부모협동형 3개 원을 운영 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23, p.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4-6〕,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출생으로 인하여 2018년을 기점으로 재원 유아 수와 인가 학급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유아 모집의 어려움으로 사립은 연평균 약 200개 원씩 폐원 중(2018년 111개소→2019년 257개소→2020년 261개소 →2022년 154개소)이며 공립(병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1학급의 소규모 기관이 2018년 28.3%에서 2022년 29.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전체 국·공립 유치원 중 1학급 소규모 유치원은 49.6%에 달한다(관계부처 합동, 2023, p. 1).

24) 중앙정부의 공공형 어린이집,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과는 다름.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과 거의 유사함.

〔그림 4-12〕 국공립 유치원 학급 연평균 증가율(2013~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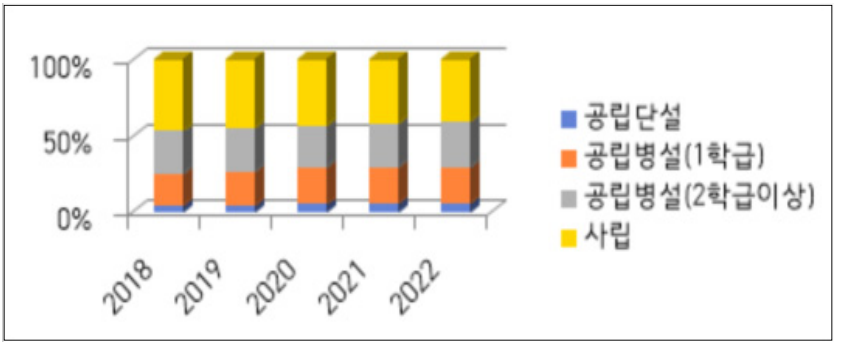

출처: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 p.1의 그림 재인용.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유보통합 이슈와 소규모 유치원 운영의 효율화, 공영형 유치원 모델 개발 등, 기존 유치원 지원을 토대로 한 유아교육서비스 수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신규택지 개발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단설 기관을 중심으로 신·증설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표 4-10〉에서 볼 수 있듯이 공립 단설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유아 단계 우수교육모델 확산 기반 마련(2024~), 유아·학부모의 통학 편의 제고를 위한 통학버스 배치(2022년 전체 대비 59%) 등이 주요 추진과제이다.

사립 유치원의 폐원과 관련하여서는 유아 수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의 자발적 폐원을 수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2023년)하고, 시·도교육청 폐원 과정 개선을 위한 폐원 규칙 등 관련 협의(예: 취원율 00% 이하 기준 등),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연계한 학습권 보호 강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2024년)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

〈표 4-10〉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유치원 공급 전략

<table>
<tr><th>구분</th><th>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추진과제</th><th>유치원 공급 전략</th></tr>
<tr><td></td><td>• 비전: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 추진과제: ① 유아교육 기회 확대 ② 유치원 운영 효율화, ③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④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⑤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td><td>• 유치원 신·증설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유아수용계획의 세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한다. 교육감이 유아 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td></tr>
<tr><td>제2차
유아교육
발전기본
계획
(2018
~2022)</td><td>• 비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교육문화 혁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선 실현
• 추진과제: ①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②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③ 교육공동체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④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td><td>• (지역 특성 고려한 단계적 확대) 지역특성(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단지 등), 인구동향(국공립 분담률),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단계적으로 신·증설
✓ 지역 여건, 수요를 고려하여 단설, 병설 등 다양한 공립 유치원 확충
• (재원부담 완화)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단설 유치원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추진(2018년)
✓ 공립 초·중·고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학교 용지 확보 경비 일부 부담
•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등 국·공립유치원 유형을 다양화함</td></tr>
<tr><td>제3차
유아교육
발전기본
계획
(2023
~2027)</td><td>• 비전: 국·공·사립의 상생발전과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분야 국가책임 강화
• 추진과제: ①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 ②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③ 교육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④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td><td>• 인구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택지개발 등 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단설 기관을 중심으로 신·증설 추진(2023~2027)
• 공립 유치원 유형별 지원 방향
<table>
<tr><th></th><th>공립 단설</th><th>공립 병설
(2학급 이상)</th><th>공립 병설
(1학급)</th></tr>
<tr><td>대상</td><td>557개</td><td>2,021개</td><td>2,538개</td></tr>
<tr><td>방향</td><td>공립
우수모델</td><td colspan="2">적정 규모화</td></tr>
<tr><td>내용</td><td>· 통학버스 의무 배치 서비스 개선</td><td colspan="2">· 구도심, 농어촌 등 특성에 맞는 규모화
· 행정인력, 통학버스 등 운영지원</td></tr>
</table></td></tr>
</table>

출처: 이 표는 아래 자료의 비전 및 추진과제, 유치원 공급 전략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1)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8. 3.
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2018.
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3.

2. 유아교육서비스 공급 기준

앞에서 제2차,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유치원 신·증설 계획이 실질적인 소관부서인 지자체 교육청을 중심으로 어떤 공급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 교육청(2024)은 교육 수요에 따른 선별적 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4~2030) 공립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립 유치원 확대 기준은 〈표 4-11〉에서 볼 수 있듯이,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 미설치 외 5개 조건에 부합한 경우 추진할 계획이다. 그 결과, 2023년에 공립 유치원 4개 원 신설(병설 4), 총 26개 학급을 신·증설하였고, 2024년에 공립 유치원 2개 원 신설(병설 2), 총 12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라고 한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

〈표 4-11〉 서울시 교육청 공립 유치원 확대 기준

(단위: 명)

구분	내용
병설	병설 유치원 미설치 초등학교 내 설립 여부 검토
	초등학교 활용 가능 교실을 활용하여 병설 유치원 신·증설
	개발지역 신설·이전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 설립
	체육관·급식실 신축 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병설 유치원 설립
	교사동 개축 시 병설유치원 설립 검토
단설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중·대규모 단설 유치원 설립
	초등학교 내 단설 유치원 설립

출처: "중점관리 대상 사업 사업내역서(제4조 제1항 관련)",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2024. 9. 20. 검색.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bbsSn=1160&q_bbsDocNo=2024093012130287 1&q_clsfNo=&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EA%B3%B5%EB%A6%BD%EC%9C%A0%EC%B9%98%EC%9B%90에서 p.1 사업개요의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표 재인용.

사립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의 유아배치계획을 토대로 설립 등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중부(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지원청의 경우, 사립 유치원 설립 원칙은 사립 유치원 취학 수요 유아 수가 사립 유치원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 가능한데, 사립 유치원 취학 수요 유아 수보다 사립 유치원 정원이 적더라도 해당 지역 수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공급 등의 현황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수요 파악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공립 유치원 신증설보다는 "매입형 유치원"을 확충한다는 전략에 집중하였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 유치원을 매입(폐원)하여 공립으로 전환·운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입은 교사(校舍), 교지(校地) 등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사립 유치원 교직원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고, 재원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아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유아 중 재원을 희망할 경우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통하여 승계가 가능하다(경기도교육청, 2019).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확충 계획에 따르면 〔그림 4-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유아(3~5세) 수 감소에 따라 유치원 원아 수도 감소하지만 지속적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수요(특히 정부의 신도시 정책 기조 유지 시) 등에 따라 유치원 수 및 학급 수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24). 다만, 유치원 확충을 신·증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여 병·단설과 달리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할지의 전략에 대해서는 공공성 및 서비스의 질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4-13〕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른 유치원 원아 수 및 유치원 수 전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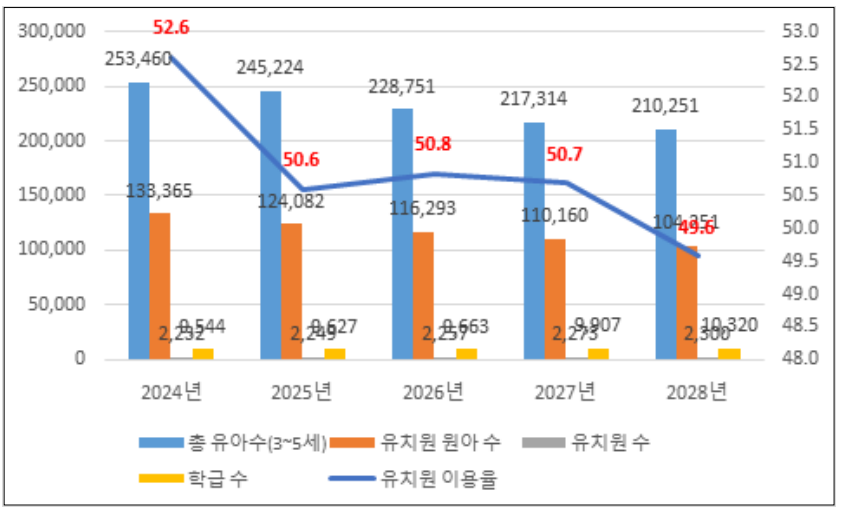

출처: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변경계획)", 경기도교육청, 2024. pp.9-12의 표(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누리과정 원아 수)에서 확인한 유치원 수치를 토대로 재구성함.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유아 취학 수요조사 결과(2023~2025년)에 따르면, 2023~2025년 공립 유치원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40.3%(공립병설 유치원 20.7%, 단설 유치원 19.7%)에 이르렀지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38.2%. 2024년 34.4%, 2025년 32.1%). 그에 따른 연도별 유아교육기관 수용률[25]을 살펴보면, 공립단설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사립 유치원의 수용률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25)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유아교육기관의 과부족 및 수용률을 공립병설 유치원, 공립단설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한정하여 계산함. 수용률 산식은 '수용률=(유아교육기관 정원/수요예상 인원) ×100'이며, '수용률〈100%'는 공급 부족, '수용률〉 100%'는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지역 특성상 도시개발지역(송도, 검단, 한들지구 등)의 경우는 유치원 신설 등으로 원아 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유치원 적령 아동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원아 수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유아교육법 제9조의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유치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광역시 교육청, 2024. 9.).

그렇다면 앞에서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립 유치원 공급은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선호 수요가 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공급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는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등(영어 포함)이 부모의 선호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아동의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4-12〉 지자체 교육청 유아배치 계획 수립

(단위: 명)

<table>
<tr><th colspan="2">지자체</th><th>출처</th><th>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사립 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th></tr>
<tr><td rowspan="2">서울시</td><td rowspan="2">강동·송파구 교육지원청</td><td rowspan="2">서울특별시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7호</td><td>• 2024~2026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 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table>
<tr><th>취학권역</th><th>취학권역</th><th>행정동</th><th>사립 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th></tr>
<tr><td rowspan="8">2024년도</td><td>강동송파1</td><td>길동, 천호3동, 둔촌1~2동</td><td>가능</td></tr>
<tr><td>강동송파4</td><td>명일1~2동, 고덕1~2동</td><td>가능</td></tr>
<tr><td>강동송파6</td><td>잠실2~4동, 잠실6동</td><td>가능</td></tr>
<tr><td>강동송파7</td><td>잠실본동, 잠실7동, 삼전동, 석촌동</td><td>가능</td></tr>
<tr><td>강동송파8</td><td>가락1동, 송파1~2동, 방이1~2동</td><td>가능</td></tr>
<tr><td>강동송파11</td><td>문정1~2동, 장지동, 위례동</td><td>가능</td></tr>
<tr><td>강동송파 2,3,5,9,10</td><td></td><td>불가능</td></tr>
<tr><td rowspan="3">2025년도</td><td colspan="2">강동송파 1,4,6,8,11</td><td>가능</td></tr>
<tr><td colspan="2">그 외</td><td>불가능</td></tr>
<tr><td colspan="2">강동송파 1,4,6,8,11</td><td>가능</td></tr>
<tr><td rowspan="2">2026년도</td><td colspan="2">강동송파 1,4,6,7,8,11</td><td>가능</td></tr>
<tr><td>그 외</td><td></td><td>불가능</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지자체</th><th>출처</th><th>유아배치계획에 따른 사립 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th></tr>
<tr><td></td><td>중부 교유 지원청 (종로구, 중구, 용산구)</td><td>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0호</td><td>
• 사립 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판단기준: 사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취학 수요와 사립 유치원 정원을 비교
✓ 원칙: 사립 유치원 취학 수요 유아 수가 사립 유치원 정원보다 적을 경우 설립 불가능
✓ 예외: 사립 유치원 취학 수요 유아 수보다 사립 유치원 정원이 적더라도 해당 지역 수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립 가능
<table>
<tr><th rowspan="2">취학 권역</th><th rowspan="2">자치구</th><th rowspan="2">행정동</th><th colspan="3">배치계획상 사립 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학년도)</th></tr>
<tr><th>2024</th><th>2025</th><th>2026</th></tr>
<tr><td>중부1</td><td>종로구</td><td>숭인1~2동, 창신1~3동, 혜화동, 이화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삼청동, 가회동</td><td>불가능</td><td>불가능</td><td>불가능</td></tr>
<tr><td>중부2</td><td>종로구</td><td>평창동, 부암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무악동, 교남동</td><td>불가능</td><td>불가능</td><td>불가능</td></tr>
<tr><td>중부3</td><td>중구</td><td>신당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광희동, 장충동</td><td>불가능</td><td>불가능</td><td>불가능</td></tr>
<tr><td>중부4</td><td>중구</td><td>중림동, 명동, 필동, 소공동, 회현동, 을지로동</td><td>불가능</td><td>불가능</td><td>불가능</td></tr>
<tr><td>중부5</td><td>용산구</td><td>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한강로동, 청파동, 원효1~2동, 효창동, 용문동</td><td>가능</td><td>가능</td><td>가능</td></tr>
<tr><td>중부6</td><td>용산구</td><td>한남동, 이태원1~2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촌1~2동</td><td>불가능</td><td>불가능</td><td>가능</td></tr>
</table>
</td></tr>
<tr><td>경기도</td><td>-</td><td>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197호</td><td>
• 2021년 건물 매입형 공립 유치원 모집 공고
✓ 선정 유치원 수
- 10개 원 내외(신청 현황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원(예정)일: 2022년 3월
✓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서 설립·운영 중인 유치원(휴·폐원 제외)
2) 설립자(법인) 소유의 단독부지, 단독건물의 유치원
3) 매입 대상 건물 전체를 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치원
4) 인가 10학급(특수학급 포함)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900㎡ 이상 유치원
</td></tr>
</table>

출처: 해당 지자체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서(공고문서 번호 위 참조)

제4절 소결

제4장에서는 정원충족률을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중앙과 지자체의 수급 결정 구조를 살펴보았다. 기관서비스에 관한 수급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공급 부족보다는 공급과잉 우려가 더 크며, 정원충족률이 낮은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공립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공립 기관의 공급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보육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를 검토한 결과, 지역의 수요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급 관리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육 수요 산출 방식과 기준, 그에 따른 보육 공급 방식은 연도별로 변화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의 보육 수요 추계는 실제 이용보다 많았으며,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였다. 오늘날 정부의 수요 추계는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서비스 이용 희망 비율을 바탕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이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수요 추계는 과소추계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별 수요추계를 하기에 적절한 기본 통계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공급은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3~2027)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공급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과 지역별 편차 완화 목표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상황을 고려한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민간의 공급은 인가제→신고제→인가제의 변화를 겪어왔으며, 현재는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과잉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최근 저출생으로 많은 지역에서 공급과잉을 경험하고 있지만 일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인프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기초지자체는 인가 제한 기준을 조정하여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인가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수급 관리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공급 부족보다 공급 과잉에 따른 폐원 기관에 대한 대응이다. 폐원에 따라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폐원 위기 기관을 지원하거나, 폐원지원금 등으로 폐원이 조금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서비스의 수급 결정은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3년마다 취학 권역별로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전수 조사한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수요조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유치원 또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공급과잉 우려와 폐원 기관에 대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공급과잉 우려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5장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돌봄 형태 및 서비스 이용
제3절 서비스 충분성과 수요
제4절 서비스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
제5절 소결

제 5 장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제1절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 욕구, 제도 변화에 따른 잠재적 서비스 수요 변화를 조사하고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업체의 패널을 활용하여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모 중 주양육자 1인을 조사하였다. 표본은 2024년 8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령별 인구분포에 비례하여 할당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9월 12일~9월 20일간 모바일 또는 웹을 통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하였다.

〈표 5-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목적	영유아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정책 수요에 대해 조사하고자 함
조사 대상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모 중 주양육자 1인
표본크기	1,481명 (목표 표본 1,500명) ※ 총 1,500명을 조사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19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표본추출	2024년 8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령별 인구 분포에 비례하여 할당함
조사 방법	모바일 또는 웹을 통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4년 9월 12일 ~ 2024년 9월 20일

응답자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481명 중 여성은 964명(65.1%), 남성은 517명(34.9%)이며 맞벌이 가구는 66.1%(13.0% 부부 중 1인 휴직)로 나타났다. 부부의 근로 유형을 살펴보면 부부 모두 전일제인 경우는 42.3%였다.

〈표 5-2〉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사례 수	전체
▣ 전체 ▣	(1,481)	100.0
응답자 성별		
남성	(517)	34.9
여성	(964)	65.1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4.1
만 1세	(226)	15.3
만 2세	(237)	16.0
만 3세	(254)	17.2
만 4세	(266)	18.0
만 5세 이상	(289)	19.5
미취학 자녀 수		
1명	(1,027)	69.3
2명	(422)	28.5
3명 이상	(32)	2.2
응답자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4)	7.7
전문대/대학교 졸업	(1,087)	73.4
대학원 졸업 이상	(280)	1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53.1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13.0
외벌이	(427)	28.8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5.1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42.3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20.1
둘 다 시간제/기타	(81)	5.5
전일제 외벌이	(376)	25.4
미취업+시간제/기타	(66)	4.5
둘 다 미취업	(34)	2.3

	사례 수	전체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111)	7.5
월 300만 원 ~ 500만 원 미만	(535)	36.1
월 500만 원 ~ 700만 원 미만	(470)	31.7
월 700만 원 이상	(365)	24.6
지역		
대도시	(571)	38.6
중소도시	(674)	45.5
농어촌	(236)	15.9

본 연구에서 응답자 특성 변수로 사용된 항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맞벌이 여부와 근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으며, 구분의 기준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 활용의 유연성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표 5-3〉 변수의 정의

	구분	정의
맞벌이 여부		
	맞벌이	부부 둘 다 취업 중인 경우
	맞벌이(1인 휴직 중)	부부 중 1인은 취업 중, 1인은 휴직 중인 경우
	외벌이	부부 중 1인은 취업 중, 1인은 미취업인 경우
	기타(2인 휴직/미취업)	부부 2인 모두 휴직 중, 모두 미취업인 경우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부부 둘 다 전일제 근로인 경우
	전일제+시간제/기타	부부 중 1인은 전일제, 1인은 시간제 또는 기타 ※ 기타에는 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포함됨
	둘 다 시간제/기타	부부 둘 다 시간제 또는 기타인 경우
	전일제 외벌이	부부 중 1인은 전일제, 1인은 미취업
	미취업+시간제/기타	부부 중 1인은 미취업, 1인은 시간제, 기타
	둘 다 미취업	부부 둘 다 미취업인 경우

제2절 돌봄 형태 및 서비스 이용

1. 영유아 돌봄 형태

가. 주요 돌봄서비스(사람)

막내 자녀의 낮 시간 돌봄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사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 0세의 경우 92.8%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만 2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양육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의 연령이었다. 즉 영아기에는 가정양육 경향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2세에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최고조에 달하고, 만 3세에서는 일부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다소 감소한다. 이후 만 4세에서는 어린이집 이용과 유치원 이용이 각각 47.4%, 42.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후 만 5세 이상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35.3%, 유치원 이용 52.2%로 조사되었다.

〈표 5-4〉 낮 시간 주요 돌봄 유형: 대분류

(단위: %, 명)

	사례 수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계
▣ 전체 ▣	(1,481)	28.6	50.6	19.4	0.7	0.7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92.8	4.8	0.0	0.0	2.4	100.0
만 1세	(226)	52.2	46.9	0.0	0.0	0.9	100.0
만 2세	(237)	13.5	86.5	0.0	0.0	0.0	100.0
만 3세	(254)	11.0	79.1	9.1	0.8	0.0	100.0
만 4세	(266)	9.0	47.4	42.5	1.1	0.0	100.0
만 5세 이상	(289)	9.3	35.3	52.2	2.1	1.0	100.0
X^2(df)		1,073.821(20)***					
미취학 자녀 수							
1명	(1,027)	25.1	49.6	24.1	0.7	0.5	100.0

	사례 수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계
2명	(422)	35.8	53.8	9.2	0.9	0.2	100.0
3명 이상	(32)	43.8	43.8	0.0	0.0	12.5	100.0
X^2(df)		125.07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20.1	56.5	22.0	0.8	0.6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55.2	33.3	10.4	1.0	0.0	100.0
외벌이	(427)	27.4	50.1	20.6	0.7	1.2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56.0	36.0	8.0	0.0	0.0	100.0
X^2(df)		127.744(12)***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111)	40.5	46.8	12.6	0.0	0.0	100.0
월 300만 원 ~ 500만 원 미만	(535)	28.8	51.2	19.3	0.2	0.6	100.0
월 500만 원 ~ 700만 원 미만	(470)	26.8	50.9	21.1	0.2	1.1	100.0
월 700만 원 이상	(365)	26.8	50.7	19.5	2.5	0.5	100.0
X^2(df)		31.546(12)**					

* p < .05, ** p < .01, *** p < .001

가정돌봄을 부모돌봄과 이 밖의 돌봄 유형으로 세분하고 기관돌봄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본 돌봄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미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저소득 가구,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 부모돌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미취학 자녀가 많은 경우,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만 0세에서 주요 돌봄으로 정부 운영의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3.8%로, 전 연령에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급여를 통해서 지원되는 영아종일제 이용수요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 가구 중에서도 1인이 휴직 중인 가구, 둘 다 미취업이거나 둘 다 휴직 중인 경우에도 부모돌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둘 다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경우 부모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5〉 응답자 특성에 따른 낮 시간 주요 돌봄 유형: 세부 분류

(단위: %, 명)

	사례 수	아동의 부모	아동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이웃 등 민간 돌보미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1]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2]	예·체능 학원[3]	시간제 보육 (정부 운영)	기타	계
▣ 전체 ▣	(1,481)	22.1	4.7	0.1	1.5	0.2	18.7	7.3	20.0	3.2	1.5	5.5	13.8	0.7	0.3	0.1	0.3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76.1	12.0	0.5	3.8	0.5	1.4	1.9	1.4	0.0	0.0	0.0	0.0	0.0	0.0	1.0	1.4	100.0
만 1세	(226)	41.6	8.8	0.0	1.8	0.0	20.8	12.4	12.4	1.3	0.0	0.0	0.0	0.0	0.4	0.0	0.4	100.0
만 2세	(237)	11.4	1.7	0.0	0.4	0.0	28.3	16.9	34.2	4.6	2.5	0.0	0.0	0.0	0.0	0.0	0.0	100.0
만 3세	(254)	5.5	3.5	0.0	1.2	0.8	26.4	11.8	35.4	4.7	0.8	4.3	4.7	0.8	0.0	0.0	0.0	100.0
만 4세	(266)	5.6	1.9	0.4	1.1	0.0	20.7	1.5	19.5	3.4	2.3	10.5	32.0	1.1	0.0	0.0	0.0	100.0
만 5세 이상	(289)	6.2	2.1	0.0	1.0	0.0	13.1	0.7	14.5	4.2	2.8	14.9	37.4	2.1	1.0	0.0	0.0	100.0
X^2 (df)		1,191.369(75)***																
미취학 자녀 수																		
1명	(1,027)	19.3	4.2	0.1	1.5	0.1	17.9	6.5	20.0	3.6	1.6	6.7	17.4	0.7	0.3	0.0	0.2	100.0
2명	(422)	27.7	5.7	0.2	1.7	0.5	20.4	9.2	20.9	2.1	1.2	3.1	6.2	0.9	0.2	0.0	0.0	100.0
3명 이상	(32)	37.5	6.3	0.0	0.0	0.0	21.9	6.3	9.4	3.1	3.1	0.0	0.0	0.0	0.0	6.3	6.3	100.0
X^2 (df)		202.964(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13.0	5.2	0.1	1.5	0.3	21.5	8.4	20.7	4.7	1.3	6.1	15.9	0.8	0.5	0.0	0.1	100.0
맞벌이(1인 휴직)	(192)	43.2	8.9	0.0	2.6	0.5	14.1	4.2	13.5	1.0	0.5	2.1	8.3	1.0	0.0	0.0	0.0	100.0
외벌이	(427)	25.3	1.4	0.2	0.5	0.0	17.1	6.6	22.5	1.6	2.3	6.3	14.3	0.7	0.0	0.5	0.7	100.0
기타(2인 휴직/미 취업)	(75)	45.3	6.7	0.0	4.0	0.0	10.7	8.0	14.7	1.3	1.3	4.0	4.0	0.0	0.0	0.0	0.0	100.0
X^2 (df)		183.889(45)***																

	사례 수	아동의 부모	아동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이웃 등 민간 돌보미	국공립 어린이 집	가정 어린이 집	민간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기타 어린이 집[1]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2]	예·체능 학원[3]	시간제 보육 (정부 운영)	기타	계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22.0	6.5	0.0	2.2	0.5	19.6	7.7	17.1	5.1	0.6	5.1	12.5	0.6	0.3	0.0	0.0	100.0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14.4	4.7	0.3	1.0	0.0	19.5	7.4	24.8	2.3	1.0	4.7	17.8	1.3	0.7	0.0	0.0	100.0
둘 다 시간제(기타)	(81)	22.2	6.2	0.0	3.7	0.0	22.2	6.2	12.3	0.0	4.9	8.6	12.3	0.0	0.0	0.0	1.2	100.0
전일제 외벌이	(376)	25.0	1.6	0.3	0.3	0.0	17.0	5.3	23.1	1.9	2.1	6.6	14.6	0.8	0.0	0.5	0.8	100.0
미취업+시간제(기타)	(66)	28.8	1.5	0.0	1.5	0.0	16.7	15.2	18.2	0.0	3.0	4.5	10.6	0.0	0.0	0.0	0.0	100.0
둘 다 미취업	(34)	44.1	5.9	0.0	0.0	0.0	8.8	8.8	17.6	2.9	2.9	2.9	5.9	0.0	0.0	0.0	0.0	100.0
X^2 (df)		129.545(75)****										129.545(75)****						
육아휴직																		
어머니만 사용	(491)	21.0	6.9	0.2	1.6	0.0	18.3	7.1	20.4	5.5	0.6	4.1	12.4	1.0	0.4	0.0	0.4	100.0
아버지만 사용	(97)	15.5	7.2	0.0	3.1	0.0	22.7	4.1	21.6	0.0	1.0	12.4	12.4	0.0	0.0	0.0	0.0	100.0
부모 모두 사용	(159)	28.9	3.1	0.0	3.1	0.0	23.3	6.9	13.8	3.8	0.0	3.8	10.7	1.3	1.3	0.0	0.0	100.0
모두 사용하지 않음	(734)	22.2	3.1	0.1	0.8	0.4	17.4	7.9	20.8	1.9	2.5	6.0	15.7	0.5	0.0	0.3	0.3	100.0
X^2 (df)		89.320(45)****										89.320(45)****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111)	32.4	6.3	0.9	0.9	0.0	17.1	7.2	14.4	1.8	6.3	3.6	9.0	0.0	0.0	0.0	0.0	100.0
월 300만 원~500만 원 미만	(535)	23.7	3.4	0.0	1.7	0.0	19.4	7.1	21.3	2.2	1.1	6.0	13.3	0.2	0.0	0.4	0.2	100.0
월 500만 원~700만 원 미만	(470)	21.7	4.5	0.0	0.6	0.0	18.7	8.3	19.4	3.0	1.5	6.2	14.9	0.2	0.4	0.0	0.6	100.0
월 700만 원 이상	(365)	17.0	6.3	0.3	2.5	0.8	18.1	6.3	20.5	5.2	0.5	4.7	14.8	2.5	0.5	0.0	0.0	100.0
X^2 (df)		101.159(45)****										101.159(45)****						

	사례 수	아동의 부모	아동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이웃 등 민간 돌보미	국공립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1]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2]	예·체능 학원[3]	시간제 보육 (정부 운영)	기타	계
지역																		
대도시	(571)	21.7	6.3	0.2	1.9	0.4	22.1	5.1	17.0	3.3	1.4	2.8	16.5	0.5	0.4	0.4	0.2	100.0
중소도시	(674)	21.2	4.2	0.1	1.5	0.1	15.7	10.2	21.1	3.1	1.6	7.1	12.2	1.2	0.3	0.0	0.3	100.0
농어촌	(236)	25.4	2.1	0.0	0.4	0.0	19.1	4.2	24.2	3.0	1.3	7.6	12.3	0.0	0.0	0.0	0.4	100.0
X^2 (df)		64.910(30)***										64.910(30)***						

주: 1) 기타 어린이집에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어린이집 등이 포함됨.
2) 반일제 이상 학원에는 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이 포함됨.
3) 예체능 학원에는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이 포함됨.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요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2.3%에 불과하여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영아기, 가정양육 중인 경우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용 기관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다소 낮았으며 국공립 유치원, 직장·기타 어린이집의 만족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6〉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요 돌봄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 전체 ▣	(1,481)	0.2	2.1	2.3	17.0	54.4	26.3	80.7	100.0	4.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0	2.9	3.8	26.8	45.5	23.9	69.4	100.0	3.9
만 1세	(226)	0.0	1.3	1.3	20.8	47.8	30.1	77.9	100.0	4.1
만 2세	(237)	0.0	2.5	2.5	19.8	52.3	25.3	77.6	100.0	4.0
만 3세	(254)	0.0	2.4	2.4	12.6	54.3	30.7	85.0	100.0	4.1
만 4세	(266)	0.4	0.8	1.1	13.5	62.8	22.6	85.3	100.0	4.1
만 5세 이상	(289)	0.0	2.8	2.8	11.8	60.2	25.3	85.5	100.0	4.1
F		3.1**(a)								
주요 돌봄1										
가정양육	(423)	0.5	2.4	2.8	29.3	45.4	22.5	67.8	100.0	3.9
기관돌봄 및 기타	(1,058)	0.1	2.0	2.1	12.1	58.0	27.8	85.8	100.0	4.1
t		-5.5***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77)	0.0	1.1	1.1	11.2	56.7	31.0	87.7	100.0	4.2
가정 어린이집	(108)	0.0	2.8	2.8	10.2	55.6	31.5	87.0	100.0	4.2
민간 어린이집	(296)	0.0	2.4	2.4	17.2	57.1	23.3	80.4	100.0	4.0
직장·기타 어린이집	(69)	0.0	2.9	2.9	5.8	49.3	42.0	91.3	100.0	4.3
국공립 유치원	(82)	0.0	2.4	2.4	6.1	58.5	32.9	91.5	100.0	4.2
사립 유치원	(205)	0.5	2.0	2.4	11.2	64.4	22.0	86.3	100.0	4.1
기타	(21)	0.0	0.0	0.0	14.3	66.7	19.0	85.7	100.0	4.1
F		3.0**								

* p < .05, ** p < .01, *** p < .001

나. 보조 돌봄서비스(사람)

막내 자녀의 낮 시간 돌봄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주요 돌봄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사람)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조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3.6%였다. 이를 제외한 76.4%는 주요 돌봄 외에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약 29.7%는 보조 돌봄을 하는 주체가 아동의 부모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낮 시간에 기관서비스 이용 이외에 부모가 돌봄을 추가로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밖에 보조 돌봄으로 22.8%가 조부모 돌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8.1%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로 기관서비스 이용 후 하원과 동시에 예·체능 학원으로 이동하고 부모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귀가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아이돌보미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부가 돌봄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3.5%, 2.2%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영아기에 이용 비율이 다소 높고 맞벌이면서 1인이 휴직 중인 경우나 둘 다 휴직 중인 경우에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정작 맞벌이 가구나 둘 다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용 비율이 낮았고 이들은 조부모 돌봄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직접 돌봄 시간의 유연성이 높은 가구의 틈새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5-7〉 응답자 특성에 따른 낮 시간 보조 돌봄 유형: 세부 분류

(단위: %, 명)

	사례 수	아동의 부모	아동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정부 운영)	이웃 등 민간 돌보미	국공립 어린이 집	가정 어린이 집	민간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예·체능 학원	시간제 보육 (정부 운영)	기타	없음	계
▣ 전체 ▣	(1,481)	29.7	22.8	1.0	3.5	1.3	2.0	0.9	1.7	0.3	0.5	0.8	0.9	8.1	2.2	0.6	23.6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2.9	32.1	0.5	6.7	1.4	1.9	1.9	1.4	0.5	0.0	0.0	0.0	0.0	3.8	1.0	35.9	100.0
만 1세	(226)	22.1	30.1	1.3	4.4	2.2	3.5	1.8	4.0	0.4	0.0	0.0	0.4	0.0	3.1	0.0	26.5	100.0
만 2세	(237)	37.1	24.1	0.4	3.4	0.8	1.7	1.3	1.7	0.0	0.0	0.0	0.0	1.3	3.0	0.0	25.3	100.0
만 3세	(254)	41.3	20.5	0.4	2.8	0.8	2.0	1.2	0.8	0.0	0.8	1.6	0.8	1.2	2.0	0.4	23.6	100.0
만 4세	(266)	36.5	17.7	1.1	3.0	2.3	2.6	0.0	1.5	0.4	0.0	0.4	1.5	12.0	1.1	0.4	19.5	100.0
만 5세 이상	(289)	25.3	15.9	2.1	1.7	0.3	0.7	0.0	1.0	0.3	1.7	2.4	2.4	28.4	1.0	1.7	14.9	100.0
X^2(df)		419.630(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23.1	28.8	1.3	3.4	1.7	2.2	1.0	1.8	0.4	0.4	1.1	0.9	10.3	2.0	0.6	21.0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27.1	24.5	1.6	6.8	2.1	3.6	0.5	2.1	0.0	0.5	0.0	1.0	3.6	2.1	0.0	24.5	100.0
외벌이	(427)	42.9	11.7	0.5	1.6	0.5	1.2	0.9	1.4	0.0	0.7	0.7	1.2	7.0	2.3	0.7	26.7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30.7	17.3	0.0	6.7	0.0	1.3	1.3	1.3	1.3	0.0	0.0	0.0	2.7	4.0	1.3	32.0	100.0
X^2(df)		131.903(45)***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18.7	31.3	1.6	4.3	2.1	1.9	1.1	2.4	0.0	0.3	1.0	0.8	7.0	2.1	0.6	24.8	100.0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35.2	21.1	0.0	3.0	1.3	2.7	0.3	1.0	1.0	0.0	1.0	1.0	11.7	2.3	0.7	17.4	100.0
둘 다 시간제/기타	(81)	22.2	25.9	3.7	8.6	0.0	4.9	2.5	0.0	1.2	2.5	0.0	1.2	11.1	1.2	0.0	14.8	100.0
전일제 외벌이	(376)	44.4	10.6	0.3	1.9	0.5	1.3	1.1	1.6	0.0	0.8	0.8	1.1	6.9	2.1	0.5	26.1	100.0
미취업+시간제/기타	(66)	30.3	18.2	1.5	1.5	0.0	0.0	0.0	1.5	0.0	0.0	0.0	1.5	7.6	3.0	1.5	33.3	100.0
둘 다 미취업	(34)	38.2	14.7	0.0	2.9	0.0	2.9	0.0	0.0	0.0	0.0	0.0	0.0	2.9	5.9	0.0	32.4	100.0
X^2(df)		201.711(75)***																

	사례 수	아동의 부모	아동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 돌보미 (정부 운영)	이웃 등 민간 돌보미	국공립 어린이 집	가정 어린이 집	민간 어린이 집	직장 어린이 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예·체능 학원	시간제 보육 (정부 운영)	기타	없음	계
육아휴직																		
어머니만 사용	(491)	24.4	30.5	1.0	2.6	1.4	2.2	1.2	0.8	0.2	1.0	0.6	0.4	7.5	1.0	0.6	24.2	100.0
아버지만 사용	(97)	37.1	16.5	1.0	6.2	2.1	1.0	1.0	2.1	0.0	0.0	0.0	1.0	8.2	3.1	0.0	20.6	100.0
부모 모두 사용	(159)	22.6	28.3	0.6	4.4	1.3	2.5	1.3	3.1	1.3	0.0	2.5	1.3	5.7	1.3	0.6	23.3	100.0
모두 사용하지 않음	(734)	33.8	17.2	1.1	3.5	1.1	1.9	0.7	1.9	0.1	0.3	0.7	1.2	9.0	3.1	0.7	23.7	100.0
X^2(df)		81.809(45)**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111)	28.8	11.7	1.8	5.4	0.0	1.8	0.9	3.6	0.0	0.9	0.0	0.0	8.1	4.5	0.9	31.5	100.0
월 300만 원 ~ 500만 원 미만	(535)	37.4	18.9	1.1	3.6	0.7	1.7	0.6	0.9	0.0	0.2	0.9	0.9	6.2	1.9	0.7	24.3	100.0
월 500만 원 ~ 700만 원 미만	(470)	27.0	23.8	1.3	3.4	0.9	1.9	1.1	1.1	0.4	0.6	0.6	1.3	9.8	2.1	0.2	24.5	100.0
월 700만 원 이상	(365)	22.2	30.4	0.3	3.0	3.0	2.7	1.4	3.0	0.5	0.5	1.1	0.8	8.8	2.2	0.8	19.2	100.0
X^2(df)		89.450(45)***																

* p < .05, ** p < .01, *** p < .001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요 돌봄서비스 이외에 추가적인 보조 돌봄서비스(사람)를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주된 이유는 '근로시간이 길어 주요 돌봄서비스 이용만으로는 부족해서(27.4%)'이며 그다음 이유로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서(20.9%)', '기관서비스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11.8%)', '예·체능, 영어 등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10.3%)'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 대도시, 농어촌 가구의 경우 '근로시간이 길어 주요 돌봄서비스 이용만으로는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 육아 부담 해소와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부가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는 영아기,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표 5-8〉 응답자 특성에 따른 막내 자녀 돌봄을 위해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사례 수	기관서비스 내용 및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기관서비스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길어 주요 돌봄 서비스 이용만으로는 부족해서	장시간 기관 이용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이가 힘들어 해서)	부모의 육아 부담(신체적·정신적)을 완화하고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체능, 영어 등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주요 돌봄 서비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부가 돌봄 비용이 부담이 없어서	기타	계
▣ 전체 ▣	(1,131)	4.9	11.8	27.4	15.6	20.9	10.3	4.2	3.5	1.5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34)	6.0	10.4	22.4	9.7	41.0	2.2	5.2	2.2	0.7	100.0
만 1세	(166)	5.4	12.0	27.1	16.3	27.7	2.4	4.2	3.0	1.8	100.0
만 2세	(177)	3.4	11.9	28.8	21.5	24.3	2.3	2.8	4.0	1.1	100.0
만 3세	(194)	2.6	16.0	24.2	17.5	19.1	9.8	5.7	3.1	2.1	100.0
만 4세	(214)	7.0	10.3	29.4	17.8	8.9	16.4	3.7	4.2	2.3	100.0
만 5세 이상	(246)	4.9	10.2	30.1	11.0	14.6	20.7	3.7	4.1	0.8	100.0
X^2(df)		144.660(40)***									
미취학 자녀 수											
1명	(798)	4.9	12.2	28.2	17.3	17.5	11.5	3.5	3.6	1.3	100.0
2명	(311)	4.8	11.3	25.7	11.9	27.0	7.4	6.1	3.5	2.3	100.0
3명 이상	(22)	4.5	4.5	22.7	9.1	54.5	4.5	0.0	0.0	0.0	100.0
X^2(df)		40.053(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2)	4.7	11.4	36.7	15.6	13.0	8.8	4.7	3.5	1.6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45)	5.5	13.1	27.6	13.8	29.7	6.2	2.8	0.7	0.7	100.0
외벌이	(313)	4.2	11.8	10.2	16.0	31.9	15.3	3.5	5.1	1.9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51)	9.8	11.8	19.6	19.6	23.5	7.8	5.9	2.0	0.0	100.0
X^2(df)		121.888(24)***									

	사례 수	기관서비스 내용 및 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기관서비스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근로시간이 길어 주요 돌봄 서비스 이용만으로는 부족해서	장시간 기관 이용이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이가 힘들어 해서)	부모의 육아 부담(신체적·정신적)을 완화하고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체능, 영어 등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주요 돌봄 서비스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부가 돌봄 비용이 부담이 없어서	기타	계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76)	5.3	6.6	26.3	15.8	18.4	10.5	10.5	1.3	5.3	100.0
월 300만 원 ~ 500만 원 미만	(405)	4.7	12.3	19.8	16.5	26.2	10.6	4.7	4.7	0.5	100.0
월 500만 원 ~ 700만 원 미만	(355)	4.5	12.1	30.7	12.1	19.4	11.0	3.4	4.2	2.5	100.0
월 700만 원 이상	(295)	5.4	11.9	34.2	18.6	15.9	8.8	2.7	1.7	0.7	100.0
X^2(df)		61.726(24)***									
지역											
대도시	(453)	6.6	12.1	29.4	12.1	22.3	9.5	3.8	2.9	1.3	100.0
중소도시	(510)	3.7	12.5	24.5	19.0	19.6	9.4	5.1	4.3	1.8	100.0
농어촌	(168)	3.6	8.3	31.0	14.9	20.8	14.9	2.4	3.0	1.2	100.0
X^2(df)		26.624(16)*									
주요 돌봄1											
가정양육	(295)	9.2	13.2	20.0	10.2	37.3	2.0	4.1	3.1	1.0	100.0
기관돌봄 및 기타	(836)	3.3	11.2	30.0	17.6	15.1	13.2	4.2	3.7	1.7	100.0
X^2(df)		110.266(8)***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보조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3.6%로, 주요 돌봄의 불만족 비율 2.3%보다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만 1세의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았다. 주요 돌봄으로 기관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가정양육 중인 경우 보조 돌봄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가정양육 중인 경우 현재 이용 중인 돌봄서비스(사람)에 대한 만족도가 기관서비스 이용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5-9〉 응답자 특성에 따른 보조 돌봄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 전체 ▣	(1,131)	0.7	2.9	3.6	24.3	49.0	23.1	72.1	100.0	3.9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34)	0.7	3.7	4.5	27.6	48.5	19.4	67.9	100.0	3.8
만 1세	(166)	1.8	4.2	6.0	18.7	51.8	23.5	75.3	100.0	3.9
만 2세	(177)	1.7	3.4	5.1	20.9	42.4	31.6	74.0	100.0	4.0
만 3세	(194)	0.5	1.5	2.1	24.7	47.9	25.3	73.2	100.0	4.0
만 4세	(214)	0.0	3.7	3.7	26.2	51.4	18.7	70.1	100.0	3.9
만 5세 이상	(246)	0.0	1.6	1.6	26.8	50.8	20.7	71.5	100.0	3.9
F					1.0					
주요 돌봄										
가정양육	(295)	0.3	4.1	4.4	27.5	48.8	19.3	68.1	100.0	3.8
기관돌봄 및 기타	(836)	0.8	2.5	3.3	23.2	49.0	24.4	73.4	100.0	3.9
t					-2.0*					

* p < .05, ** p < .01, *** p < .001

다. 현재 돌봄과 희망 돌봄의 일치

현재의 주요 돌봄과 보조 돌봄의 조합이 자신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과 일치하는지 주관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로 조사되었다. 맞벌이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맞벌이면서 1인이 휴직 중인 경우보다 10%p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 아버지가 사용하거나, 부부가 사용한 경우 어머니만 사용한 경우보다 일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10〉 현재 돌봄과 희망 돌봄 유형의 일치 여부에 대한 응답

(단위: %, 명)

	사례 수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계
▣ 전체 ▣	(1,481)	79.3	20.7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82.3	17.7	100.0
만 1세	(226)	77.0	23.0	100.0
만 2세	(237)	82.3	17.7	100.0
만 3세	(254)	82.7	17.3	100.0
만 4세	(266)	76.3	23.7	100.0
만 5세 이상	(289)	76.5	23.5	100.0
X^2(df)			7.78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75.9	24.1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85.9	14.1	100.0
외벌이	(427)	82.4	17.6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81.3	18.7	100.0
X^2(df)			13.598(3)**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77.3	22.7	100.0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76.5	23.5	100.0
둘 다 시간제/기타	(81)	88.9	11.1	100.0
전일제 외벌이	(376)	83.2	16.8	100.0
미취업+시간제/기타	(66)	78.8	21.2	100.0
둘 다 미취업	(34)	76.5	23.5	100.0
X^2(df)			11.205(5)*	

	사례 수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계
육아휴직				
어머니만 사용	(491)	74.9	25.1	100.0
아버지만 사용	(97)	79.4	20.6	100.0
부모 모두 사용	(159)	82.4	17.6	100.0
모두 사용하지 않음	(734)	81.6	18.4	100.0
X^2 (df)			8.980(3)*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111)	82.9	17.1	100.0
월 300만 원 ~ 500만 원 미만	(535)	85.0	15.0	100.0
월 500만 원 ~ 700만 원 미만	(470)	76.6	23.4	100.0
월 700만 원 이상	(365)	73.4	26.6	100.0
X^2 (df)			21.429(3)***	

* p < .05, ** p < .01, *** p < .001

라. 연령에 따른 희망 돌봄 유형

연령별로 향후 원하는 주요 돌봄 유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개월 수 이상의 시기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각 개월에 해당하는 응답자 수는 차이가 난다. 아동의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12개월까지는 약 90% 내외로 매우 높으며 12개월~18개월 미만은 63.8%, 18개월~36개월 미만은 47.0%로 조사되었다. 기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만 3세 이상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해당 연령에 도래하지 않은 응답자들 다수가 포함된 상황으로, 이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미래에 부모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11〉 연령별 향후 희망하는 주요 돌봄

(단위: %, 명)

응답자의 막내 자녀 월령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기타[2]	계	사례 수
	아동의 부모	아동 의 부모 외	기타 친인척 및 이웃 등 민간 돌보미	아이 돌보미	국공립	가정	민간 등 기타 어린이집[1]	국공립	사립				
3개월 미만	90.0	2.0	0.0	8.0	0.0	0.0	0.0	0.0	0.0	0.0	0.0	100.0	(50)
3개월~6개월 미만	89.4	4.8	1.9	2.9	0.0	1.0	0.0	0.0	0.0	0.0	0.0	100.0	(104)
6개월~12개월 미만	88.5	1.4	0.5	3.8	3.3	1.9	0.0	0.0	0.0	0.5	0.0	100.0	(209)
12개월~18개월 미만	63.8	6.6	0.9	4.7	13.8	5.9	3.8	0.6	0.0	0.0	0.0	100.0	(320)
18개월~36개월 미만	47.0	3.6	0.9	4.0	25.4	6.7	11.5	0.6	0.0	0.0	0.3	100.0	(672)
만 3세~4세 미만	28.7	3.2	1.2	2.5	33.6	3.8	16.2	6.6	3.3	0.3	0.5	100.0	(926)
만 4세~취학 전까지	26.7	3.7	0.7	4.2	16.2	0.6	10.7	20.6	13.9	0.3	2.3	100.0	(1481)

주: 응답자의 막내 자녀 월령을 포함하여 월령별로 향후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예를 들어 막내 자녀의 월령이 31개월일 경우, 18개월~36개월 미만, 만 3세~4세 미만, 만 4세~취학 전까지의 향후 희망 돌봄(주요/보조)을 응답할 수 있음.
1) 민간 등 기타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2)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예체능 학원(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기타

보조 돌봄으로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조사한 결과, 보조 돌봄으로 아동의 조부모 돌봄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만 3세 이상의 경우에서도 보조 돌봄으로 부모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아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관서비스 지원과 함께 시간 지원을 통해 부모의 돌봄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5-12〉 연령별 향후 희망하는 보조 돌봄

(단위: %, 명)

응답자의 막내 자녀 월령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 보육	기타	비해당	계	사례 수
	아동의 부모	아동 의 부모 외	기타 친인척 및 이웃 등 민간 돌보미	아이 돌보미	국공립	가정	민간 등 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3개월 미만	8.0	44.0	2.0	36.0	4.0	0.0	0.0	2.0	0.0	0.0	2.0	2.0	100.0	(50)
3개월~6개월 미만	4.8	49.0	1.9	23.1	5.8	0.0	1.9	1.0	0.0	3.8	0.0	8.7	100.0	(104)
6개월~12개월 미만	4.8	50.2	4.8	18.2	4.3	1.4	1.9	0.5	0.0	6.2	0.5	7.2	100.0	(209)
12개월~18개월 미만	14.7	32.5	3.8	15.3	14.1	2.5	3.1	0.6	0.0	5.3	1.6	6.6	100.0	(320)
18개월~36개월 미만	22.0	24.6	3.1	13.7	15.2	3.0	5.4	0.3	0.0	5.7	1.9	5.2	100.0	(672)
만 3세~4세 미만	28.3	16.4	2.5	14.1	12.2	1.5	4.4	1.5	0.8	7.1	6.8	4.3	100.0	(926)
만 4세~취학 전까지	23.6	15.9	2.7	11.7	6.6	0.4	2.8	4.7	2.8	5.6	19.5	3.7	100.0	(1481)

주: 응답자의 막내 자녀 월령을 포함하여 월령별로 향후 희망하는 돌봄 유형을 응답하도록 하였음. 예를 들어 막내 자녀의 월령이 31개월일 경우, 18개월~36개월 미만, 만 3세~4세 미만, 만 4세~취학 전까지의 향후 희망 돌봄(주요/보조)을 응답할 수 있음.
1) 민간 등 기타 어린이집 :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부모협동 등)
2) 기타: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학원, 놀이학교, 유아체능단 등), 예체능 학원(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기타

마. 긴급돌봄

아이가 아파서 평소 이용하는 기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주요 돌봄자가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는, 가끔 있음이 68.1%, 자주 있음이 12.0%로 나타났다. 80.1%의 가구에서 긴급돌봄의 상황을 경험하였고, 맞벌이 가구, 기관돌봄 중인 경우 긴급돌봄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긴급돌봄 필요 정도

(단위: 명, %, 점)

	사례 수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①+② 없음	③ 가끔 있음	④ 자주 있음	③+④ 있음	계	평균
▣ 전체 ▣	(1,481)	3.0	16.9	19.9	68.1	12.0	80.1	100.0	2.9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3.8	20.1	23.9	63.6	12.4	76.1	100.0	2.9
만 1세	(226)	4.0	20.4	24.3	64.2	11.5	75.7	100.0	2.8
만 2세	(237)	3.4	12.2	15.6	71.3	13.1	84.4	100.0	2.9
만 3세	(254)	2.8	18.1	20.9	66.1	13.0	79.1	100.0	2.9
만 4세	(266)	1.1	16.2	17.3	71.1	11.7	82.7	100.0	2.9
만 5세 이상	(289)	3.1	15.6	18.7	70.9	10.4	81.3	100.0	2.9
F					1.1(a)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1.9	11.8	13.7	71.4	14.9	86.3	100.0	3.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3.6	22.4	26.0	63.0	10.9	74.0	100.0	2.8
외벌이	(427)	4.9	23.0	27.9	64.6	7.5	72.1	100.0	2.8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1.3	22.7	24.0	66.7	9.3	76.0	100.0	2.8
F					15.9***(a)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2.2	13.7	16.0	68.7	15.3	84.0	100.0	3.0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1.7	14.8	16.4	72.5	11.1	83.6	100.0	2.9
둘 다 시간제/기타	(81)	3.7	12.3	16.0	69.1	14.8	84.0	100.0	3.0
전일제 외벌이	(376)	4.3	24.5	28.7	63.6	7.7	71.3	100.0	2.8
미취업+시간제/기타	(66)	7.6	12.1	19.7	72.7	7.6	80.3	100.0	2.8
둘 다 미취업	(34)	2.9	32.4	35.3	58.8	5.9	64.7	100.0	2.7
F					7.5***(a)				

	사례 수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①+② 없음	③ 가끔 있음	④ 자주 있음	③+④ 있음	계	평균
주요 돌봄									
가정양육	(423)	5.0	21.3	26.2	62.9	10.9	73.8	100.0	2.8
기관돌봄 및 기타	(1,058)	2.2	15.2	17.4	70.2	12.4	82.6	100.0	2.9
t		-3.4**							

* p < .05, ** p < .01, *** p < .001

긴급돌봄이 가끔 있거나 자주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어떻게 하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돌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각각 1.3%, 1.7%에 불과해, 이웃이나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는 비율 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처 방법

(단위: %, 명)

	사례 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가를 낸다	조부모 또는 친인척 도움을 받는다	이웃,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정부 운영)를 이용한다	기타	계
▣ 전체 ▣	(1,186)	59.9	34.3	2.3	1.7	1.3	0.6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59)	54.7	39.0	1.9	2.5	1.9	0.0	100.0
만 1세	(171)	53.8	36.3	2.9	3.5	1.8	1.8	100.0
만 2세	(200)	63.0	32.5	2.0	0.0	2.5	0.0	100.0
만 3세	(201)	60.2	34.3	1.0	2.5	1.0	1.0	100.0
만 4세	(220)	66.8	28.6	3.2	0.9	0.0	0.5	100.0
만 5세 이상	(235)	58.3	36.6	2.6	1.3	0.9	0.4	100.0
X^2 (df)		32.982(25)						

* p < .05, ** p < .01, *** p < .001

긴급돌봄이 가끔 있거나 자주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대처하는 어려움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5-15〉 긴급돌봄 대처의 어려움 정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어려움 없음	② 거의 어려움 없음	①+② 어려움 없음	③ 다소 어려움 있음	④ 매우 어려움 있음	③+④ 어려움 있음	계	평균
▣ 전체 ▣	(1,186)	0.7	10.5	11.1	63.7	25.1	88.9	100.0	3.1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59)	0.6	8.8	9.4	67.3	23.3	90.6	100.0	3.1
만 1세	(171)	1.2	9.9	11.1	67.3	21.6	88.9	100.0	3.1
만 2세	(200)	0.5	12.5	13.0	57.5	29.5	87.0	100.0	3.2
만 3세	(201)	1.0	11.4	12.4	60.7	26.9	87.6	100.0	3.1
만 4세	(220)	0.5	10.9	11.4	61.4	27.3	88.6	100.0	3.2
만 5세 이상	(235)	0.4	8.9	9.4	68.9	21.7	90.6	100.0	3.1
F					0.3(a)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9)	0.4	8.7	9.1	64.1	26.8	90.9	100.0	3.2
맞벌이(1인 휴직 중)	(142)	0.0	4.9	4.9	71.1	23.9	95.1	100.0	3.2
외벌이	(308)	0.6	16.2	16.9	61.0	22.1	83.1	100.0	3.1
기타(2인 휴직/미취업)	(57)	5.3	14.0	19.3	56.1	24.6	80.7	100.0	3.0
F					4.5**				

* p < .05, ** p < .01, *** p < .001

2. 기관보육 영유아

가. 처음 기관 이용 경험

현재 주요 돌봄으로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를 이용한다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현재 이용하는 기관과 별도로 처음 기관을 이용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전에 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19.4%이며 12개월~24개월 미만은 50.4%, 24개월~36개월 미만은 20.1%로 69.8%가 24개월 이전에 기관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기관 이용 시기는 18.8개월로 희망한 시기 21.8개월과 약 3개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첫 이용 시기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전일제 근로인 경우 기관 이용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6〉 기관서비스 처음 이용 시기와 희망 시기

(단위: %, 개월, 명)

		실제 이용 시기						희망 이용 시기
	사례 수	12개월 미만	12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계	평균	평균
▣ 전체 ▣	(1,048)	19.4	50.4	20.1	10.1	100.0	18.8	21.8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	100.0	0.0	0.0	0.0	100.0	8.1	13.1
만 1세	(106)	30.2	69.8	0.0	0.0	100.0	12.5	16.8
만 2세	(205)	24.9	58.0	17.1	0.0	100.0	15.8	19.1
만 3세	(226)	17.3	54.9	23.9	4.0	100.0	18.1	21.2
만 4세	(242)	11.6	44.6	25.6	18.2	100.0	21.7	24.5
만 5세 이상	(259)	16.6	39.8	23.2	20.5	100.0	22.0	24.3
X^2(df)		190.543(15)***						
미취학 자녀 수								
1명	(764)	18.5	47.0	22.3	12.3	100.0	19.6	22.6
2명	(270)	21.5	58.9	15.2	4.4	100.0	16.7	19.7
3명 이상	(14)	28.6	71.4	0.0	0.0	100.0	11.9	16.4
X^2(df)		29.84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4)	23.1	53.8	15.2	7.9	100.0	17.2	20.7
맞벌이(1인 휴직 중)	(86)	17.4	45.3	20.9	16.3	100.0	20.5	22.5
외벌이	(305)	12.5	45.6	29.2	12.8	100.0	21.3	23.6
기타(2인 휴직/미취업)	(33)	18.2	42.4	27.3	12.1	100.0	20.6	22.7
X^2(df)		45.272(9)***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428)	26.4	54.0	12.1	7.5	100.0	16.5	19.9
전일제+시간제/기타	(235)	17.0	50.6	21.7	10.6	100.0	19.2	22.4
둘 다 시간제/기타	(54)	18.5	50.0	20.4	11.1	100.0	19.1	22.4
전일제 외벌이	(269)	11.9	46.1	29.4	12.6	100.0	21.3	23.7
미취업+시간제/기타	(45)	15.6	40.0	31.1	13.3	100.0	21.0	23.7
둘 다 미취업	(17)	5.9	52.9	23.5	17.6	100.0	22.8	23.2
X^2(df)		58.567(15)***						

* p < .05, ** p < .01, *** p < .001

희망하는 시기보다 2개월 이상 일찍 기관에 보낸 사례에 대해 기관에 빨리 보내게 된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정양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50.1%)',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21.9%)', '대기했던 기관에 자리가 예상보다 빨리 생겨서(15.7%)' 등이 조사되었다.

〈표 5-17〉 희망 시기보다 기관에 일찍 보낸 이유

(단위: %, 명)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계
▣ 전체 ▣	(439)	50.1	21.9	15.7	8.0	2.7	1.6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5)	60.0	20.0	20.0	0.0	0.0	0.0	100.0
만 1세	(55)	52.7	27.3	16.4	3.6	0.0	0.0	100.0
만 2세	(93)	41.9	25.8	24.7	5.4	2.2	0.0	100.0
만 3세	(96)	49.0	22.9	14.6	9.4	1.0	3.1	100.0
만 4세	(95)	53.7	21.1	11.6	7.4	4.2	2.1	100.0
만 5세 이상	(95)	53.7	14.7	11.6	12.6	5.3	2.1	100.0
X^2 (df)		27.893(25)						

주: ① 가정양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②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③ 보내고 싶어서 대기했던 기관에 자리가 예상보다 빨리 생겨서, ④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⑤ 주변 또래 아이들이 많이 다녀서, ⑥ 기타

* $p < .05$, ** $p < .01$, *** $p < .001$

희망하는 시기보다 2개월 이상 늦게 기관에 보낸 경우 기관에 늦게 보내게 된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보내고 싶은 기관에 자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1.0%로 조사되었다.

〈표 5-18〉 희망 시기보다 기관에 늦게 보낸 이유

(단위: %, 명)

	사례 수	보내고 싶어한 (대기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리가 없어서	아이가 기관 적응을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기타	가정양육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 때문에	계
▣ 전체 ▣	(196)	51.0	19.4	18.4	9.7	1.5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	0.0	0.0	0.0	100.0	0.0	100.0
만 1세	(14)	71.4	7.1	21.4	0.0	0.0	100.0
만 2세	(43)	55.8	11.6	25.6	4.7	2.3	100.0
만 3세	(43)	58.1	18.6	16.3	7.0	0.0	100.0
만 4세	(45)	48.9	22.2	20.0	8.9	0.0	100.0
만 5세 이상	(50)	38.0	28.0	12.0	18.0	4.0	100.0
X^2(df)		30.005(20)					

* p 〈 .05, ** p 〈 .01, *** p 〈 .001

나. 현재 이용 기관 경험

현재 보내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표 5-19〉 참고), 무상보육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지리적 접근성(거리 및 등하원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리적 접근성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용 기관 유형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났다(〈표 5-20〉 참고). 가정 어린이집이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립 유치원과 직장·기타 어린이집 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5-19〉 현재 다니는 기관의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지리적 접근성	(1,048)	1.4	7.3	8.7	14.9	38.6	37.8	76.4	100.0	4.0
비용 부담	(1,048)	1.9	9.4	11.4	22.4	36.6	29.6	66.2	100.0	3.8
서비스 내용 및 질	(1,048)	0.3	4.0	4.3	17.7	49.3	28.7	78.1	100.0	4.0
서비스 이용 시간	(1,048)	0.9	4.1	5.0	19.2	47.1	28.7	75.9	100.0	4.0
기관 유형	(1,048)	0.7	3.4	4.1	20.9	44.2	30.8	75.0	100.0	4.0

〈표 5-20〉 현재 다니는 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 전체 ▣	(1,048)	1.4	7.3	8.7	14.9	38.6	37.8	76.4	100.0	4.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	0.0	10.0	10.0	20.0	30.0	40.0	70.0	100.0	4.0
만 1세	(106)	1.9	5.7	7.5	10.4	38.7	43.4	82.1	100.0	4.2
만 2세	(205)	2.4	7.8	10.2	13.2	33.2	43.4	76.6	100.0	4.1
만 3세	(226)	0.4	7.5	8.0	15.5	33.6	42.9	76.5	100.0	4.1
만 4세	(242)	0.4	7.9	8.3	14.5	44.2	33.1	77.3	100.0	4.0
만 5세 이상	(259)	2.3	6.6	8.9	17.8	42.5	30.9	73.4	100.0	3.9
F		1.3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77)	1.1	5.1	6.1	13.0	36.5	44.4	80.9	100.0	4.2
가정 어린이집	(108)	1.9	4.6	6.5	12.0	25.9	55.6	81.5	100.0	4.3
민간 어린이집	(296)	1.0	8.4	9.5	15.2	40.9	34.5	75.3	100.0	4.0
직장·기타 어린이집	(69)	2.9	11.6	14.5	13.0	39.1	33.3	72.5	100.0	3.9
국공립 유치원	(82)	1.2	11.0	12.2	12.2	32.9	42.7	75.6	100.0	4.1
사립 유치원	(205)	2.0	6.8	8.8	20.0	45.9	25.4	71.2	100.0	3.9
기타	(11)	0.0	9.1	9.1	18.2	63.6	9.1	72.7	100.0	3.7
F		4.0**								

* p 〈 .05, ** p 〈 .01, *** p 〈 .001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이며, 영아기보다 유아기에 비용 부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상보육이 제공되기는 하나 기관 유형에 따라 부모의 부담 수준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21〉 현재 다니는 기관의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 전체 ▣	(1,048)	1.9	9.4	11.4	22.4	36.6	29.6	66.2	100.0	3.8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	0.0	10.0	10.0	10.0	40.0	40.0	80.0	100.0	4.1
만 1세	(106)	0.9	3.8	4.7	15.1	39.6	40.6	80.2	100.0	4.2
만 2세	(205)	0.5	10.2	10.7	20.5	39.5	29.3	68.8	100.0	3.9
만 3세	(226)	1.8	9.3	11.1	25.2	36.7	27.0	63.7	100.0	3.8
만 4세	(242)	2.5	11.2	13.6	26.0	36.4	24.0	60.3	100.0	3.7
만 5세 이상	(259)	3.1	9.7	12.7	21.6	33.2	32.4	65.6	100.0	3.8
F		3.5**(a)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77)	0.7	3.6	4.3	17.3	40.1	38.3	78.3	100.0	4.1
가정 어린이집	(108)	0.9	2.8	3.7	21.3	42.6	32.4	75.0	100.0	4.0
민간 어린이집	(296)	1.4	14.2	15.5	28.0	38.2	18.2	56.4	100.0	3.6
기타 어린이집	(69)	0.0	2.9	2.9	14.5	29.0	53.6	82.6	100.0	4.3
국공립 유치원	(82)	0.0	0.0	0.0	7.3	25.6	67.1	92.7	100.0	4.6
사립 유치원	(205)	6.3	17.6	23.9	29.8	35.1	11.2	46.3	100.0	3.3
기타	(11)	0.0	54.5	54.5	36.4	9.1	0.0	9.1	100.0	2.5
F		37.4***(a)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이용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볼 때, 만 2세의 경우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고 만족하는 비율은 다소 낮았다. 기관 유형에 따라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 직장·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고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5-22〉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 전체 ▣	(1,048)	0.3	4.0	4.3	17.7	49.3	28.7	78.1	100.0	4.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	0.0	0.0	0.0	20.0	60.0	20.0	80.0	100.0	4.0
만 1세	(106)	0.0	1.9	1.9	18.9	38.7	40.6	79.2	100.0	4.2
만 2세	(205)	0.0	5.9	5.9	24.4	40.0	29.8	69.8	100.0	3.9
만 3세	(226)	0.4	4.0	4.4	15.5	52.2	27.9	80.1	100.0	4.0
만 4세	(242)	0.0	4.1	4.1	17.8	54.5	23.6	78.1	100.0	4.0
만 5세 이상	(259)	0.8	3.5	4.2	13.5	53.3	29.0	82.2	100.0	4.1
F		1.6(a)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77)	0.0	4.3	4.3	13.7	49.8	32.1	81.9	100.0	4.1
가정 어린이집	(108)	0.0	4.6	4.6	21.3	45.4	28.7	74.1	100.0	4.0
민간 어린이집	(296)	0.3	5.4	5.7	22.6	47.6	24.0	71.6	100.0	3.9
직장·기타 어린이집	(69)	0.0	2.9	2.9	8.7	44.9	43.5	88.4	100.0	4.3
국공립 유치원	(82)	0.0	2.4	2.4	12.2	48.8	36.6	85.4	100.0	4.2
사립 유치원	(205)	1.0	2.4	3.4	19.5	53.2	23.9	77.1	100.0	4.0
기타	(11)	0.0	0.0	0.0	9.1	81.8	9.1	90.9	100.0	4.0
F		3.8**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이용하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응답률이 높은 이유는 '교사가 너무 많은 아이를 돌본다'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았고, 이 밖에 체험활동과 특별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3〉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사례 수	교사가 너무 많은 아이를 돌본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것 같다(교사의 자질)	체험활동 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별활동 운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급·간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기타	계
▣ 전체 ▣	(45)	26.7	24.4	22.2	13.3	8.9	4.4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1세	(2)	50.0	50.0	0.0	0.0	0.0	0.0	100.0
만 2세	(12)	25.0	16.7	41.7	8.3	8.3	0.0	100.0
만 3세	(10)	20.0	20.0	20.0	20.0	10.0	10.0	100.0
만 4세	(10)	20.0	30.0	10.0	20.0	10.0	10.0	100.0
만 5세 이상	(11)	36.4	27.3	18.2	9.1	9.1	0.0	100.0
X^2(df)		9.495(20)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12)	25.0	33.3	8.3	25.0	8.3	0.0	100.0
가정 어린이집	(5)	0.0	0.0	40.0	20.0	20.0	20.0	100.0
민간 어린이집	(17)	41.2	23.5	17.6	11.8	0.0	5.9	100.0
직장·기타 어린이집	(2)	0.0	0.0	100.0	0.0	0.0	0.0	100.0
국공립 유치원	(2)	0.0	0.0	50.0	0.0	50.0	0.0	100.0
사립 유치원	(7)	28.6	42.9	14.3	0.0	14.3	0.0	100.0
X^2(df)		28.712(25)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5.0%이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5.9%로 조사되었으며, 0세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0%로 조사되었다. 맞벌이지만 현재 1인이 휴직 중인 경우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로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으며, 이들은 만족하지 않는 비율도 7.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이 운영 시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기타 어린이집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직장 어린이집이 기타 어린이집과 함께 분류됨에 따라 이용 시간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거나(80.8%),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운영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다(13.5%)고 응답하였다.

〈표 5-24〉 현재 다니는 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 전체 ▣	(1,048)	0.9	4.1	5.0	19.2	47.1	28.7	75.9	100.0	4.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	0.0	0.0	0.0	30.0	50.0	20.0	70.0	100.0	3.9
만 1세	(106)	0.0	5.7	5.7	19.8	39.6	34.9	74.5	100.0	4.0
만 2세	(205)	0.5	3.4	3.9	23.4	40.5	32.2	72.7	100.0	4.0
만 3세	(226)	1.3	4.0	5.3	13.7	54.0	27.0	81.0	100.0	4.0
만 4세	(242)	0.4	3.7	4.1	20.7	51.2	24.0	75.2	100.0	4.0
만 5세 이상	(259)	1.5	4.6	6.2	18.5	45.6	29.7	75.3	100.0	4.0
F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24)	0.8	3.8	4.6	15.7	47.6	32.1	79.6	100.0	4.1
맞벌이(1인 휴직 중)	(86)	1.2	5.8	7.0	24.4	46.5	22.1	68.6	100.0	3.8
외벌이	(305)	0.7	4.6	5.2	24.6	45.2	24.9	70.2	100.0	3.9
기타(2인 휴직/미취업)	(33)	3.0	0.0	3.0	21.2	57.6	18.2	75.8	100.0	3.9
F		4.2**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77)	0.7	3.6	4.3	15.9	48.0	31.8	79.8	100.0	4.1
가정 어린이집	(108)	0.0	2.8	2.8	19.4	43.5	34.3	77.8	100.0	4.1
민간 어린이집	(296)	1.4	4.1	5.4	23.3	45.3	26.0	71.3	100.0	3.9
직장·기타 어린이집	(69)	0.0	2.9	2.9	10.1	40.6	46.4	87.0	100.0	4.3
국공립 유치원	(82)	0.0	2.4	2.4	14.6	47.6	35.4	82.9	100.0	4.2
사립 유치원	(205)	1.5	6.3	7.8	21.5	52.2	18.5	70.7	100.0	3.8
기타	(11)	0.0	9.1	9.1	36.4	54.5	0.0	54.5	100.0	3.5
F		5.8***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다니는 기관의 유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0세아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다소 낮았다. 기관 유형별 차이에서도 가정 어린이집(63.0%), 민간 어린이집(65.9%), 사립 유치원(68.8%) 순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기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기관 유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5〉 현재 다니는 기관 유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 전체 ▣	(1,048)	0.7	3.4	4.1	20.9	44.2	30.8	75.0	100.0	4.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	0.0	10.0	10.0	30.0	30.0	30.0	60.0	100.0	3.8
만 1세	(106)	0.9	1.9	2.8	17.9	43.4	35.8	79.2	100.0	4.1
만 2세	(205)	1.5	3.4	4.9	23.9	39.0	32.2	71.2	100.0	4.0
만 3세	(226)	0.4	3.5	4.0	19.5	45.1	31.4	76.5	100.0	4.0
만 4세	(242)	0.4	2.9	3.3	21.1	49.2	26.4	75.6	100.0	4.0
만 5세 이상	(259)	0.4	4.2	4.6	20.5	43.6	31.3	74.9	100.0	4.0
F		0.6								
기관 유형										
국공립 어린이집	(277)	0.0	1.4	1.4	10.5	41.9	46.2	88.1	100.0	4.3
가정 어린이집	(108)	0.9	3.7	4.6	32.4	39.8	23.1	63.0	100.0	3.8
민간 어린이집	(296)	1.7	4.7	6.4	27.7	44.9	20.9	65.9	100.0	3.8
직장·기타 어린이집	(69)	0.0	0.0	0.0	10.1	39.1	50.7	89.9	100.0	4.4
국공립 유치원	(82)	0.0	3.7	3.7	9.8	45.1	41.5	86.6	100.0	4.2
사립 유치원	(205)	0.5	5.4	5.9	25.4	49.8	19.0	68.8	100.0	3.8
기타	(11)	0.0	0.0	0.0	54.5	45.5	0.0	45.5	100.0	3.5
F		19.0***								

* p < .05, ** p < .01, *** p < .001

다. 대기 경험

기관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기했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막내 자녀가 36개월 미만이던 시기와 그 이후 시기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1) 0~36개월 미만 시기

36개월 미만 시기에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로 상당히 높았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재 만 3세 이상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영아기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보다 대기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26〉 0~36개월 미만 시기 기관서비스 대기 경험 유무

(단위: %, 명)

	사례 수	있다	없다	계
▣ 전체 ▣	(1,048)	42.3	57.7	100.0
막내 자녀 연령2				
만 0~2세	(321)	47.7	52.3	100.0
만 3세 이상	(727)	39.9	60.1	100.0
X^2(df)			5.514(1)*	
지역				
대도시	(392)	45.4	54.6	100.0
중소도시	(487)	43.1	56.9	100.0
농어촌	(169)	32.5	67.5	100.0
X^2(df)			8.277(2)*	

* p < .05, ** p < .01, *** p < .001

36개월 미만이던 시기에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관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61.4%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장 오래 대기한 기관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27〉 0~36개월 미만 시기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관 유형

(단위: %, 명)

	사례 수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계
▣ 전체 ▣	(443)	9.5	22.1	61.4	4.3	2.7	100.0
응답자 성별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5)	0.0	20.0	80.0	0.0	0.0	100.0
만 1세	(46)	8.7	13.0	78.3	0.0	0.0	100.0
만 2세	(102)	8.8	17.6	64.7	4.9	3.9	100.0
만 3세	(91)	8.8	19.8	64.8	4.4	2.2	100.0
만 4세	(93)	11.8	21.5	59.1	4.3	3.2	100.0
만 5세 이상	(106)	9.4	33.0	49.1	5.7	2.8	100.0
X^2(df)		20.056(20)					

* p < .05, ** p < .01, *** p < .001

36개월 미만이던 시기에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간을 조사한 결과, 7개월 이상 대기한 비율이 39.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기보다 유아기의 대기 기간이 다소 길었다. 이들의 대기 후 입소 상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 후 입소한 사례는 49.9%이며, 40.2%는 대기하다가 입소를 취소하고 다른 기관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9%는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28〉 0~36개월 미만 시기에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간

(단위: %, 개월, 명)

	사례 수	3개월 이하	4~6 개월	7~12 개월	13~24 개월	25개월 이상	계	평균
▣ 전체 ▣	(443)	33.4	27.5	25.1	9.9	4.1	100.0	8.3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5)	0.0	60.0	40.0	0.0	0.0	100.0	6.6
만 1세	(46)	41.3	39.1	10.9	8.7	0.0	100.0	5.2
만 2세	(102)	36.3	26.5	21.6	12.7	2.9	100.0	7.6
만 3세	(91)	30.8	16.5	40.7	6.6	5.5	100.0	9.6
만 4세	(93)	35.5	25.8	23.7	7.5	7.5	100.0	9.0
만 5세 이상	(106)	29.2	33.0	21.7	13.2	2.8	100.0	8.6
X^2(df)		37.240(20)*						

* p < .05, ** p < .01, *** p < .001

2) 36개월 이상 시기

36개월 이상 시기에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0%로 영아기 대기 경험보다 다소 낮았다. 맞벌이의 경우 대기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36개월 이상 시기 기관서비스 대기 경험 유무

(단위: %, 명)

	사례 수	있다	없다	계
▣ 전체 ▣	(727)	23.0	77.0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3세	(226)	23.9	76.1	100.0
만 4세	(242)	24.4	75.6	100.0
만 5세 이상	(259)	20.8	79.2	100.0
X^2(df)			1.039(2)	
맞벌이 여부				
맞벌이	(432)	25.0	75.0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57)	31.6	68.4	100.0
외벌이	(216)	17.1	82.9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22)	18.2	81.8	100.0
X^2(df)			7.843(3)*	

* p < .05, ** p < .01, *** p < .001

36개월 이상이던 시기에 가장 오래 대기했던 기관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대기 기간은 9.1개월로 영아기 평균 대기 기간인 8.3개월보다 길었다. 대기 후 입소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기 후 입소한 경우는 38.9%, 대기하다가 입소를 취소하고 다른 기관에 입소한 경우는 42.5%, 다른 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기 중인 경우는 18.6%로 조사되었다.

제3절 서비스 충분성과 수요

1. 기관 유형별 공급의 충분성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 공급의 충분성은 보육실태조사의 조사 문항을 참고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거주지 주변에 기관이 충분히 있는지, 즉 이용자가 체감하는 기관 유형별 공급량의 충분성을 5점 척도(① 매우 부족함~⑤ 매우 많음)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거주지 주변에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기관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생각을 5점 척도(① 매우 부족함~⑤ 매우 많음)로 확인하였다.

가.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응답자 전체 기준으로 현재 거주지 주변의 기관 유형별 공급의 충분성을 응답 비율로 확인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관 수가 부족하다(매우 부족+다소 부족)고 응답한 기관 유형은 국공립 유치원(62.7%), 시간제 보육기관(62.4%)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59.8%)이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은 기관 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각각 46.0%, 41.0%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거주지 주변 기관을 인지한 경우(잘 모름을 제외) 기관의 충분성' 점수를 확인하면, 민간 어린이집이 평균 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립 유치원(2.7점), 국공립 어린이집(2.3점), 국공립 유치원(2.2점), 시간제 보육기관(2.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0〉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전체

(단위: %, 점, 명)

구분	거주지 주변 기관 수 충분성에 대한 생각								거주지 주변 기관을 인지한 경우의 충분성에 대한 생각[2]		
	매우 부족	다소 부족	적당	다소 많음	매우 많음	잘 모름	계	사례 수 (명)	평균	SD	사례 수
국공립 어린이집	20.6	39.2	28.7	5.3	2.9	3.3	100.0	(1,481)	2.3	1.0	(1432)
민간 어린이집	5.7	25.6	46.0	14.4	4.5	3.8	100.0	(1,481)	2.9	0.9	(1424)
사립 유치원	10.8	26.9	41.0	12.5	3.8	5.0	100.0	(1,481)	2.7	1.0	(1407)
국공립 유치원	24.1	38.6	24.5	6.1	2.0	4.7	100.0	(1,481)	2.2	1.0	(1411)
시간제 보육기관[1]	23.2	39.2	24.8	4.5	2.3	6.0	100.0	(1,481)	2.2	0.9	(1392)

1) 시간제 보육기관에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해당됨.
2) 거주지 주변 기관을 인지한 경우는 '거주지 주변 기관 수 충분성에 대한 생각'에서 '잘 모름'을 제외한 사례를 의미함.

응답자 특성별로 거주지 주변의 기관 공급 충분성을 각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의 기관 공급 충분성은 막내 자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5세인 경우는 평균 2.5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그 점수가 높았으나, 만 0세는 평균 2.1점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표 5-31〉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1) 국공립 어린이집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20.6	39.2	59.8	28.7	5.3	2.9	8.2	3.3	100.0	2.3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3.4	45.5	68.9	23.4	2.9	1.9	4.8	2.9	100.0	2.1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만 1세	(226)	22.1	35.8	58.0	27.9	8.4	1.8	10.2	4.0	100.0	2.3
만 2세	(237)	24.5	39.2	63.7	27.4	2.1	3.4	5.5	3.4	100.0	2.2
만 3세	(254)	24.8	37.0	61.8	27.2	5.5	3.5	9.1	2.0	100.0	2.2
만 4세	(266)	16.5	41.4	57.9	30.1	5.3	3.4	8.6	3.4	100.0	2.4
만 5세 이상	(289)	14.2	37.0	51.2	34.3	7.3	3.1	10.4	4.2	100.0	2.5
F		4.0**(a)									

* p < .05, ** p < .01, *** p < .001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기관 공급의 충분성은 앞의 〈표 5-30〉에서도 확인했듯이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각각 평균 2.9점, 2.7점으로 다른 기관 유형들에 비해 충분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할 경우 응답자 성별,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모두 자녀 연령이 만 0세(민간 어린이집 2.6점, 사립 유치원 2.5점)인 경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32〉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2) 민간 어린이집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5.7	25.6	31.3	46.0	14.4	4.5	18.8	3.8	100.0	2.9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9.1	33.5	42.6	41.6	11.0	1.4	12.4	3.3	100.0	2.6
만 1세	(226)	4.9	31.4	36.3	43.8	10.6	6.6	17.3	2.7	100.0	2.8
만 2세	(237)	5.9	27.4	33.3	42.2	13.1	5.1	18.1	6.3	100.0	2.8
만 3세	(254)	5.1	20.5	25.6	50.4	15.0	4.7	19.7	4.3	100.0	2.9
만 4세	(266)	5.6	22.9	28.6	46.6	16.9	3.8	20.7	4.1	100.0	2.9
만 5세 이상	(289)	4.2	20.8	24.9	49.8	18.0	4.8	22.8	2.4	100.0	3.0
F		4.8***(a)									

* p < .05, ** p < .01, *** p < .001

〈표 5-33〉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3) 사립 유치원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10.8	26.9	37.7	41.0	12.5	3.8	16.3	5.0	100.0	2.7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2.4	36.4	48.8	36.8	7.7	1.4	9.1	5.3	100.0	2.5
만 1세	(226)	10.6	28.3	38.9	40.7	10.2	4.0	14.2	6.2	100.0	2.7
만 2세	(237)	10.1	28.7	38.8	38.4	10.5	4.6	15.2	7.6	100.0	2.7
만 3세	(254)	11.4	27.2	38.6	38.6	13.8	4.3	18.1	4.7	100.0	2.7
만 4세	(266)	8.3	22.2	30.5	45.1	18.0	2.6	20.7	3.8	100.0	2.8
만 5세 이상	(289)	12.1	21.5	33.6	44.6	13.1	5.5	18.7	3.1	100.0	2.8
F						3.9**					

* p 〈 .05, ** p 〈 .01, *** p 〈 .001

거주지 주변의 기관 공급 충분성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확인했을 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기관 유형과 마찬가지로 막내 자녀 연령이 만 0세는 평균 2.0점으로 기관 공급 충분성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

〈표 5-34〉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4) 국공립 유치원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24.1	38.6	62.7	24.5	6.1	2.0	8.1	4.7	100.0	2.2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7.3	44.5	71.8	20.1	3.8	1.0	4.8	3.3	100.0	2.0
만 1세	(226)	21.7	35.0	56.6	27.4	8.8	1.8	10.6	5.3	100.0	2.3
만 2세	(237)	26.2	37.6	63.7	21.1	4.2	2.5	6.8	8.4	100.0	2.1
만 3세	(254)	27.2	39.8	66.9	22.4	6.3	2.0	8.3	2.4	100.0	2.1
만 4세	(266)	23.3	37.2	60.5	25.9	7.1	2.6	9.8	3.8	100.0	2.3
만 5세 이상	(289)	20.1	38.1	58.1	28.7	6.2	1.7	8.0	5.2	100.0	2.3
F						2.8*(a)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제 보육기관의 충분성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의 특성은 부모의 근로 유형이었다. 분석 결과, 부모 모두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거나 부모 모두 기타 종사자인 경우는 시간제 보육기관의 충분성 점수가 평균 2.1점으로 다른 근로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비정형 근로자의 경우 시간제 보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밖에도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시간제 보육기관에 대한 충분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35〉 거주지 주변 기관 공급의 충분성: 5) 시간제 보육기관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23.2	39.2	62.4	24.8	4.5	2.3	6.8	6.0	100.0	2.2
응답자 성별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4.4	42.1	66.5	23.0	5.3	0.5	5.7	4.8	100.0	2.1
만 1세	(226)	19.0	38.9	58.0	27.9	6.2	2.2	8.4	5.8	100.0	2.3
만 2세	(237)	25.3	35.9	61.2	25.3	1.3	3.4	4.6	8.9	100.0	2.1
만 3세	(254)	25.2	42.1	67.3	20.1	4.3	3.1	7.5	5.1	100.0	2.1
만 4세	(266)	23.3	40.2	63.5	22.2	5.3	3.0	8.3	6.0	100.0	2.2
만 5세 이상	(289)	21.8	36.7	58.5	30.1	4.5	1.4	5.9	5.5	100.0	2.2
F						1.2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19.6	40.6	60.2	26.2	5.1	2.7	7.8	5.8	100.0	2.3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25.2	40.9	66.1	22.1	5.7	2.3	8.1	3.7	100.0	2.2
둘 다 시간제/기타	(81)	29.6	35.8	65.4	21.0	6.2	1.2	7.4	6.2	100.0	2.1
전일제 외벌이	(376)	25.5	39.4	64.9	23.7	2.4	1.1	3.5	8.0	100.0	2.1
미취업+시간제/기타	(66)	19.7	33.3	53.0	36.4	3.0	3.0	6.1	4.5	100.0	2.3
둘 다 미취업	(34)	35.3	17.6	52.9	23.5	2.9	8.8	11.8	11.8	100.0	2.2
F						2.5*(a)					
지역											
대도시	(571)	20.3	41.5	61.8	25.2	5.1	2.6	7.7	5.3	100.0	2.2
중소도시	(674)	23.4	38.1	61.6	24.5	4.6	2.4	7.0	7.0	100.0	2.2
농어촌	(236)	29.2	36.9	66.1	25.0	2.5	1.3	3.8	5.1	100.0	2.0
F						3.3*					

* p < .05, ** p < .01, *** p < .001

나.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의 공급 충분성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기관 유형은 민간 어린이집(평균 2.4점)이었고, 시간제 보육기관이 평균 1.9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응답 비율로 확인했을 때에도 민간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기관 유형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이 부족(매우 부족함+다소 부족함)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시간제 보육기관의 경우 부족하다는 응답은 73.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36〉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전체

(단위: %, 점, 명)

구분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의 수 충분성 대한 생각								믿고 보낼 만한 기관 유무 인지한 경우의 충분성에 생각		
	매우 부족	다소 부족	적당	다소 많음	매우 많음	잘 모름	계	사례 수 (명)	평균	SD	사례 수 (명)
국공립 어린이집	27.1	38.7	24.3	2.8	1.1	6.1	100.0	(1,481)	2.1	0.9	(1391)
민간 어린이집	14.7	34.7	37.3	6.8	0.5	5.9	100.0	(1,481)	2.4	0.9	(1393)
사립 유치원	18.4	33.0	34.8	5.1	1.0	7.6	100.0	(1,481)	2.3	0.9	(1369)
국공립 유치원	24.2	37.7	20.0	3.4	0.7	14.0	100.0	(1,481)	2.1	0.9	(1273)
시간제 보육기관	32.5	40.7	16.9	1.8	0.4	7.6	100.0	(1,481)	1.9	0.8	(1369)

주: 1) 시간제 보육기관에는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해당됨.
2) 믿고 보 낼만한 기관 유무를 인지한 경우는 '믿고 보낼 만한 기관 수 충분성에 대한 생각'에서 잘 모름을 제외한 사례를 의미함.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이 충분히 있는지를 기관 유형에 따라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하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의 막내 자녀의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모두 만 0세의 연령에서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점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5-37〉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1) 국공립 어린이집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27.1	38.7	65.8	24.3	2.8	1.1	3.8	6.1	100.0	2.1
응답자 성별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9.2	45.5	74.6	17.2	1.0	1.0	1.9	6.2	100.0	1.9
만 1세	(226)	26.5	35.0	61.5	27.0	4.4	0.4	4.9	6.6	100.0	2.1
만 2세	(237)	31.6	37.6	69.2	21.1	1.7	2.1	3.8	5.9	100.0	2.0
만 3세	(254)	30.7	35.4	66.1	23.6	2.4	1.6	3.9	6.3	100.0	2.0
만 4세	(266)	24.4	41.0	65.4	26.3	2.3	0.4	2.6	5.6	100.0	2.1
만 5세 이상	(289)	21.5	38.4	59.9	28.7	4.5	1.0	5.5	5.9	100.0	2.2
F		3.0*(a)									

* p 〈 .05, ** p 〈 .01, *** p 〈 .001

〈표 5-38〉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2) 민간 어린이집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14.7	34.7	49.4	37.3	6.8	0.5	7.4	5.9	100.0	2.4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8.2	38.8	56.9	33.5	3.3	0.5	3.8	5.7	100.0	2.3
만 1세	(226)	15.0	40.3	55.3	30.5	9.3	0.4	9.7	4.4	100.0	2.4
만 2세	(237)	14.8	34.2	48.9	35.9	5.9	1.3	7.2	8.0	100.0	2.4
만 3세	(254)	16.5	33.1	49.6	37.0	5.9	0.8	6.7	6.7	100.0	2.4
만 4세	(266)	13.5	32.7	46.2	40.2	7.1	0.0	7.1	6.4	100.0	2.4
만 5세 이상	(289)	11.4	31.1	42.6	43.9	8.7	0.3	9.0	4.5	100.0	2.5
F		2.8*									

* p 〈 .05, ** p 〈 .01, *** p 〈 .001

〈표 5-39〉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3) 사립 유치원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18.4	33.0	51.5	34.8	5.1	1.0	6.1	7.6	100.0	2.3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9.1	43.5	62.7	27.3	1.4	1.0	2.4	7.7	100.0	2.2
만 1세	(226)	17.3	35.0	52.2	31.9	4.0	2.2	6.2	9.7	100.0	2.3
만 2세	(237)	17.7	33.3	51.1	33.3	5.5	0.8	6.3	9.3	100.0	2.3
만 3세	(254)	22.0	32.3	54.3	31.5	6.3	0.8	7.1	7.1	100.0	2.3
만 4세	(266)	17.3	28.2	45.5	41.4	6.8	0.0	6.8	6.4	100.0	2.4
만 5세 이상	(289)	17.3	28.7	46.0	40.8	5.9	1.4	7.3	5.9	100.0	2.4
F						2.7*(a)					

* p 〈 .05, ** p 〈 .01, *** p 〈 .001

〈표 5-40〉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4) 국공립 유치원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24.2	37.7	61.9	20.0	3.4	0.7	4.1	14.0	100.0	2.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7.3	42.1	69.4	17.7	1.4	0.0	1.4	11.5	100.0	1.9
만 1세	(226)	22.6	38.5	61.1	18.1	5.3	0.9	6.2	14.6	100.0	2.1
만 2세	(237)	25.7	36.3	62.0	17.3	1.3	1.3	2.5	18.1	100.0	2.0
만 3세	(254)	26.8	39.4	66.1	15.0	5.1	1.2	6.3	12.6	100.0	2.0
만 4세	(266)	24.8	36.1	60.9	23.3	3.4	0.4	3.8	12.0	100.0	2.1
만 5세 이상	(289)	19.4	34.9	54.3	26.6	3.5	0.3	3.8	15.2	100.0	2.2
F						2.4*					

* p 〈 .05, ** p 〈 .01, *** p 〈 .001

모든 기관 유형 중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 점수가 가장 낮았던 시간제 보육기관(평균 1.9점)은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연령과 무관하게 시간제 보육기관에 대한 충분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41〉 거주지 주변에 믿고 보낼 만한 기관의 충분성: 5) 시간제 보육기관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다소 부족함	①+② 부족함	③ 적당	④ 다소 많음	⑤ 매우 많음	④+⑤ 많음	잘 모름	계	평균
▣ 전체 ▣	(1,481)	32.5	40.7	73.3	16.9	1.8	0.4	2.2	7.6	100.0	1.9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34.4	44.0	78.5	15.8	0.5	0.0	0.5	5.3	100.0	1.8
만 1세	(226)	27.4	44.7	72.1	17.3	2.7	0.4	3.1	7.5	100.0	2.0
만 2세	(237)	36.7	32.9	69.6	17.7	0.0	1.7	1.7	11.0	100.0	1.8
만 3세	(254)	33.9	41.7	75.6	14.2	1.6	0.4	2.0	8.3	100.0	1.8
만 4세	(266)	31.2	43.6	74.8	14.3	4.1	0.0	4.1	6.8	100.0	1.9
만 5세 이상	(289)	31.8	38.1	69.9	21.8	1.7	0.0	1.7	6.6	100.0	1.9
F						1.2					

* p < .05, ** p < .01, *** p < .001

2. 시간제 보육의 서비스 충분성 및 수요

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시간제 보육의 서비스 충분성 및 수요를 파악하고자 막내 자녀의 돌봄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1,481명 중 20.9%(310명)가량이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부의 맞벌이 여부'와 '근로 유형'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이 2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부부의 근로 유형이 전일제와 시간제(기타 포함) 조합인 경우의 이용률이 28.5%로 가장 높았으며, 부부 모두 전일제일 경우의 이용 경험은 22.8%로 두 번째로 높았다. 부부 모두 전일제의

경우 비정기적인 시간제 서비스 보다는 정기적인 종일돌봄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표 5-42〉 시간제 보육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사례 수	예	아니오	계
▣ 전체 ▣	(1,481)	20.9	79.1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5.8	84.2	100.0
만 1세	(226)	18.6	81.4	100.0
만 2세	(237)	21.1	78.9	100.0
만 3세	(254)	21.3	78.7	100.0
만 4세	(266)	21.8	78.2	100.0
만 5세 이상	(289)	25.3	74.7	100.0
X^2(df)			7.50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24.9	75.1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22.9	77.1	100.0
외벌이	(427)	13.1	86.9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18.7	81.3	100.0
X^2(df)			23.960(3)***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22.8	77.2	100.0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28.5	71.5	100.0
둘 다 시간제/기타	(81)	19.8	80.2	100.0
전일제 외벌이	(376)	12.8	87.2	100.0
미취업+시간제/기타	(66)	16.7	83.3	100.0
둘 다 미취업	(34)	20.6	79.4	100.0
X^2(df)			27.704(5)***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이용 패턴을 확인하면,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이용자 310명 중 61.9%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 이용 패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의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 또한 없었다.

〈표 5-43〉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패턴

(단위: %, 명)

	사례 수	주기적으로 이용함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함	계
▣ 전체 ▣	(310)	38.1	61.9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30.3	69.7	100.0
만 1세	(42)	45.2	54.8	100.0
만 2세	(50)	30.0	70.0	100.0
만 3세	(54)	37.0	63.0	100.0
만 4세	(58)	41.4	58.6	100.0
만 5세 이상	(73)	41.1	58.9	100.0
X^2(df)		3.718(5)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주기적인 이용자와 간헐적인 이용자(필요할 때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의 이용 횟수는 다음과 같다. 주기적인 이용자는 월간 이용 횟수를, 간헐적인 이용자는 연간 횟수를 조사하였다. 주기적 이용자의 월간 이용 횟수는 평균 12.2회였으며, 간헐적 이용자는 연간 평균 9.2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이용 빈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4〉 시간제 보육 이용 주기: 주기적 이용자 vs. 간헐적 이용자

(단위: %, 회, 명)

	주기적 이용자의 월간 이용 횟수			간헐적 이용자의 연간 이용 횟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18)	12.2	8.2	(192)	9.2	11.4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	9.3	7.5	(23)	5.2	5.4
만 1세	(19)	10.6	6.8	(23)	9.2	8.9
만 2세	(15)	11.3	7.2	(35)	10.7	11.9
만 3세	(20)	12.4	8.5	(34)	9.4	9.8
만 4세	(24)	14.9	8.7	(34)	7.8	6.7
만 5세 이상	(30)	12.5	9.1	(43)	11.1	17.3
F		0.9			1.0(a)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1회 평균 이용 시간을 확인한 결과 평균 204.3분으로 약 3.4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은 지역이었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일수록 1회 평균 이용 시간이 226.8분(약 3.8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1회 평균 이용 시간이 164.2분(약 2.7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5-45〉 시간제 보육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분, 명)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10)	204.3	123.6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207.8	140.8
만 1세	(42)	227.3	136.6
만 2세	(50)	202.5	146.2
만 3세	(54)	200.5	106.7
만 4세	(58)	203.1	113.1
만 5세 이상	(73)	194.6	112.6
F		0.4	
지역			
대도시	(131)	226.8	138.2
중소도시	(142)	194.0	114.1
농어촌	(37)	164.2	85.7
F		4.7*(a)	

* p < .05, ** p < .01, *** p < .001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시간제 보육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에서 확인한 총 7개 항목 모두 전반적으로 보통 또는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7개 항목 중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2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긴급성에 따른 적절한 이용'과 '제공기관과의 거리'로 확인되었다.

〈표 5-46〉 시간제 보육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310)	3.5	15.8	19.4	40.3	36.1	4.2	40.3	100.0	3.2
긴급성에 따른 적절한 이용	(310)	5.2	23.2	28.4	37.1	27.4	7.1	34.5	100.0	3.1
제공기관과의 거리	(310)	7.1	17.4	24.5	39.4	28.7	7.4	36.1	100.0	3.1
서비스 이용 비용	(310)	2.3	13.2	15.5	41.0	34.8	8.7	43.5	100.0	3.4
서비스 내용 및 질	(310)	4.5	13.5	18.1	42.6	30.3	9.0	39.4	100.0	3.3
서비스 이용 시간	(310)	4.5	13.9	18.4	37.4	35.8	8.4	44.2	100.0	3.3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내 환경	(310)	3.2	13.9	17.1	46.8	27.4	8.7	36.1	100.0	3.3

응답자 특성별로 각 항목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제공기관과의 거리', '서비스 내용 및 질', '서비스 이용 시간'에서만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0세인 경우는 '제공기관과의 거리'는 만족도 점수가 평균 2.8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36.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만 0세부터 만 5세 이상까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간의 경우 만 0세의 불만족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다. 이 밖의 항목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47〉 시간제 보육서비스 만족도: 제공기관과의 거리, 서비스 내용 및 질

(단위: %, 점, 명)

		사례 수 (명)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제공기관과의 거리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9.1	27.3	36.4	42.4	21.2	0.0	21.2	100.0	2.8
	만 1세	(42)	9.5	19.0	28.6	50.0	16.7	4.8	21.4	100.0	2.9
	만 2세	(50)	8.0	10.0	18.0	36.0	36.0	10.0	46.0	100.0	3.3
	만 3세	(54)	3.7	22.2	25.9	46.3	20.4	7.4	27.8	100.0	3.1
	만 4세	(58)	6.9	13.8	20.7	29.3	37.9	12.1	50.0	100.0	3.3
	만 5세 이상	(73)	6.8	16.4	23.3	37.0	32.9	6.8	39.7	100.0	3.2
	F		2.3*								
서비스 내용 및 질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0.0	21.2	21.2	57.6	18.2	3.0	21.2	100.0	3.0
	만 1세	(42)	0.0	9.5	9.5	33.3	45.2	11.9	57.1	100.0	3.6
	만 2세	(50)	4.0	14.0	18.0	36.0	34.0	12.0	46.0	100.0	3.4
	만 3세	(54)	1.9	14.8	16.7	50.0	18.5	14.8	33.3	100.0	3.3
	만 4세	(58)	5.2	12.1	17.2	36.2	41.4	5.2	46.6	100.0	3.3
	만 5세 이상	(73)	11.0	12.3	23.3	45.2	24.7	6.8	31.5	100.0	3.0
	F		2.4*								
서비스 이용 시간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9.1	18.2	27.3	48.5	24.2	0.0	24.2	100.0	2.9
	만 1세	(42)	2.4	7.1	9.5	31.0	54.8	4.8	59.5	100.0	3.5
	만 2세	(50)	2.0	12.0	14.0	36.0	34.0	16.0	50.0	100.0	3.5
	만 3세	(54)	3.7	16.7	20.4	38.9	27.8	13.0	40.7	100.0	3.3
	만 4세	(58)	5.2	10.3	15.5	32.8	43.1	8.6	51.7	100.0	3.4
	만 5세 이상	(73)	5.5	17.8	23.3	39.7	31.5	5.5	37.0	100.0	3.1
	F		2.8*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3.0	18.2	21.2	33.3	45.5	0.0	45.5	100.0	3.2
	만 1세	(42)	2.4	14.3	16.7	35.7	38.1	9.5	47.6	100.0	3.4
	만 2세	(50)	4.0	18.0	22.0	36.0	40.0	2.0	42.0	100.0	3.2
	만 3세	(54)	3.7	18.5	22.2	50.0	22.2	5.6	27.8	100.0	3.1
	만 4세	(58)	1.7	15.5	17.2	39.7	37.9	5.2	43.1	100.0	3.3
	만 5세 이상	(73)	5.5	12.3	17.8	42.5	37.0	2.7	39.7	100.0	3.2
	F		0.7								

		사례 수 (명)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별로 만족하지 않음	①+② 만족하지 않음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함	⑤ 매우 만족함	④+⑤ 만족함	계	평균
긴급성에 따른 적절한 이용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12.1	21.2	33.3	45.5	15.2	6.1	21.2	100.0	2.8
	만 1세	(42)	4.8	23.8	28.6	31.0	38.1	2.4	40.5	100.0	3.1
	만 2세	(50)	4.0	28.0	32.0	28.0	38.0	2.0	40.0	100.0	3.1
	만 3세	(54)	5.6	27.8	33.3	38.9	13.0	14.8	27.8	100.0	3.0
	만 4세	(58)	3.4	15.5	19.0	37.9	34.5	8.6	43.1	100.0	3.3
	만 5세 이상	(73)	4.1	23.3	27.4	41.1	24.7	6.8	31.5	100.0	3.1
	F					1.0					
서비스 이용 비용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9.1	15.2	24.2	42.4	30.3	3.0	33.3	100.0	3.0
	만 1세	(42)	0.0	14.3	14.3	42.9	38.1	4.8	42.9	100.0	3.3
	만 2세	(50)	0.0	12.0	12.0	42.0	34.0	12.0	46.0	100.0	3.5
	만 3세	(54)	1.9	14.8	16.7	40.7	33.3	9.3	42.6	100.0	3.3
	만 4세	(58)	1.7	13.8	15.5	31.0	43.1	10.3	53.4	100.0	3.5
	만 5세 이상	(73)	2.7	11.0	13.7	46.6	30.1	9.6	39.7	100.0	3.3
	F					1.2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내 환경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33)	0.0	27.3	27.3	51.5	15.2	6.1	21.2	100.0	3.0
	만 1세	(42)	0.0	11.9	11.9	45.2	31.0	11.9	42.9	100.0	3.4
	만 2세	(50)	2.0	12.0	14.0	48.0	28.0	10.0	38.0	100.0	3.3
	만 3세	(54)	1.9	16.7	18.5	48.1	22.2	11.1	33.3	100.0	3.2
	만 4세	(58)	5.2	10.3	15.5	39.7	36.2	8.6	44.8	100.0	3.3
	만 5세 이상	(73)	6.8	11.0	17.8	49.3	27.4	5.5	32.9	100.0	3.1
	F					1.2					

* p < .05, ** p < .01, *** p < .001

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막내 자녀의 월령이 36개월 이하인 응답자 687명을 대상으로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용 의향이 있다(대체로 많음+매우 많음)고 응답한 경우가 59.4%로 절반을 넘었다. 이용 의향을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하면,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 의향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분석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만 0세인 경우 이용 의향 점수가 평균 2.8점이었고, 만 1세 2.6점, 만 2세 2.5점, 만 3세 2.3점 순이었다.

〈표 5-48〉 시간제 보육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점, 명)

	사례 수 (명)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①+② 없음	③ 대체로 많음	④ 매우 많음	③+④ 많음	계	평균
▣ 전체 ▣	(687)	6.8	33.8	40.6	49.2	10.2	59.4	100.0	2.6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3.3	27.8	31.1	51.2	17.7	68.9	100.0	2.8
만 1세	(226)	6.6	35.8	42.5	50.0	7.5	57.5	100.0	2.6
만 2세	(237)	9.3	37.1	46.4	46.8	6.8	53.6	100.0	2.5
만 3세	(15)	20.0	33.3	53.3	46.7	0.0	46.7	100.0	2.3
F					8.6***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40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할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앞의 향후 이용 의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던 막내 자녀 연령에 한해 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는 만 1세(72.3%)였다.

〈표 5-49〉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패턴

(단위: %, 명)

	사례 수	주기적으로 이용	필요할 때 가끔 이용	계
▣ 전체 ▣	(408)	31.9	68.1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44)	35.4	64.6	100.0
만 1세	(130)	27.7	72.3	100.0
만 2세	(127)	31.5	68.5	100.0
만 3세	(7)	42.9	57.1	100.0
X^2(df)		2.277(3)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막내 자녀에 대한 주요 돌봄 방식이 가정양육인 응답자 중에서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의 이용 시기를 늦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21명의 응답자 중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를 늦출 의향이 많다(대체로 많음+매우 많음)고 응답한 경우는 58.4%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에 따른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를 늦출 의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표 5-50〉 가정양육 중인 응답자가 향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 늦출 의향

(단위: %, 점, 명)

	사례 수 (명)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①+② 없음	③ 대체로 많음	④ 매우 많음	③+④ 많음	계	평균
▣ 전체 ▣	(221)	7.7	33.9	41.6	48.0	10.4	58.4	100.0	2.6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31)	10.7	36.6	47.3	42.7	9.9	52.7	100.0	2.5
만 1세	(68)	4.4	30.9	35.3	55.9	8.8	64.7	100.0	2.7
만 2세	(20)	0.0	25.0	25.0	55.0	20.0	75.0	100.0	3.0
만 3세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2.5
F		2.2(a)							

* p < .05, ** p < .01, *** p < .001

3. 아이돌봄서비스 충분성 및 수요

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481명 중 19.9%(294명)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미취학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부모 근로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미취학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용 경험률이 약 20~25% 수준으로 미취학 자녀가 1명일 때의 이용 경험률(17.4%)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외벌이의 이용 경험률(10.3%)에 비해서는 다른 유형들이 이용 경험률이 약 20~25%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부모의 근로 유형에 따라서도 근무 방식(시간제/전일제)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용 경험률이 약 20%대로 다른 유형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5-5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사례 수	예	아니오	계
▣ 전체 ▣	(1,481)	19.9	80.1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3.9	76.1	100.0
만 1세	(226)	17.3	82.7	100.0
만 2세	(237)	16.5	83.5	100.0
만 3세	(254)	20.9	79.1	100.0
만 4세	(266)	19.2	80.8	100.0
만 5세 이상	(289)	21.5	78.5	100.0
X^2(df)			5.560(5)	
미취학 자녀 수				
1명	(1,027)	17.4	82.6	100.0
2명	(422)	25.4	74.6	100.0
3명 이상	(32)	25.0	75.0	100.0
X^2(df)			12.355(2)**	

	사례 수	예	아니오	계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23.1	76.9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25.5	74.5	100.0
외벌이	(427)	10.3	89.7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25.3	74.7	100.0
X^2 (df)			35.059(3)***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23.6	76.4	100.0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24.5	75.5	100.0
둘 다 시간제/기타	(81)	24.7	75.3	100.0
전일제 외벌이	(376)	10.1	89.9	100.0
미취업+시간제/기타	(66)	15.2	84.8	100.0
둘 다 미취업	(34)	14.7	85.3	100.0
X^2 (df)			34.812(5)***	

* p < .05, ** p < .01,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294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서비스 유형을 확인한 결과, 시간제를 이용한 경우가 73.5%로 가장 높았고, 영아종일제는 30.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응답자 성별과 막내 자녀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막내 자녀 연령이 만 0세인 경우는 이용한 서비스 유형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해당 연령대의 20.0%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시간제(48.0%)를 이용한 경험이 영아종일제(42.0%)보다 많은 경향성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만 1세부터 만 5세 이상의 연령대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가 해당 연령대의 이용 경험자 대비 약 70~8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294명)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하는지 실제 이용 패턴을 확인한 결과,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한다는 경우가 54.4%(134명), 주기적으로 이용한다는 경우가 45.6%(160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5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패턴

(단위: %, 명)

	사례 수	주기적으로 이용함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함	계
▣ 전체 ▣	(294)	45.6	54.4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50)	36.0	64.0	100.0
만 1세	(39)	56.4	43.6	100.0
만 2세	(39)	46.2	53.8	100.0
만 3세	(53)	47.2	52.8	100.0
만 4세	(51)	45.1	54.9	100.0
만 5세 이상	(62)	45.2	54.8	100.0
X^2(df)		3.763(5)		

* p < .05, ** p < .01,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주기적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주기적 이용자)는 월간 이용 횟수를,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간헐적 이용자)는 연간 이용 횟수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월간 이용 횟수는 평균 12.5회였으며,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하는 경우는 연간 평균 10.4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3〉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주기: 주기적 이용자 vs. 간헐적 이용자

(단위: %, 회, 명)

	주기적 이용자의 월간 이용 횟수			간헐적 이용자의 연간 이용 횟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34)	12.5	8.9	(160)	10.4	15.9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8)	10.0	7.9	(32)	9.0	18.2
만 1세	(22)	9.3	7.9	(17)	12.3	16.2
만 2세	(18)	12.3	8.7	(21)	8.7	13.6
만 3세	(25)	13.6	9.6	(28)	5.9	5.8
만 4세	(23)	15.7	9.2	(28)	10.4	14.0
만 5세 이상	(28)	13.1	8.9	(34)	15.5	20.8
F		1.6			1.3(a)	

* p < .05, ** p < .01, *** p < .001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1회 평균 이용 시간을 확인한 결과 1회 평균 242.4분(약 4시간)가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이었는데, 대도시(272.4분, 약 4.5시간), 중소도시(233.9분, 약 3.9시간), 농어촌(179.3분, 약 3시간) 순으로 1회 평균 이용 시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54〉 아이돌봄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

(단위: %, 분, 명)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294)	242.4	147.7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50)	279.9	174.7
만 1세	(39)	240.4	134.9
만 2세	(39)	236.3	162.3
만 3세	(53)	224.0	141.8
만 4세	(51)	238.3	127.0
만 5세 이상	(62)	236.5	143.7
F		0.8(a)	
지역			
대도시	(126)	272.4	160.5
중소도시	(125)	233.9	139.5
농어촌	(43)	179.3	105.5
F		7.0**(a)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만족도를 ①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 방법, ② 대기 기간 및 서비스 연결, ③ 서비스 이용 비용, ④ 서비스 내용 및 질, ⑤ 서비스 이용 시간의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확인하면,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만족도 점수가 평균 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 방법과 서비스 이용 시간이었

다.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점수를 보인 항목은 대기 기간 및 서비스 연결(3.1점)이었다.

〈표 5-55〉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단위: %, 점, 명)

구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혀 만족 안함	별로 만족 안함	보통	약간 만족함	매우 만족함	잘 모름	계	사례 수	평균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 방법	3.2	14.8	31.5	31.5	17.6	1.4	100.0	(216)	3.5
대기 기간 및 서비스 연결	7.9	19.4	34.3	25.5	11.6	1.4	100.0	(216)	3.1
서비스 이용 비용	4.2	14.8	37.5	31.9	10.2	1.4	100.0	(216)	3.3
서비스 내용 및 질	5.1	7.4	38.0	37.0	11.1	1.4	100.0	(216)	3.4
서비스 이용 시간	2.3	9.7	36.6	37.5	12.5	1.4	100.0	(216)	3.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기는 하지만(시간제 216명, 영아종일제 89명), 각 항목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항목은 서비스 이용 시간(3.6점)이었으며, 점수가 낮은 항목은 대기 기간 및 서비스 연결(3.3점)로 확인돼, 전반적인 경향성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5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체

(단위: %, 점, 명)

구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만족도								
	전혀 만족 안함	별로 만족 안함	보통	약간 만족함	매우 만족함	잘 모름	계	사례 수	평균
아이돌보미 이용 신청 방법	5.6	11.2	30.3	32.6	19.1	1.1	100.0	(89)	3.5
대기 기간 및 서비스 연결	4.5	22.5	24.7	37.1	10.1	1.1	100.0	(89)	3.3
서비스 이용 비용	3.4	16.9	28.1	39.3	11.2	1.1	100.0	(89)	3.4
서비스 내용 및 질	3.4	15.7	33.7	32.6	13.5	1.1	100.0	(89)	3.4
서비스 이용 시간	2.2	7.9	38.2	31.5	18.0	2.2	100.0	(89)	3.6

나. 아이돌봄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막내 자녀의 돌봄을 위해 향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이용 의향이 있다(대체로 많음+많음)고 응답한 경우는 40.1%, 없다(전혀 없음+거의 없음)고 응답한 경우는 59.9%로 향후 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을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막내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부모 근로 유형에서 평균 이용 의향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만 0세와 만 1세는 이용 의향 점수가 평균 2.5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이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평균 2.4점으로 외벌이 등 다른 유형에 비해 이용 의향 점수가 높았다. 부모의 근로 유형으로 확인할 때에도 전일제 외벌이와 부모 둘 다 미취업 상태인 경우는 이용 의향 점수가 평균 2.2점이었으나, 부모 모두가 전일제나 시간제 등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유형들은 그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평균 2.4점).

〈표 5-57〉 아이돌봄서비스 향후 이용 의향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①+② 없음	③ 대체로 많음	④ 매우 많음	③+④ 많음	계	평균
▣ 전체 ▣	(1,481)	13.0	46.9	59.9	34.0	6.1	40.1	100.0	2.3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7.7	38.8	46.4	44.5	9.1	53.6	100.0	2.5
만 1세	(226)	8.4	44.7	53.1	40.7	6.2	46.9	100.0	2.5
만 2세	(237)	14.3	43.0	57.4	38.0	4.6	42.6	100.0	2.3
만 3세	(254)	15.0	49.2	64.2	28.3	7.5	35.8	100.0	2.3
만 4세	(266)	13.9	52.6	66.5	28.9	4.5	33.5	100.0	2.2
만 5세 이상	(289)	17.0	50.2	67.1	27.7	5.2	32.9	100.0	2.2
F					6.7***				

	사례 수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①+② 없음	③ 대체로 많음	④ 매우 많음	③+④ 많음	계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11.1	45.9	56.9	35.8	7.2	43.1	100.0	2.4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10.9	44.3	55.2	37.5	7.3	44.8	100.0	2.4
외벌이	(427)	17.1	51.1	68.1	27.6	4.2	31.9	100.0	2.2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16.0	40.0	56.0	42.7	1.3	44.0	100.0	2.3
F		7.2***(a)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11.8	43.5	55.3	37.4	7.3	44.7	100.0	2.4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10.4	47.7	58.1	34.9	7.0	41.9	100.0	2.4
둘 다 시간제/기타	(81)	6.2	49.4	55.6	39.5	4.9	44.4	100.0	2.4
전일제 외벌이	(376)	17.8	52.4	70.2	26.1	3.7	29.8	100.0	2.2
미취업+시간제/기타	(66)	13.6	43.9	57.6	36.4	6.1	42.4	100.0	2.4
둘 다 미취업	(34)	20.6	41.2	61.8	35.3	2.9	38.2	100.0	2.2
F		5.7***(a)							

* p < .05, ** p < .01, *** p < .001

향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할 것 같은지 또는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할 것 같은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60.8%가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58〉 향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패턴

(단위: %, 명)

	사례 수	주기적으로 이용할 것 같음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할 것 같음	계
▣ 전체 ▣	(594)	39.2	60.8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12)	46.4	53.6	100.0
만 1세	(106)	34.9	65.1	100.0
만 2세	(101)	34.7	65.3	100.0
만 3세	(91)	44.0	56.0	100.0
만 4세	(89)	38.2	61.8	100.0
만 5세 이상	(95)	36.8	63.2	100.0
X^2(df)		5.273(5)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막내 자녀에 대한 주요 돌봄 방식이 가정양육인 응답자 중에서 향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의 이용 시기를 늦출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표 5-59〉와 같다. 199명의 응답자 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를 늦출 의향이 많다(대체로 많음+매우 많음)고 응답한 경우는 65.8%로 응답자의 전반을 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확인했을 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5-59〉 가정양육 중인 응답자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을 경우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 늦출 의향

(단위: %, 점, 명)

	사례 수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①+② 없음	③ 대체로 많음	④ 매우 많음	③+④ 많음	계	평균
▣ 전체 ▣	(199)	5.0	29.1	34.2	55.3	10.6	65.8	100.0	2.7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101)	5.9	36.6	42.6	46.5	10.9	57.4	100.0	2.6
만 1세	(52)	7.7	19.2	26.9	59.6	13.5	73.1	100.0	2.8
만 2세	(14)	0.0	21.4	21.4	64.3	14.3	78.6	100.0	2.9
만 3세	(10)	0.0	30.0	30.0	60.0	10.0	70.0	100.0	2.8
만 4세	(12)	0.0	33.3	33.3	66.7	0.0	66.7	100.0	2.7
만 5세 이상	(10)	0.0	10.0	10.0	90.0	0.0	90.0	100.0	2.9
F					0.8(a)				

* p < .05, ** p < .01, *** p < .001

제4절 서비스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

1. 정책 인지도

미취학 자녀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최근 변화된 정책이자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시설 외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현금(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서비스(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지도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은 가정양육수당이었으며 그다음은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 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현금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시간 지원이었으며,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낮았다.

〈표 5-60〉 제도별 인지 정도: 전체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사례 수
현금 지원	0-1세 부모급여	7.3	38.3	54.4	100.0	(1,481)
	가정양육수당	5.9	27.1	67.0	100.0	(1,481)
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	13.0	55.5	31.5	100.0	(1,48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5.5	57.3	27.3	100.0	(1,48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8.2	52.8	19.0	100.0	(1,481)
시간 지원	부모육아휴직제도	12.2	44.4	43.5	100.0	(1,481)

가. 부모급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1세(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에 대한 인지도는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38.3%, '전혀 모른다' 7.3%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는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책의 대상이 되는 0세와 1세에서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80% 내외로 매우 높았고, 2세도 부모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61〉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부모급여

(단위: %, 명)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 전체 ▣	(1,481)	7.3	38.3	54.4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4	14.8	83.7	100.0
만 1세	(226)	2.7	18.1	79.2	100.0
만 2세	(237)	3.0	30.0	67.1	100.0
만 3세	(254)	9.4	50.0	40.6	100.0
만 4세	(266)	10.5	52.6	36.8	100.0
만 5세 이상	(289)	13.8	54.3	31.8	100.0
X^2(df)		262.802(10)***			

* p < .05, ** p < .01, *** p < .001

나. 가정양육수당

만 2세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의 경우에는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67.0%,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27.1%, 전혀 모르는 경우가 5.9%로 나타났다.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미취학 자녀 수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는데, 이는 부모급여가 도입되기 전 이들이 막내 자녀가 아닌 자녀에 대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은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62〉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가정양육수당

(단위: %, 명)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 전체 ▣	(1,481)	5.9	27.1	67.0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6.2	23.0	70.8	100.0
만 1세	(226)	8.8	23.9	67.3	100.0
만 2세	(237)	2.5	27.0	70.5	100.0
만 3세	(254)	5.5	27.2	67.3	100.0
만 4세	(266)	6.0	27.4	66.5	100.0
만 5세 이상	(289)	6.6	32.2	61.2	100.0
X^2(df)		15.423(10)			
미취학 자녀 수					
1명	(1,027)	6.6	29.5	63.9	100.0
2명	(422)	4.7	21.8	73.5	100.0
3명 이상	(32)	0.0	18.8	81.3	100.0
X^2(df)		16.213(4)**			

* p < .05, ** p < .01, *** p < .001

다. 시간제 보육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이용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31.5%,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55.5%, 전혀 모르는 경우가 13%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에 대한 인지도는 정책 대상이 되는 막내 자녀 연령이 만 2세까지인 경우 3세 이상에 비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5-63〉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시간제 보육

(단위: %, 명)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 전체 ▣	(1,481)	13.0	55.5	31.5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9.1	53.1	37.8	100.0
만 1세	(226)	12.4	49.6	38.1	100.0
만 2세	(237)	9.3	51.9	38.8	100.0
만 3세	(254)	16.1	55.9	28.0	100.0
만 4세	(266)	14.7	60.2	25.2	100.0
만 5세 이상	(289)	14.9	60.2	24.9	100.0
X^2(df)		30.828(10)**			

* p < .05, ** p < .01, *** p < .001

라. 아이돌봄서비스

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중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27.3%,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57.3%, 전혀 모르는 경우가 15.5%로 나타났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막내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취학 자녀가 많은 경우 자녀 돌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벌이인 경우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들 집단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그만큼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취학 자녀가 많은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많았고(〈표 5-51〉 참고), 외벌이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적었으며(〈표 5-51〉 참고), 향후 이용 의향도 적었다(〈표 5-57〉 참고).

〈표 5-64〉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단위: %, 명)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 전체 ▣	(1,481)	15.5	57.3	27.3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2.9	57.4	29.7	100.0
만 1세	(226)	15.5	54.0	30.5	100.0
만 2세	(237)	14.3	57.8	27.8	100.0
만 3세	(254)	16.9	56.7	26.4	100.0
만 4세	(266)	14.7	60.5	24.8	100.0
만 5세 이상	(289)	17.6	56.7	25.6	100.0
X^2(df)		5.688(10)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미취학 자녀 수					
1명	(1,027)	16.0	59.4	24.6	100.0
2명	(422)	14.5	53.1	32.5	100.0
3명 이상	(32)	12.5	43.8	43.8	100.0
X^2(df)		13.72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14.4	56.5	29.1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12.5	62.0	25.5	100.0
외벌이	(427)	19.0	57.8	23.2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14.7	49.3	36.0	100.0
X^2(df)		12.690(6)*			

* p < .05, ** p < .01, *** p < .001

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는 19%에 불과하였고,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52.8%, 전혀 모르는 경우도 28.2%로 나타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인지도는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고, 외벌이인 경우는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5-65〉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단위: %, 명)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 전체 ▣	(1,481)	28.2	52.8	19.0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6.3	54.1	19.6	100.0
만 1세	(226)	28.8	49.1	22.1	100.0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만 2세	(237)	28.7	49.4	21.9	100.0
만 3세	(254)	27.2	55.1	17.7	100.0
만 4세	(266)	26.3	56.4	17.3	100.0
만 5세 이상	(289)	31.5	52.2	16.3	100.0
X^2(df)		7.998(10)			
미취학 자녀 수					
1명	(1,027)	28.4	55.3	16.3	100.0
2명	(422)	27.7	47.9	24.4	100.0
3명 이상	(32)	28.1	37.5	34.4	100.0
X^2(df)		19.19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7)	25.0	54.9	20.1	100.0
맞벌이(1인 휴직 중)	(192)	27.1	54.7	18.2	100.0
외벌이	(427)	35.1	48.5	16.4	100.0
기타(2인 휴직/미취업)	(75)	25.3	50.7	24.0	100.0
X^2(df)		15.779(6)*			

* $p < .05$, ** $p < .01$, *** $p < .001$

마. 부모육아휴직제도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부모가 함께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더 지급하는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43.5%,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는 44.4%, '전혀 모른다'는 12.2%로 나타났다.

부모육아휴직제도는 2022년에 3+3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에 6+6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막내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인지도가 높았으며, 정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모가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기존에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해본 경우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표 5-66〉 정부 지원 정책 인지도: 부모육아휴직제도

(단위: %, 명)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 전체 ▣	(1,481)	12.2	44.4	43.5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9.6	34.0	56.5	100.0
만 1세	(226)	9.3	37.6	53.1	100.0
만 2세	(237)	11.0	46.0	43.0	100.0
만 3세	(254)	12.2	42.5	45.3	100.0
만 4세	(266)	13.5	52.6	33.8	100.0
만 5세 이상	(289)	15.9	49.8	34.3	100.0
X^2 (df)			44.969(10)***		
부모 근로 유형					
모두 전일제	(626)	7.8	38.8	53.4	100.0
전일제+시간제/기타	(298)	15.8	45.3	38.9	100.0
둘 다 시간제/기타	(81)	18.5	51.9	29.6	100.0
전일제 외벌이	(376)	13.3	49.7	37.0	100.0
미취업+시간제/기타	(66)	18.2	51.5	30.3	100.0
둘 다 미취업	(34)	20.6	47.1	32.4	100.0
X^2 (df)			54.904(10)***		
육아휴직					
어머니만 사용	(491)	10.0	36.7	53.4	100.0
아버지만 사용	(97)	10.3	47.4	42.3	100.0
부모 모두 사용	(159)	3.1	35.8	61.0	100.0
모두 사용하지 않음	(734)	15.8	51.0	33.2	100.0
X^2 (df)			77.381(6)***		

* p < .05, ** p < .01, *** p < .001

2. 제도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수요 변화

가. 부모급여 영향

막내 자녀가 부모급여가 도입된 2023년 이후 출생한 경우에 한해 부모급여가 막내 자녀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4.8%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 35.2%에 비해 높았다. 부모급여 도입의 영향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월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비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만, 가구소득은 자녀 출생 당시의 가구소득이 아닌 현재 가구소득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표 5-67〉 부모급여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2023년 이후 출생자)

(단위: %, 명)

	사례 수	예. 영향을 미침	아니오.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
▣ 전체 ▣	(389)	64.8	35.2	100.0
막내 자녀 출생 연도				
2023년	(233)	64.4	35.6	100.0
2024년	(156)	65.4	34.6	100.0
X^2 (df)			0.914(1)	
가구소득				
월 300만 원 미만	(33)	75.8	24.2	100.0
월 300만 원 ~ 500만 원 미만	(144)	73.6	26.4	100.0
월 500만 원 ~ 700만 원 미만	(126)	58.7	41.3	100.0
월 700만 원 이상	(86)	54.7	45.3	100.0
X^2 (df)			12.554(3)**	

* p < .05, ** p < .01, *** p < .001

부모급여가 막내 자녀의 돌봄 방식이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 가정돌봄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56.3%, 기관돌봄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39.7%,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31%, 아이돌봄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33.3%로 나타나, 가정돌 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의 영향은 가정돌봄은 늘리는 쪽으로, 기관돌봄은 줄이는 쪽으로 주로 작용하였다.

〈표 5-68〉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막내 자녀 2023~2024년생)

(단위: %, 명)

구분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				
	해당 돌봄 방식을 줄임	변화 없음 (기존 방식 유지)	해당 돌봄 방식을 늘림	계	사례 수
가정돌봄	8.7	43.7	47.6	100.0	(252)
기관돌봄	24.6	60.3	15.1	100.0	(252)
시간제 보육서비스	17.1	69.0	13.9	100.0	(252)
아이돌봄서비스	17.5	66.7	15.9	100.0	(252)

주: 막내 자녀가 2023년 이후 출생한 응답자 중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결과임.

한편, 부모급여가 도입되기 전에 막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급여의 도입이 자녀의 돌봄 방식이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3.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5.9%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1.0%로 나타났다. 실제 부모급여의 수혜자의 응답과 비교해보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않을 것이다)는 응답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쳤다(미칠 것이다)는 응답은 실제 부모급여 수혜자가 더 높았다.

부모급여가 자녀의 돌봄 방식이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정돌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영향의 방향은 가정돌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늘리고 기관돌봄은 줄이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대체로 실제 부모급여 대상자의 변화 내용과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이며, 응답자들은 변화 정도를 더 크게 예상하고 있었다.

〈표 5-69〉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미칠 영향(막내 자녀 2018~2022년생)

(단위: %, 명)

구분	부모급여에 따른 돌봄 방식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생각				
	해당 돌봄 방식을 줄임	변화 없음 (기존 방식 유지)	해당 돌봄 방식을 늘림	계	사례 수
가정돌봄	11.7	29.8	58.4	100.0	(580)
기관돌봄	31.4	40.0	28.6	100.0	(580)
시간제 보육서비스	17.8	45.3	36.9	100.0	(580)
아이돌봄서비스	20.9	44.1	35.0	100.0	(580)

주: 막내 자녀가 2022년에 출생한 경우와 2022년 이전에 출생한 응답자 중,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결과임.

나. 부모육아휴직제도 영향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2022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자녀의 부모가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이었던 경우에 한해 자녀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질문한 결과,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과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각각 5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모육아휴직이 도입된 영향은 막내 자녀의 출생 연도와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막내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인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2023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부모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변경된 것은 2024년이지만 2023년에 보편적 급여인 부모급여가 비교적 큰 금액으로 도입되면서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자녀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5-70〉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영향 여부(막내 자녀 2022~2024년생)

(단위: %, 명)

	사례 수	예. 영향을 미침	아니오.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
▣ 전체 ▣	(426)	50.0	50.0	100.0
막내 자녀 출생 연도				
2022년	(155)	40.0	60.0	100.0
2023년	(165)	57.6	42.4	100.0
2024년	(106)	52.8	47.2	100.0
X^2(df)			10.328(2)**	
육아휴직				
어머니만 사용	(178)	39.3	60.7	100.0
아버지만 사용	(20)	60.0	40.0	100.0
부모 모두 사용	(74)	77.0	23.0	100.0
모두 사용하지 않음	(154)	48.1	51.9	100.0
X^2(df)			30.768(3)***	

주: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는 제외함.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막내 자녀의 돌봄 방식이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가정돌봄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59.6%로 가장 많았고, 기관돌봄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44.6%,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40.4%, 아이돌봄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43.7%로 나타났다.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영향도 가정돌봄을 늘리는 쪽으로 매우 크게 작용하였으며, 기관돌봄은 늘리는 방향도 많지만 줄이는 방향이 조금 더 많았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는 늘리는 방향이 조금 더 많았다.

〈표 5-71〉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2022년 이후 출생자): 전체

(단위: %, 명)

구분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미친 영향				
	해당 돌봄 방식을 줄임	변화 없음 (기존 방식 유지)	해당 돌봄 방식을 늘림	계	사례 수
가정돌봄	6.1	40.4	53.5	100.0	(213)
기관돌봄	24.4	55.4	20.2	100.0	(213)
시간제 보육서비스	19.7	59.6	20.7	100.0	(213)
아이돌봄서비스	21.1	56.3	22.5	100.0	(213)

주: 막내 자녀가 2022년 이후 출생한 응답자 중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결과임.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기 전 막내 자녀가 태어났거나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자녀의 돌봄 방식이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63.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27.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9%로 나타나 부모육아휴직제도 정책 대상자의 응답에 비해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자녀의 돌봄 방식이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가정돌봄을 늘릴 것이라는 예상이 72.6%로 가장 많았고 기관돌봄이나 시간제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34%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제 부모육아휴직제도 대상자의 응답과 비교 시 변화 정도를 더 크게 예상하고 있었다.

〈표 5-72〉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미칠 영향(막내 자녀 2018~2021년생 및 2022년 이후 출생자 중 부모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단위: %,)

구분	부모육아휴직제도에 따른 돌봄 방식별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생각				
	해당 돌봄 방식을 줄임	변화 없음 (기존 방식 유지)	해당 돌봄 방식을 늘림	계	사례 수 (명)
가정돌봄	6.8	20.6	72.6	100.0	(591)
기관돌봄	33.7	41.5	24.9	100.0	(591)
시간제 보육서비스	34.3	39.1	26.6	100.0	(591)
아이돌봄서비스	35.7	37.9	26.4	100.0	(591)

주: 막내 자녀가 2021년에 출생한 경우와 2021년 이전에 출생한 응답자 그리고 2022년 출생자 중 부모육아휴직 대상이 아니었던 사례 중에서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돌봄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분석한 결과임.

다. 유보통합 영향

정부에서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와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60.5%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르는 경우가 20%,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19.5%로 나타났다. 유보통합에 대한 인지도는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5-73〉 유보통합 인지도

(단위: %, 명)

	사례 수	전혀 모른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계
▣ 전체 ▣	(1,481)	20.0	60.5	19.5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3.4	58.9	17.7	100.0
만 1세	(226)	20.4	59.3	20.4	100.0
만 2세	(237)	17.3	59.5	23.2	100.0
만 3세	(254)	19.3	61.4	19.3	100.0
만 4세	(266)	19.5	60.5	19.9	100.0
만 5세 이상	(289)	20.4	62.6	17.0	100.0
X^2 (df)		5.764(10)			

주: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는 제외함.

유보통합이 될 경우, 0~2세 영아 자녀의 돌봄을 위해 어떤 기관에 보낼 것 같은지 질문한 결과, 기존의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다는 응답이 35.4%, 유보통합 기관의 영아반에 보낼 것 같다는 응답이 30.5%,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다 28.0%, 잘 모르겠다 6.0%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0세인 경우는 유보통합 기관을 선호하는 반면,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표 5-74〉 유보통합이 될 경우, 영아기(만 0~2세) 자녀의 예상 이용 기관

(단위: %, 명)

	사례 수	기존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다	유보통합 기관의 영아반에 보낼 것 같다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481)	35.4	30.5	28.0	6.0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23.4	37.8	28.7	10.0	100.0
만 1세	(226)	37.6	29.2	27.0	6.2	100.0
만 2세	(237)	41.8	26.2	24.9	7.2	100.0
만 3세	(254)	38.2	26.4	30.7	4.7	100.0
만 4세	(266)	37.6	32.0	26.7	3.8	100.0
만 5세 이상	(289)	32.9	32.2	29.8	5.2	100.0
X^2 (df)		31.553(15)**				
현재 주된 돌봄 방식						
가정 양육	(423)	25.8	35.5	28.6	10.2	100.0
어린이집	(750)	43.2	25.2	27.7	3.9	100.0
유치원	(287)	29.3	35.9	29.3	5.6	100.0
기타	(21)	38.1	47.6	9.5	4.8	100.0
X^2 (df)		62.919(9)***				

주: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는 제외함.

유보통합이 될 경우, 3세 이상 유아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 기존의 유치원과 유보통합 기관의 유아반에 보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0%, 28.4%로 높았고, 기존 어린이집은 18.5%, 어디든 상관 없을 것 같다 19.6%, 잘 모르겠다 4.5%로 유보통합기관이나 기존 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막내 자녀가 0세인 경우에는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유아기에도 유보통합 기관을 선호하는 반면,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5-75〉 유보통합이 될 경우, 유아기(만 3세 이상) 자녀의 예상 이용 기관

(단위: %, 명)

	사례 수	기존 어린이집에 보낼 것 같다	유보통합 기관의 유아반에 보낼 것 같다	기존 유치원에 보낼 것 같다	어디든 상관없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481)	18.5	28.4	29.0	19.6	4.5	100.0
막내 자녀 연령1							
만 0세	(209)	13.9	34.9	22.0	21.5	7.7	100.0
만 1세	(226)	22.1	30.1	20.8	22.1	4.9	100.0
만 2세	(237)	21.5	26.2	27.4	19.8	5.1	100.0
만 3세	(254)	18.1	24.8	34.3	20.5	2.4	100.0
만 4세	(266)	20.3	25.9	32.3	17.3	4.1	100.0
만 5세 이상	(289)	15.2	29.8	33.9	17.6	3.5	100.0
X^2 (df)		38.659(20)**					
현재 주된 돌봄 방식							
가정 양육	(423)	16.5	32.2	23.4	20.3	7.6	100.0
어린이집	(750)	24.8	27.2	23.2	21.6	3.2	100.0
유치원	(287)	4.9	26.1	51.9	13.9	3.1	100.0
기타	(21)	19.0	28.6	33.3	14.3	4.8	100.0
X^2 (df)		133.774(12)***					

주: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는 제외함.

3. 정책요구도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에 육아지원을 하기 위해 자녀의 월령별로 현재 수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개월 미만과

12~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육아휴직 제도, 유연근무제 등 확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확대'였다. 즉 자녀가 어린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았고, 그다음은 시설의 양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확대'에 대한 욕구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이었다. 즉,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았다.

2순위 응답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인 경우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76〉 자녀 월령별로 개선이 필요한 육아지원 정책

(단위: %, 명)

정책 방향	자녀의 월령이…							
	0~12개월 미만일 때		12~24개월 미만일 때		24개월~36개월 미만일 때		36개월 이상 ~취학 전 일 때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확대	21.7	7.5	20.6	10.4	27.6	12.8	29.3	12.8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12.0	10.3	17.0	12.8	18.3	21.7	19.2	23.4
시간제 보육 기관 확대	5.1	7.0	7.7	8.7	8.3	9.4	6.1	8.0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질 개선	2.9	6.1	4.5	8.4	4.6	7.6	4.4	7.5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5.9	11.3	6.0	12.3	6.9	9.3	6.8	9.7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2.5	9.2	2.9	10.3	3.4	9.7	3.9	7.6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등 확대	30.0	14.4	24.2	13.5	16.9	11.8	15.7	12.4
가정양육수당 확대 (기관 미이용 시 제공)	6.5	17.6	6.1	11.6	3.8	8.0	3.9	8.2
부모급여 확대	13.4	16.7	10.9	12.0	10.3	9.7	10.7	1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 수	(1,481)	(1,481)	(1,481)	(1,481)	(1,481)	(1,481)	(1,481)	(1,481)

제5절 소결

1. 돌봄 형태 및 서비스 이용

만 0세의 경우 가정양육 비율이 92.8%이며, 만 1세에서 52.2%로 감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 맞벌이면서 1인이 휴직 중인 경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부모돌봄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미취학 자녀가 많은 경우,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만 0세에 주요 돌봄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3.8%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돌봄 이외에 보조 돌봄을 추가로 이용하는 비율은 76.4%로 매우 높았다. 다만 약 29.7%는 보조 돌봄을 하는 사람이 아동의 부모라고 응답하여, 이는 낮 시간에 기관서비스 이용 이외에 부모가 추가로 돌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모돌봄을 제외한 보조 돌봄 이용 비율은 약 47%로 볼 수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조부모 돌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영역에서 운영되는 아이돌보미나, 시간제 보육을 보조 돌봄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각각 3.5%, 2.2%로 매우 낮았다. 보조 돌봄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근로시간이 길어 주요 돌봄서비스 이용만으로는 부족해서(27.4%)'이며 농어촌 가구의 경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응답률이 높아 농어촌 지역에서도 장시간 근로환경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개선하고, 장시간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질이나 제공 시간의 문제는 기관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며, 장시간 근로에 따른 사항은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돌봄 형태와 희망하는 돌봄 형태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7%로 조사되었다. 맞벌이의 경우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맞벌이면서 1인이 휴직 중인 경우보다 10%p 높았으며,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모육아휴직, 아버지만 육아휴직) 어머니만 사용한 경우보다 불일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휴직이 희망하는 돌봄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희망 돌봄과의 일치 비율이 높았다.

향후 원하는 주요 돌봄 유형을 연령별로 조사한 결과, 12개월 미만의 경우 부모돌봄 희망 비율이 약 90%로 매우 높았으며, 이후 해당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만 4세~취학 전 시기에도 26.7%가 부모돌봄을 주요 돌봄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어린이집 27.5%, 유치원 34.5%) 유아기에도 부모돌봄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해당 연령의 기관서비스 이용률을 고려할 때 기관서비스 지원과 함께 시간 지원을 통해 부모의 돌봄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관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기존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밖에 향후 희망하는 보조 돌봄으로 아동의 조부모 돌봄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영아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보조 돌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6%, 3개월~6개월 미만 23.1%, 6개월~12개월 미만 18.2%로 높았다. 이는 현재 아이돌보미를 보조 돌봄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영아기 주요 돌봄으로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비율 각각 8.0%, 2.9%, 3.8%와 비교할 때 영아기에는 영아종일제보다 시간제 아이돌보미와 같이 보조적 돌봄

형태로 아이돌보미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긴급돌봄의 경우 80.1%의 가구에서 긴급돌봄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 기관돌봄 중인 경우 긴급돌봄 상황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돌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운영의 아이돌보미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는 각각 1.3%, 1.7%에 불과해 이웃이나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다는 비율 2.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내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5가지 영역(접근성, 비용 부담, 서비스 내용 및 질, 서비스 이용 시간, 기관 유형)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상보육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지리적 접근성(거리 및 등하원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아기보다 유아기에 비용 부담을 더 경험하고 있으며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불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내용 및 질에 대해서 민간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불만족이 높았고 반면 가정 어린이집은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이 운영 시간에 대하여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용 시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거나(80.8%),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운영 시간대가 적절하지 않다(13.5%)고 응답하였다.

36개월 미만 시기와 36개월 이후 시기에 대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2.3%, 23.0%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21 보육실태조사에서 영아기와 유아기에 입소 대기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42.3%, 46.6%로 유아기의 입소 대기 경험 비율은 보육실태조사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방법 및 조사 문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비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에는 지역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보다 대기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영아기, 유아기 모두 가장 많이 대기한 기관은 기존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기하다가 취소 후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 이런 경우를 모두 고려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잠재 수요는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전히 수요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비스 충분성과 수요

기관 유형별로 주변 지역의 기관 공급 충분성과 믿고 보낼 만한 기관 공급의 충분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관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시간제 보육에 대한 공급 충분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를 경험한 비율은 각각 20.9%, 19.9%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시간제 보육의 경우 '긴급성에 따른 적절한 이용(28.4%)', '제공기관과의 거리(24.5%)'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보미의 경우 '대기 기간 및 서비스 연결(27.3%)', '서비스 이용 비용(19.0%)'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들 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 의사 비율은 각각 59.4%, 40.1%로 현재의 이용 경험 비율보다 매우 높았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관보육서비스 이용 시기를 늦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58.4%, 65.8%로 매우 높았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공급

될 경우 이용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기관서비스 이용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서비스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

미취학 자녀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최근 변화된 정책이자 영유아 대상 보육·교육 시설 외의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현금(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서비스(시간제 보육,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에 대해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해당 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잠재 수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 제도 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 수요 변화를 분석한 결과,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실제로 부모급여가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64.8%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영향을 받은 비율이 75% 내외로 높았다. 부모급여가 가정돌봄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56.3%로, 부모급여는 가정돌봄은 늘리는 쪽으로, 기관돌봄은 줄이는 쪽으로 주로 작용하였다.

자녀의 부모가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대상이었던 경우에 한해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자녀 돌봄 방식 및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로 조사되었다.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의 영향은 막내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인 경우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반면 2023년 이후에 태어난 경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부모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변경된 것은 2024년이지만 2023년에 보편적 급여인 부모급여가 비교적 큰 금액으로 도입되면서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영향도 가정돌봄을 늘리는 쪽으로 매우 크게 작용하였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는 늘리는 방향이 조금 더 많았다.

유보통합이 될 경우, 0~2세 영아 자녀의 돌봄을 위해 기존 어린이집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막내 자녀의 연령이 0세인 경우는 유보통합 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 이상의 유아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는 기존 유치원과 유보통합 기관의 유아반을 어린이집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막내 자녀가 0세인 경우에는 영아기와 마찬가지로 유아기에도 유보통합 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유보통합이 추진되어 다양한 유형(어린이집, 유치원, 통합형)의 기관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통합형 기관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육아지원을 위해 자녀의 월령별로 현재 수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한 정책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 등 확대'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확대'였다. 즉 자녀가 어린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았고, 그다음은 국공립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확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이었다. 즉, 24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한 개선 욕구가 높았다. 2순위 응답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인 경우 가정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같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수요자 욕구 기반 서비스 공급정책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서비스 공급은 정원충족률 등에 기반한 수급 현황을 살펴볼 때, 총량적으로 공급 부족을 염려하기보다는 수요 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곳이 발생하고, 동시에 폐원 위기에 처한 기관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정원충족률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반면, 신도시 및 재개발단지 등은 여전히 공급 부족으로 보육을 원하는 수요가 발생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가정 어린이집의 제한적 인가 등을 토대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보육 수요에 따른 공급 계획이 읍면동 단위로 매우 촘촘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는 보육 수요를 추계할 때 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조사 수치와 실제 이용률 간의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보육실태조사의 수요율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공립 기관의 현황은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여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점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최근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계획(2023~2027)은 보육의 국가책임 실현을 비전으로 공급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7년까지 매년 500개소씩 2,5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공공보육 이용률 36.8%를 50%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함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보육계획에 보육서비스 공급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통합반(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 이용)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기관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 서울시의 경우 “동행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폐원 위기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원 신고 수리가 완료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원 규모별로 폐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2백만 원~4백만 원 수준이다.

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양육 경향이 높았으며, 기존 조사에서 유아기에 가정양육을 하는 이유가 비용 부담으로 조사된 사례를 고려할 때, 유아기의 기관서비스 이용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비용 부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기보다 유아기에 만족도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유아기에 기관서비스 이용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잠재 수요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양육 수요가 증가하고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해당 서비스를 매우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해당 서비스 이용 시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를 늦출 의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해당 서비스가 확대되어 기관서비스 이용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면 이는 수요자의 돌봄 욕구를 다방면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향후 보조 돌봄으로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해당 서비스가 대중적인 보조 돌봄의 유형으로 자리 잡을 경우 영유아기 돌봄공백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정책 제언

저출생과 제도 변화에 따라 수급이 불균형한 환경에서 기관돌봄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본 방향은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이며, 이를 위해서는 (1) 지역 단위 수요 파악과 공급체계 구축, (2) 기관돌봄 이외 돌봄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전략 마련, (3) 지역 형평적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4)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 지역 단위 수요 파악과 통합적 공급체계 구축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 기반의 수요 파악과 그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유아 대상 돌봄 수요 조사 – 확충 계획 – 폐원 기준 등에 있어서 통일된 체계가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요 조사 방법도 상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인가 또는 확충 계획도 상이

하고, 수요조사를 반영한 확충 계획의 연관성도 낮아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유보통합을 전제한 통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국공립 지역 편차 해소, 폐원 기관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도청-교육청이 협력하여 어린이집-유치원 수급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시도청 및 시군구와 논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육의 경우 광역-기초 지자체(지방정부) 단위에서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일부 자치구는 수요조사 및 정책 성과분석 연구 등을 토대로 보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일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 없이 공무원 선에서 전년도 정책 실적에 따라 정교하지 않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과 같이 관련 예산 지원과 계획의 구체성을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급 관리 전략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수요조사의 통합, 공급의 통합과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의 통합을 의미한다. 수급 관리 시 현재와 같이 단순한 정원충족률 및 서비스 공급률에 기반하기보다는 교육부의 유치원 취원 아동 조사와 같이 지역별로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의 경우 교육부의 취학 조사와 같이 나이스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시스템 구축 또한 고려해 볼 만하다. 수요 파악 및 추계 시에는 보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맞벌이 여부, 한부모, 저소득층, 영유아 연령 등)에 대한 통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활용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요 파악은 기본보육-연장보육-주말보육 등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 유형 및 접근성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공급 전략을 마련하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접근성 및 수요 조사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해서 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의 연령 구성과 선호 기관 유형 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요 파악과 함께 대기 현황에 대한 지역 차원의 모니터링도 적극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시정촌에서 입소 대기자를 대상으로 차후에 이용 가능한 보육소를 안내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장경희, 유해미, 2019). 국내도 유보통합 체계하에서 이와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공급 계획 시 연령별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 구성 등에 대한 유연한 공급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신규 입주 단지의 경우 영유아 수가 많아서 초기에는 보육 수요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 입주 가구의 아동 연령이 증가하고, 거주 변동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단지 내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외부 아동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등 운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주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 구성에 따른 운영의 자율성을 유연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기존의 확정된 연령별 반 구성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가 갖추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급 관리는 현재와 같이 각각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궁극적으로 아동돌봄서비스의 수급 관리는 아동 중심·지역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기관서비스 이외의 부가적 서비스 공급 전략 또한 기관서비스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기관돌봄 이외의 돌봄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돌봄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가정에서 개별 돌봄을 시행하거나 비정기적·비정형적인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기관돌봄 이외에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개별 돌봄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이돌보미와 기존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제 돌봄이 있다. 본 연구의 수요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기관 및 부모 돌봄을 통한 주요 돌봄을 보조하는 유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현재 이용자의 비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아이돌보미,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는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가.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현재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아이돌보미는 가정파견형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가구에서 이용하는데,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돌봄 수요가 발생하는 가구, 야간돌봄 또는 새벽돌봄이 필요한 가구, 기관 이용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에게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 편성하여 한부모 가정의 특성인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양육의 중첩된 부담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휴직 후 기관보육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 영아기에 한해서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연계를 우선해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처럼 돌봄공백 우려가 큰 수요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지만, '라'형(정부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이용하는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대중적인 보조 돌봄서비스로 충분히 기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과 같이 어린이집 접근성이 낮아서 집 근처에서 이용하기 힘든 가구의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의 경우 아이돌보미 수급이 어려운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교통수당 상향 조정 등 처우 개선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중)에 따른 전반적인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미채용으로 인해 활동수당의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규모나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신규 채용에 미온적이고, 아이돌보미 관리의 한계를 이유로 더 많은 수의 돌보미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 대기자가 여전히 많고, 대기 시간이 길지만 아이돌보미의 수급 부족으로 서비스 연계율이 떨어져 활동 수당 예산이 더디게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발생, 질병 감염 등의 민원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수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율과 대기자 및 대기 시간을 줄인 성과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양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기관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운영비 증액, 위탁기간 연장 등)를 주어 기관 간 모범이 되고,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밖에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가부 전달체계인 가족센터의 기본사업이 아니고 수탁사업이다. 여가부의 가장 큰 예산이 아이돌봄사업이므로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가족센터의 기본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 및 운영 인력의 안정성이 갖추어지도록 한다면 국민에게 좀 더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나. 시간제 보육 공급 확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반별 충족률이 급감함에 따라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반 중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반 운영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은 현재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이며, 전액 본인 부담의 경우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기존의 독립반 이외에 현재 통합반을 운영하는 것은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급증하는 어린이집의 폐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기존 반 아동의 보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될 필요는 있다.

시간제 보육은 현재 비정형 돌봄 및 틈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시간제 돌봄이 정규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가정양육 수요는 반드시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시간제 보육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 기존의 기관 이용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 내에서 주 5일 종일 돌봄을 이용했다면,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가정양육 시 주 3회, 1일 3시간 돌봄 등과 같이 정기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독립반 위주의 시간제로 운영하되, 연령별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이 매우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는 일부 국가 사례의 경우,[26] 주당 이용 횟수, 1일 이용 시간(오전 타임, 오후 타임, 전일 타임)에 대해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현재에도 국내의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정기적 돌봄 서비스의 하나의 형태로 이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 측면에서 농어촌의 경우 시간제 보육서비스 공급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6)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 선택이 매우 자유롭게 설계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대부분 자부담이며 비용 부담이 매우 높다는 특이점이 있다.

서는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내 양육 가구를 위해 최소 단위 공급 기준을 설정하여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확충은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통한 시간제 보육반 설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급증하는 어린이집의 폐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방안이다. 장기적으로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유치원에서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타 기관을 활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대상 연령을 36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유아기의 긴급돌봄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지역 형평적 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연구 결과 국공립 비율과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할 때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보육 이용률 50% 이상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달성이 지역 격차 없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공립 비율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확충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이나 부지 매입 및 설치비 등의 지자체 부담이 큰 사업으로, 지자체 장의 관심도나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이 맞물려야만 확대가 가능하다. 유보통합에 따라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으며, 2025년에는 지방 단위에서의 보육 업무 이관 작업이 추진

될 계획으로, 이는 지자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만들고 있다.

유보통합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청 무상임대가 추진되고 있어 당초 설치 계획이 있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도 중단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육청 이관에 대비하여 발 빠르게 정원충족률이 낮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폐원하여 육아지원 기관(장난감 대여, 도서 대여,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아동 감소 등을 고려해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 활용 방안(민간시설 국공립 전환)을 통한 확보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조항에 따른 설치 정도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민간시설을 장기임차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소유와 운영이 모두 사인인 장기임차 국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이 아닌 사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격차 해소는 당분간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 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한 명의 영유아도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유보통합 정착이후, 공립 유치원에서 0~2세 입학이 가능하게 되고, 농어촌 등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 중심으로 병설 유치원에 영아반 개설이 추진될 경우 국공립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나. 폐원 어린이집 대응 모색

인구 감소에 따라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프라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방향으로, 인프라 취약지역의 경우 국공립 우선 확충(전환)의 전략으로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유보통합이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기존 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주변 공사립 유치원에 영아반을 설치하여 영아를 수용하는 방법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한해 보육 수요가 낮아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외에 어린이집 유형을 전환하지 않은 채 별도의 운영지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인가 및 폐원은 어린이집 설치자 선택 사항으로 폐원 어린이집 관리 전략이 별도로 필요하기보다는 지역의 보육 수요와 공급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폐원 위기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고, 지역 단위 보육 업무 이관이 완료된 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수급계획을 세우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인가 및 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서비스 질 개선 방안 모색

본 연구 결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주요 요인은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도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다. 시설 유형별로 만족도가 낮은 영역을 조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의 경우 부모의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체험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비용 측면에서 정부는 보육 및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부모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진정한 무상보육을 실시한다는 6·19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용 부담은 일정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저소득 가구의 가정양육 비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로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조사된바 이들을 대상으로 기관서비스 이용 보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정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기에 따른 발달 특성과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고려한 특별활동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 지원과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논의가 있었으나 유보통합 이슈에 가려져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은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함께 폐원 위기의 기관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강지원, 최혜진, 김성아, 이지혜, 노현주, 조동훈, 유해미, 이길재, & 이희현. (2021).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기도교육청. (2019. 5. 12.). 경기도교육청, 22일까지 '매입형유치원' 공개모집. [보도자료].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0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63&menuInit=2,2,0,0,0&bbsId=978610

경기도교육청. (2024).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변경계획).**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1 -197호. "2021년 건물매입형 공립유치원 모집 공고". 학교설립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4-216호. "2024년 분당구 어린이집 보육수급계획 공고". 가정복지과.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4-83호. "2024년 용인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고시". 아동보육과.

경기도 하남시 공고 제2021-319호. "2021년도 하남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보육료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결과". 여성보육과.

경기도 화성시 공고 제2021-821호. "2021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영유아보육과.

경기도 화성시 공고 제2024-544호. "2024년 어린이집 폐원지원금 지원 공고". 영유아보육과.

관계부처 합동. (2023). **제3차(2023~2027)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고용노동부. (2024a).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고용노동부. (2024b). **일하는 부모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따라잡기**.

고용노동부. (2024. 2. 26). 최근 5년간 출생아 수 감소에도 일·육아지원제도 사용자는 증가 추세.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232.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48호 (2024).

공병호. (2022). 정책, 유보통합, 유·보통합의 경위와 향후 과제. **교육비평, 49**, 8-41.

교육부. (2023).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연령별 보육아동 현황**. 2024.10. 7.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5&conn_path=I2

교육부. (2023. 12. 8.).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관 메시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9&boardSeq=9735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17&opType=N.

교육부. (2024. 6. 27.). 국민이 믿고 편안히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유보통합 실행계획 마련 [보도자료],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별첨].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9230

교육부. (2024. 9. 3.).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올해 하반기까지 2배(2,027개) 확대 운영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92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5&s=moe&m=020402&opType=N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013. 12. 15.).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육아정책포럼, 38**, 44-50.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2018. 3.),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김교령, 한산섬, & 박은혜. (2023).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유 · 보 및 유 · 초 이음교육 방향 탐색: 학제, 교육과정, 교원, 의무교육여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27**(2), 217-238. http://doi.org/10.32349/ECERR.2023.4.27.2.217

김나영, 황선영, & 엄지원. (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병인. (2020). 저소득층 엄마를 '활성화'하라: '아동' 중심의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반빈곤정책과 보육정책. **비판사회정책, (69)**, 7-33. http://doi.org/ 10.47042/ACSW.2020.11.69.7.

김은설, 최윤경, 권미경,최효미, 김나영, 김자연, & 박은영. (2021).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정. (2022). 가정양육수당 vs 보육시설 이용자 특성 비교. **성인지통계시스템 분석리포트**(22-3), 1-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데이터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2024).

박은정. (2022). 부모급여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육아정책포럼, 74**, 20-28. 육아정책연구소.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혜정, & 송지은. (2021).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1995). **1995년도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6). **1996년도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7). **1997년도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8). **1998년도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1999). **1999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0). **200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1).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2). **2002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3). **200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2004). **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a).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3b).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5).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6).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8).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23). 2022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2021. 12. 2). 영아기 집중투자 및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등 핵심 민생법안 포함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8748&tag=&nPage=1
보건복지부. (2022.6.16.). 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71796&tag=&nPage=1.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 5. 4).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act=view&list_no=376123&tag=&nPage=64
보건복지부. (2024.1.12.). 인상된 부모급여로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

00&bid=0027&list_no=1479791&act=view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4).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 **2024년 시간제 보육 사업안내.**

보건사회부. (1993). **1993년도 보육사업지침.**

보건사회부. (1994). **1994년도 보육사업지침.**

서문희, 김은설, 최진, 안재진, 최혜선, 김유경, & 조애저. (2009).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서**.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도남희, & 송신영. (2011), **어린이집 설치 인가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 이혜민. (2012). **201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조애저, 김유경, 최은영, 박지혜, & 최진원.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I -보육·교육이용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2023. 11. 19.). '동행어린이집'으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 지원한다.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57992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7호. "2024~2026학년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568호. "2024년 관악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결정사항 공고".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4). 중점관리 대상 사업 사업내역서(제4조 제1항 관련). 정보공개-정책실명제 대상사업공개-공약사업 및 주요정책-(2024-30) 공립유치원확대. 2024. 9. 20. 검색. https://www.sen.go.kr/user/bbs/BD_selectBbs.do?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bbsSn=1160&q_bbsDocNo=2024093012130 2871&q_clsfNo=&q_searchKeyTy=ttl___1002&q_searchVal=%EA%B3%B5%EB%A6%BD%EC%9C%A0%EC%B9%98%EC%9B%90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30호. “2024~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 안내”. 행정지원과.

신주현. (2022. 12. 23.). **20km 이상 어린이집 원정 통학? ‘신도시맘’은 웁니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981529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제19338호 (2023).

아이돌봄서비스. (2024a). **아이돌봄사업-서비스유형소개.** 2024. 6. 20. 검색, https://www.idolbom.go.kr/front/biz/srvcGuide

아이돌봄서비스. (2024b). **아이돌봄사업-아이돌봄 사업현황.** 2024. 6. 20. 검색, https://idolbom.go.kr/front/biz/stts

양미선, 김동훈, & 최윤경. (2018). **저출산에 대응한 어린이집·유치원 공급체계 전환과 중장기 적정수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민석, 안현미, & 서영주. (2012). **서울시 육아지원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부(2006).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부. (2005).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

여성부. (2006). **2006년도 보육사업안내.**

여성부. (2007).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

여성부. (2008).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21, 2022, 2023).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자료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2024).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2024. 9. 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14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4328호 (1991).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5358호 (1997).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5845호 (1999).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153호 (200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302호 (200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 (2005).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9165호 (2008).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0789호 (2011).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144호 (2011).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1627호 (2013).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697호 (201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41호 (20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여성부령 제14호 (200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924호 (199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6호 (199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64호 (201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25호 (201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2호 (201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71호 (2019).
유해미. (2022).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와 정책적 함의. 육아정책 포럼, 74**, 6-19.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법, 법률 제13574호 (2015).
유아교육법, 법률 제19737호 (2023).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29호 (2024).
유치원 알리미. (2024). 공시자료다운로드-일반현황. 2024, 9. 13.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육아정책연구소. (2024). **2023 영유아 주요 통계**.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 이지혜. (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희, 양미선, 윤소정, 김종근, 구형모.(2023). **저출생시대 육아인프라 추이분석**

및 대응 방안(Ⅱ):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인프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2022).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전략. **육아정책포럼, 72**, 31-48.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유해미, 조혜주, 김윤환, 신윤정, & 한인애, (2023). **영아기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이정림, & 김태우. (2018).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정원, 이정림, 도남희, 최효미, 이재희, 이윤진, 윤지연, & 염혜경. (2018). **2018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2). **2023년~2025년 인천광역시 유아취학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24. 10. 2. 검색. 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Info.do?mi=11841&nttSn=2468182&bbsId=780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4. 9.).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4차 변경 계획)**. 2024. 10. 2. 검색. https://www.ice.go.kr/people/na/ntt/selectNttInfo.do?mi=10504&nttSn=329831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139호,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가정보육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234호, "2024년 연수구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출산보육과.

장경희, & 유해미. (2019). **일본의 양육지원 정책.**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6. 19.). 저출생 추세 반전를 반전시키기위한 3대 핵심 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보도자료],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 [별첨 1 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325

정경희, & 김유경. (1997). **지역별 보육수요와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희, & 조택희. (2020). 지역 간 노인복지시설 공급 형평성 분석. **GRI 연구논총, 22**(1), 187-210.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제2024-627호, "2024년 아산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

아동보육과.

통계청. (1990). **경제활동 인구연보.**

통계청. (1991a).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1b). **한국통계연감.**

통계청. (1996. 12.).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24). 인구동향조사. 2024. 8. 16.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1&vw_cd=MT_ZTITLE&list_id=A2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

통계청. (2022. 9. 28.). 2022년 7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20866

통계청. (2023.12.19.).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100&bid=11814&act=view&list_no=428557&tag=&nPage=1&ref_bid=210,211,11109,11113,11814

통계청. (2024). **인구동향조사-시군구/성/출산순위별 출생.** 2024. 9. 10.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03&conn_path=I2

통계청, (2024. 9. 25.). 2024년 7월 인구동향 [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300&bid=204&act=view&list_no=432861

통계청 설명자료서비스. (2024a). **통계별설명자료조회 -가족과 출산조사.**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331007

통계청 설명자료서비스. (2024b). **통계별설명자료조회 -보육실태조사.** https://www.k-stat.go.kr/metasvc/msba100/statsdcdta?statsConfmNo=3

31007

하동균, 문희정, & 명희정. (2012. 4.).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국가예산정책처, ㈜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23. 3. 15). **보육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성명서 발표** [남인순 의원실. 어린이집 폐원 증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2024.6.20. 검색,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isoon&logNo=223044961950&parentCategoryNo=28&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통계연보**. 2024. 6. 4. 검색. https://kess.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9, 2020, 2021, 2022, 2023). **교육통계연보-연도별 연령별 학생수. 2019~2023년**. 2024. 6. 27. 검색.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56&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a), **교육통계연보-설립별 연령별 학생수**, 2024. 9. 2. 검색,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25&survSeq=2024&itemCode=01&menuId=m_010106&uppCd1=010106&uppCd2=010106&flag=B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4b). **교육통계연보-유치원 설립별 학교수 (1965-2024)**, 2024. 9. 2. 검색, https://kess.kedi.re.kr/kessTheme/timeStats?survSeq=0000&survCd=550&uppCd1=03040101&menuId=m_02_03_02&itemCode=03

한국보육진흥원. (2024a). **[2001년 4/4분기]보육통계 전체**, 2024. 8. 8. 검색,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1/detail.do?colContentsSeq=455#none

한국보육진흥원. (2024b). **시간제보육 현황**. 2024.6.20. 검색, https://www.kcpi.or.kr/kcpi/cyberpr/childcarestat4.do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3. 5. 30.). 필요한 시간에 아이 맡기는 시간제보육반

89개 확대 운영 [보도자료]. https://www.ssis.or.kr/lay1/bbs/S1T67C101/B/101/view.do?article_seq=1251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DB조회. (2024).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2024. 8. 9. 검색.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CA0410N&conn_path=I3

행정안전부. (2023).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4. 6. 4. 검색, https://jumin.mois.go.kr

e-나라지표. (2024).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 수 현황.** 2024. 8. 16. 검색,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

e-stat. (2024). **統計で見る日本「学校基本調査：学校数、在学者数」.** 2024. 10. 3. 검색.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toukei=00400001&tstat=000001011528

United Nations(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Y: UN.

こども家庭庁. (2022. 7.).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について（令和4年7月）V.保育の必要性の認定·確認制度**. 2024. 9. 15.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59cb59b3-ce0e-4a4f-9369-2c25f96ad376/49ee80cc/20230929_policies_kokoseido_outline_08.pdf

こども家庭庁. (2023). **令和５年４月の待機児童数調査のポイント**. 2024. 10. 2.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699fe5b-bf3d-46b1-8028-c5f450718d1a/8e86768c/20230901_policies_hoiku_torimatome_r5_01.pdf

こども家庭庁. (2024a).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令和６年４月１日）」を公表します,** 2024. 10. 2.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4ddf7d00-3f9a-4435-93a4-8e6c204db16c/82ad22fe/20240829_policies_hoiku_torima

tome_r6_02.pdf

こども家庭庁. (2024b).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に関する説明資料**. 2024. 10. 3. 검색. https://www.cfa.go.jp/policies/kokoseido/mushouka/gaiyou#nintei

こども家庭庁. (2023. 9. 1.).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令和５年４月１日)」を公表します**. 2024. 9. 15.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f699fe5b-bf3d-46b1-8028-c5f450718d1a/7803b525/20230901_policies_hoiku_torimatome_r5_02.pdf

こども家庭庁. (2024. 8. 30.).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令和６年４月１日)」を公表します**. 2024. 9. 15. 검색.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4ddf7d00-3f9a-4435-93a4-8e6c204db16c/82ad22fe/20240829_policies_hoiku_torimatome_r6_02.pdf

厚生労働省. (2018). **「保育所等関連状況取りまとめ(平成30年４月１日)及び「待機児童解消加速化プラン」と「子育て安心プラン」 集計結果を公表」**. 2024. 9. 13, 검색.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76137_00002.html

厚生労働省. (2020). **新子育て安心プランの概要**. 2024. 10. 2. 검색,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c9e1a6a-698b-4f73-a402-d3cc3fee4f07/189c4c6e/20230930_policies_kokoseido_law_jimurenraku_40.pdf

旭川市. (2022. 5.). **旭川市の保育と市立保育所の在り方**. 2024. 9. 15. 검색. https://www.city.asahikawa.hokkaido.jp/kurashi/218/266/269/d075346_d/fil/arikata.pdf

池本美香. (2023). 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の 7年 - 保育·子育て支援の現状と今後の在り方. **連合総研レポート DIO, 34**(12), 4.

鎭目健太. (2023. 9. 2.). **令和５年度全国保育士養成セミナー こども家庭庁におけ**

る保育行政の動向と課題. 2024. 10. 3. 검색. https://www.hoyokyo.or.jp/gyousei_0901.pdf

社会福祉法人 全国社会福祉協議会, 全国保育協議会. (2023). **人口減少地域における保育課題と対応**. 2024. 10. 24. 검색. https://www.zenhokyo.gr.jp/cyousa/r05_01/r05_01.pdf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幼児教育課. (2024). **令和５年度 幼児教育実態調査.** 2024. 9. 13. 검색. https://www.mext.go.jp/a_menu/shotou/youchien/20240517-ope_dev03-1.pdf

横浜市. (2024). **保育コンシェルジュ**. 2024. 10. 24. 검색. https://www.city.yokohama.lg.jp/kosodate-kyoiku/hoiku-yoji/concierge/concierge.html

武蔵野市. (2024). **保育コンシェルジュ**. 2024. 10. 24. 검색. https://www.city.musashino.lg.jp/shussan_kodomo_kyoiku/kodomo_kosodate/hoikuen_yochien_kodomoen/1006844.html

的場康子. (2024. 8.). 保育所の「2025年問題」～地域の子育て拠点としての企業主導型保育事業～. LIFE DESIGN REPORT. 第一生命経済研究所.

児童福祉法, 法律第百六十四号, (1949).

学校教育法, 法律第二十六号, (1949).

〈부표 1〉 기초 지자체별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단위: 명, %)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전국	79.6	86.0	73.5	54.7	71.3	38.6	61.5	80.7	51.9	70.5	78.1	66.1	79.5	84.5	66.7	70.5	87.2	0.0	63.1	75.9	56.7
서울	77.9	87.5 (송파구)	66.1 (중구)	62.8	88.6 (영등포구)	0.0 (중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중랑구, 마포구, 광진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67.0	100.0 (영등포구)	0.0 (강남구, 광진구)	69.9	81.3 (성북구)	59.1 (도봉구)	80.2	91.5 (영등포구)	56.4 (종로구)	71.1	95.0 (서대문구)	0.0 (종로구,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용산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영등포구)	56.7	79.9 (은평구)	42.8 (강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부산	77.8	87.5 (동래구)	60.4 (연제구)	58.5	87.0 (금정구)	41.1 (사하구)	64.5	83.8 (연제구)	0.0 (기장군, 북구, 강서구, 중구, 동래구)	69.5	80.2 (부산진구)	60.9 (기장군)	76.0	97.4 (동구)	55.2 (영도구)	61.5	94.1 (남구)	0.0 (영도구, 해운대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사하구, 수영구, 강서구, 중구, 금정구, 동구)	63.8	100.0 (동래구)	0.0 (서구, 사상구)
대구	83.9	94. 8(남구)	78.9 (동구)	56.9	96.7 (중구)	45.9 (동구)	64.7	83.1 (중구)	0.0 (달성군, 군위군)	68.5	78.3 (중구)	0.0 (군위군)	67.5	90.9 (중구)	0.0 (군위군)	68.4	100.0 (수성구)	0.0 (군위군, 서구, 달서구, 중구)	57.5	79.4 (달성군)	0.0 (군위군)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인천	80.9	88.5 (서구)	47.0 (옹진군)	64.9	87.9 (남동구)	0.0 (옹진군, 동구, 계양구, 강화군, 연수구)	72.5	82.1 (부평구)	0.0 (옹진군, 동구, 계양구, 중구)	73.0	89.2 (강화군)	38.5 (옹진군)	84.5	90.8 (중구)	0.0 (옹진군)	66.7	70.0 (계양구)	0.0 (옹진군, 강화군,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중구)	66.0	89.7 (강화군)	37.8 (계양구)
광주	80.3	86.9 (동구)	74.4 (서구)	52.2	59.1 (남구)	42.5 (동구)	53.5	66.4 (남구)	18.5 (동구)	67.5	77.5 (동구)	64.5 (남구)	66.7	91.7 (동구)	61.3 (남구)	73.2	73.2 (광산구)	0.0 (남구, 서구, 북구, 동구)	61.8	77.7 (북구)	41.2 (남구)
대전	81.7	84.3 (유성구)	76.8 (대덕구)	56.3	83.5 (유성구)	46.7 (동구)	71.1	97.9 (중구)	43.0 (서구)	66.1	75.0 (유성구)	57.9 (중구)	77.8	82.8 (유성구)	64.7 (동구)	67.2	73.3 (중구)	0.0 (대덕구)	69.7	73.8 (유성구, 중구)	45.5 (대덕구)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울산	84.9	89.9 (남구)	76.2 (중구)	62.5	70.3 (북구)	0.0 (동구)	80.7	86.9 (북구)	0.0 (동구, 남구, 중구)	75.0	78.1 (중구)	71.5 (울주군)	76.8	81.3 (북구)	68.8 (울주군)	82.4	84.2 (남구)	0.0 (울주군, 동구, 중구)	60.8	72.7 (중구)	45.9 (북구)
세종	86.0	-	-	38.6	-	-	55.8	-	-	70.6	-	-	79.0	-	-	0.0	-	-	73.7	-	-
경기도	82.7	89.8 (연천군)	66.4 (포천시)	59.4	91.5 (성남시)	0.0 (포천시, 양주시, 이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안산시)	64.0	92.0 (시흥시)	0.0 (구리시, 하남시, 파주시, 연천군, 광명시, 과천시)	71.7	80.9 (구리시)	50.2 (연천군)	83.5	97.5 (과천시)	64.2 (동두천시)	74.2	100.0 (군포시)	0.0 (동두천시, 가평군, 이천시, 안성시, 양주시, 구리시, 오산시, 여주시, 시흥시, 양평군, 연천군)	63.6	85.5 (여주시)	0.0 (안성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강원	78.9	94.2 (철원군)	63.3 (홍천군)	50.7	78.3 (인제군)	0.0 (고성군)	52.8	68.8 (철원군)	0.0 (고성군, 정선군, 삼척시, 화천군, 태백시)	72.6	90.6 (인제군)	0.0 (정선군)	79.6	100.0 (영월군, 인제군)	0.0 (정선군, 양구군, 양양군, 평창군, 고성군)	64.0	85.0 (강릉시)	0.0 (정선군, 양구군, 양양군, 평창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철원군, 춘천시, 횡성군, 동해시, 영월군, 인제군)	75.9	98.7 (태백시)	0.0 (양양군, 평창군, 고성군, 영월군)
충북	79.0	90.6 (진천군)	58.8 (보은군)	52.1	78.6 (보은군)	22.5 (단양군)	57.8	97.1 (옥천군)	0.0 (증평군, 보은군)	71.1	78.9 (제천시)	0.0 (단양군, 괴산군)	79.8	85.0 (제천시)	0.0 (단양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45.8	80.0 (충주시)	0.0 (단양군, 옥천군,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괴산군, 청주시, 진천군, 제천시)	62.9	72.0 (충주시)	0.0 (단양군, 옥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충남	77.4	91.5 (예산군)	44.1 (태안군)	53.8	79.7 (홍성군)	29.5 (보령시)	66.1	100.0 (계룡시)	0.0 (부여군, 청양군)	69.1	83.8 (예산군)	44.0 (금산군)	77.9	95.0 (서천군)	0.0 (금산군)	79.4	79.4 (천안시)	0.0 *전 지역	67.7	99.4 (계룡시)	0.0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전북	77.3	88.8 (전주시)	0.0 (임실군)	53.4	71.8 (순창군)	0.0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51.9	74.7 (정읍시)	0.0 (장수군)	69.8	86.8 (무주군)	0.0 (장수군,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	72.3	100.0 (장수군)	0.0 (진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0.0	-	-	60.7	74.1 (전주시)	0.0 (진안군, 순창군, 무주군, 고창군,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전남	75.5	87.1 (나주시)	41.0 (강진군)	50.6	77.2 (강진군)	0.0 (구례군)	55.1	97.2 (화순군)	0.0 (함평군, 신안군, 장성군, 목포시, 나주시)	72.5	90.6 (구례군)	0.0 (함평군, 신안군, 곡성군, 장흥군, 진도군)	77.8	100.0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장흥군)	0.0 (신안군,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59.4	80.0 (장흥군)	0.0 (신안군,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보성군, 광양시, 장성군, 영암군,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화순군, 무안군, 구례군, 완도군, 함평군, 고흥군, 담양군, 영광군)	69.9	87.5 (영광군)	0.0 (신안군,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보성군, 화순군, 구례군, 완도군, 함평군, 고흥군, 장흥군)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경북	74.6	90.9 (경산시)	49.7 (영덕군)	51.9	88.4 (영주시)	0.0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영양군, 성주군)	55.0	95.2 (경주시)	0.0 (영덕군, 울릉군, 성주군, 고령군, 영천시, 김천시, 청도군)	66.1	90.8 (문경시)	0.0 (울릉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74.3	94.7 (울진군)	0.0 (울릉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87.2	87.2 (구미시)	0.0 *전 지역	61.0	100.0 (상주시)	0.0 (울릉군,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청도군, 봉화군, 성주군)
경남	73.5	82.8 (진주시)	56.6 (합양군)	47.7	76.6 (합양군)	0.0 (하동군, 거창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60.7	90.3 (진주시)	0.0 (함안군, 거제시, 통영시, 함양군)	67.1	84.9 (남해군)	0.0 (함양군, 산청군, 합천군)	72.7	100.0 (합천군)	0.0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37.7	100.0 (거제시)	0.0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함안군, 함양군, 사천시, 밀양시, 통합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59.5	85.7 (함안군)	0.0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거창군, 고성군, 합천군)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제주	85.5	88.1 (서귀포시)	83.5 (제주시)	71.3	76.3 (제주시)	62.8 (서귀포시)	72.3	76 (제주시)	66.5 (서귀포시)	78.1	79.6 (제주시)	69.7 (서귀포시)	79.2	80.1 (제주시)	74.4 (서귀포시)	0.0	-	-	65.9	67.1 (제주시)	59.8 (서귀포시)

〈부표 2〉 기초 지자체별 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단위: 명, %)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전국	31.1	403	1	117.7	600	1	51.1	103.8	5.0	66.0	116.7	0.8
서울	47.4	172 (강동구)	4 (동작구, 노원구)	107.1	429 (강남구)	15 (노원구)	65.8	100.0 (금천구, 은평구, 성북구)	18.2 (노원구)	67.2	100 (동대문구,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송파구, 양천구, 마포구, 강북구, 송파구,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강동구, 성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용산구, 중랑구, 강남구)	12.5(노원구)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부산	49.4	403 (강서구)	3 (기장군)	119.2	424 (강서구)	11 (사하구)	62.2	100.0 (연제구, 동래구, 강서구, 부산진구)	16.7 (기장군)	66.2	100.0 (부산진구, 해운대구, 남구, 북구)	7.7 (사하구)
대구	46.2	386 (달성군)	1 (군위군)	128.4	326 (달성군)	16 (북구)	50.6	100.5 (수성구)	5.6 (군위군)	68.1	100.0 (동구, 북구, 수성구, 서구, 중구, 달성군, 남구)	10.9 (동구)
인천	42.4	356 (서구)	2 (강화군, 옹진군, 동구, 부평구)	139.0	600 (연수구)	24 (동구)	60.1	100.0 (미추홀구, 중구, 연수구, 서구, 중구, 연수구)	10.0 (부평구)	70.7	100.0 (부평구, 남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중구, 연수구)	11.1 (동구)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광주	28.8	220 (남구)	1 (광산구)	118.3	408 (광산구)	13 (광산구)	51.5	100.0 (북구, 동구)	5.0 (광산구)	69.1	100.0 (광산구, 남구, 서구, 북구)	24 (광산구)
대전	26.2	109 (서구)	1 (동구)	112.9	359 (유성구)	12 (유성구)	44.9	100.9 (서구)	5.6 (동구)	63.5	100.0 (유성구, 중구, 서구)	4.0 (동구)
울산	39.9	206 (북구)	2 (울주군, 남구, 북구)	119.7	370 (동구)	21 (북구)	60.0	100.9 (남구)	11.1 (울주군, 남구, 북구)	71.3	100.5 (남구)	10 (북구)
세종	93.4	237	1	21.0	36	6	74.7	100.0	5.6	14.5	20.6	8.3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경기도	36.4	344 (파주시)	1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124.2	545 (용인시, 파주시)	8 (안산시)	51.5	100.0 (광주시, 수원시, 남양주시, 양주시, 과천시, 파주시, 평택시, 안산시, 하남시, 고양시)	5.0 (여주시)	65.0	100.0 (안양시, 화성시, 성남시, 파주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광주시, 수원시,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남양주시, 평택시, 용인시)	5.6 (용인시 처인구)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강원	20.3	134 (원주시)	1 (홍천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횡성군)	96.1	231 (춘천시)	13 (홍천군)	48.5	101.6 (춘천시)	6.3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횡성군)	65.0	100.0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9.3 (홍천군)
충북	32.7	248 (청주시)	1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96.8	251 (충주시)	12 (청주시)	50.2	101.7 (청주시)	5.9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청주시, 충주시)	64.0	100.0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증평읍, 음성군)	8.7 (제천시)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충남	21.5	222 (아산시)	1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122.5	384 (천안시)	5 (천안시)	50.7	102 (서천군)	6.7 (예산군, 홍성군)	65.5	116.7 (공주시)	6.3 (천안시)
전북	17.7	192 (군산시, 전주시)	1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진안군)	93.6	315 (군산시)	8 (전주시)	43.4	102.1 (전주시)	6.3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진안군)	59.3	100.0 (군산시)	5.4 (전주시)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전남	19.6	197 (무안군)	1 (강진군, 광양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91.2	369 (목포시)	13 (여수시)	42.7	103.8 (강진군)	5.9 (강진군, 광양시, 보성군, 순천시, 여수시,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	63.7	100.0 (완도군, 광양시, 순천시)	8.4 (광양시)
경북	19.4	212 (김천시)	2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7.6	342 (구미시)	5 (청도군)	41.8	100.0 (영주시, 경주시, 울릉군, 문경시, 구미시, 경산시, 문경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포항시)	10.0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66.2	100.0 (구미시, 칠곡군, 포항시, 경산시)	7.4 (청도군)

	현원 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경남	25.4	272 (양산시)	1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산청군, 양산시,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129.7	368 (김해시)	1 (거제시)	48.1	100.7 (거창군)	5.6 (고성군, 밀양시, 산청군, 통영시, 합천군)	64.2	100.0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 진주시)	0.8 (거제시)
제주	32.0	120 (제주시)	2 (서귀포시)	127.9	332 (제주시)	22 (서귀포시)	71.2	100.0 (서귀포시, 제주시)	13.3 (서귀포시)	74.6	100.0 (제주시, 서귀포시)	33.7 (제주시)

주: 유치원 공공테이터에 정원 대비 충족률은 유치원 7,707개 값을 분석한 것으로 현원 0인 경우는 휴교, 휴지일 수 있어 제외함.
자료: 유치원 알리미(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부표 3〉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근거 및 변화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1. 1. 14.] [법률 제4328호, 1991. 1. 14., 제정]	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우선입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 · 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개인은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 법 제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 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연도	수요	공급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보육사업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보육시설의 다른 시설이용 등) 학교 · 교회 기타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 제7조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1994. 2. 18.] [보건사회부령 제924호, 1994. 2. 18., 일부개정]		제6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등) ① 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18.〉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도	수요	공급
		6.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삭제 〈1994. 2. 18.〉 8. 삭제 〈1994. 2. 18.〉 9. 삭제 〈1994. 2. 18.〉 10. 삭제 〈1994. 2. 18.〉[27] ②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의 명칭·대표자·정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보육시설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가증 또는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써 넣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하거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2. 18.〉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1996. 1. 6.] [보건복지부령 제16호, 1996. 1. 6., 일부개정]		제5조 (공동보육시설등) ①법 제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 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6.〉 ②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 22., 타법개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28]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 ·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8. 22.〉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보건복지부령 199712.13)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연도	수요	공급
		④ 개인은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보건복지부령 199712.13)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영유아보육법 [시행 1999. 5. 9.] [법률 제5845호, 1999. 2. 8., 일부개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 보육시설 · 직장 보육시설 또는 가정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22., 1997. 12. 13.,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8. 22., 1997. 12. 13., 1999. 2. 8.〉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153호, 2004. 1. 29., 전부개정]	제9조 (보육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 ·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	제12조 (국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 · 공립보육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국 · 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 · 공립보육

연도	수요	공급
	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 ·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 · 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 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 30.] [법률 제7302호, 2004. 12. 31., 일부개정]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	제9조 (보육실태조사) ① 여성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 ·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2. 31.〉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	제13조 (국 · 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 · 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12. 31.〉

연도	수요	공급
	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3. 24.〉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 · 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31., 2005. 3. 2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의 내용 · 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3. 24.] [법률 제7413호, 2005. 3. 24., 타법개정]	동법 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여성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여성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5. 1. 30.] [여성부령 제14호, 2005. 1. 29., 전부개정]	제4조 (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현황 3. 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 · 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 · 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건강 ·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1. 10.] [여성가족부령 제11호, 2006. 11. 10., 일부개정]		제4조의 2 (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 12. 12.]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9. 7. 1.] [법률 제9165호, 2008. 12. 19., 일부개정]		제11조의 2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 · 정비 · 조성사업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1. 17.] *2011.6.7. 일부 개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추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일부개정]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 12. 8., 일부개정]		제5조의 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6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 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 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2. 7. 1.] [법률 제11144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14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 3. 1.] [법률 제11627호, 2013. 1. 23., 일부개정] (무상보육실시)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69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26조의 2(일시보육 서비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중략- [본조신설 2013. 6. 4.]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4. 2. 14.] [대통령령 제25164호, 2014. 2. 11., 일부개정]		제19조의 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2. 11.] 제20조의 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① 법 제14조의 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육부 2. 시·도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1.〉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시·도지사: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3.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연도	수요	공급
		제20조의 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 2 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 2 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6. 1. 1.] [대통령령 제26525호, 2015. 9. 15., 일부개정]		제2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법 제44조의 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 2와 같다. [별표 1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사업장 내 보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수 × 0.65) × 사업장 내 보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1명당 사업장 사업주의 월 평균 부담금액 × 6개월 -중략- [본조신설 2015. 9. 15.]

연도	수요	공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32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 2. 28., 2016. 12. 30.〉 ②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2. 28.〉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9. 11. 1.] [대통령령 제30171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19조의 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연도	수요	공급
		③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 ·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6. 4.]

출처: 법제처(https://www.law.go.kr/)홈페이지

27) 삭제 내용은 다음과 같음. 7.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8. 재산수익조서(수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시설종사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종사자의 경우에 한한다). 10.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8) 제6조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 공립 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2. 민간 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3. 직장 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
4. 가정 보육시설: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 운영하는 시설

Abstract

Analyzing and improving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services
: Focusing on the service supply system

Project Head: Kim, Eun-jung

This study examines how the declining birthrate and policy changes have influenced childcare demand and supply systems and suggests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n oversupply of childcare services nationwide rather than a shortage, and that there is no systematic supply-and-demand management system based on local demand.

According to the survey, about 47% of households use supplementary care services in addition to their main child care service, with most supplementary care provided by grandparents. The proportion of families using public babysitters or public part-time childcare as supplementary care services was very low, at 3.5% and 2.2%, respectively. However, the potential demand for these services is high. The main reason for using supplementary childcare services is a "lack of childcare time due to extended working hours" (27.4%).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ho reported that their current childcare arrangements did not match their desired childcare arrangements was 20.7%, with a higher rate of discrepancies among dual-income

Co-Researchers: Lim, Sungeun · Yi, Jihye · Ha, Taejeong · An, Hyunmi · Kim, Myoungjung

households, and a higher rate of matching with desired childcare arrangements when both parents took parental leave.

Satisfaction with childcare costs was the lowest, followed by dissatisfaction with geographical accessibility (distance and transportation). Both parental benefits and parental leave were found to have a major impact on reducing the use of institutional care. For infants, the desire for time support policies (work-family compatibility policies) was highest, followed by the provision of public facilities. For those aged 24 months and older, the desire for improved services along with expanding the supply of public facilities was high. To address the supply-demand imbalance caused by the declining birthrate and institutional changes, identifying local demand and establishing a responsive supply system are essential.

Key words: childcare supply and demand, service supply system, parental allowance, parental leave